

발간등록번호

11-142100-000001-10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I 유관기관 편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편

유관기관 (금융기관)

제1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4
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2
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6
③ 신성장기반자금	18
④ 재도약지원자금	21
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4
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6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8
1-3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32
1-4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34
1-5 수출인큐베이터사업	36
1-6 글로벌협력기반구축	38
1-7 온라인수출지원사업	39
1-8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41
1-9 연수사업	44
1-10 기술사관 육성사업	46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48
1-12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50
1-13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52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54
1-15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56
1-16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58
1-17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61

Contents

| 목차 |

1-18 진로제시 컨설팅	63
1-19 pre-회생 및 회생 컨설팅	65
1-2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67
1-2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70
1-2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73
1-23 내일채움공제	76
1-2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78

제2부 신용보증기금

2-1 신용보증	82
2-2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86
2-3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88
2-4 보증연계투자	90
2-5 투자옵션부보증	92
2-6 유동화회사보증	95
2-7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99
2-8 매출채권보험	101
2-9 잡매칭(Job Matching)	104
2-10 컨설팅	105
2-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107

제3부 기술보증기금

3-1 2021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10
3-2 기술보증	111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14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17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120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123
3-7 혁신성장 산업 지원 제도	126
3-8 비대면·디지털 우대보증	129
3-9 문화산업완성보증	132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35
3-11 기후기술보증	138
3-12 R&D 보증	141
3-13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44
3-14 지식재산(IP) 평가보증	146
3-15 기술평가	149
3-16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제도	151
3-17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153
3-18 지식재산공제사업(구 특허공제사업)	155
3-19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57
3-20 기술신탁관리	159
3-21 기술임치	161
3-22 TTRS(증거지킴이)	163
3-23 보증연계투자	165
3-24 투자연계보증	166
3-25 엔젤투자연계보증	168
3-26 VC투자매칭특별보증	170
3-27 벤처확인평가	172
3-28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174

제4부 기업은행

4-1 2020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178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179
4-3 IP사업화자금대출	180

Contents

| 목차 |

4-4 IBK강소기업대출	181
4-5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182
4-6 IBK문화콘텐츠대출	183
4-7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185
4-8 IBK시설투자대출	186
4-9 IBK토지분양협약대출	187

제5부 한국수출입은행

5-1 2021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190
5-2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191
5-3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192
5-4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193
5-5 기술금융 프로그램	194
5-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196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197
5-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199
5-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201
5-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02
5-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04
5-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06
5-13 해외사업금융	208
5-14 수입금융(수입자금)	211
5-15 이행성보증	213
5-16 무역금융(수출관련)	215
5-17 해외온렌딩	217



제6부 한국산업은행

6-1 온렌딩대출 222

제7부 한국무역보험공사

7-1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226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28

7-3 수출신용보증(매입) 229

7-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230

7-5 단기수출보험 231

7-6 중소기업Plus+보험 234

7-7 환변동보험 235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237

7-9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239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제1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44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48

1-3 창업성장기술개발 251

1-4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254

Contents

| 목차 |

1-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56
1-6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59
1-7 산학연Collabo R&D	262
1-8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264
1-9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266
1-10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268
1-11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270
1-12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272
1-1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274
1-14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276
1-15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278
1-16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280
1-17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283
1-18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285
1-19 미세면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287
1-2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289
1-21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293
1-22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295
1-23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297
1-24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299
1-25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302
1-26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304
1-27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306
1-28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309

제2부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312
2-2 사업조정제도	315



2-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318
2-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320
2-5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322
2-6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324
2-7	수출컨소시엄 사업	326
2-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328
2-9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330
2-10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사업	331
2-11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332
2-1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336
2-13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339
2-14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341
2-15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343
2-16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345
2-17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삼성전자)	347
2-18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포스코)	349

제3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1	소공인특화자금	352
3-2	성장촉진자금	354
3-3	일반경영안정자금	357
3-4	청년고용특별자금	359
3-5	혁신형소상공인자금	361
3-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63
3-7	상권정보시스템	366
3-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369
3-9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371
3-10	소상공인 경영교육	372

Contents

| 목차 |

3-1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374
3-1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376
3-13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378
3-1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381
3-15	스마트슈퍼 육성	384
3-1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386
3-1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88
3-18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사업	390
3-19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392
3-20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393
3-21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394
3-22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396
3-23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398
3-24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400
3-25	온라인 판로지원	402
3-26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404
3-27	백년가게 육성사업	406
3-28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409
3-29	희망리턴패키지	411
3-3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414
3-3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16
3-3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19
3-33	시장경영바우처지원	421
3-34	온누리상품권 발행	424
3-3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26
3-36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430
3-37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433
3-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436
3-3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38



제4부 대한상공회의소

4-1	코참경영상담센터	442
4-2	계약서 검토 서비스	444
4-3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445
4-4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446

제5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450
5-2	이동 KOTRA	452
5-3	해외시장조사	454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456
5-5	수출상담회	457
5-6	무역사절단	458
5-7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460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62
5-9	한국우수상품전	464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466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467
5-12	수출바우처사업	468
5-1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470
5-14	지사화사업	472
5-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474
5-1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476
5-17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479
5-18	클라우드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481
5-19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483
5-20	KOTRA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485

Contents

| 목차 |

5-2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487
5-22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489
5-23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491
5-24 해외IT지원센터	492
5-25 GMV (Global Mobile Vision)	493
5-26 IT컨소시엄 수출지원	494
5-27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495
5-28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	496
5-29 서비스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497
5-30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499
5-31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500
5-32 방산물자 교역지원	501
5-33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503
5-34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504
5-35 KOTRA 해외시장뉴스	505
5-3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506
5-37 경제외교 활용포털	507
5-38 FTA해외활용지원센터	508
5-39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510
5-40 수출인큐베이터	512
5-41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514
5-42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516
5-43 해외공동물류사업	517
5-44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518
5-45 해외지식재산권 보호(IP-DESK)	519
5-46 국내복귀기업 지원	522
5-47 글로벌 M&A진출지원	524
5-48 KOTRA 글로벌 CSR 사업	526
5-49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528
5-50 KOTRA 아카데미	529



5-51 열린무역관	531
5-52 경제외교 활용 사업	532

제6부 한국무역협회

6-1 포춘 500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534
6-2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535
6-3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536
6-4 tradeKorea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537
6-5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538
6-6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540
6-7 수출현장 자문서비스	541
6-8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542
6-9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544
6-10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 상담회	545
6-11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546
6-1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547
6-13 TradeSOS 분야별 전문가 자문	549
6-14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550
6-15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552
6-1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556
6-17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558
6-18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559
6-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공	560
6-20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562
6-21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564
6-22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566

Contents

| 목차 |

제7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1 거래공정화	568
7-2 성과공유제 확산	573
7-3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576
7-4 상생결제제도	578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580
7-6 기술보호 상담·자문	582
7-7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584
7-8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586
7-9 기술보호지원반	587
7-10 기술보호 역량강화	589
7-11 기술자료 임치제도	592

제8부 창업진흥원

8-1 예비창업패키지	596
8-2 초기창업패키지	598
8-3 창업도약패키지	600
8-4 재도전성공패키지	602
8-5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605
8-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608
8-7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610
8-8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612
8-9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614
8-1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616
8-11 청소년 비즈쿨	618
8-12 실전창업교육	619
8-13 창업에듀	620



8-14 메이커 스페이스	621
8-15 창조경제혁신센터	623
8-16 스타트업 파크	625
8-1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626
8-18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628
8-19 창업존 운영	629
8-2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632
8-2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634
8-2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636
8-23 창업지원포털(K-Startup)	638
8-24 창업기업 확인	639
8-25 도전! K-스타트업	641

제9부 기 타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644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646
9-3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648
9-4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650
9-5 산재예방요율제	652
9-6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654
9-7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656
9-8 근로복지기금지원	658
9-9 근로복지기금지원	660
9-1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662
9-1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664
9-1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666
9-13 기업복지 상담	668
9-1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669

Contents

| 목차 |

9-1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672
9-16 청년내일채움공제	674
9-1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76
9-18 청년 디지털 일자리	678
9-1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680
9-20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684
9-21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	686
9-2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688
9-23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690
9-24 관광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692
9-25 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693
9-26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694
9-27 관광플러스 팁스	695
9-28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696
9-29 관광기업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697
9-3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699
9-31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701
9-32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702
9-33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705
9-34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706
9-35 문화산업완성보증	708
9-36 스포츠 창업 지원	711
9-37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지원	712
9-38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지원	714
9-39 IP제품혁신 지원(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716
9-40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719
9-4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721
9-42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724
9-43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726
9-44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729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9-45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731
9-46 중소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733
9-47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735
9-48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737
9-49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739
9-50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741
9-51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743
9-52 ICT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지원	745

제 1 편

유관기관 (금융기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부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4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48
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2	1-12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50
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6	1-13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52
③ 신성장기반자금	18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54
④ 재도약지원자금	21	1-15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56
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4	1-16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58
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6	1-17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61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8	1-18 진로제시 컨설팅	63
1-3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32	1-19 pre-회생 및 회생 컨설팅	65
1-4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34	1-2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67
1-5 수출인큐베이터사업	36	1-2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70
1-6 글로벌협력기반구축	38	1-2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73
1-7 온라인수출지원사업	39	1-23 내일채움공제	76
1-8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41	1-2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78
1-9 연수사업	44		
1-10 기술사관 육성사업	46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응자방식

- 중진공에서 응자신청·접수하여 응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응자절차

- 응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응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응자신청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응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응자 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응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응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의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응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청년전문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문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사항 등 멘토링 지원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정책자금 제3차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용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④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으로 용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⑥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⑦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년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⑧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정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채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정책자금 용자제의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용자제의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시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⑩ 용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적용 제외)

⑪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용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용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 ⑬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기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은 횡수산정 예외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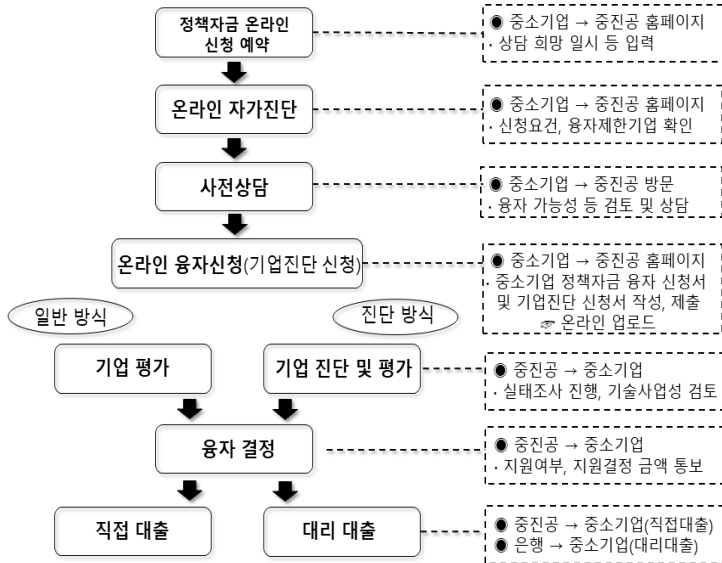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 4,1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2,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4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5,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7,7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5,00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2015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2.2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 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95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 기반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 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제품 사업화를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됩니다.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용품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시설투자 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60억원, 비수도권 7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동일기업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 금액을 1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래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1-1
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분야 창업자금은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 비대면분야창업자금 >

- 창업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비대면 분야 영위 기업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 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 ①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전력신기술,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축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 이상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소재기업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 (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응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시설 10년 이내(거치가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을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융자상환금 조정형)
 -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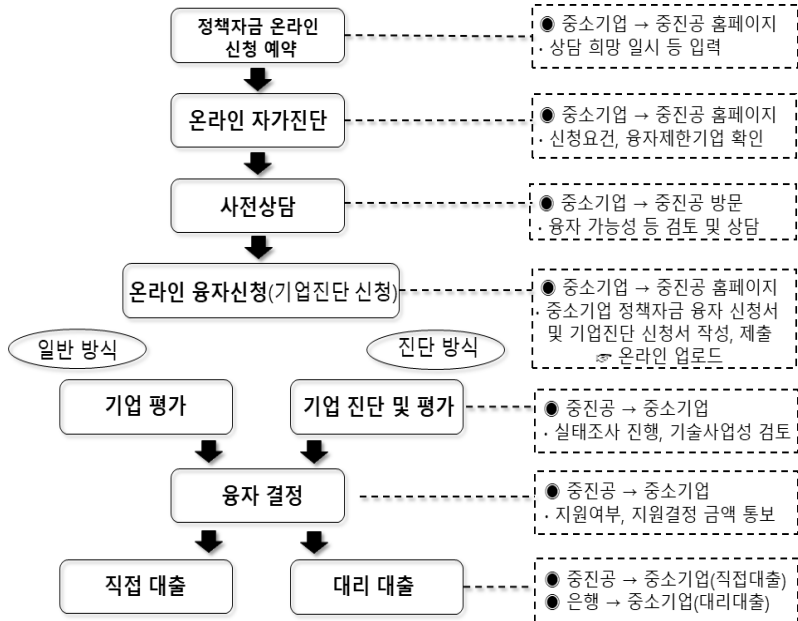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2,5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12,914개사 중 10,91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5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대상

-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방식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증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 까지 연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스케일업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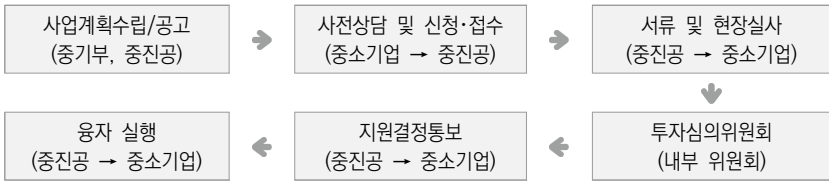
- 대출기간 : 3년 이내(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융자방식 : 中企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유동화 후 자금지원
 - *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1,4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성장공유형대출 10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0.1억원
스케일업금융 9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7.7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 합병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1-1
③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별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 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사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사설자금과 별도 용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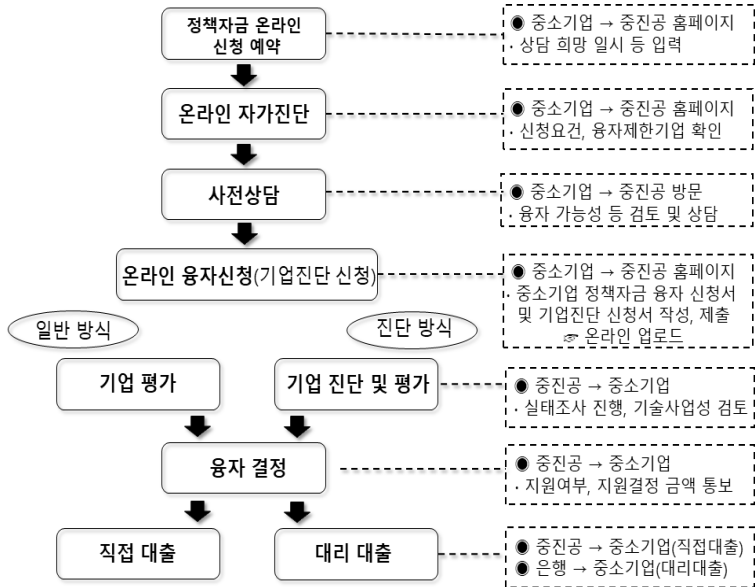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1조 7,7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2,765개사 중 2,44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6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④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재도약 성공을 지원

신사업개척과 무역피해 극복,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재창업을 통한 재기지원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내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물납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재창업 자금	재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 중 ①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상태 혹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면책, 회생, 신용회복,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의3 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④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폐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 ▶ (재창업)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무역조정자금 - 2%고정금리
구조 개선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2%고정금리,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재창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전환자금 : M&A용도의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구조개선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 따른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증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제출서류

- (공통) 융자신청서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처리절차

- 사업전환자금

전환계획접수

계획심사·승인

자금신청

자금심사·결정

- 구조개선자금

신청접수

-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재창업자금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지원규모

- 재도약지원자금 : 2,500억원
- 사업전환 1,050억원, 구조개선자금 550억원, 재창업자금 900억원
- * '20년 지원현황 : 재도약자금 3,10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본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전환자금 신청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창업예정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지원이 되나요?

A. 네, 예비재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심의위원회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경영위기 기업 대상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지원을 위해, 중진공이 채권은행과 협업하여 '기업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자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워크아웃제도보다 선제적이고 기업중심적인 구조개선·재도약을 지원하는 '21년 신규사업입니다.

1-1
⑤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용자방식

- 증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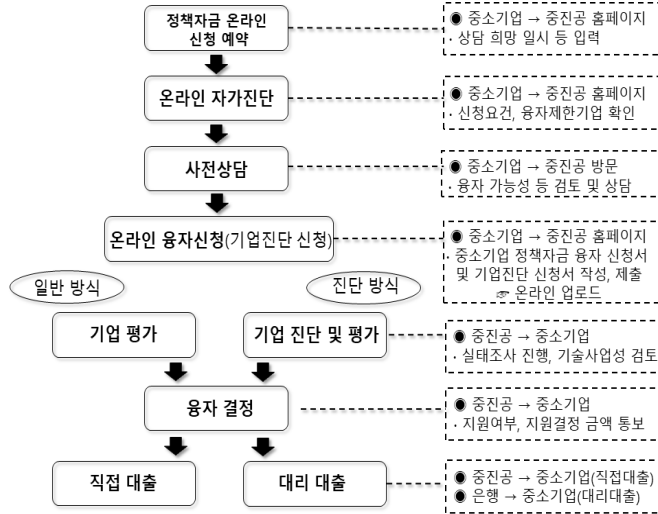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5,000억원
-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8,045개사 중 7,53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7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 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대상

-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진출 스타트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및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B2C 제조업체가 생산한 대한민국 소재 제품으로 선정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 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 (수출글로벌기업화)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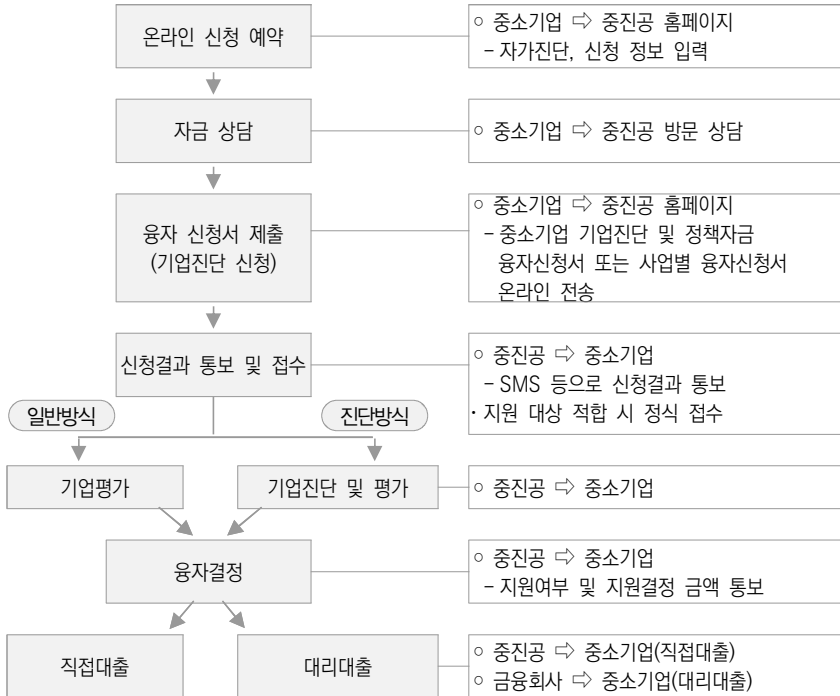
- 용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용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1,490개사 신청기업 중 1,38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지원금액 2.2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수출성장단계 스케일업 및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50%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 대상	지원한도 (백만원)
성장 바우처	내수기업	221	814개사	전년도 직접수출 '0'인 내수 중소기업	30
	수출초보기업	207.5	766개사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30
	수출유망기업	188.5	419개사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50
	수출성장기업	121	242개사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80
혁신 바우처	스타트업	57	191개사	창업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	30
	브랜드 K 기업	25	75개사	브랜드 K 선정기업	100
	규제자유특구	35	106개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00
	스마트제조혁신	59	180개사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100
	글로벌강소기업	121	242개사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신산업및K-bio	29	90개사	BIG3 지정기업 등 신산업·K바이오산업 영위기업	100

* 스타트업기업은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30백만원 지원

** 신청수요에 따라 배정예산 및 지원규모 변경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동일한 수출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법인
-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차·향락, 건강유해 등)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홍보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지원영역	지원항목
서류대행/ 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신산업 · K-바이오 영위기업 지원 신설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3D프린터 등 신산업 및 바이오 헬스산업 등 K-바이오 분야를 영위하는 혁신성장기업 지원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역량평가)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5개 분야 등을 평가 (고용영향평가 반영)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운영지침 게시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수출마케팅활동

지원규모

- 3,125개사 내외(예산 1,064억원)
 - * '20년 지원현황(10월 기준) : 총 3,720개사 내외(본예산 998억원, 추경 341억원)

문의처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내용을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A. 사업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 기관을 통해 활용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 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3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촉진

신남방, 신북방국가 등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이전 받기 원하는 현지 기업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을 발굴 및 매칭하는 사업

지원대상

-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술교류가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중,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 (기술수출유형) 라이선싱, 합작투자, OEM생산, 설비이전, 기술영업, 제조공정이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종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종인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내용

- 기술교류단 파견 기회 제공
 - 통역비, 현지 이동차량비, 기술교류상담장 등 수출활동 지원 현기기업발굴 및 매칭, 기업별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상 중재 지원
- 국내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전문가 진단비용 지원
- 현지 기업과의 교류성과달성 가능시, 별도 검토를 통한 현지 이동차량 및 통역, 계약서 법률자문 등 상시교류 지원
- 기술교류플랫폼(www.G-TEP.or.kr)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술교류사업 참여 기업의 기술DB구축 및 국내외 기업간 상시교류 지원
- 한국정부와 현지정부간 협력(G2G)을 위해 현지 정부기관에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통한 기술교류지원
 - (개소)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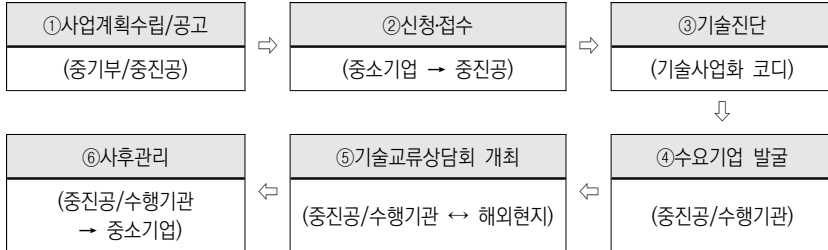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교류대상국 현지 상황에 따라 온라인상담회로 추진가능

신청·접수

- ①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에 공급기술 등록
 - www.g-tep.or.kr접속 및 로그인 → PMS클릭 → 공급기술등록
- ② 공급기술 등록완료된 기업대상, 주관기관의 정기 기술교류 신청(국가별)

제출서류 ●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 동의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 26억원

문의처 ● 중진공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7, 9678
● 해외기술교류 홈페이지(www.g-tep.or.kr)

Q&A



Q. 현지 기술교류상담회 참여시 항공, 숙박비도 지원해 주나요?

A. 아닙니다. 현지기업 발굴 및 매칭, 기술소개서 영문번역, 현지통역, 현지 상담장 및 차량임차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항공료, 숙박비는 기업 자부담입니다.

용어설명

공급기술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기업에 기술이전 하고자 하는 기술
수요기술 해외 현지기업이 국내기업에게 기술이전 받고자 하는 기술

1-4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산학연 R&D 및 기술교류협력 촉진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인프라를 조성하여, 산업생태계 중심 R&D 및 인적교류 기반의 기술혁신을 촉진

지원대상

- 산학연 기술교류 및 R&D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운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대학과 기술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운영
 - * 기술상담, R&D역량강화교육, 기술교류회, R&D멘토링캠프, R&D연계 등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 포럼·세미나, IR·피칭, 협력R&D 발굴·기획, 정책 제안 등 네트워크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 구성·운영
 - * 네트워크 분야 :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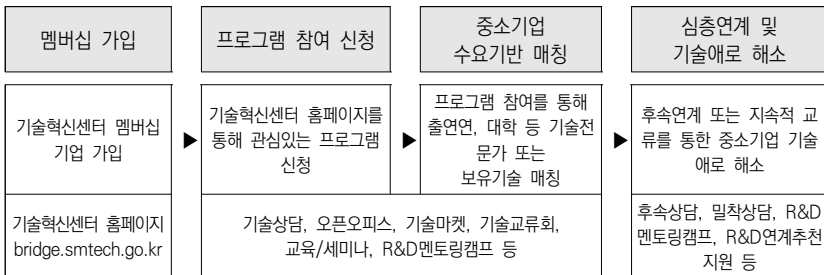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기술교류회 등을 온라인으로 추진가능

신청·접수

-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십기업 가입 후 기술교류 프로그램 참여
 - www.bridge.smtech.go.kr
- ②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공고를 통해 선정된 각 네트워크별 지원기관을 통해 기술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처리절차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지원기관 공고	지원기관 선정	네트워크 운영	운영결과 제출
중기부 (전문기관)	중기부 (전문기관)	지원기관 중소기업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참여	지원기관 → 전문기관

* 지원기관의 역할 : 민간 중심의 기술분야별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단체 중 공고·선정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규모

-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 11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 031-739-6910,6911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bridge.smtech.go.kr)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 042-388-0751, 0752

Q&A



Q.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기술교류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인가요?

A. 맞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의 '멤버십기업'가입부터 모든 프로그램(기술상담, R&D역량강화교육, 기술교류회, R&D멘토링캠프, R&D연계 등)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5 수출인큐베이터사업

해외 사무공간 제공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12개국 20개소) 시카고, L.A., 워싱턴 D.C., 뉴욕, 베이징, 상하이, 시안, 충칭, 광저우, 호치민, 하노이, 프랑크푸르트, 도쿄, 방콕, 양곤,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두바이, 알마티, 모스크바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등
- ▶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실질적 기업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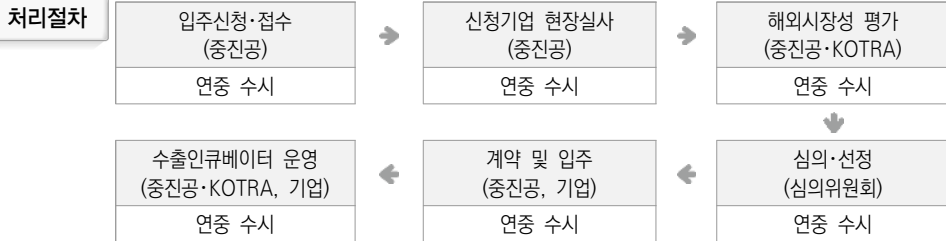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1년차 80%, 2년차 50%)
 - 사무공간(12~20㎡), 회의실, 사무집기 및 인터넷 전용선 제공
 - 마케팅 전문가, 법률·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 지원

-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우편 접수
 - (제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우편번호: 52851)

심사·평가 주요내용

- 경영평가, 진출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도 평가 등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청년창업사관 학교 졸업기업, 중진공 Family 기업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원규모

- 예산 167억원

* '20년 예산 120억원, 연간 지원기업 수 275개사('20년 11월말 기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85, 9674, 967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원사업-수출인큐베이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는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정의 실비를 받고 임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을 지원합니다.

Q. 독립실의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4년(연장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연장을 신청하시면 입주 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용어설명

공유오피스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역에 중·단기 출장 시,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용 사무공간 지원

1-6 글로벌협력기반구축

글로벌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협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합니다.

지원분야 ● 분야별 지원내용

분 야	내 용
글로벌 협력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기반 구축 -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 -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및 현지 정착 지원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EC 역내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역내 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역내 중소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우리 중소기업과 APEC 역내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지원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신청·접수 ●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www.kosmes.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

● 산업협력관, 코리아데스크 등 현지 지원사업은 글로벌사업처로 문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절차

상담

지원
(개별매칭 등)해외거점연계
(필요시)

사후관리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8, 967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APEC 역내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역내 진출지원을 위한 센터로서,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매칭상담회 개최,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음

1-7 온라인수출지원사업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부터 홍보 마케팅, 해외 구매오피 발굴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단, 사행업, 도박업 등 공고사항에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고비즈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특성을 고려한 동영상 등 상품페이지 제작 · 기업별 고유의 상품특화페이지(미니홈페이지) 제공 · (온라인 연계마케팅) 검색엔진마케팅, SNS(유튜브 등)마케팅, 온라인매칭페어(상시) 등 기업 및 상품특성을 고려한 온라인마케팅 지원 · 유효인콰이어리(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온라인구매오피 사후관리 및 거래알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 무역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신용검증, 인콰이어리 대응부터 수출 계약 후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 * 바이어 거래협상 → 계약 → 물류·통관 → 대금지급 등 · 해외바이어의 국내 방문 시 무역전문가를 파견하여 무역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미니홈페이지 구축
 - 상품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4D* 촬영·웹북 등을 포함한 미니 홈페이지 구축
- 선택형 마케팅지원 강화
 - 기업·상품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선택형 마케팅 지원 강화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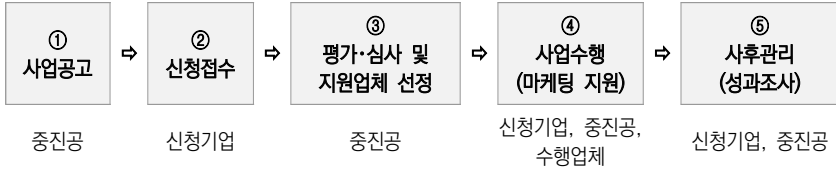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신청 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온라인수출 희망기업 2,000개사(3,684백만원)
- * '20년 지원현황 : 2,100개사 지원 (예산 4,111백만원)

문의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한글) kr.gobizkorea.com
- (영문) www.gobizkorea.com

Q&A



Q. 수출이 처음인 온라인 수출초보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기반으로 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마케팅 연계지원, 거래성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매칭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직무교육, 현장코칭·실습, 취업컨설팅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통해 청년 구직난 및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대상

- 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
 - (참여기업) 구인애로 중소기업
 - (참여인력) 만 34세 이하 청년(장병) 구직자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참여기업) 대·중견기업 사업단과 협력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
 - (참여인력)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참여기업)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예정)기업 등 구인애로 중소기업(150개사 내외)
 - (참여인력) 해당 직무경력 1년 이상 실업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300명 내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 부동산 투기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
 - 직무교육, 취업컨설팅, 취업지원서비스(AI모의면접, 인적성검사 등), 취업연계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맞춤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지원
 -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육생 훈련수당 지원(주당 10만원)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직무교육과 1:1 현장코칭·실습을 통해 기업현장에 적합한 숙련인력을 조기 육성, 공급하여 구인난 및 구직난 해소 지원
 - * (직무교육) 인력당 집합교육(3일 이내) 1회(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 * (현장실습) 인력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지원(최대 3개월)
 - * (현장코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등을 통한 코칭비(1회 50만원, 최대 12회)
 - * (취업연계) 실습종료 후 참여자 정규직 전환 유도(정책자금(인건비) 용자 등 연계지원)

신청·접수

- 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
 -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의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ob@kosmes.or.kr)
 - (참여자)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청년희망나눔 블로그의 각 사업단별 모집공고 참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의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ob@kosmes.or.kr)
 - (참여자)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제출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등

처리절차

- 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



지원규모

- 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 (지원규모 제한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대·중소상생 일자리 550명 내외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참여기업 150개사 내외, 참여자 300명 내외 지원

* '20년 지원현황 : (취업실적) 3,259명 ('20.11.20일 기준)

· (대·중소상생 일자리) 12개 사업단, 참여기업 293개사, 457명 취업연계 (진행중)

· (현장코칭) 103개사, 189명 취업연계 (진행중)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후관리센터(1899-3001)

●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job.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본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 취업지원서비스 중 SI면접 응시 후 결과 공개가 필수인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정확한 취업매칭을 위해 SI면접결과 공개를 권장합니다. 공개해주시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한 취업매칭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취업매칭 담당자, 지원기업 담당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Q.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에 구직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 사업에 선정된 대기업(중견기업) 사업단별로 청년희망나눔 블로그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 사업에 3개월 참여가 필수인가요?

A. 아닙니다. 협약기간은 기업에서 가능한 기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1-9 연수사업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대상 전문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CEO 및 기술·경영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기술, 관리기법 습득 및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지원내용**
-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 품질, 창의인재(경영) 등 공개집합교육
 - (맞춤연수)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
 - (정책연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교육 등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오프라인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연수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공장운영시스템, 러닝팩토리실습, 제조자동화, 설계기술·가공기술, 스마트공장관리
		스마트융합	전기전자·PLC·ICT융합, CAD, 정보기술·IT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뿌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국제인증포함), 현장혁신	
	창의인재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향상(문제해결형 코칭연수)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춤연수	문제해결형	개별기업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온라인	인터넷연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는 연수로 직무, 소양교육 및 MOOC(온라인무료공개수업), 라이브 웹세미나	
	모바일연수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신청·접수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대상 교육 신설, 고도화(AI, 빅데이터 활용) 과정 확대
- (직무·정책·맞춤연수) <http://sbti.kosmes.or.kr>
- (온라인연수) <https://cyber.kosmes.or.kr>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직무역량향상연수는 연수비 할인제도 운영,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역량향상연수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21년 신규 개설)	30%

* 연수비 할인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증빙서류는 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연간 50,000명 내외(직무·정책·온라인연수), 맞춤연수 400개사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 중소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Q&A



Q.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카드로 결제시 고용환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업카드 또는 현금(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1-10 기술사관 육성사업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2+2)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생산기술,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 - 전문대 연계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와 전문대
- 전문대 1개와 복수의 특성화고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사업단 구성

참여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 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운영비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학교	학생활동지원비,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학생	직업교육, 전문대 진학, 협약기업 취업, 산업기능요원 우대
기업	전문기술인력확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우대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처리절차

- (신규 사업단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중기부)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협약체결(사업단)

- (사업단 선정 후 추진 절차)

사업비 교부

중간점검

사업비 정산

사업성과평가

지원규모

- 지원대학 (9개대학, 18개 특성화고) (예산 2,898백만원)

* '20년 지원현황 : 12개대학, 18개 특성화고 지원 (예산 2,898백만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2-481-68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67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anhakin.mss.go.kr)



Q.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사업단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채용연계, 연수, 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합니다.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 및 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참여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 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캐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학교는 학과 운영비, 학생은 등록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학교	계약학과 운영비(학기 당 35백만원 ± α)
학생	기준등록금* 대비 학위별 차등** 지원 * 기준등록금('20년) : (석·박사) 290만원, (학사) 230만원, (전문학사) 180만원 ** 재직자(석·박사 65%, 학사·전문학사 85%), 동시채용형(10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석·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기업 현장애로 해결형 산학프로젝트 중심으로 논문 없이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학위를 부여하는 '프로젝트 학위제' 도입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참여대학은 사업계획서 제출(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처리절차 ●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중기부)

신청·접수

현장실태조사

대면평가

주관대학 선정

학과운영

운영실적 보고

사업비 정산

지원규모

- 지원대학 (49개 대학, 70개 학과) (예산 119억원)

* '20년 지원현황 : 50개 대학, 68개 학과 지원 (예산 114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2-481-68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18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anhakin.mss.go.kr)

**Q. 중소기업 대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나요?**

- A.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자는 계약학과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합니다.

Q. 졸업 후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나요?

- A. 네. 그 기간을 의무 근무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 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교육형은 졸업 후 1년, 재교육형 동시채용과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1-12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업 수요 반영 현장중심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특성화고생 대상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 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참여 기업

- ▶ 고용보험가입 중소기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내용

- 주요 프로그램

현장중심 교육	특성화고 마인드제고	취업역량 강화
① 맞춤형	④ 중소기업 이해연수	⑦ 전공동아리
② 1팀 1기업 프로젝트	⑤ 진로지도 프로그램	⑧ 현장학습 프로그램
③ 교수학습자료 개발	⑥ 교원직무 연수	⑨ 외부전문가활용

- (맞춤반) 3자(학교-기업-학생) 또는 2자(학교-기업)간 채용협약을 맺고 맞춤형 교육 실시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참여학교)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anhakin.mss.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 (참여희망기업) 회사소개서(자유양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고용 보험가입내역서(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처리절차

- 사업 추진절차

계획수립

공고 및 학교선정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평가

지원규모

- 전국 215개 특성화고, 341.1억원

* '20년 지원현황 : 전국 215개 특성화고, 346.3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68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22, 9862~63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맞춤형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 인원 배정시 우선 선정 대상 (3차 협약)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3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성과공유 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력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 촉진

지원대상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성과공유 유형

- ① 경영성과급 ②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공제(내일채움공제) ③ 임금상승률
- ④ 우리사주조합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⑦ 기타유형(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후가지원사업참여, 복지플랫폼 활용 기업)

지원내용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 자격 부여(7년 미만 기업 해당)
-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점수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점수 부여
 - 일자리평가지표 도입 사업에 한함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및 존경받는 기업인 평가 시 점수 부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수시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도입)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서류(도입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를 평가하여 지정)
- (공통)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의 감소 여부 확인

제출서류

- 고시*유형별 도입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처리절차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신청·접수(수시)

제출 서류 확인

승인

지원규모 ● (신청규모) 연간 2만개사 지정

* '20년 선정현황 : 약 2만개사 지정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Q. 세제지원 혜택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A. 성과공유 유형 중 경영성과급 유형으로 도입 지정을 받아야 하며, 경영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으로 최근 1년 이내에 35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우수 인재 양성 분위기 조성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이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인 등 6개 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 자격 부여(7년 미만 기업 해당)
-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점수 부여
-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 중기부 일자리 평가 가점 부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성평가) CEO 의지, 일자리 양·질, 교육 훈련 정도 등을 방문하여 평가
- (정량평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근로환경, 교육훈련 등을 평가
-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육성 노력,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 심의

제출서류

- 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처리절차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접수

서면·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최종지정

지원규모 ● (선정규모) 연간 250개사 예정(연 예산 2억원)

* '20년 선정현황 : 280개사 선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Q&A



Q.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다시 신청을 하시면 지정일로부터 다시 3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Q. 3년 미만의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요?

A. 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면 3년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가능하며, 재무제표 평가는 기본 점수를 부여하여 진행합니다.

1-15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 확산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간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 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선정

지원대상

- (신청대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등 유관기관 추천 및 국민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 무도장 운영업인 등 6개 업종은 제외

- (기업범위)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기업
- (대상) 평소 기업 활동을 통해 직원의 복지 증진과 사회 공헌 등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우수 기업인

지원내용

- 선정패
 - 중기부 장관 표창 수요
 - 트로피 및 동판(대표자 얼굴) 수여
- KBS 1TV 방송 프로그램 출연
 - 존경받는 기업인의 성과공유 우수사례를 대국민 전파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과공유 도입 유도 및 사람중심 경영문화 확산
 - * 프로그램명 : 청년일자리프로젝트 "사장님이美쳤어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존경받는 기업인 우수사례집 제작, 국민심사단 도입

신청·접수

- 중진공 담당자에게 메일을 활용하여 접수(omw@kosmes.or.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성평가) CEO 경영 및 노력, 인재육성, 미래 경쟁력 제고 노력, 질 좋은 일터 구현, 사회공헌 등을 평가

- (정량평가) 성과공유 추진 노력, 성과공유 도입 실적 우수성, 교육 훈련 정도, 경영성과, 일자리 양 증가 등을 평가
- (발표평가) CEO 혁신 의지, 조직문화 및 성과우수성 등을 대표자가 직접 발표

제출서류 ● 선정신청서, 성과공유기업 증빙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처리절차 ●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신청서 접수

서면·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최종선정

지원규모 ● (선정규모) 연간 12명 선정

* '20년 선정현황 : 10명 선정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 지원시책」참조

Q&A



Q.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후 지원 내용인 방송 프로그램 출연은 꼭 해야 하나요?

A. 네,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목적은 성과공유 우수사례를 대국민 전파하여, 중소기업 CEO의 성과공유 도입 유도, 청년 구직자의 중기 취업 인식 개선으로, 선정된 기업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성과공유 및 인재 육성 등의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1-16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CEO의 창업 쏠 단계 패키지 지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등 창업 쏠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 등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창업인프라)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쏠 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지원)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적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술경력자(만 40-49세) 선발 폐지 → 청년창업자 중점선발 및 양성(예정)
- 지역별 주력분야 선발확대
-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설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발심사) 서류심사 → 발표(PT)심사 → 심층심사 → 현장심사 4단계 심사
 - * 자격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모델, 기술성, 성장가능성 등 종합평가
- (성과평가) 중간·성공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사업화 진행현황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 1,065명(개사), 예산 968억원
 * '20년 지원현황 : 1,035명(개사), 929억원

문의처 ●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수도권 및 강원	본교 (안산, 경기 구리)	031-490-1351, 1554, 1384, 1557, 1161
	서울	02-2130-1431~4, 1436, 1430, 1438
	인천	032-858-7859, 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7~8
	강원(원주)	033-748-9267~9
호남권 및 제주	대전세종(대전)	042-862-9937~8
	충남(천안)	041-589-0834~8, 0840
	충북(청주)	043-903-9357~8
	광주	062-250-3034, 3031~3, 3039, 3042~3
충청권	전북(전주)	063-276-8218~20
	전남(나주)	061-331-8708~9
	제주	064-759-9647~9
영남권	대구	053-656-8177~8
	경북(경산)	053-819-5054~7, 5062
	부산	051-305-9930~1
	울산	052-276-8937~9
	경남(창원)	055-548-8050~4, 8020, 8062, 8064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835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1-17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 D.N.A. 분야 혁신창업기업 패키지 지원

D.N.A.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 글로벌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하 D.N.A.분야 (예비)창업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동 사업을 통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 등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 D.N.A. 교육) 우수한 D.N.A.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단계별 · 과제별 혁신교육 제공
 - ① D.N.A 특화교육 : 국내 D.N.A. 현업전문가 및 대기업 협업교육
 - * 서울대, 카이스트 AI 대학원 및 NHN 등 대기업 참여('20년)
 - ② 실전 프로젝트교육 : 세계적 AI 경진대회 플랫폼 'Kaggle'의 기출 프로젝트 해결 및 실전대회 참여 지원
 - ③ 글로벌 대기업교육 : D.N.A. 분야 글로벌 대기업의 분야별 특화교육
 - * 글로벌 AI 선도기업(AWS, MS, NVIDIA, Intel 4개사, '20년 기준) 참여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탐티어 액셀러레이터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상주하며 밀착 · 연합보육 실시
- (사업비지원) 최대 50백만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하)
 - * 입교팀 평가(중간 · 성공)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분야 확대) ('20년) AI 분야 → ('21년) D.N.A. 3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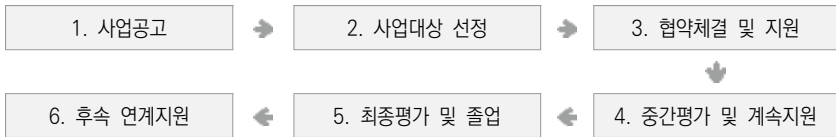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발심사) 서면심사 → 발표(영어 PT)심사 2단계 심사
 - * 자격 검토, 기술성 및 시장성, 신청 동기, 사업화 역량 등 종합 평가
- (성과평가) 중간·성공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사업화 진행현황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60명(개사), 109억원

* '20년 지원현황 : 60명(개사), 109억원

- 문의처**
- 주요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업팀(02-6949-6817~6819)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팀 신청의 경우 전원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신청자격 적격여부를 검토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1-18 진로제시 컨설팅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진로제시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

지원대상 ●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의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중소기업 혁신비우차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정책정보를 제공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90% 지원

구 분		투입일수	보수액(만원)
기초 진로제시	재무분석	3MD	180만원
	일반	3MD	180만원
기술사업성 분석*		2MD	60만원
사업정리	일반분야	2MD	120만원
	전문분야**	1~3MD	60~180만원

* 불필요시 제외 가능

** 불필요시 제외 가능, 세무/노무/법무분야 각각 1~3MD 내에서 지원가능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불필요시 제외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340여개 기업(예산 7억원)

* '20년 지원현황 : 340여개 기업 지원, 기업당 평균 2백만원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및 재도약성장처
- 홈페이지(www.mssmiv.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컨설팅 결과인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1-19 pre-회생 및 회생 컨설팅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회생지원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무자 회생 및 하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가능성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협업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 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협업법원으로부터 'Pre-회생컨설팅 사업 지원대상 추천서'를 받은 중소기업
 - * 협업법원 : 서울회생법원 및 지방법원(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제주, 전주, 청주, 춘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개인회생절차
- ▶ 조사위원이 별도 선임된 경우
-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 ▶ 중소기업 혁신버우처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컨설팅 범위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 답변서, 채권목록 작성
 -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조사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회계세무 자문 등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평가시 대표이상의 횡령, 배임사유가 확인되면 지원불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 홈페이지(www.mssmiv.com) 공고 참조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 지원규모**
- 100여개 기업(예산 25억원)
 - * '20년 지원현황 : 기업당 평균 24백만원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 홈페이지(www.mssmiv.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기존 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보수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대상 선정 후 중진공과 협약이 체결된 컨설턴트에 대한 보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2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기술개발)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 (맞춤형사업화) 자전거·해양레저장비(부품·소재 포함) 관련 사업화 추진 (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
- 우대조건(기술개발)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함
 -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우대조건(맞춤형사업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기술개발)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맞춤형사업화) R&D성공기술, 특허기술, 이전기술 등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 후 맞춤형사업화 비용 지원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구 분 (지원비율)	항 목	내 용	비 고
기술개발 (75%)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참여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단독기술개발은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
	해양레저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맞춤형 사업화 (75%)	맞춤형 사업화 사업화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 50백만원 이하 • 제품 디자인·설계 개선, 시제품·시금형 제작 •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 성능평가,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 홍보물, 포장/패키지 디자인 등 	*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확인

신청·접수

● '21. 1월~2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로 실시
- 선정 관련 세부내용은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처리절차

● (기술개발)



● (맞춤형사업화)



지원규모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18억원(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 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분야	해양레저장비 분야
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 포함	해양레저장비 분야

* 관련 세부내용은 '21년도 사업공고문 참조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854, 985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지원제외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또는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중복과제 지원 불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內 '21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세요.

1-2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진단을 통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을 맞춤형 패키지 지원하여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재기권 설팅은 별도 운영)
- 13개 지방청별 지역 주력산업 등 탄력적 우대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업종 : 33402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내용

- 혁신역량 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소요경비의 50~90% 차등지원

매 출 액	정부지원 비율	정부 지원금
3억원 이하	90%	최대 50백만원 이내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50%	

- 최대 3개 분야 패키지 지원 가능

- 바우처 메뉴판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컨설팅	기술 컨설팅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신사업 계획, 사업전환 등의 애로해결
	규제대응 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 관리법 대응 등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재기 컨설팅	진로제시, Pre-회생, 회생컨설팅 등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구설계, 금형, 제품디자인 등
	기술개발관련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연구소 설립, 정보화 구축 등 전문가 비용
	기술지원 및 지적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지식재산권 소요비용 등
	규격인증	규격인증을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제품시험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설 계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마케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 분석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신청·접수

- 제조혁신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위원회 → 현장 진단·평가 → 심의위원회*
- * 지역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처리절차

- 사업 프로세스



지원 규모

- 1,800여개 사(예산 526.05억원)
- * '20년 지원현황 : 총 1,637개사 (재기컨설팅은 별도)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
- 제조혁신 플랫폼(www.mssmiv.com) 공지사항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 제조혁신 플랫폼(www.mssmiv.com)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자료실에 '참여기업 사업 진행 관련 주요 FAQ'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2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개발기술을 사업화 성공으로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는 사업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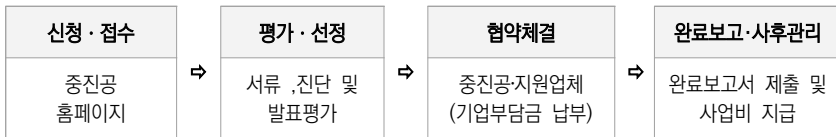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80개사 내외)
- 사업화 지원
 - 개발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기획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2개 이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32개사 내외)
 - * 기획지원(사업화 기획), 기술지원(성능테스트,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시장테스트),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중분류	
기획 지원 (3개)	사업화 기획	기술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
		경영컨설팅	경영전략, 운영, 인사, 재무, 조직 등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 규모·경쟁사 조사, 제품화·양산, 판로개척,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기술 지원 (2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제품개선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포함)	
	성능테스트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인증, 검증, 평가 * (예시)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마케팅 지원 (3개)	시장 테스트	시장조사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 (예시)시장시뮬레이션,고객패널조사,시장조사·분석 등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판매 전략, 가격전략, 고객관리, 매장구성전략, 소비자전략, 유통전략, 제품전략 등 수립
		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시장(반응)조사

- 신청절차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최대 1억원, 20개사 내외)

*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 기술이전

-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NTB(기술은행)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시장검증 및 사업화 기획을 사업화 지원으로 패키지 지원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 기술사업화 진단 * → 발표평가
- * T(Technology) : 기술완성도, M(Marketability) : 시장성, C(Capability) : 사업화역량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대상기업 추천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기능개선 지원

- 지원규모** ● 기술사업화 진단(80개사), 사업화 지원(32개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20개사) (예산 43.5억원)

* '20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202개사), 사업화 지원(32개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20개사) (예산 43.5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 055-751-9855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 정부 R&D성공판정기술과 특허등록 모두 보유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정부R&D성공 판정 기술 또는 특허 등록 둘 중 하나의 자격 요건만 만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화(양산화, 매출)가 진행되지 않은 기술만 신청 가능합니다.

Q. 특허 출원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A. 불가능합니다. 사업신청기간 내 특허등록을 완료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통상실시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23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하나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 무관)으로 직무가 역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기간
 - 5년 이상
- 공제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천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 사업주 : 핵심인력 = 20이상 : 1 비율로 납부
- 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 가입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 단, 가입기업과 특수관계인의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 없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21년 4월부터), 부동산업(21년 하반기부터) 공제가입 가능

신청·접수

- (방문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청약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중소기업) 휴·폐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재직여부 등

제출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처리절차

공제청약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성립

지원규모

- 제한없음
- * '20년 지원현황(11월말 기준) : 4,157개사, 10,491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4, 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 A. 핵심인력은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연령·자격·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1-2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청년재직자)
 -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34세)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 * 단, 기업과 특수관계인(최대주주,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경우 가입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기간
 - 5년
- 공제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월 최소 12만원 ×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월 최소 20만원 × 60개월)
 -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 가입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신청·접수

- 중소기업협동조합(21년 4월부터), 부동산업(21년 하반기부터) 공제가입 가능
- (방문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청약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중소기업) 휴·폐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재직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정부 및 지자체 자산 형성 지원사업(예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참여 여부 등

제출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 (청년)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필요 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처리절차

공제청약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성립

지원규모

- 3만명 내외 (정부지원금 예산범위 내)
- * '20년 지원현황(11월말 기준) : 10,506개사, 30,371명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4, 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나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 방문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 방문가입 : 중진공 지역본(지)부 및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제2부 신용보증기금

2-1 신용보증	82
2-2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86
2-3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88
2-4 보증연계투자	90
2-5 투자음선부보증	92
2-6 유동화회사보증	95
2-7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99
2-8 매출채권보험	101
2-9 잡매칭(Job Matching)	104
2-10 컨설팅	105
2-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107

2-1 신용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단,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업종 등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종류	주요 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지원내용 ● 보증 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보다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종 류	보 증 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장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아이콘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 	1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수 집 (제 출) 자 료	자 료 수 집 경 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사실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 보증잔액 57.5조원으로 운용예정
 * '20년 지원현황 (11월말기준) : 55.1조 (222,494개사)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맞춤형 지원
고용창출기업 보증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보증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거래,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SMART융합보증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및 생산을 위한 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 타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율은 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2-2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수요자 중심의 혁신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입니다.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첨단제조, 에너지, 환경,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전기·자율차, IoT 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AR·VR, 첨단신소재, 인공지능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 「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업종 영위기업
- ▶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수료자 또는 수행중인 자 및 중도 탈락·포기자
 - * 유사 지원사업 예시: 창업진흥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연계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캡프'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을 복합 지원(사업계획 진단, 성장전략 코디네이팅, 시장 포지셔닝, IR 스토리텔링 역량강화 등)
- 금융지원
 - NEST기업 액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 등을 반영하여 신용보증 지원, 투자 지원(신보 직접투자, 민간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 투자) 및 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등 우대
- 성장지원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컨설팅, 대기업 연계 및 네트워킹, M&A컨설팅 및 M&A보증을 통한 사업확장과 회수전략 지원, 거래소 시장별 맞춤형 IPO 지원

신청·접수

- 신보 스타트업 플랫폼(www.kodit.co.kr/startup)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상·하반기 연 2회 공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가정신, 기술성 및 개발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지속성장가능성, 사업화가능성 등

제출서류 ● 지원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선정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1차선발(서류심사)

최종선발(발표심사)

● (지원절차)

최종선발

액셀러레이팅

금융지원

성장지원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선발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74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3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대학을 지역 창업거점으로 육성

기술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혁신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10년 이내 스타트업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창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휴업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스텝업 준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10억원의 보증 한도로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 스텝업 도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2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퍼스트뱅크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의 연구개발,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3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퍼스트뱅크 플러스 보증
 - 기존에 Credit-line 설정을 통한 지원 이력이 있는 창업 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도약 단계 기업에 대하여 50억원의 보증한도로 자금 지원

신청·접수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www.kodit.c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절차 ● (처리절차)

신청 및 상담

자료수집 및 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약정 및 보증발급

● (처리내용)

- 신청 및 상담: 신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 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검토 신청 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 약정 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0.7%) 수납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4 보증연계투자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2배 이내로 운용하되, 미래성장성등급별로 차등적용

미래성장성등급	인수한도
K1등급 ~ K6등급	30억원
K7등급 ~ K8등급	15억원
K9등급 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 이내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처리절차 ● (보증연계투자 업무처리순서)

투자상담

투자조사

투자심사

투자결정

투자집행

사후관리

투자금 회수(EXIT)

지원규모 ● 6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0년 지원현황 : 598억원 투자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어도 투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더라도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투자 실행 전까지 신용보증을 사용 중이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M&A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전환사채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2-5 투자옵션부보증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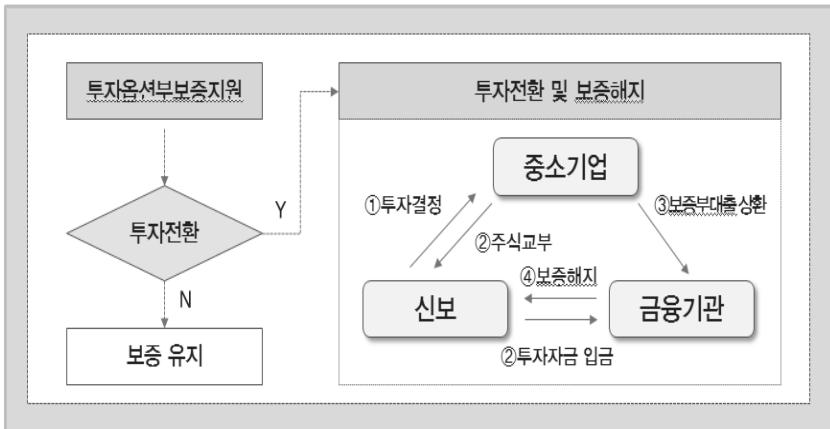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기한	• 5년으로 운용
보증료	• 0.5% 고정 보증료율
보증비율	• 100%
증자참여권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급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행사가능 •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신청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처리절차 ● 투자유선부보증 업무처리순서

상담·접수

신용조사

심사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0년 지원현황 : 300억원 지원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증자참여권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증자참여권의 행사가격은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전환심사 시점에 신보가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속투자 유치 시 평가된 가치에 연동하는 최근 투자 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용어설명

증자참여권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후속투자

☞ 후속투자란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2-6 유동화회사보증

회사채 발행을 통한 보증지원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10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지원 불가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업 영위 기업

지원 유의 기업

신용상태 취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개년 동안 EBITDA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미래성장성등급K5(회사채등급BB+) 이하)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총 차입금(이번 신청건 포함)이 당기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생·기업구조조정 종결 후 2년 이내 기업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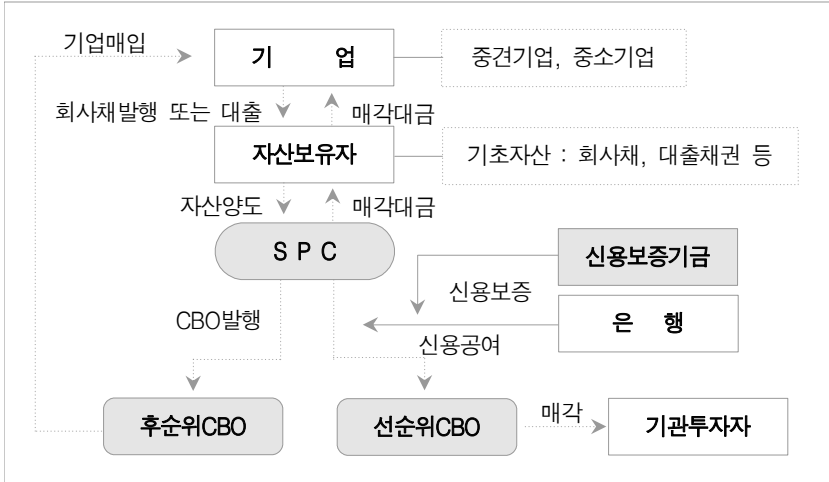
* 지원 유의 기업의 경우,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편입 여부 결정

제도개요 ●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 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지원한도는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① 편입한도

- 중견기업

(단위 : 억원)

회사채등급	A-이상	BBB+	BBB	BBB-	BB+	BB	BB-
중견기업	700	600	500	400	300	200	100

* 최초 편입월로부터 6개월경과 시 상기 한도의 50% 추가 지원 가능

- 중소기업

(단위 : 억원)

미래성장성 등급	K20이상	K3	K4	K5	K6	K7	K8	K9	K10
중소기업	200	200	170	170	140	80	50	40	30

(주1)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기업어음 차환발행기업 지원 특별대출보증 금액+유동화 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 건 포함)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매출액·자기자본 한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 Ⅲ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주)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기업어음 차환발행기업 지원
 특별대출보증 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 건 포함) 기준

● 발행금리

- 중소기업: 신용등급별로 1.75%(K1등급) ~ 4.35%(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신용등급별로 1.75%(A등급) ~ 3.65%(BB- 등급) 수준
 상기 금리수준은 2020.11.30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율 0.5~1.8%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신청·접수

●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 전국 영업점
- 중견기업: 유동화보증센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 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여부 결정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21년 보증공급계획(연간) 4.3조 신규 발행 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Q. 유동회사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몇 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나요?

A. 신규 이용 기업은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 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용어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2-7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시적 경영위기기업 지원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신보가 주도적으로 기업개선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원하여 계속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총여신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기업, 신성장동력기업

* (경영상태 취약지표) 2년 연속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부(-), 자본잠식 상태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매출 30억원 미만 및 종업원 10인 미만인 기업, 업력 5년 이하, 부적합 업종*
- * 개인서비스, 농업·육가공, 인력공급, 슈퍼마켓, 의류소매, 음식점, 건설기계 임대 등
- ▶ 직접보증잔액 5억 미만,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증액보증 취급기업
- ▶ 부실사유 발생기업 등

지원내용

구분	V(I) 프로그램	V(II) 프로그램
지원방식	신보 단독지원	채권은행과 공동지원
지원기간	3년+1년(연장가능)	좌동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보증(최고 50억원) ▶ 컨설팅(외부 경영진단) ▶ 보증료 차감 ▶ 만기연장 보장 ▶ 보험료 할인(1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 지원 ▶ 협약은행여신금리인하 - 최대 2% 금리인하 ▶ 만기연장
협약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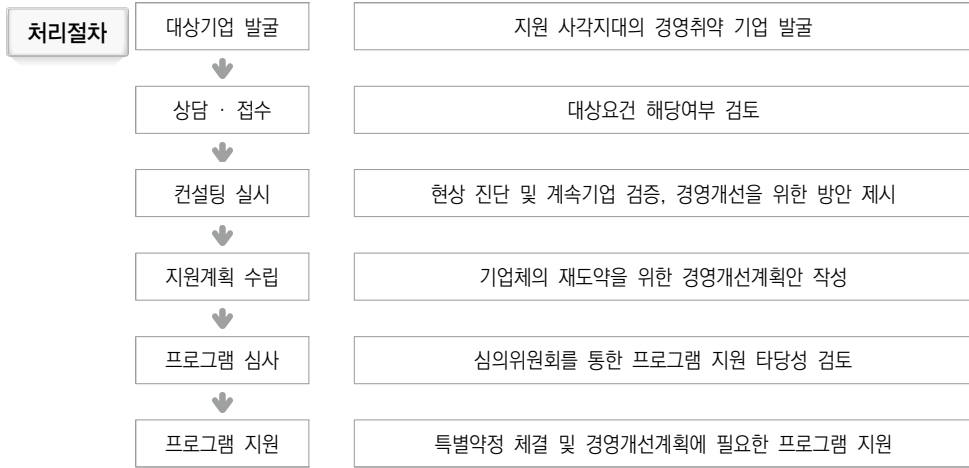
신청·접수 ● 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부실(심화)기업 등 대상 제외, 컨설팅을 통한 만성적 위기기업 선별, 심사 시 재도약검토표 및 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有) 운용

제출서류 ● 재무제표 등 보증신청 관련 서류, 경영개선계획서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지원규모 ● 연 100개 업체 이상 지원 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심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밸류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심사 이전 경영상태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 종류에 따라 1~2개월의 수행기간이 필요하며, 컨설팅 완료 이후 프로그램 심사에 들어가므로 접수 이후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

매출채권보험

국가가 보장하는 외상거래 안전망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영함
 -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8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PLUS+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법인인감증명서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받을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 * '20년 지원현황 : 20조 2천억원 전망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번호 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A. 아래의 네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보험금 지급청구시 아래의 서류를 신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관련 서류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인수증,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제내역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 받을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2-9 잡매칭(Job Matching)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지원내용

- 잡클라우드
 - 신보 채용포털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형 무료 상시 구인·구직활동 지원
- 온라인 채용박람회
 - 채용전문포털사 연계를 통해 신보 추천기업 전용채용관을 개설하여 우수 중소기업과 우수 인재 일자리 매칭 지원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 기업의 채용수용에 맞게 인재를 선별, 추천

신청·접수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 - 잡클라우드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절차

- (잡클라우드)
 - 회원가입
 - 채용공고 등록(기업)
 - 이력서 지원(구직자)
 - 채용절차 진행
- (온라인 채용박람회)
 - 기업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참여기업 선정
 - 박람회 운영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모집공고
 - 신청·접수(기업→신보)
 - 인재 추천(유관기관→기업)
 - 채용절차 진행

문의처

- 기업건설정부 컨설팅지원팀 (☎ 053-430-4688)
-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 - 잡클라우드 공지사항 참조

2-10

컨설팅

기업 경영애로 해결 지원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경영진단과 심층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신보의 보증·투자·보험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연간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지원 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정보화(IT) 분야에 대한 컨설팅
- 특화컨설팅
 - 기업공개(IPO), M&A, 해외진출, 기술개발·사업화, 가업승계, 지식재산(IP)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 데이터컨설팅
 - 신용관리컨설팅(CRC컨설팅), 거래처위험관리컨설팅(CRM컨설팅), BIR컨설팅 등
 - * CRC(Credit Risk Control)컨설팅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CRM(Customer Risk Management)컨설팅 : 기업의 거래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BIR(Business Insight Report)컨설팅 : 보증심사 시 활용한 기업 분석정보를 보고서로 재구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능력을 배양
- One-Point 경영클리닉
 - 경영활동 중에 겪는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컨설팅플랫폼에 질의하면 전문 위원이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 경영자문 서비스
- 지원한도

구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특화컨설팅	60 ~ 100%	최대 10백만원
데이터컨설팅	100%	최대 1백만원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신청·접수

- (경영·특화컨설팅) 컨설팅플랫폼(www.kodit.co.kr/consult)로그인 후 신청·접수
- (데이터컨설팅)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다운받은 컨설팅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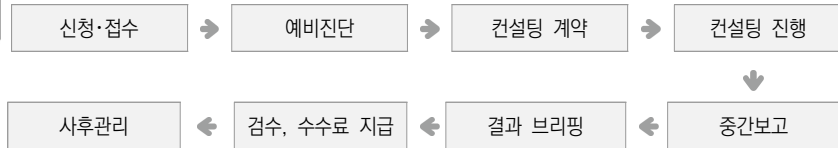
- 컨설팅 분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

* 신청순서, 신청사유, 애로사항,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순서 결정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8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20년 지원현황(11월말) : 경영컨설팅 170건, 특화컨설팅 125건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053-430-4693~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 컨설팅플랫폼이란?

컨설팅, 기업연수, 경영참고자료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비금융종합지원 온라인 포털사이트

2-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발굴·육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의 연계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금융 지원
 - 보증료율 우대 (0.1%p 차감, 부분보증비율 85%)
 - 매출채권보험 우대 (보험료 15%할인, 보험인수비율 85%)
 - 금융지원 협약보증 운용
 - * 중소기업은행: 선정 평가 수수료 지원 등
 - * 우리은행: 보증료 0.2%p 지원
-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 (80%비용지원, 4백만원 한도)
 -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90%까지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메인비즈 홈페이지 (www.mainbiz.go.kr)
- 인증발급 소요기간: 3주 ~ 1개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자료 등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연간 경영혁신기업 3,900여건 선정
- * '20년 11월 말 기준 선정현황 : 3,823건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 : 1666-5007 (www.mainbiz.go.kr)

용어설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 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제3부 기술보증기금

3-1 2021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10	3-15 기술평가	149
3-2 기술보증	111	3-16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제도	151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14	3-17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153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17	3-18 지식재산공제사업(구 특허공제사업)	155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120	3-19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57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123	3-20 기술신탁관리	159
3-7 혁신성장 산업 지원 제도	126	3-21 기술임치	161
3-8 비대면·디지털 우대보증	129	3-22 TTRS(중거지킴이)	163
3-9 문화산업완성보증	132	3-23 보증연계투자	165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35	3-24 투자연계보증	166
3-11 기후기술보증	138	3-25 엔젤투자연계보증	168
3-12 R&D 보증	141	3-26 VC투자매칭특별보증	170
3-13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44	3-27 벤처확인평가	172
3-14 지식재산(IP) 평가보증	146	3-28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174

3-1 2021년 보증지원계획(총괄)

기술보증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21년도 총보증 규모는 26조원으로, 신규보증 4.7조원을 포함하여 총 24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보증잔액	224,000	255,141	260,000	+36,000
기술보증	221,000	252,476	258,000	+37,000
유동화회사보증	3,000	2,665	2,000	△1,000
보증지원	210,000	237,202	240,000	+30,000
기술보증	209,000	236,138	239,000	+30,000
신규지원	40,000	72,268	47,000	+7,000
유동화회사보증	1,000	1,064	1,000	-

● 중점지원분야(혁신성장·스마트제조서비스·수출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혁신성장산업	45,000	76,337	50,000	+5,000
스마트제조·서비스	3,750	6,174	4,000	+250
4차산업혁명프로그램	8,000	15,929	10,000	+2,000
수출중소기업	31,500	34,775	32,000	+500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2 기술보증

기술사업평가를 통한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대출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기업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기업 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용보증: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 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 신청·접수**
- '21.1.1 ~ 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영업점에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 금액을 지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 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2021년 기술보증 23.9조원공급 예정(유동화회사보증 0.1조원 별도)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기술사업성평가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도모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부터 예측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주요 내용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하고, 창업 즉시 창업자금 지원, 보증지원 후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 및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전액보증) • 보증료 0.7% 감면 • 1억원 이하 기술 평가료 면제 등

신청·접수

- '21.1.1 ~ 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영업점에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 금액을 지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입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하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미래성장기반인 창업기업을 우대지원

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창업후 7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창업후 5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이고,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 •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철티러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우대지원	• 보증비율 우대(95%~100%) • 보증료 0.3% 고정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장년 기술 경력자 창업에 대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지원	• 보증비율 우대 95% • 보증료 최대 0.7%p 감면

신청·접수

- '21.1.1 ~ 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영업점에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 금액을 지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 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맞춤형창업성장의 4대 창업육성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맞춤형창업성장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식문화창업	●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 대표자가 만40~59세 이하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 (첨단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굿잡보증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운영

구 분	분 야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쉐어링잡 (Sharing-Job)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받은 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과거 1년전 대비 고용감소시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고용창출 (Track1)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웨어링잡 지원대상으로 추가

신청·접수

- '21.1.1 ~ 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업력, 업종, 고용실적 기술성, 미래성장가능성 등 일자리창출 관련 항목 포함

제출서류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 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처리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21년 국감보증 지원규모 : 1.1조원

* '20년 지원계획 : 1.05조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일자리창출 한도가산의 경우 신규고용인력 1인당 지원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A. 운전자금 한도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 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구분	1인당 지원금액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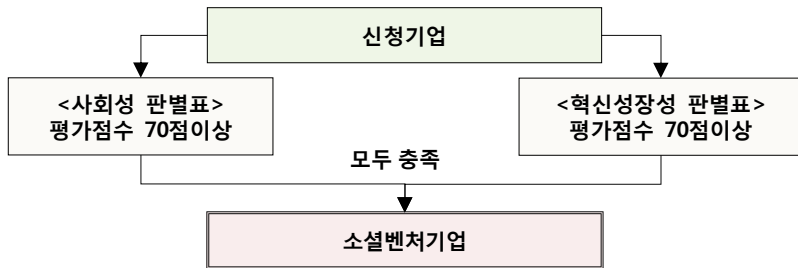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전,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술혁신 기업 및 공인(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구분	우 대 사 항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사정특례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이하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	▶ 0.5%p 감면

신청·접수

- '21.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사회성, 및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포함한 혁신성장성 위주

제출서류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21년 소셜벤처임팩트보증 지원규모 : 1,350억원
- * '20년 지원계획 : 1,15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Q. 소셜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요?**

- A.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벤처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별됩니다.

3-7 혁신성장 산업 지원 제도

미래 신성장산업 중점 육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초지능성(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및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제조혁신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팩토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AI, 바이오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과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4.0스마트팩토리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 기금의 자체구축 스마트 공장 판별표상 요건 충족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부가 공급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및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영위기업
 -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감면, 사정특례(2억원)
 -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감면
- 4.0 스마트팩토리 보증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 * 보증비율: 90% ~ 100%
 - * 보증료: 감면(0.5~0.3%p) 및 고정보증료(0.7% 또는 0.5%)
 - ※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 차등화

신청·접수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 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1.4조원(정부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혁신성장산업의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의 육성분야 및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3-8

비대면·디지털 우대보증

코로나19 대응 비대면·디지털분야 관련 기업 집중 육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과 비대면을 위한 기반기술인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보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정부 집중육성 분야이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 기업 및 디지털 기업
 - (비대면기업)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기업) 쉐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 및 IC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Data(데이터), Network(5G)네트워크, AI(인공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 지원하되, 비대면 기업과 디지털 우수기술 기업은 “핵심기업”으로 분류하여 추가 우대지원
 -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감면, 사정특례 (2억원), 전결권 완화
 -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감면

신청·접수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6,000억원(정부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비대면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A. 중기부가 선정한 “①웨어러블 ②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③온라인 교육시스템 ④온라인 교육콘텐츠 ⑤원격근무, 화상시스템 ⑥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⑦스마트 금융 ⑧온라인 소비재(식품 등) 제조 판매 ⑨생활중개 플랫폼 ⑩스마트 상점 ⑪전자상거래 ⑫게임 ⑬콘텐츠 ⑭소통 ⑮여행·숙박·장거리이동 ⑯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⑰드론·무인기, 자율차 ⑱빅데이터, AI ⑲가상현실(AR/VR) ⑳클라우드 ㉑로봇 ㉒사물 인터넷(IoT) ㉓지능형/차세대 반도체 ㉔5G ㉕정보보안” 분야를 말합니다.

3-9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대상기업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크라우드펀딩 신청금액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 이상(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분야,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미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한류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대출취급 금융기관 :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콘텐츠금융센터(서울, 경기, 부산)를 통한 현장 접수
- * 문화산업완성보증은 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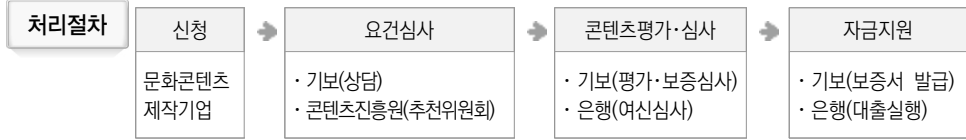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 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업계획서 ▷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등),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등 콘텐츠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판매계약서(해당되는 경우) 등 콘텐츠 관련 서류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지원규모 ● 1,350억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3)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2)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11)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061-900-6268)

Q&A



Q. 완성보증제도의 시행근거와 보증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A. 완성보증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선판매계약서 : 제작사와 구매자(배급사, 퍼블리셔 등)간 제작완성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로서, 문화콘텐츠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달리 운용

(ex) 배급계약서, 퍼블리싱계약서, 티켓판매대행계약서, 프로그램외주제작계약서 등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프로젝트성 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기업 또는 체결 예상 기업
- 대상자금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 용역공급계약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고 30억원 이내(유통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 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총제작비 지원비율을 적용한 운전자금 보증지원가능금액
- ③ 총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용역공급계약금액 중 선수금등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공급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 대출취급 금융기관 :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 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등),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등 콘텐츠 관련 서류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선판매계약서(해당되는 경우) 등 콘텐츠 관련 서류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 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제3자와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획 단계에서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용역공급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산업
 (ex)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등에 의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영위 산업
 (ex)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공연기획업 등

3-11 기후기술보증

기후기술기업 중점지원

파리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 발효('16.11)에 따라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 관련 국가전략에 부합하고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기여할 기후기술 중소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신청기술이 기후기술이어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구 분	주 요 내 용
기후기술R&D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기후기술 R&D 성공 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과제로서 '기업자체 R&D과제 판단표'를 만족하는 과제 또는 최근 3년 이내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개발원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술 기후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대상자금 기후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 신청·접수**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 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기후기술은 무엇인가요?

A. 신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발생이나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과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회수·처리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반 기술과 기법으로서, 기후변화 감시, 관측, 리스크 평가, 피해 저감 기술 등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말합니다.

3-12 R&D 보증

중소기업 R&D 투자 활성화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분	주요 내용
개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 자금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이 인정된 개발완료 과제

구분	주요 내용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R&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R&D 개발단계 자금 및 사업화단계 자금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0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3-13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 보증지원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광주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신청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다음 운전자금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제품양산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제품양산 및 판매자금)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평가료 지원은행 확대(광주은행 추가)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주주명부, 임차계약서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고객의 사전동의 후 기금이 직접 수집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처리절차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처리절차



지원규모

-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 (업체당 최대 1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은 등록된 특허권이 보증 대상이며, 여타 지식재산 (출원중 특허, S/W,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 재산평가보증으로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3-14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IP)의 사업화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지식재산(IP)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보증비용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 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용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주주명부, 임차계약서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고객의 사전동의 후 기금이 직접 수집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처리절차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처리절차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2,50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3-15 기술평가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종류	주요 내용
기술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고, 평가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

제출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등)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처리절차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	
예비평가	<p>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	
본 평가	<p>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p> <p><현장(면담)실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p><보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	
기술자문/평가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	
평과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16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제도

사업재기 자금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기보 단독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실패기업: 기보가 대위변제를 한 후, 기보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 의무가 남아 있는 기업
- 실패기업 및 재도전 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기업
 - * 실패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경우
- ▶ 재기지원보증 신청기업이 기금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무 보유한 경우(다중채무자)
- ▶ 기타 상세내용은 영업점 담당자 문의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실패기업 연대보증인, 회생절차·신용회복지원절차 정상변제중 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 지원
-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
- 회생지원보증: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 보증한도: 최대 30억원(회생지원보증 포함)
 - ▶ 신규 운전자금보증은 10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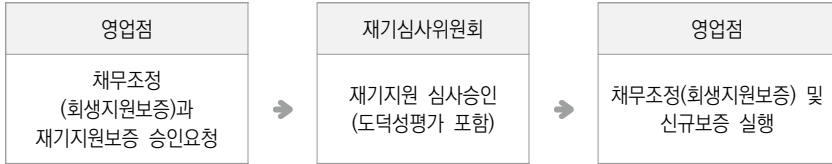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제출서류

- 보증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등
(세부사항은 신청 및 접수기관 문의)

처리절차



지원규모

- 기보의 기본재산을 활용한 운용배수 방식으로 운용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Q.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재창업재기지원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함께 중진공의 사업 자금 대출에 대하여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하고,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보 단독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대상 및 요건,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Q. 회생절차·신용회복지원절차 정상변제중인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가 있고, 이를 포함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절차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실패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변제 중이어야 하는 등 세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17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우수 기술력 보유 성실실패자 재창업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자금보증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자금집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의 재창업중소기업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서류

- 보증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등 (세부사항은 신청 및 접수기관 문의)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처리절차



지원규모

- 자금집행기관인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900억원내에서 지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Q&A



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금 지원기관(기보,신보,중진공) 중에서 선택하신 1개 기관이 수행하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 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평가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3-18 지식재산공제사업(구 특허공제사업)

지식재산(IP) 비용 부담 완화

기업의 납부 부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동 재원으로 국내·국제 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입) 약관 위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공제대출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제외
- ▶ (대출) 부금납부 월수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 ▶ (대출) 규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 ▶ (대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약관을 참고 하실 것

지원내용

-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내·국제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 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접수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www.ip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국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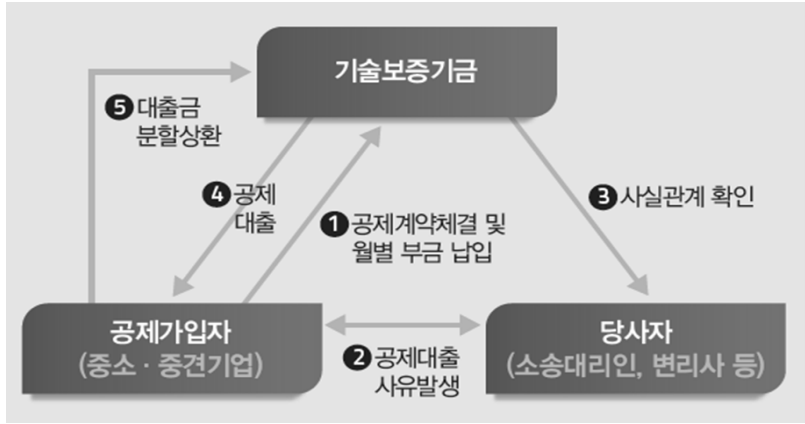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제대출 사유(지식재산 국제출원, 소송 등) 발생여부 및 소요비용의 적정성 등

제출서류

- 지식재산공제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등(홈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공제부금 납부액의 최대 5배(최대 75억원)
 - * 부금월액은 30만원~1,000만원이며, 기업당 최대 3건까지 복수 가입 가능
 - * 6회 이상 납부 후 조건 충족시 대출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운영센터: 02-3484-8900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www.ipmas.or.kr

Q&A



Q. 지식재산공제사업인데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제외업종은 가입 불가)

Q. 부금 이자율은 고정금리 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2020년 12월 현재 연 단리 1.75%)

용어설명

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3-19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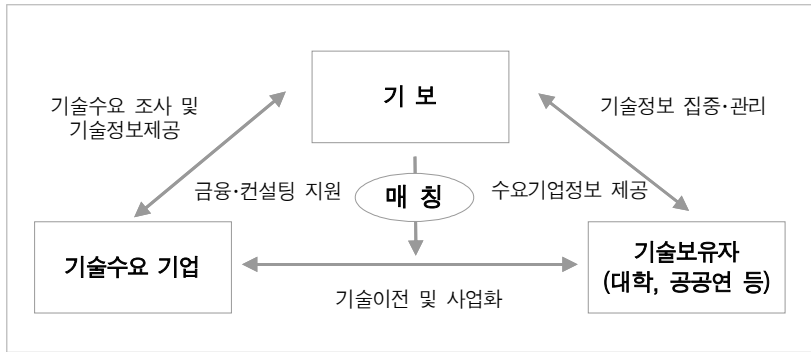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관련 산업 재산권 등의 정보제공, 기술보유자-기술수요자 간 거러 알선, 협상 및 기술사업화 필요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

지원대상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융합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연중상시 접수)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포털인 테크브릿지(URL: tb.kibo.or.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기술이전 신청서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위한 서류(필요시 별도 안내)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



- **상담 및 신청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전국 모든 영업점(기술융합센터 포함) 또는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혁신센터)**
 -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혁신센터, 공공연구기관)**
 -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를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혁신센터, 공공연구기관)**
 -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 (기보 기술혁신센터)**
 - *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용어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지식재산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지식재산 인수 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3-20 기술신탁관리

공정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중견·대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신탁받아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특허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위탁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 ▶ 위탁자가 파산, 회생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었거나 위 절차들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 위탁자가 신탁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 기타 위탁자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지원내용 ● 연차등록료 납부기일 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지원(최대 연간 30만원)

●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 특허전략컨설팅 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최대 지원한도 450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부 R&D과제 신청시 평가가점 부여

*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 신탁기술이전에 대한 지식재산 인수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우대

* 기존 보증비율 95% → 100%로 우대 변경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에 신청 및 상담 후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체크리스트) KPAS(기보 특허평가시스템) 등급 등 필수요건 확인
- (선별평가)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

제출서류

- 신탁신청서류, 정보이용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문의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Q&A



Q. 기술신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신탁기간은 계약의 효력발생일(특허의 경우 특허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으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범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 특허자동평가시스템) : 빅데이터(국내 전체 특허 DB) 처리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허기술(IP) 등급을 평가하는 모형이며, 현재 무료로 운영 중

3-21 기술임치

비공개 기술 노하우를 위한 보호수단

핵심 영업비밀 등을 특허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상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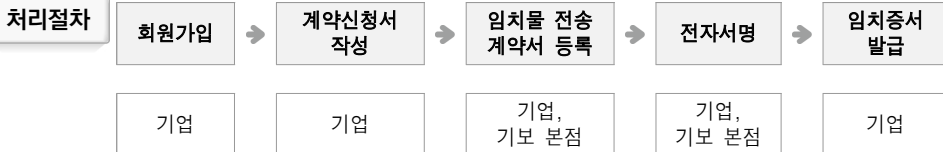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 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제출서류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ts.kibo.or.kr)



Q. 특허와 비교했을 때 임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술공개에 대가로 받게 되는 특허권과 같이 청구항이라는 일정범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은 없지만, 임치제도는 기술정보에 대해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Q. 기술임치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임치된 기술은 '상생협력법 제24조의3제2항'(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중략>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22 TTRS(증거지킴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 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지원대상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처리절차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ts.kibo.or.kr)



Q. TTRS는 어떤 때 이용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약 1년간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제안 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허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으로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 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3-23 보증연계투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기보와 보증 거래 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법상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기업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R&D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 제한 적용 배제

지원대상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전환사채 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업체당 최대 30억원(보증금액 2배 이내, 보증금액 포함 1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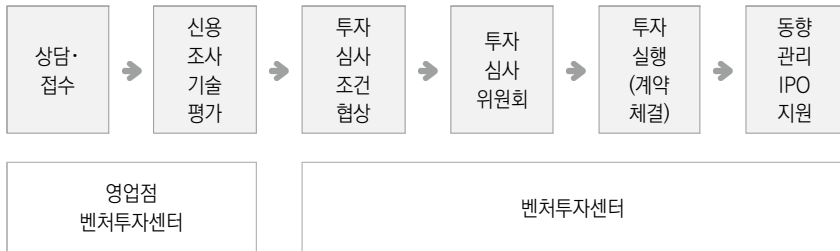
신청·접수

- '21.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400억원 ('20년 지원규모 26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3-24

투자연계보증

민간투자자 보증을 연계

민간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보증 상품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개인투자자 제외)이 투자한 기술혁신선도형기업

구분	종류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투자기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지원대상 투자

- *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분은 투자로 불인정

● 투자연계보증 지원 구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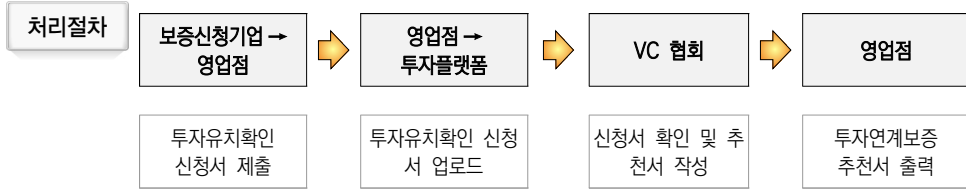
- 보증비율: 기술창업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료: 0.3%p 감면

신청·접수

-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또는 사이버영업점으로 신청
- 신청기간: '21.1.1~12.31 상시 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규모 ● 연간 2,00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3-25

엔젤투자연계보증

엔젤투자자 보증을 연계지원

엔젤투자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투자 후 3년 이내) 엔젤투자기업의 자본금 변동 등기일로부터 보증신청일자까지의 기간
 - (3천만원 이상 투자)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미만인 기업**
 - * 보통주, 우선주에 한하며, 구주인수 및 현물투자는 제외
 - ** 법인설립일자로부터 보증신청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 보증신청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등 기금 내규에 따라 제한되는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보증비율: 100%
- 보증료: 0.3%p 감면

신청·접수

- 신청방법: 엔젤투자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기보에 추천 이후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또는 사이버영업점으로 신청
- 신청기간: '21.1.1~12.31 상시 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규모 ● 연간 20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Q.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아닌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액도 인정되나요?

A. 기보엔젤파트너스의 투자금액만 인정됩니다.

Q. 투자실적 확인 기준시점은 투자계약일자인가요?

A. 투자계약 후 투자금 입금 및 자본금변동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기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봅니다.

용어설명 **기보엔젤파트너스**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엔젤투자전문가 그룹

3-26

VC투자매칭특별보증

VC 투자시 유사규모의 보증지원

민간 VC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유사 규모의 보증을 레버리지방식으로 매칭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가속화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기보VC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투자요건) 보증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만 인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에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 신청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가장납입 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등 기금 내규에 따라 제한되는 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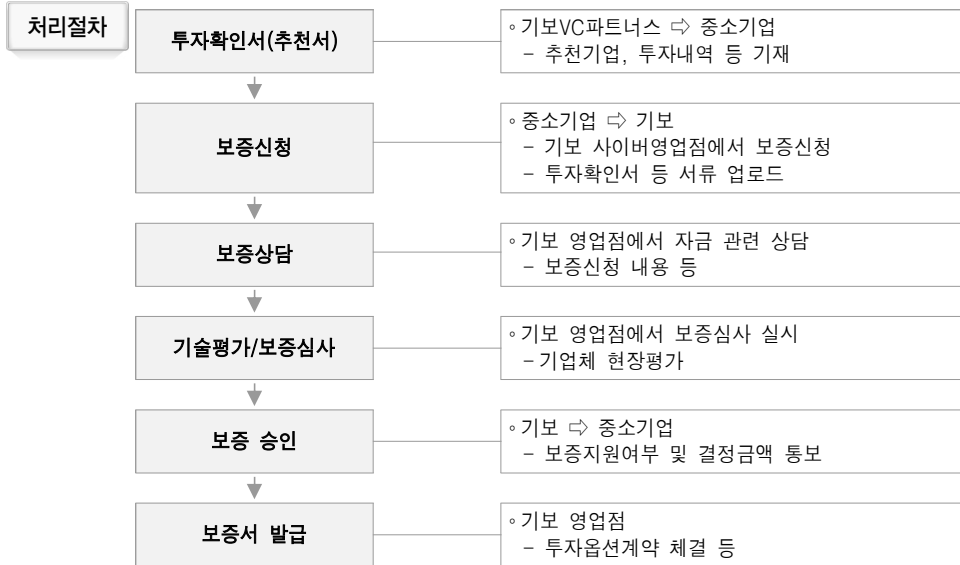
- 보증한도: 최대 50억원 (기보증금액 포함)
- 특례지원: 운전자금보증금액 20억원까지는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1/2까지 지원 가능
-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 보증료: 1%(고정보증료)
- 성과공유: 투자전환조건 보증으로 운용
 - (옵션내용) 보증금액의 1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신청·접수

- 신청방법: 기보 사이버영업점으로 신청
- 신청기간: '21.1.1~12.31 상시 접수


제출서류

- 투자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규모 ● 연간 2,00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Q. 기보VC파트너스로부터 투자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보VC파트너스인 VC로부터 투자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최근 6개월 이내 20억원 투자요건이 있는데, 기보VC파트너스 투자실적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벤처투자기관의 투자실적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전체 투자유치건 중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용어설명 **기보VC파트너스** : 벤처투자 활성화로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우수 벤처캐피탈(VC) 중 기보에서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투자” 중 신규발행 주식(보통주, 우선주), CB, BW를 말함 (단, 현물투자 제외)

3-27

벤처확인평가

벤처특별법에 따른 확인평가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서, 벤처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벤처확인 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요건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평가 우수 ▶ 보증·대출(가능)금액이 8천만원 이상 (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가능)금액이 총자산 대비 5%이상 (창업 후 1년미만인 기업 및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연구개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우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순번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1	일반 유희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희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평가료 등 ● 벤처 신규, 연장 평가료 및 수수료 동일

구 분	벤처확인 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10만원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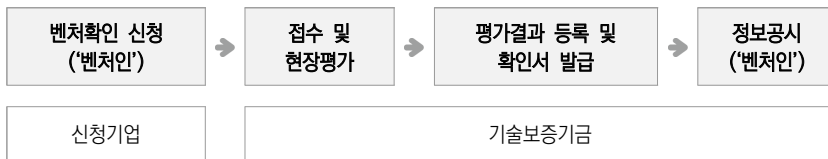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 후 6개월이내 벤처신청시 확인 평가료 면제

신청·접수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연중 상시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기업유형 신청시)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및 연구개발비 산정표 등

* 신청양식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벤처인(www.venturein.or.kr), 벤처인 고객센터(1577-0270)



Q.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3-28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평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 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 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제한기업

-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노비즈 신청 가능)
- ▶ 이노비즈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

평가료 등

- 신규 평가료 70만원, 연장 평가료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이노비즈 인증평가와 벤처 확인평가 동시 신청시, 이노비즈 신규 평가료 20만원, 이노비즈 연장 평가료 10만원 감면
- Inno-Biz 인증평가와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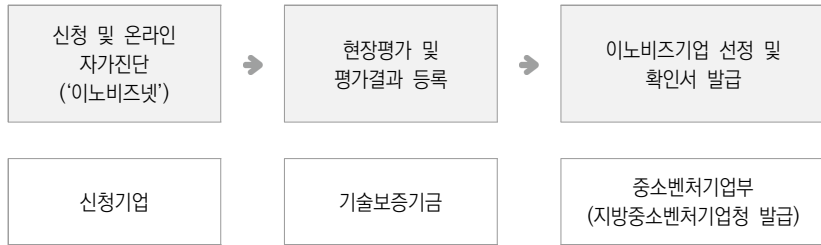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연중 상시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고객센터(031-628-9686)



Q. 이노비즈 실사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A.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 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 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제4부 기업은행

4-1 2020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178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179
4-3 IP사업화자금대출	180
4-4 IBK강소기업대출	181
4-5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182
4-6 IBK문화콘텐츠대출	183
4-7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185
4-8 IBK시설투자대출	186
4-9 IBK도지분양협약대출	187

4-1 2020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요상품

구분	주요 대출상품	상 품 개 요	비 고
우 수 기 술	스마트동산담보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담보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 	
	IP사업화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수 출 입 지 원	IBK강소기업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문 화 콘 텐 츠	IBK문화콘텐츠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고부가서비스 산업지원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시 설 투 자	IBK시설투자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IBK토지분양협약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자금지원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의 담보자산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본인 소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 담보감정평가액의 100% 이내
- (시설자금) 소요시설자금의 최대 90% 이내

대출기간

- 상환방식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담보운용

- (대상) IoT 디바이스로 관리 가능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 (주담보) 유형자산 최대 60%, 재고자산 최대 55% 이내 운용

우대사항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4-3 IP사업화자금대출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등급'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 IBK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B+ 등급 이상 기업. 단, IBK테크기업*은 IBK기업은행 신용평가 등급 BB 등급 이상
- * IBK기업은행 평가 전문인력이 기술력 심층심사를 통해 선정
- ▶ 조경보기업(예비주요, 주요, 경보)이 아닌 기업
-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 최근 2년간 연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기술등급) IBK기업은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TCB평가서 상 기술등급 T4 이상 판정 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당행 신용평가 등급' 및 'TCB평가서상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 운용
- (시설자금)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5년
- * 단,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서상 내용연수 이내에서 가능

담보운용

-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40%를 주담보로 인정

우대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500만원)지원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4-4 IBK강소기업대출

유관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 문	대 상 기 업
수 출	1.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2.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 공인 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KOTRA)
기 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지원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4-5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수출입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4-6 IBK문화콘텐츠대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1. IBK문화콘텐츠 특례보증부대출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서(90% 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규모 ● 1,600억원(보증지원 한도 기준)

판매기간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 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지원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용자추천 및 보증기금으로부터 문화산업완성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기간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 95% 부분신용보증서
- ▶ 보증료 : 0.2%p 우대

*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 기준 준용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72

4-7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 공급(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주요내용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을 보증하는 제도

☞ 프로젝트계약 후 최종 결제대금(보통 계약대금의 50~60%)을 계약완수 시점에 지급받는 시장관행(집중지불방식 heavy tail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 간의 금융 갭(gap) 해소

지원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대출기간

- 1년 (기간연장 시 최대 8년 이내)

담보조건

- 담보의 필요 : 기술보증기금 85% 이상 신용보증서 담보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보증서상 우선상환 보증특약 문구 부여되는 경우 프로젝트 완성 후 수령하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이 자동 상환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72

4-8 IBK시설투자대출

시설 취득시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사업장 입주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용자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 (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4-9

IBK토지분양협약대출

토지분양 관련 소요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용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진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상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유의사항

-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제5부 한국수출입은행

5-1 2021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190
5-2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191
5-3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192
5-4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193
5-5 기술금융 프로그램	194
5-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196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197
5-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199
5-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201
5-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02
5-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04
5-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06
5-13 해외사업금융	208
5-14 수입금융(수입자금)	211
5-15 이행성보증	213
5-16 무역금융(수출관련)	215
5-17 해외온렌딩	217

5-1 2021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전문적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기술금융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 야		상 품 명
대 출	수 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 입	수입자금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 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 출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 입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5-2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뉴딜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단,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대상

- 뉴딜 품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 지정 품목

지원내용

- 뉴딜 품목에 대한 맞춤형 우대 지원
 -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Δ 1.0%p)
 -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에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K-뉴딜 SME 크레딧라인」설정
 - 지원상품 : 모든 대출·보증상품
 - 차주별로 금융상품을 일괄 취급하기 위한 연간 통합 한도를 설정하여 신속 지원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3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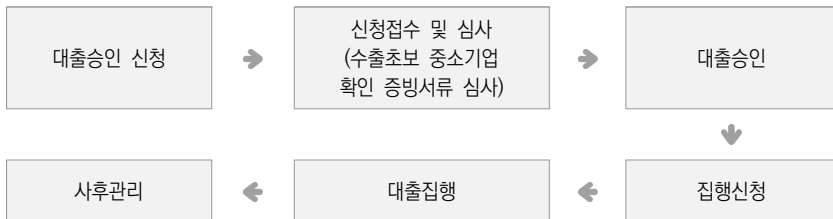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의 비금융서비스 제공

-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4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육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을 통해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실행절차

- 기업신청 → 육성기업 선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기업신청

- * 신청자격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고,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또는 정부의 월드클래스 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 서비스산업·에너지신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신부점 및 출장소
- * 선정기간 : 선정시마다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

- 육성기업 선정

- * 선정기준 : 히든챔피언 적합도(기술력, 성장잠재력, CEO역량) + 재무안정성
- * 선정절차 : 1차심사(서류심사) → 2차심사(기술평가, 방문심사)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 금융서비스 :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맞춤형 금융 제공
- * 경영정보서비스 : 성장전략코칭, 환위험컨설팅, 국제금융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경영정보서비스 제공
- * 매년 육성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취소 등 지속 사후관리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 02-3779-6435 / 02-6255-5291

5-5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신용 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대체하거나, 신용등급평가지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 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① 기술신용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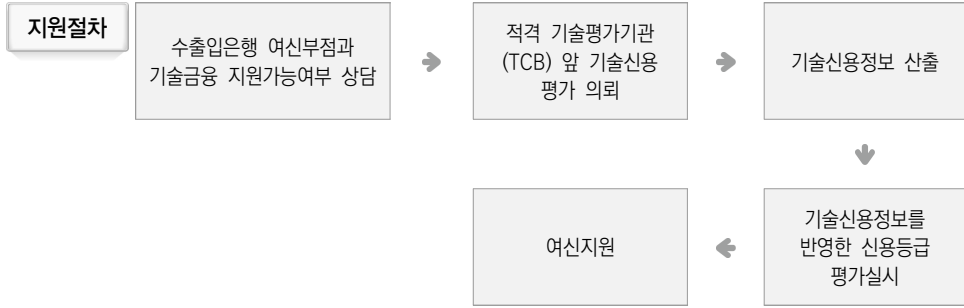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 정책조정을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지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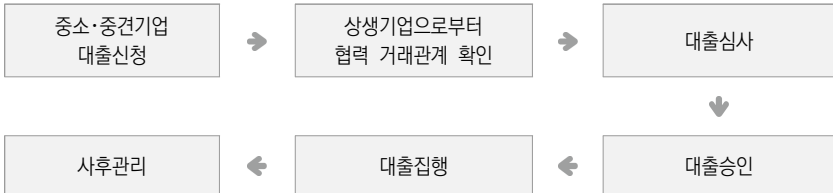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상생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상생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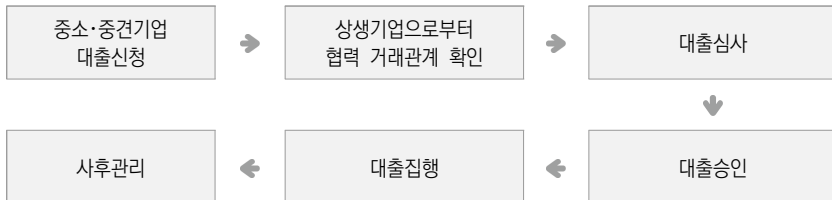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기업 앞 수출 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이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자금 유통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상생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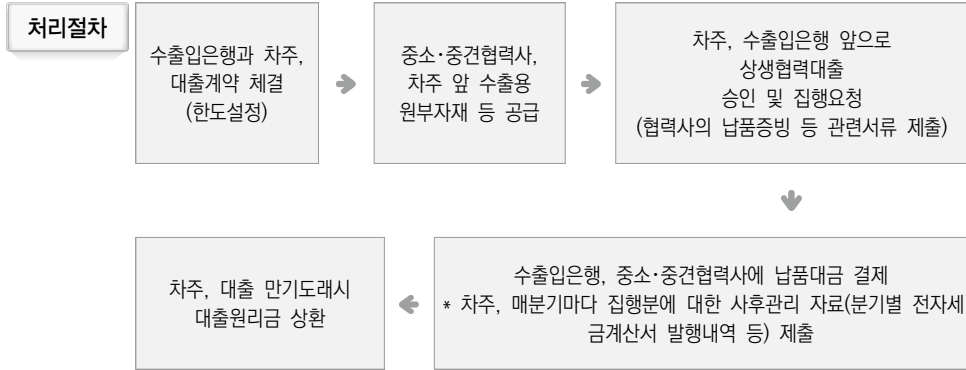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기업에 대한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대출조건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전월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중견협력사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 대출금액 :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 *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단, 차주사의 한도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금융1부 : 02-6255-5405 / 02-6255-5407
기업금융2부 : 02-6255-5168 / 02-6255-5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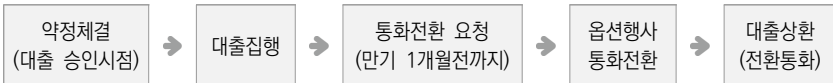
5-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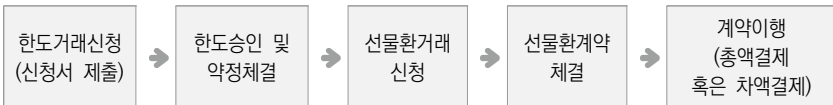
● 통화전환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 선물환거래

- 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수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 함으로써 고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실행절차



비금융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고객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정보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 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 * 관련 정보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keri.koreaexim.go.kr) 게시

문의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히든챔피언팀(02-6255-6435)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02-3779-6667)

5-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단, 인수 이후에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단,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함)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 제작자금 용도 등
-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 대출한도 : 3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지분인수인 경우에는 실소요자금의 50% 이내(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
- 대출기간
 -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신청 ·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 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소재산업, 유망소비재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350억원(유예중소기업 50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500억원(유예중소기업 800억원)까지 증액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 단, 기술신용 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중복수혜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 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13 해외사업금융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투자자금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등

지원내용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인 국내 기업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금액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기업은 90%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이내)
-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단, 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거치기간 5년,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 가능) 이내

신청 ·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해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14 수입금융(수입자금)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자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8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
-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10년 이내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거치기간 설정불가)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5

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종류

- 입찰보증 :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 앞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이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기타이행성보증 :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

보증금액
(기간)

-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 범위 내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6 무역금융(수출관련)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 수출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대상거래
 - 수출환어음매입 :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거래
 - 수출팩토링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 송금방식(O/A) 외상수출거래
 - 포페이팅 : 일정 등급(당행 기준) 이상 국가 소재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인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 대상금액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5천만불
- 대상결제기간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환어음의 만기조건이 30일이상 2년미만
 - 수출팩토링 : 거래방식, 수입자 신용도에 따라 수출채권의 결제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내
 - 포페이팅 : 어음 또는 수출채권의 만기조건이 30일 이상 2년 미만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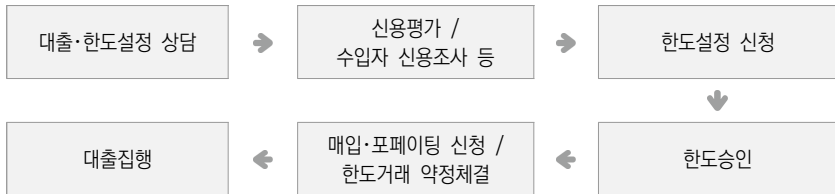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실),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수출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한도설정/포페이팅 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수출실적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명판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464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7

해외온렌딩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수출형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대출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만 가능

- '20.11월 현재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 :
 -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신한베트남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하나중국은행, 우리베트남은행, 우리중국은행, 우리소다라은행, 하나브라질은행, 하나멕시코은행

지원내용

- 대상거래
 -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금액
 - 소요자금 또는 수입금액의 90% 이내(단, 수출촉진자금의 경우 대상기업별 대출한도 기준에 의해 별도산정)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 우대프로그램
 - ①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②지방에 소재하면서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앞 추가한도 배정 또는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수출촉진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시설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 수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그 외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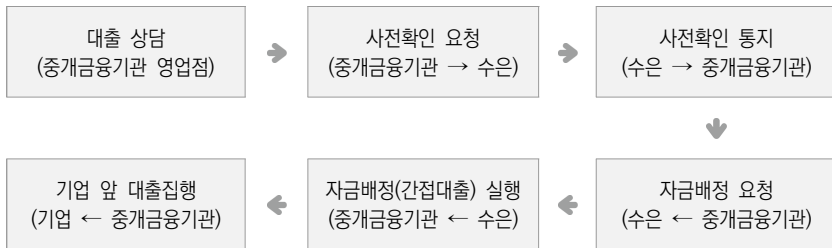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해외 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 문의

제출서류

- 중개금융기관의 제출 필요 서류와는 별개로 해외온렌딩 대상기업 적격검토 서류(수출입 실적 확인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6255-5214

[참 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 점>

대표전화 : 02)3779-6114, 02)784-1030

부 서 명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중견 금융1부	상생금융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사업, 수출초보기업 및 취약산업 지원 E-mail: smesupport@koreaexim.go.kr	(02)6255-5287	(02)3779-6725
중소중견 금융2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E-mail: smallbiz@koreaexim.go.kr	(02)3779-6304	(02)3779-6744
서비스 산업금융부	서비스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에 대한 금융지원 E-mail: newgrowth@koreaexim.go.kr	(02)6255-5270	(02)3779-6779
전대금융실	국외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방식 대출 및 전대은행 관련 외국환 업무 E-mail: iec@koreaexim.go.kr	(02)3779-6369	(02)3779-6746
무역금융실	무역어음재할인 및 외국환업무(수출환어음매입, 포페이팅, 팩토링), 해외온렌딩 E-mail: strade@koreaexim.go.kr	(02)3779-6480	(02)3779-6764



>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빌딩 / TEL:(02)3779-6114 / FAX:(02)784-1030

〈국내지점〉

지 점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인지 전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 인천본부빌딩 15층 E-mail: inchon@koreaexim.go.kr	032)235-6114	032)442-6110
	수지 원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031)259-6607	031)259-6609
중부권	대지 전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042)489-9715	042)489-9716
	청지 주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043)237-0475	043)237-0476
영남권	부지 산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E-mail: pusan@koreaexim.go.kr	051)817-5050	051)817-6060
	대지 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E-mail: daegu@koreaexim.go.kr	053)260-4100	053)754-1020
	창지 원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E-mail: changwon@koreaexim.go.kr	055)287-6830	055)287-6831
	울지 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워빌딩 4층 E-mail: ulsan@koreaexim.go.kr	052)274-5276	052)274-5278
호남권	광지 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빌딩 13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062)232-6944	062)232-6946
	전지 주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063)271-6134~ 8	063)271-6139
출장소	구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E-mail: gumi@koreaexim.go.kr	054)462-7103	054)462-7105
	여출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신사옥 3층 E-mail: yeosu@koreaexim.go.kr	061)643-7714	061)643-7716
	원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E-mail: wonju@koreaexim.go.kr	033)748-0536	033)748-0538



제6부 한국산업은행

6-1 온렌딩대출	222
-----------------	-----

6-1 온렌딩대출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상품별 지원요건	구 분	지 원 요 건
기본 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외화자금(USD)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리스자금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특별 온렌딩	신산업육성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영위 기업 등 *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확인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지역경제활성화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지방은행우대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며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인증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공급 기업(스마트공장추진단 등 인증, 「혁신성장 공동기준」 스마트공장 분야 관련 산업)
	창업·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설립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친환경기업지원	▷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출 구매용 자금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자동화 중 차세대 동력장치,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테마 관련 사업, 에너지효율화 설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구 분	지 원 요 건
재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7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중견기업 ▷ 최근 2년 이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A,B,C등급) * 단,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0~11등급 해당 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 승인 기업(승인일 7년 이내)
스마트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 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등의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300개) 관련 사업 영위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시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 등 기존 특별온렌딩 지원분야 영위 중소기업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및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산업 영위 중소기업 *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섬유, 가전 등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온렌딩 지원요건 내 6T 중 BT 관련 분야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E)건강진단 품목 관련 산업 영위 중소기업

- *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리스자금 온렌딩대출은 10개 여신전문금융회사(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규온캐피탈)를 통해서만 취급

대출기간	구 분	대출기간	거치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	3년 이내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	6개월 이내
	리스자금*	1년 이상 5년 이내	6개월 이내

신청·접수

-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영업점 문의
- '19.11월 현재 온렌딩 약정체결 중개금융기관
 -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씨티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뮤온캐피탈

지원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 → 기업금융정보 → 온렌딩대출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3 ~ 0580

Q&A



Q 온렌딩대출 신청은 산업은행에 가서 직접 해야할까요? 근처에 산업은행 영업점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A 평소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 등 중개금융기관 영업점으로 가셔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렌딩대출은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절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부 한국무역보험공사

7-1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226
7-2 수출신용보증(선직전)	228
7-3 수출신용보증(매입)	229
7-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230
7-5 단기수출보험	231
7-6 중소중견Plus+보험	234
7-7 환변동보험	235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237
7-9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239

7-1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지원대상

- 전 세계 8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만 건 이상의 국외 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유의사항

- 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 월의 27일까지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사이버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 가능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불가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 (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소요(공사부담)되는 바,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재무자료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 부과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공인인증서(법인: 법인용 공인인증서, 개인: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이용 시 제출서류 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 ▷ www.ksure.or.kr 접속
-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또는 cyber.ksure.or.kr)
- ▷ 회원가입 → 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송부 → [공사 승인]
-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신청 즉시 자동승인

로그인

- ▷ ID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절차 ●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청/조회 - 신용조사 신청' 메뉴 선택
- ▷ 공사 DB검색
-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2~3주 소요)
-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조회

- ▷ 사이버영업점 접속(or 신청자 E-mail로 발송)
-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청/조회 - 신청내역/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수수료 납부

- ▷ 가상계좌(신용조사 수수료 계좌)로 수수료 납부
-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수납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보증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보증절차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지원규모

- 3,935개사 앞 16,127억원 지원('20.10월말 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3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1년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출기업 수출통지 생략 및 연간 보증료 1회 선납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취급은행 ● 4개 은행(신한, 하나, 국민, 우리)('20.10월말 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금융기관이 수입자 구분 없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선적 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분야 ● 대출기간 180일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모든 수입자와의 외상 수출거래 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증료 인하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현황, 주주현황표, 고객정보이용조회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취급은행 ● 3개 은행(신한, 하나, 국민)('20.10월말 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5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 (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 • 중계무역 : 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 험 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6 중소중견Plus+보험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지원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1년간 최대 5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기업 100만불, 중견기업 30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필수가입)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신용위험]
	선택	수입국 위험 [비상위험],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필수가입)	중소 최대 1백만불 (중견 최대 3백만불) [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선택	최대 1백만불 [클레임 위험의 경우 최대 5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고위험인수제한국 및 이란 소재, 수입자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제외 [최대 50개사]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 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지원규모

- 25,031개사 280,713억원 지원('20.10월말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7

환변동보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 및 중견 수출입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업체도 지원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해지가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일반형 기준)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수출형 기준)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 하락시 보장 탁월하나, 환율 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이익금 납부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단, 통화당 최대 80원까지 보장)	이익금 납부 없음
범위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일정범위 내 환위험 노출
범위제한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보험금과 이익금을 일정범위 (±50원) 내로 제한

* 자세한 상품 설명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www.ksure.or.kr/fx/index.do)에서 확인가능

신청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헷지수요 조사표
- 최근 1년(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등 확인)
-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 (은행별 고유양식 제출가능)
- 약정서 및 주주현황표
-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처리절차



보험료

일반형	보험료율=기본요율 x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
옵션형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할인율 적용

**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배제(매일 일자별 홈페이지 고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무역협회, 지자체 등에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중(공사 홈페이지 내에서 세부요건, 지원 내역·절차 확인 가능)

청약및결제

-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범위 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헷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결제환율)
-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SWAP POINT
 -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수입거래 지원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수입 품목

(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주요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및 시설재 등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

(글로벌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비재, 사치성 물품 제외)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모율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
- 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 손실액의 90%

지원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 제조업체,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글로벌공급망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D등급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제조기업

제1편 유관기관(금융기관)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제출서류 ●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신청서류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6개사 11,091억원 지원('20.10월말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9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해외 미수채권 회수

수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 공사는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채권 회수컨설팅(무료) 및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출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채권자의 공사 신용등급이 R등급*, 공사가 청구한 수수료 등 미납 시, 수입관련 선수금, 사인 간 금전거래 채권
-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책정한 불량등급

지원내용

-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 되는 수출기업 과 공사의 채권회수 노하우를 공유하여 자체회수 지원 등 회수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 해외채권 회수대행
 -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에 대해 공사가 보유한 추심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채권회수 대행
 - * 40개국 104개기관 해외추심기관과 협약 체결

유의사항

-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하며 성공수수료 수준은 채무자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추심기관 수수료 약 25% 및 공사수수료 4% 내외 수준(부가세 별도)
- 추심대행 약관 등에 따라 회수대행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클레임 제기 건, 채무자 파산·회생절차 신청이 완료된 건 등
- 해외채권 회수율은 1년만 지나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감안 조기 회수상담 권장

지년해와 달라진 내용

-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기능 추가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로 신청 접수 시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상시 접수 가능)

상담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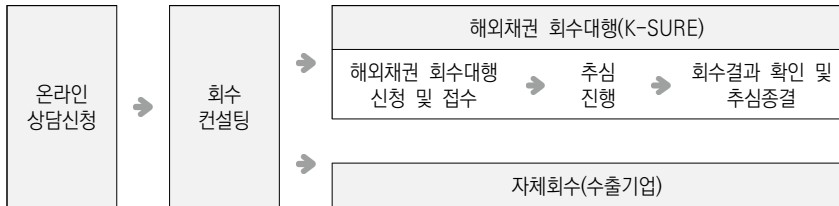
- 해외채권 회수대행 절차 안내 및 회수권설팅

신청서류

- 채권자 관련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 채권관련 서류
 -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간 서신, 기타 참고서류 등

이용절차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이용절차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공사의 보험사업과는 무관하며 채권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Q. 회수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채권의 예상 회수기간은 채권의 상태와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되며 진행경과에 따라 추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가 위임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244	1-16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 280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48	1-17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283
1-3 창업성장기술개발 251	1-18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285
1-4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254	1-19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287
1-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56	1-2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289
1-6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59	1-21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293
1-7 산학연Collabo R&D 262	1-22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295
1-8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264	1-23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297
1-9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266	1-24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299
1-10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268	1-25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302
1-11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270	1-26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304
1-12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 272	1-27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306
1-13 해외인종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274	1-28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309
1-14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276	
1-15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278	

1-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R&D지원 공통사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R&D과제 지원 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이 안되는 기업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의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단,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할 수 있음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세부내용 공고 확인 요망)

지원내용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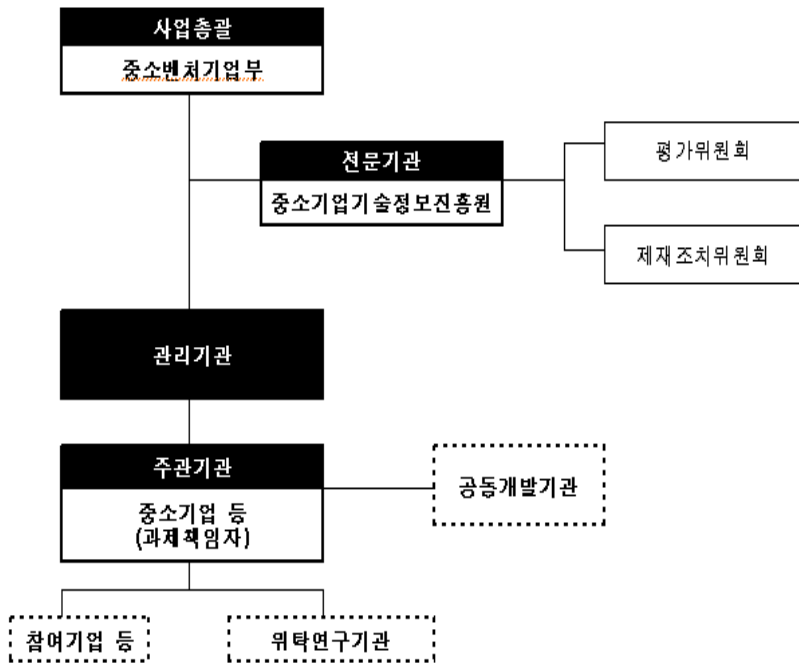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구체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사업성 :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글로벌화 역량, 고용친화도 등

제출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및 사업별 공고 양식 참고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통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공고과제 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신청	주관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조사(필요시)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부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전문기관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최종평가(서면)	전문기관
현장실태조사(최종점검) (필요시)	전문기관(지역사업평가단)
재평가(필요시)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및 사업화 성공 판정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절차를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80%이내(일부사업은 5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유선은 042-1357)

용어설명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기획기관 : 기업에서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하여 해당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주관기관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공동개발기관 :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과제책임자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

협약기간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총 기술개발기간(최초 기술개발 시작일 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과 동일함

서면평가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

온라인평가 : 선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편의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결과통보 등 선정평가 절차 전반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평가 방식

대면평가 :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

투자심사 : 외부 투자기관의 심사위원들이 주관기관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연구비관리시스템 : 기술개발 과제별로 포인트의 집행, 연구비 카드, 정산, 환수, 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Scale-up 성장촉진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기술개발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사업 성장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일반회계]

-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 연간 500만달러(USD) 이상 수출실적 달성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이 있는 기업
- 시장대응형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단, 재도약기업 과제는 별도 매출액 조건 미적용)

[소특회계]

- 강소기업100 : 소재·부품·장비 강소 100선정기업
- 소부장 전략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소부장 일반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소부장 지원품목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혁신역량 수준별 3개 내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 지원

[일반회계]

- 수출지향형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소특회계]

- 강소기업100 : 강소100 선정기업의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일반 회계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80%이내	자유응모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소특 회계	강소기업100	최대 4년, 20억		자유응모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지ניה와 달라진 내용

- (내역사업 재편) 2개 회계(일반, 소특)별 혁신역량 수준에 따라 3개 내역 사업으로 재편
- (내역사업 신설) 소부장 강소100 선정기업 전용 R&D 신설(강소100과제)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지원규모 ● 3,935억원(신규 839억원, 계속 2,952억원, 기평비 144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20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내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1-3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 재창업기업
 - ▶ 전략형 창업과제 : 스피노프, 벤처·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등 (과제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 TIPS 과제 : TIPS운영사(창업기획자 등)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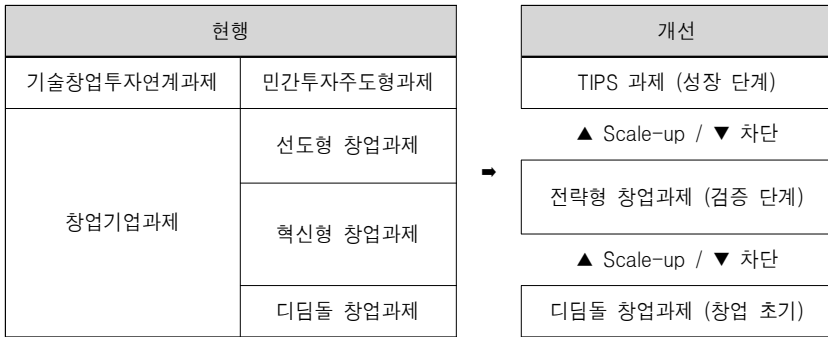
지원내용

- 디딤돌 창업과제(신규 399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전략형 창업과제(신규 23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2년, 4억원 이내)
- TIPS과제(신규 589억원) : 창업기획자 등 팀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 원		품목지정
TIPS 과제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년 디딤돌 창업과제는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
- 재도전R&D 사업이 '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
-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역사업간 연계 강화, 지원 요건(매출액 20억원미만) 추가 설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1월 중 공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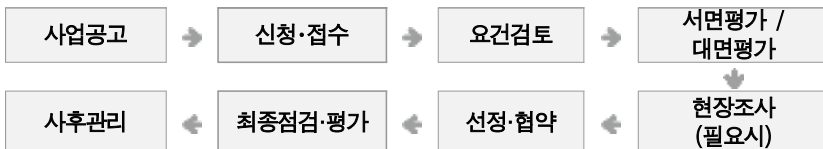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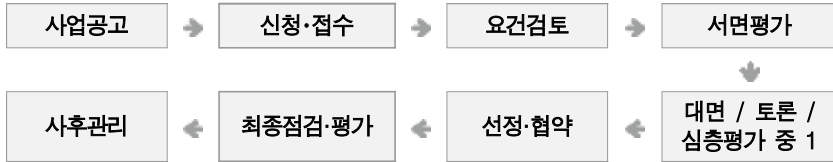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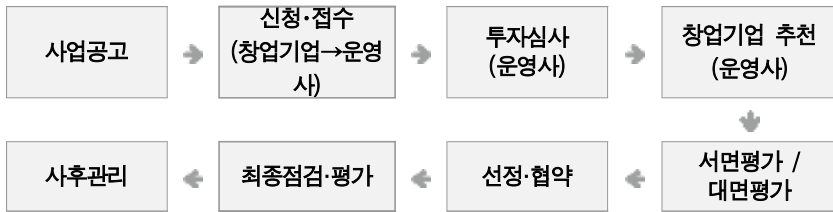
처리절차 < 디딤돌 창업과제 >



〈 전략형 창업과제 〉



〈 TIPS 과제 〉



지원규모 ● 4,211억원(신규 1,223억원, 계속 2,988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 (내선2)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20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디딤돌 창업과제 내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1-4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세계수준의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 혁신 역량을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수출품목 기술개발 지원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수출품목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글로벌창업기술개발	2년, 4억	90% 이내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처리절차 ● 글로벌창업기술개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절차 변경 가능

지원규모 ● 13억원(신규 12.5억원, 기평비 0.5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 (내선2번)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창업기업의 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정합니다.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Q. 기술개발과제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나요?

A. 아닙니다. 자유공모형 과제로 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현장조사란? :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 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조사

1-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기반 상용화 R&D 지원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동투자형(구, 민관공동투자) : ('20년) 수시접수 → ('21년) 3회차 접수
 - 공공기관 다수요처 공동개발과제 : 2개 이상의 투자기업이 공동 기술개발 수요가 있는 과제를 1개 주관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원 가능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투자동의서, 기타 서류 등

처리절차

- (지정공모과제)

사업공고

RFP 신청·접수

RFP 선정

과제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관리

사후관리

- (자유응모과제)

사업공고

과제 제안

구매동의서 등 발급

과제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관리

사후관리

지원규모

- 총 2,102억원(신규 421억원, 계속 1,588억원, 기획평가비 93억원)
* '20년 지원현황 : 총 2,042억원(신규 883억원, 계속 1,159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내선 4)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 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 의무가 면제됩니다.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해외수요처의 경우 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광고방식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15% 이상	20% 이상	자유공모 지정공모
	구매계약서		80% 이내	35% 이상	-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12억원	80% 이내	35%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대기업 1:1, 중견기업 3:2)	자유공모 지정공모

용어설명

수요처 : (국내)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해외)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E등급 이상)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기업 출연금 : 총 사업비와 별도로 투자기업이 정부출연금에 대응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주관기관이 개발 및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가능

조달혁신 : 구매연계형 중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과제

BIG3 : 공동투자형 중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과제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과제(국내 수요처에 한함)

1-6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3개 이상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주관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3개 기업 이상) 개발 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1단계 :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에 최소 필요 사항만 작성 및 30페이지로 제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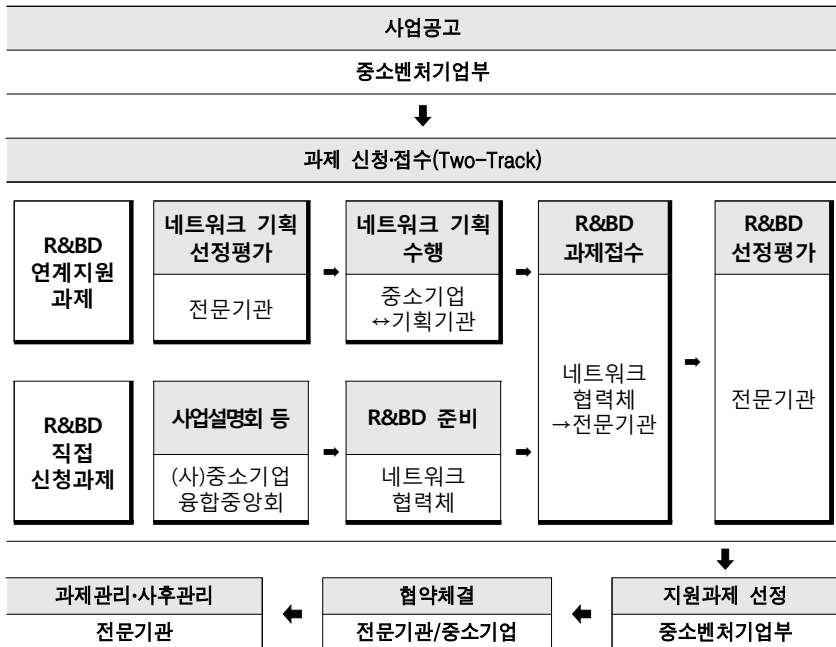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네트워크 기획)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매칭요구서, 기타 서류
- (R&BD)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기타 서류

처리절차



지원규모

- 총 220억원(신규 60억원, 계속 159억원, 기획평가비 1억원)
* '20년 지원현황 : 총 256억원(신규 120억원, 계속 136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내선 4)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Q. 네트워크 기획(1단계)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기획 운영기관 : 네트워크 기획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기관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 네트워크 구성 기업들의 수행역할 및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 기관별 의무사항, 성과배분 방식 등을 정의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사업화 부속계약서 : 상용화를 통한 사업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상호 신뢰형성을 위해 R&BD 완료 후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역할, 비용 분담 내용 등을 포함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기획연계과제 : 당해 연도 네트워크 기획을 수행하고 R&BD 과제에 신청한 과제

1-7 산학연Collabo R&D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중소기업과 R&D 인프라(전문인력, 연구장비 등)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1단계(예비연구) → 2단계(사업화R&D)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예산 및 지원과제 수에 따라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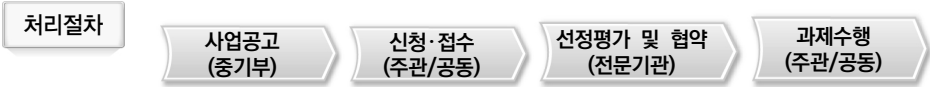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없음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 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기간 단축을 위해 평가단계 조정 가능
- (사업화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지원규모** ● 466억원(신규 216억원, 계속 232억원, 기획평가비 18억원)
 - * '20년 지원현황 : 산학협력(295개 221억), 산연협력(127개, 96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37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결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되는 50% 과제만 2단계 사업화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신청 없이 바로 2단계(사업화R&D)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예비연구) 수행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1-8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제조기업 공정혁신 지원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고도화)과 제조혁신 촉진

지원대상

- (혁신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및 공급기업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 (현장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혁신형 R&D_일반과제(신규 40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최대 2억원 한도(연 1억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년
- 혁신형 R&D_고도화과제(신규 37억원) : 유통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이전이 많은 노동집약형 공정, 고위험 공정 등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능화 및 신기술 융합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 최대 2억원 한도(연 5억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년
- 현장형 R&D(신규 108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유통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R&D_고도화 과제 신설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혁신형R&D_일반과제) 스마트화저 저변확대와 스마트 수준고도화를 위해 과제 접수 시 생산현장 확인자료를 추가 접수하여 대면평가 시 활용
- (혁신형R&D_고도화과제) 지정공모 방식으로 개선하여, 리쇼어링 목적에 부합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5인 및 간사 1인 총 6인의 평가자가 현장평가 진행
- (현장형R&D) 공정기술개발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과제 접수 시 생산현장 확인자료를 추가 접수하여 서면평가 시 활용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480억원(신규 220억원, 계속 243억원, 기평비 17억원)
- 혁신형 R&D(271개 기업, 273억원)
- 현장형 R&D(548개 기업, 190억원)
- * '20년 지원현황 : (혁신형R&D) 209개 기업 신규 지원(현장형R&D) 431개 기업 신규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044-865-9848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 042-388-0761~076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아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1-9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중위기술분야 제조경쟁력 고도화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벨류체인(GVC) 진입 및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중위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참고 : 중위기술 분야 현황 〉

기술집약도	제조업(중분류)
중고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중소기업 적합도가 높은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Top-Down)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등이 높은 경합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비교 경쟁우위 확보
- (Bottom-Up) 제조 중소기업과 산·산 협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제품의 경쟁력강화 및 신시장 창출 유도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공모방식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Top-Down	품목지정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단독수행
Bottom-Up	자유응모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공동개발기관 가능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지원규모 ● 59.42억원(신규 57.41억원, 기획평가비 2.01억원)
* '21년 신규사업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042-481-44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24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중위기술(Mid-Tech)란 무엇인가요?

A. 기술집약도에 따라 제조업을 4개의 그룹(고/중고/중저/저)으로 분류하고, 하이테크 및 고기술 중심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중고/중저 그룹의 중위 기술 분야를 지원합니다.

1-10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대체기술 확보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테크브리τζ(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기술이전 +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금융지원을 패키지로 하여 일괄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 2년, 8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거래예정 확인서(예정기업)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지원규모

- 249.23억원(신규 95.75억원, 143.63억원, 기획평가비 9.8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24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테크브릿지(Tech-Bridge)란 무엇인가요?

A.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공공기술(38만건)과 기술보증기금의 67개 영업점을 통해 발굴한 수요기술을 매칭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Q.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기술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용예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만 가능합니다.

1-11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해외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상용화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공고된 수요·공급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의 공공기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 이전의향서 또는 제품개발 협약서 등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확보된 기술협력 수요·공급기술 품목 중 러시아 보유 핵심 기술도입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및 현지 수요기술에 대한 판로개척 기술개발 지원
 - (공급기술개발형) 러시아 공공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통해 도입한 후, 후속 기술개발 지원
 - *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의 범위, 기술료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의향서(LOI) 확보 필요
 - (수요기술개발형) 러시아 공공기관·기업 등이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을 위해 제안한 수요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 현지 희망 수요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협약서와 시제품 구매의향서(LOI) 등 확보 필요

구분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상용화기술개발	6개	2년 이내	4억원 이내	80%이내	품목지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러시아 기술협력 수요·공급기술의 신규 공고

신청·접수

- '20. 1월 사업공고 예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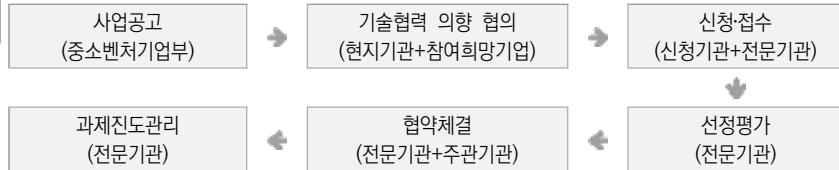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기술성(창의·도전성, 국제협력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기술보호 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사업성(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친화도), 정책부합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술협력 의향서, 기타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37.9억원(신규 11억원, 계속 26억원, 기획평가비 0.9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53, 0754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기술협력 의향서 등 LOI'는 꼭 제출해야하나요?

A. 현지기관과 주관기관의 기술협력을 위한 사전협의 여부 등의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Q. 러시아와의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주관기관과 현지기관 간의 기술협상, 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상용화지원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용어설명

(공급)기술협력의향서 : 공급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이전 예정일 및 조건, 각 기관장의 날인 등이 포함된 문서

(수요)기술협력의향서 : 수요기술명, 내용, 범위, 기술도입(또는 제품구매) 예정일 및 조건, 각 기관장의 날인 등이 포함된 문서

1-12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R&D 지원

의료기관 방역현장 애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방역물품 R&D를 통해 방역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K-방역의 성과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방역물품·기기분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의료기관 수요발굴)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방역물품 애로 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적합포목) 중소기업 적합 방역물품·기기관련 신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R&D	최대 2년, 6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지정공모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서류 등

처리절차 ● (지정공모과제)

사업공고

RFP 신청·접수

RFP 선정

과제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진도관리

사후관리

● (자유응모과제)

사업공고

과제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진도관리

사후관리

지원규모 ● 총 89.05억원(신규 86.6억원, 기획평가비 2.45억원)

* '21년 신규, 50개 지원목표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 ☎042-388-0114(내선 4)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이란 무엇인가요?

A. 방역물품 중 중소기업에게 경쟁력이 있고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Q. 의료기관 수요발굴 R&D 지원은 무엇인가요?

A. 현장 의료진, 봉사자들이 착용 또는 사용한 방역물품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R&D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1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시장성 유망한 해외인증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예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 단, 화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 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해외인증 및 규격을 선정
 -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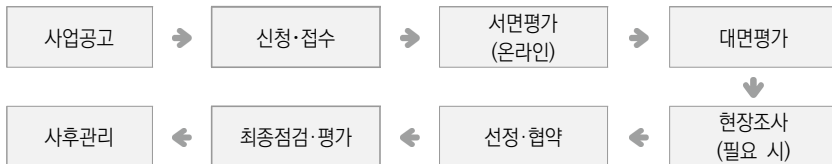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인증획득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지원규모 ● 104.69억원(신규 31.5억원, 69.75억원, 기획평가비 3.44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448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24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Q. 수출시 해외인증규격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예,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수출시 CE, UL 등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 안전, 위생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 인증제도(국가인증, 강제인증 등)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해외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1-14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의 신속한 제고를 통한 강소 100 후보기업군 육성

지원대상

- (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 전략품목 內 요소기술을 수행할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과제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

자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희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내용

- 1단계(과제기획) → 2단계(전략협력R&D)
 - 1단계 : RFP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등 사업기획 구체화 지원
 - 2단계 : 1단계 지원기업 중 사업기획의 충실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2단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과제	1단계(과제기획)	3개월, 15백만원	100%	지정공모
	2단계(전략협력R&D)	최대 3년, 12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운영기관 운영비	3억원	100%	-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예산 및 지원과제 수에 따라 조정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21년 신규사업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1단계(과제기획)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 구체성,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운영기관의 RFP 적합성 검토를 통한 추천과제에 한하여 1단계 신청 가능
- (사업화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기술개발의 적정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주관/공동)

선정평가 및 협약
(전문기관)

과제수행
(주관/공동)

- 지원규모** ● 50억원(신규 48억원, 기획평가비 2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37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1단계 과제기획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전략협력R&D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과제기획결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약 20개내외 과제가 2단계 전략협력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신청 없이 바로 2단계(사업화R&D)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과제기획) 수행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1-15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제조현장의 데이터 측정·처리·분석이 가능한 센서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의 핵심 부품과 솔루션의 경쟁력 확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최대 2년, 6억원 이내(정부지원금 비율 80% 이내)
- 제조현장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과 자동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는 센서 개발
 -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전처리(자동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

〈추진일정〉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21년 2월	'21년 2-3월	'21년 3월 ~ 5월	'21년 6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심층평가 → 최종선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근거서류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9.98억원(신규 56.25억원, 계속 50억원, 기획평가비 3.73억원)
- * '20년 지원현황 : 45억 22개사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 044-865-9848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83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스마트센서란?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이 결합된 고기능, 고정밀, 고편의성, 고부가가치 센서

1-16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지원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AI공동활용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의 전문 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

* AI공동활용모델(예시) : 수요공급예측,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머신비전, 예지보전

지원대상

- 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대학교, 중소기업과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지원
 - (솔루션 기술개발) 플랫폼 목적과 연계한 솔루션 기술개발
 - * 공동활용플랫폼 : 시표준모델들의 개발·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동·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되는 기술
 - ** 플랫폼 특징 :
 - 범용·응용성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
 - 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 가능 기술
 - 통합·파생성 : 단위요소 기술이 아닌 요소 기술의 통합된 형태로서 추가적인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파생될 수 있는 기술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년, 24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21년 2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3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45.44억원(신규 44.51억원, 기획평가비 0.93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895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 컨소시엄의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R&D를 주관할 연구소, 대학교 또는 중소기업이 플랫폼 및 솔루션 기술 개발을 수행할 중소기업, 연구소 또는 대학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합니다. 단, 컨소시엄 구성 시,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어설명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1-17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스마트화를 위한 ICT솔루션 개발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기 지원된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등 지원(2년간,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 비대면·언택트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한 ICT 솔루션 중심으로 지원
 - * (예시) 자연어 처리(챗봇), Wifi6(고속영상통신 솔루션), 기계학습(업무 자동화), 가상·증강현실(재택 근무·온라인 서비스), 컴퓨터 비전(OCR), 블록체인(거래) 등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www.si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1년 이상 과제의 경우, 사업수행 1년 후에 진도점검 실시

지원규모 ● 60.44억원(신규 58.75억원, 기획평가비 1.69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혁신사업실) : 042-388-0114(내선 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상,하반기 모집공고 중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18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솔루션 도입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등 서비스 혁신 도모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유희·향락업
- ▶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 ▶ 숙박업 및 주점업

지원내용

- 기업혁신,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등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AI, 빅데이터, IoT,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구축
 - *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 *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
 - *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이터마이닝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www.smt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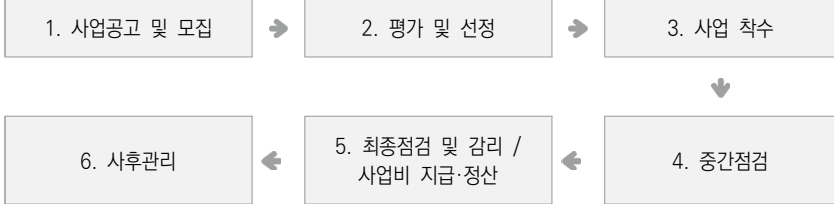
- 현장실사,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 전문가평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92.88억원(신규 90억원, 기획평가비 2.88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혁신사업실) : 042-388-0114(내선 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기 구축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고도화) 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가능하지만,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이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19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②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대응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제조 연소사업장의 오염원 제거기술 및 국민생활 밀착공간의 저감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배출 규모 4종, 5종 중소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 밀착공간(식당, 학교, 지하철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개선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최대 1년, 2.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지원규모 ● 78억원(신규 75억원, 기평비 3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미세먼지 배출업소 규모(1종~5종)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80톤 이상), 2종(20~80톤), 3종(10~20톤), 4종(2~10톤), 5종(2톤 미만)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10톤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Q.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공고문은 '20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www.smtech.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2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지원 및 기술애로 해결, Scale-up R&D 지원을 통해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대상

- (R&D기획지원)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R&D기획지원)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신기술의 기술·시장분석, 기술 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특허전략 수립 등을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R&D 쏠단계(기획→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역량 내재화와 자발적 R&D기획 촉진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공학컨설팅 센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기획	최대 4개월, 25.5백만원	90% 이내	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	100%	-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매출액 50억원 미만	최대 9개월, 30백만원	90%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50억~100억원 미만			자유응모
	매출액 100억원 이상			자유응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Scale-up R&D 지원	최대 1년, 100백만원	90% 이내	자유응모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4백만원	100%	자유응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공학컨설팅센터 신규 선정('21.1월 선정 예정)
- (R&D기획지원) 연계지원 추천 횟수를 ('20년)1회→('21년)2회로 확대 실시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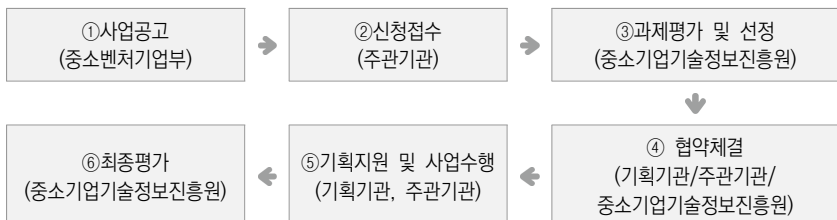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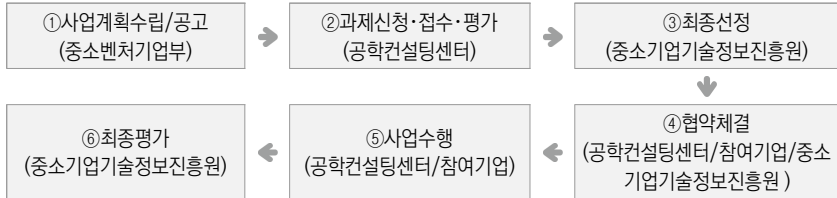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

- R&D기획지원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지원규모

- R&D기획지원(38.8억원) : 130개 과제 내외 / 2,300명 교육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 167개 과제 내외
- 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54.4억원) : 136개 과제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과, 지역기업육성과 : 042-481-4445, 167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4, 0741
-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의 기술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최종보고서(전략·분석보고서)를 과제 수행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Q&A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평가·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Q.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입니다.

위기업종은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조선·자동차 업종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에서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

Scale-up이란? : 사전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하며,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

1-21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중소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공유·확대 촉진

지원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 사업공고문에 명시한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전문인력 및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의 70%를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최대 50백만원 한도)
- (운영기관) 운영기관의 장비·사업홍보비,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 이용실적에 따라 연구기반 활용촉진비 지급
- (지원한도) 장비이용료 총액의 70%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내역사업명	지원비율	지원한도(정부지원) (A)	기업부담금 (B)	바우처 발행한도 (A+B)
기업선도형	70%	10,000천원	4,285천원	14,285천원
기반플러스형	70%	50,000천원	21,428천원	71,428천원

* 한도 내에서 장비이용에 필요한 만큼의 바우처를 분할하여 구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선행사업인 연구기반활용사업과 유사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신청·접수 ●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여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사업 신청·선정
(중소기업)

바우처 구매
(중소기업)

장비비용
(중소기업/운영기관)

지원규모 ● 86억원(신규 83억원, 기획평가비 3억)

- 문의처**
- 한국산학연합회 : 042-720-3325
 - 전용정보사이트 : rss.auri.go.kr(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 기업선도형과 기반플러스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업선도형은 단순 시험·분석서비스를 포함하여 장비이용료를 지원하지만 기반플러스형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첨단 연구 장비 및 종합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인증·납품 용도의 시험·분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운영기관의 전문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대학·연구기관 등은 각 기관의 특징점을 활용하여 종합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내용, 활용조건, 이용금액 등을 명시한 서비스 카탈로그를 구성하게 됩니다. 서비스의 종류에는 장비교육, R&D컨설팅, 장비활용결과 분석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Q&A



용어설명

바우처(Voucher) : 공공정책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일종의 쿠폰

1-22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의 성장과 제품·공정·서비스 등 혁신이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및 소상공인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BM개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에 명시

- (생활혁신개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BM개발과제) 1단계 BM기획(3개월) + 2단계 BM개발(2년)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과제) 1단계 진단·기획(2개월) + 2단계 기술개발(6개월)
 - 권역별 진단·기획기관의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하여 진단·컨설팅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공정 등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BM개발	BM기획	3개월, 14.5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BM개발	2년, 4억원		
생활혁신 기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90% 이내	
	기술개발	6개월, 30백만원		

-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추후 공고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BM개발과제) BM의 보급 확산 및 구체성·실현가능성
- (생활혁신개발과제) 권역별 진단기획기관 자율운영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등

- 처리절차** ● (BM개발과제)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제수행

- (생활혁신개발과제)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제수행

- 지원규모** ● 39.62억원(신규 18.4억원, 계속 20억원, 기획평가비 1.22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2-481-39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 0346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생활혁신개발 과제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공고상에 기재된 권역별 진단·기획기관에서 접수합니다.

Q. 권역별 진단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A.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진단 기획 컨설팅 하며 진단 기획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하는 기관입니다.

1-23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중소기업 R&D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대상

- (혁신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성공(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성공(완료) 판정 이력이 없는 기업
-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 ▶ 성공(완료)판정 받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제품을 신청한 경우

-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혁신제품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간)

-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활용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20.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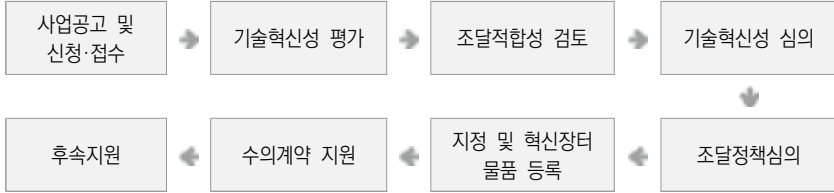
-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의
- 시범구매 적합성, 파급효과 등 수요매칭심사 및 시범구매 적정성 검토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제품소개서, 생산설비소개서, 제품규격서, 기타 관련 서류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규모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총 10억 원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00개 내외 지정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41~0242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공고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나라장터를 통해 해당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24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월 공고예정)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유턴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지구 입주기업, 소비재 수출 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기업, 스마트 제조 표준 적용기업, 여성기업, 군수품 제조기업은 선정 시 가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희·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구축을 지원하여 목표수준 기초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고도화1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1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고도화2	지능화 솔루션(AI, CPS 등), 센서, 로봇 등을 통해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목표수준 중간2이상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 정부지원금 규모

구분		지원조건
정부지원	구축	기업당 최대 0.7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1	기업당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2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상생형	구축	기업당 최대 0.42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고도화1	기업당 최대 1.2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보급개선) 보급사업을 고도화단계를 세분화하여 개편

현 행('20)	개 편('21)	비 고
고도화 (1.5억원)	고도화2 (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신규구축 (1억원)	구축 (0.7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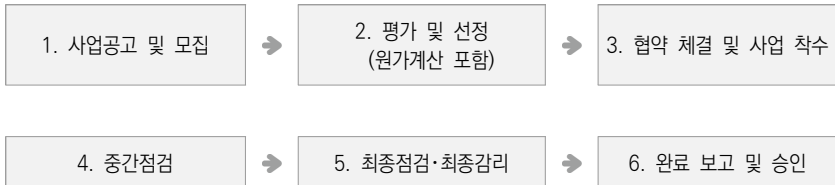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공고 첨부양식 활용)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절차



지원규모 ● 4,002억원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3, 0856, 0861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 참조

Q&A



Q. 스마트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스마트코디네이터는 신청과제의 사업기획, 지원과제 중간/최종/수시 진단 및 사업완료 후 사후점검 그리고 지원과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해주는 전문가입니다.

Q.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도입기업 인건비는 도입기업부담금 20% 이내로 현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kr)의 '알림/참여마당'의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정보를 주고받으며,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

생산정보시스템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라인의 정보화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CPS(Cyber-Physical Systems) : 정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계구성요소와 결합하여 데이터 전송 및 인프라(인터넷 등)에 의한 모니터링 또는 제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1-25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컨설팅지원을 통한 스마트공장 전략수립 지원

전문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구축 중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략수립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사업완료시 수준확인 예정)

- 지원내용** ● 컨설팅 타입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컨설팅 지원		원포인트 멘토링 (시범운영)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	
총 비용	5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지원금액	400만원	800만원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200만원	-

* 기본 및 심화 컨설팅 매칭 비율 : 정부(50%), 지자체(30%), 민간(20%)

** 원포인트 멘토링 : 기업 자부담 없이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 매칭비로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4개월

-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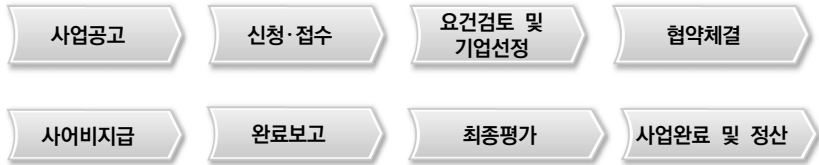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자가진단지 및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제출서류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예산규모 : 33억원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운영기관(지역제조혁신센터) : 홈페이지참고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2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 참조

1-26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기업 제조수준의 객관적인 진단 및 수준확인 지원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사업완료시 수준확인 예정)

- 지원내용**
- 수준확인비용 지원(기업당 80만원 이내)
 - 수준확인 및 확인서 발급
 -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보고서 및 로드맵 제공
 - * 수준확인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자격 부여 및 보증기관 보증료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자가진단지 및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 자가진단지,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 제출서류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11.9억원(1,190개사 수준확인 지원)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 참조

Q&A



Q.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Q. 수준확인 참여기업으로 신청시 중소·중견기업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27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AI로 제조업 전반의 제조혁신 지원

제조데이터를 저장·분석·활용하여 중소기업의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을 구축해 전문가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지원대상

- AI를 활용한 공정개선 및 스마트화를 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 뿌리기술(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주조 등) 관련 업종 우대

부적격 사항

-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 AI 컨설팅
 - AI 기술 도입으로 공장 또는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데이터·AI 분석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 컨설팅·멘토링 지원
- AI솔루션 실증지원
 - 공정 및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AI 기술 및 솔루션을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실증 지원
-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 AI솔루션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과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고성능 컴퓨팅 자원					클라우드 스토리지
GPU	CPU	메모리	스토리지	회선	스토리지
20TFLOPS 이상	2.1GHz, 16Core이상	128GB 이상	10TB 이상	1Gbps 이상	최대 2TB

*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21년 사업공고 확인 필요

- AI 데이터셋 활용 지원
 - KAMP를 통해 데이터 가공 부담 완화, 데이터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개방

신청·접수

- AI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 KAMP 홈페이지(www.kamp-ai.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AI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지원) 솔루션 도입 가능 여부, 사업 추진배경과 도입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이해도와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필요서류 제출 여부 검토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AI 컨설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사업절차

- (AI 컨설팅)



- (AI 솔루션 실증지원)



지원규모 ● 출연

구분	규모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AI컨설팅지원	100개사	최대 2개월	기업당 20백만원	90%이내
AI 솔루션 실증지원	100개사	최대 4개월	기업당 50백만원	80%이내

문의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KAMP 홈페이지(www.kamp-ai.kr)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88~889, 891



Q. AI컨설팅만 받거나 솔루션 실증지원만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AI컨설팅의 결과로 AI솔루션 도입 및 실증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어있어 하나만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Q. 스마트보급확산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AI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스마트보급확산사업과 AI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 지원사업은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고성능 컴퓨팅 자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고성능 컴퓨팅 자원은 AI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 참여 기업의 데이터 연산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1-28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클라우드 기반 정보화솔루션 개발지원

중소기업 경영·생산현장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비용·고효율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

지원대상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 * 협·단체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등
 - ** 중소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13 ~ '20년 개발과제로 선정된 협·단체 및 컨소시엄은 신청 불가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 기술적 환경,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공동활용 솔루션 과제) 유사·동업종으로 구성된 협·단체 회원사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솔루션 구축
 - * 예시) ① 회원사 공동 AS관리, 자재관리, 수발주, 납품, 유통 등을 공동활용 업무
 - ②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와 연계한 신고, 승인, 배정 업무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최대 1.4억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구축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플랫폼의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 가능(최대 2년)

신청·접수

-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21년 1월 ~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홈페이지(it.s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① 사업공고 중기부	② 신청·접수 협단체/컨소시엄	③ 현장컨설팅 (현장조사 포함) 추진단	④ 심사평가 추진단
⑧ 사업관리 및 플랫폼활용 교육 추진단	⑦ 과제수행 협단체/컨소시엄	⑥ 협약체결 3자	⑤ 과제선정 및 원가계산 추진단
⑨ 감리수행 (중간 및 종료 감리) 감리기관	⑩ 완료보고 협단체/컨소시엄	⑪ 운영관리 협약 3자	⑫ 서비스오픈 및 운영관리 추진단, 협단체/컨소시엄

지원규모

● 32.5억원(5개 솔루션 내외)

* '20년 지원현황 : 9개 솔루션 구축 지원(스마트공장솔루션 5개, 공동활용솔루션 4개)

문의처

- 경영혁신플랫폼 상담센터 : 1644-1736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혁신기반구축팀 : 042-388-0884, 0886
- 경영혁신플랫폼 홈페이지 : www.smplatform.go.kr
- 사업신청 및 과제관리 : it.smplatform.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부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312
2-2 사업조정제도	315
2-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318
2-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320
2-5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322
2-6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324
2-7 수출컨소시엄 사업	326
2-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328
2-9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330
2-10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사업	331
2-11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332
2-1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336
2-13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339
2-14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341
2-15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343
2-16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345
2-17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삼성전자)	347
2-18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포스코)	349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지원, 상거래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및 단기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대출종류	대출 사유	지원 한도
부도매출채권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어음·수표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단기운영자금대출	• 단기 및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 대출조건

구분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연3.5~8.38%	신용등급별로 연3.5%~9.63%
대출기간	3년	180일 이내	1~3년
담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 연대 입보 • 부동산담보 및 지역신보보증서 제공시 : 대출한도상향 및 이자를 인하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거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 연1.0~3.0% 감면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공제부금
납부 등**

- 부금종류 (총 납부액 1억원 한도)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3종 :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금납부기간
 - 20, 30, 34, 40, 42, 50, 60개월
- 지급이자 등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 * 12회 이상 납부시 소정의 이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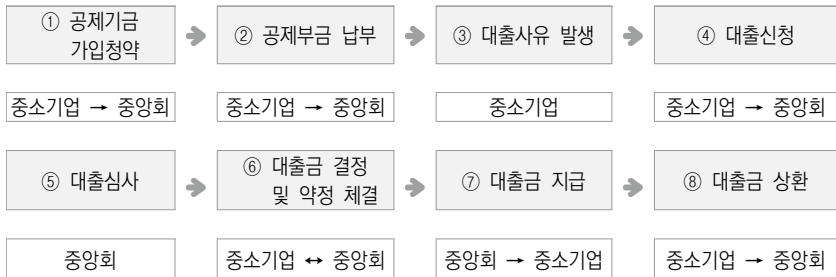
**가입 및
대출신청**

- 가입 : (인터넷, 방문, 팩스)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부금내 대출인 경우 인터넷 원클릭대출 가능)

제출서류

- 가입신청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대출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담당세무사 확인필),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1년 대출 5,000억원, 가입 업체 수 17,000개 목표

대출종류	대출목표(연간)
부도매출채권대출(제1호)	25억원
어음·수표대출(제2호)	250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4,725억원

* 대출 4,570억원, 가입 업체 수 15,960개('20. 11월말 기준)

문의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ARS 2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 납부 4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Q.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A.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도매출채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부도매출채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 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대출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일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Q.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1~3년이며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대출 만기일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 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차 일부(연1~3%이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2-2 사업조정제도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업영역보호

대기업들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신청대상 ● 모든 업종 가능

신청이 안되는 기업

- ▶ 방위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신청요건 ● 형식적 요건

- (신청인)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피신청인)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법 제2조 및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①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②해당지역·해당업종의 ③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④수요를 감소시켜 ⑤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유효함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를 통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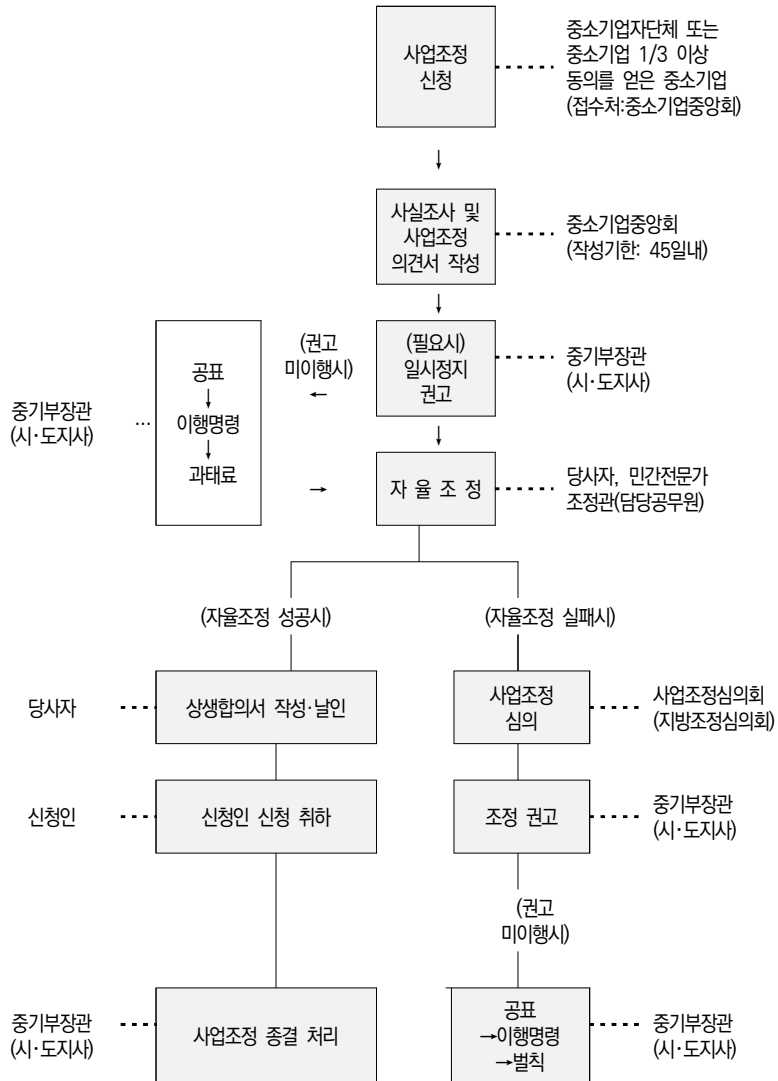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우 07242)

제출서류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 (SSM)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등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은 해당지역 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042-481-4477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업) 소상공인정책부 : 02-2124-3171
제조업) 상생협력부 : 02-2124-313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사업조정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A. 해당업종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기업 SSM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

A.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상품공급점, 대기업 지분이 49%이하일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나요?

A. 동 제도는 일정기간 대기업 진출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상되는 사업조정의 형태는 사업진출 연기, 판매량 혹은 면적제한, 취급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Q.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일시정지 권고란?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업 간 하도급거래 분쟁의 자율적 해결 도모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등 분쟁발생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 내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유도합니다.

조정대상

- 업 종 : 제조, 수리, 용역업
- 기 간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
- 원사업자 범위
 - (제조·수리)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 1조5,000억원 미만
 - (용역)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 원사업자 매출액이 위 기준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신고
- 수급사업자 요건
 - 제조·수리·용역을 위탁한 원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기술유용, 부당반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 유도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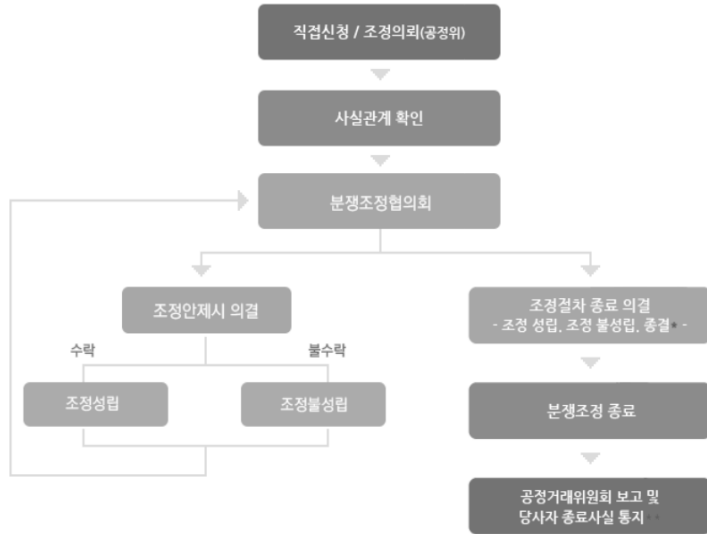
- 중앙회에 직접 신고(우편접수)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3층 상생협력부
- 공정위에 신고(공정위 접수 후 공정위가 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서류제출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사본 각 1부, 기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 신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하도급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안내(양식)

처리절차



• 위하, 소제기, 각하, 조정안 미제시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의 관련 법을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통지 공문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2124-3131



Q. 조정성립 시 효력은? 또는 조정불성립 시 향후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A.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Q.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내용이 경미하고 자진시정 등으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악질적·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외에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 위반사항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검찰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2-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 (Role Model) 제시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명문장수 기업이란

-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포함)

명문장수 기업확인기준

- 장수(60점)
 - 45년 이상 업력 유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및 기업혁신(지속발전 가능성) 등 평가
 - * 필수요건(법인세 납부실적, 법규 준수, 연구개발) 및 항목별 최저 점수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 제외 업종

-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명문장수 기업지원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및 현판제작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기업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금융,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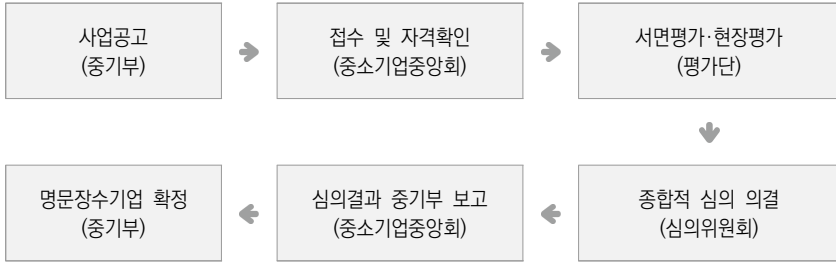
- 연중 (개별 사업별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5~6
- 관련 홈페이지 : www.succe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5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 한도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규모**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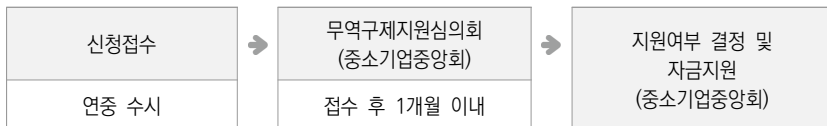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제출서류**
-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 계좌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수입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용어설명

무역구제제도란?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 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2-6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최대 1,500만원 한도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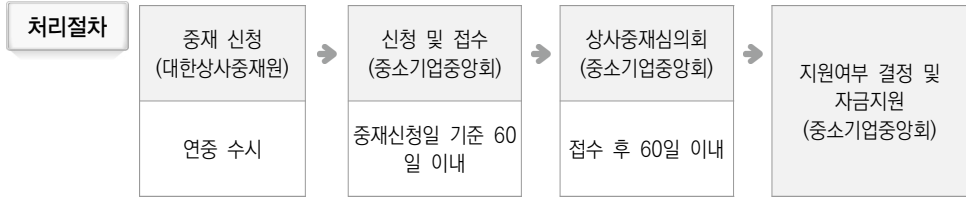
- 대리인 선임비용의 최대 50% (최대 1,500만원 한도)
 - 법무부 훈련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
 - * (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신청접수

-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우편 및 방문 접수
 - * (07242)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중소기업확인서
- 계좌통장 사본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3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협력팀 : 02-551-2029



Q. 신청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귀 사(조합)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상대기업과의 계약서 상 중재조항이 있거나, 별도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대리인(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선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한도)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해주는 것이며,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중앙회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중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①중재합의(분쟁 당사자 간 계약서에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 ②중재신청(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중재비용예납, 사무국 중재 절차 개시), ③중재판정부 구성(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분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④중재심리(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필요시 감정·증거조사), ⑤중재판정

용어설명 **중재제도란?** :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2-7 수출컨소시엄 사업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동일·유사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사전,사후 관리 현장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수출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경우

지원내용

-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지원
- 지원비율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사전준비(1단계)	⇒	현지파견(2단계)	⇒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사전비용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부스·상담장 임차, 장치, 차량, 통역 등) 등 현지파견 비용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사후관리 비용

신청접수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신청
 - 주관단체: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주관단체→참가신청”
 - 참여기업: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정보→수출컨소시엄→참가신청”
- (오프라인) 사업모집공고 신청 서식 및 관련 붙임서류 우편 제출
 - 주관단체: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 참여기업: 각 세부사업의 주관단체로 제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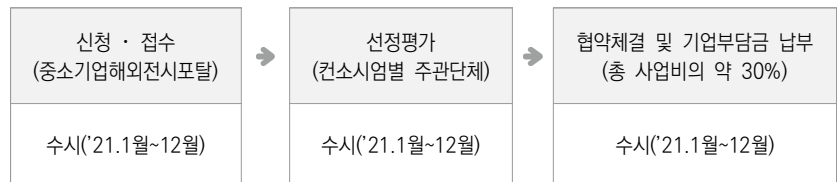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처리절차

- 전체 일정



- 참여기업



지원규모

- 약 103개 컨소시엄 내외, 103.8 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합니다.

지원내용

목적	제도의 종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19~'21년 적용)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 / 유효기간 : 2년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5천만원 미만 중소기업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 받아 수의계약
 - * 코로나19로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억 원까지 한도 상향(판로지원법 시행령 반영, 8.25)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공동사업이란?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2-9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언론매체 및 뉴미디어 활용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추진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중소기업중앙회업무) 제1항 제2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사업내용

- 중소기업 편견 해소 및 인식도 제고
 - ① 중소기업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 (유튜브)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홍보
 - (인스타그램) '19.6. 신설, 총 게시물 68개, 팔로워 1,129명('20.12.4. 기준)
 - (블로그) 누적 방문자 653만명 달하는 파워블로그, 연간 콘텐츠 300여개 지속제작 중
 - ②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 전국민 대상 중소기업 관련 동영상, 포스터, 수필, 지도자보고서 부문 콘텐츠 접수 및 수상
 - ③ 중소기업 역사관 운영
- 서울경제신문 공동 행복한중기경영대상 시상
 - 법인/개인 부문 연간 우수 중소기업 포상(고용안정·창출, 성장성, 복리후생, 연구개발 등)
-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실태 조사 및 언론 모니터링
 - TV·신문 등 언론에 비친 중소기업 이미지 실태 연구 통한 정책방향 제언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 02-2124-4014

2-10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사업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일자리정보 통합제공

청년친화적 일자리 특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찾고, 널리 홍보하여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민관 일자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DB를 구축하고,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현황과 다양한 중소기업 일자리정보를 직관적 제공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 촉진

사업내용

- 정부·지자체에서 인정받은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 발굴
 - 재무성과, 신용등급, 영업이익, 낮은 퇴사율, 종사자수 10인 이상 등 기준
- 위치 기반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소재와 채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주변에 있는 우수기업 지도상 확인, 지역·업종·복지 등 중소기업 맞춤 검색 가능
- 중소기업 일자리정보 DB 구축 및 제공
 - 인증내역·재직자 평가/리뷰·임금·복지·재무·채용공고 등
 - 정보제공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통한 일자리정보 상시 업데이트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 02-2124-4013

2-11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지원내용

- 각종 행정 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본부) 및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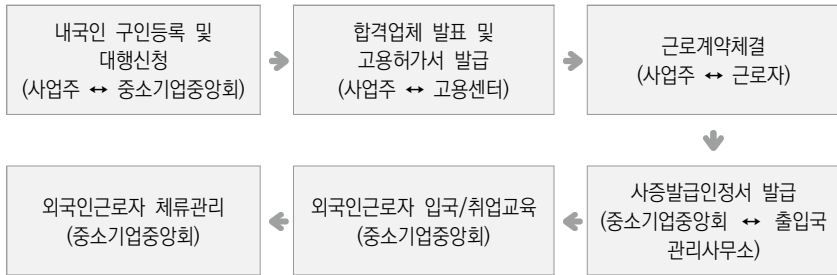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고용인원 등 4가지 기본항목 점수(100점) 및 가점 항목과 감점항목에 따른 점수제 운영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7가지 요건에 의한 가점항목 부여
 - 출국만기보험 체납 등 7가지 요건에 의한 감점항목 부여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http://fes.kbiz.or.kr/> → FAQ)
 →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서류양식은 어디 있나요?' 클릭)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20년도 제조업 지원 규모는 40,700명+ α

구 분	배정인원	비 고
일반인력쿼터	30,130명+ α	1, 3, 6, 9월 신청 예정
재입국취업자	10,570명	수시접수
합 계	40,700명+ α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 02-2124-3281, 3284, 4390~3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3년 동안 고용하고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으며 재입국 특례자(舊 성실근로자)도입 등으로 최대 9년 8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국이나 되나요?

A. 아시아 16개 국가의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입니다.

Q.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A.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3명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5명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4명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6명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 〉

조건	구 분	상향 정도
인력부족 업종	(10)식료품 제조업	·고용 총 한도 20% 상향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부리산업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에서 부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Tel) 02-2183-1647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신규 한도 1인 상향
지방소재 기업	지방소재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등	·고용 총 한도 20% 상향
노동시간 단축확인 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49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신규 한도 30% 상향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 총 한도 20% 상향 ·3개월 전 대비 내국인 추가 인원만큼 신규 한도 상향

* 최대 3가지 조건 중첩가능

용어설명

재입국특례자 제도(舊 성실외국인근로자) : 중소기업의 숙련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외에 추가로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을 재부여하는 제도

방문취업제(H-2) : 중국, 구소련 국적의 무연고 동포에게도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취업업종을 확대하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2-1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제도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가입제한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원내용

-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음
 - 노령사유 발생 시(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 공제금 신청하면 지급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내외)로 저율과세

〈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5,675만원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5,675만원) =7천만원 (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500만원 × 6.6% = 330,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500만원 × 16.5% = 82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 × 26.4% = 792,000원
88백만원 ~ 1억 5천만원	38.5	300만원 × 38.5% = 1,15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200만원 × 41.8% = 836,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200만원 × 44.0% = 880,000원
5억원 초과	46.2	200만원 × 46.2% = 924,000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개정시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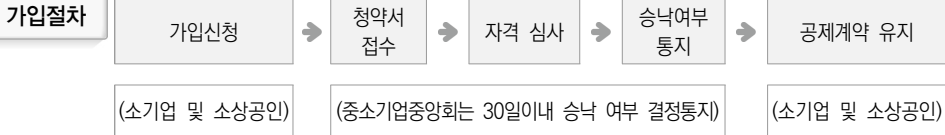
-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 일반대출, 의료대출(무이자), 재해대출(무이자)
-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 지자체별 월 1~5만원 적립 지원(1년간)

- 교육지원 및 심리상담
 - 사업유지(힐링, 경제캠프)교육, 재기지원(폐업 및 전직)교육, 심리상담 지원
- 경영지원단 운영
 - 법률·노무·회계 등 8개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한 경영지원
-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복지몰, 문화공연, 건강검진, 장례식장 및 웨딩홀 등 전문업체 제휴할인 서비스

가입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월부금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방법 ●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로 한함



-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 계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순한 번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가입서류 ● 노란우산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문의처**
-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 노란우산 스마트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3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보증서 발급비용 경감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민영보증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교육청 학교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담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금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선금금, 중도금, 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의무이행과 관련된 보증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 체계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한도거래약정체결 후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해 청약 신청(www.gbiz.or.kr)를 통해 약정 및 청약 신청인터넷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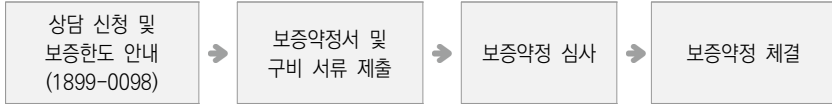
제출서류

- 한도거래보증약정서(본회사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biz.or.kr)에 게재된 보증안내-구비서류 참조

처리절차

● 약정 신청



● 보증서 발급(청약) 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41~2 Fax. 0502-397-0000
- 홈페이지 : 중소기업보증공제(www.gbiz.or.kr)

Q.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 A.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 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4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중소기업의 비용 경감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PL보험을 일반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
- PL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임)

지원내용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최대 20~30% 이내 환급(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 중소기업 PL리스크 예방 대책 지원
 - PL리스크 관리방안 설명회 개최, PL사고사례집 배포 등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를 통해 산출질문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매출액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plkorea.com)PL자료실/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참조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51~4, Fax.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PL단체보험(www.plkorea.com)

Q. PL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 A.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담보지역, 사고 경력, 인증마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가입품목 : 여러 가지 생산품목 중 선택적(전체품목/일부품목)으로 가입
 - 보상한도 : 예상 사고피해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
 - 인증마크 할인 : 싱글PPM, Q마크, K마크, S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등
→ 산출질문서 작성 시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은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15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기업 경영상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일반보험사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시설장치 등
 - 시설소유자, 임차자 등 배상책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지원내용

구 분	보장내용
화재공제	공장 및 일반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기업종합공제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재산종합공제	화재와 같은 개별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내 모든 위험 보장
영업배상책임공제	영업상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대상 :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등)
근로자재해공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
소상공인 간편실손 화재공제	사업장 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 인수 확대
 - 도금, 비발포 플라스틱, 목재가공 등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를 통해 설문서 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 공제상품별 설문서,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insbiz.or.kr)자료실>설문서 참조

처리절차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 Tel. 02-2124-4357~8, Fax. 0502-397-0050, 이메일 : insbiz@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파란우산 손해공제(www.insbiz.or.kr)

2-16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원부자재 구매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대출보증 상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없이 원부자재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재단)에서 전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원부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단,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대표자 신용불량 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부자재
 - * 지역신보재단 :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 전용보증 차별성
 - 5년간 보증발급 수수료 0.5%p 인하
 - 금융기관 할인수수료(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 업체별 보증한도(매출액의 최대 1/2), 신용평가, 보증비율(95%) 등 우대 적용
 - * (참고) 국내 구매만 이용 가능(해외구매는 사용 안됨)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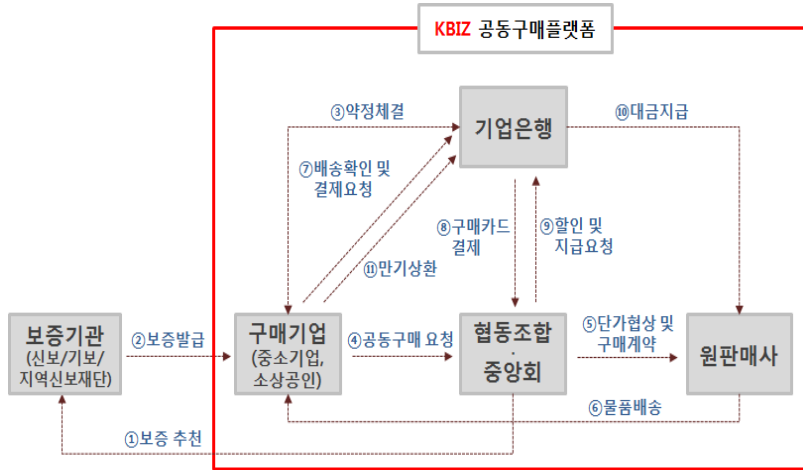
- 참여 신청서를 조합 포탈(johap.kbiz.or.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 자세한 신청서류는 조합 포탈(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전용보증' 검색) 참조

처리절차

- 참여신청(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업 추천(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관)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기업은행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기업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기업은행 상환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 Tel. 02-2124-3221~3223
Fax. 02-780-9785, 이메일 : youn0202@kbiz.or.kr
- 홈페이지 : KBIZ공동구매플랫폼(coopbuy.kbiz.or.kr)

2-17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삼성전자)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한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전수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체질개선 및 기반강화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우대사항 : 위기관리지역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입기업)동일 사업기간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신청한 기업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하며,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내용

●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유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비고
유형1	A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중간1 수준 이상	최대 1억원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B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기초 수준 이상	최대 6천만원	
유형2	C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소기업 대상 지원	최대 2천만원	정부·대기업 100% 지원

* 기업당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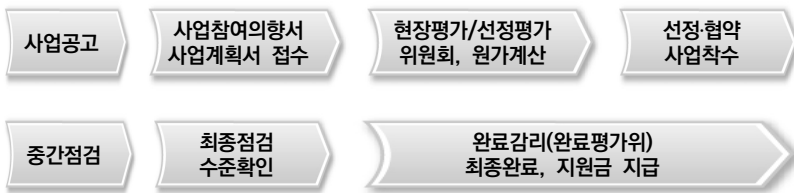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사업자 등록증명원, 증권·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계획서 접수 전 사업의향서 제출

지원절차



지원규모

- 200억원(정부 100억, 삼성전자 100억)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홈페이지(<https://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02-2124-3392, 4312, 4319)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1 문의)

Q&A



Q.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 A.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대기업의 협력기업 뿐 아니라 비협력 기업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3정5S, QSS 등과 같은 제조현장 혁신 활동, 판로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그동안 쌓아 온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특징

Q. 공급기업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A. 도입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공급기업 선택에 대한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단, 사업 진행중에 공급기업 변경은 사업 재참여와 동일하므로 처음 사업신청부터 다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공급기업 매칭플랫폼' 활용 가능

2-18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포스코)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한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전수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체질개선 및 기반강화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우대사항 :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 (도입기업)동일 사업기간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신청한 기업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하며,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내용

-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유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비고
유형1	A	스마트공장 구축 후 시스템 고도화 기업	최대 1.8억원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B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기초 수준 이상	최대 1.2억원	
유형2	C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최대 2천만원	정부·대기업 100% 지원

* 기업당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사업자 등록증명원,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등
- * 사업계획서 접수 전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출

지원절차



지원규모

- 30억원(정부 15억, 포스코 15억)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홈페이지(<https://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02-2124-3392, 4312, 4319)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1 문의)

Q&A



Q.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 A.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대기업의 협력기업 뿐 만 아니라 비협력 기업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3정5S, QSS 등과 같은 제조현장 혁신 활동, 판로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그동안 쌓아 온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특징

Q. 공급기업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A. 도입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공급기업 선택에 대한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단, 사업 진행중에 공급기업 변경은 사업 재참여와 동일하므로 처음 사업신청부터 다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공급기업 매칭플랫폼' 활용 가능



제3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1 소공인특화자금	352	3-21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394
3-2 성장촉진자금	354	3-22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396
3-3 일반경영안정자금	357	3-23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398
3-4 청년고용특별자금	359	3-24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400
3-5 혁신형소상공인자금	361	3-25 온라인 판로지원	402
3-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63	3-26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404
3-7 상권정보시스템	366	3-27 백년가게 육성사업	406
3-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369	3-28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409
3-9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371	3-29 희망리턴패키지	411
3-10 소상공인 경영교육	372	3-3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414
3-1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374	3-3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16
3-1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376	3-3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19
3-13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378	3-33 시장경영바우처지원	421
3-1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381	3-34 온누리상품권 발행	424
3-15 스마트슈퍼 육성	384	3-3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26
3-1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386	3-36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430
3-1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88	3-37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433
3-18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사업	390	3-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436
3-19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392	3-39 전통시장 화재일시시설 설치사업	438
3-20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393		

3-1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공인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포함)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방식 도입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사전예약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절차

신청접수

심사평가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지원규모

● 6,000억원

* '20년 예산 : 45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1357



Q. 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정해져 있나요?

A.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매월 마지막주에 3~5일간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단 직접대출 일체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심사역의 사업장 방문 후 사업성 종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위탁가공 시 제조업 분류조건(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 ①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 설계, 및 건본제작 등)
- ②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③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④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3-2 성장촉진자금

장수 소상공인의 재정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직접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접수 방식 도입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리대출 : 신용·사업성 평가 및 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
- 직접대출 :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 한도 금액 산정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게시 공고에 첨부

처리절차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지원규모

- 4,000억원
- * '20년 지원 규모 : 2,3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1357

Q. 대출 받은 후, 상황이 어려워 폐업하면 일시상환 해야하나요?



A.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개인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폐업 시에는 전액 일시 상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금부담이나 재창업 기회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 회수를 유보해드립니다.

- ① 원리금을 연체 없이 정상상환중인 경우
- ② 자금신청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 소지)이상환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 회수를 유보. 단, 정상상환 중인 업체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더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 / 매달 상환금액이 동일 / 매달 내는 원금이 늘고 이자는 줄어듦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매달 상환 / 매달 내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는 줄어듦

3-3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 및 영업지속을 제고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용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접수 방식 도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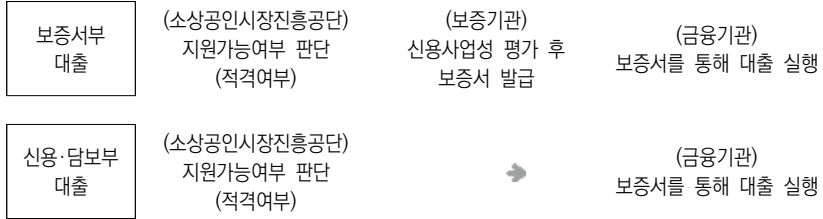
- 신용·사업성 평가 및 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게시 공고에 첨부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지원규모

- 13,000억원
- * '20년 지원 규모 : 38,0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1357



Q. 신용보증재단 이외에 다른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특정 보증기관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지원 대상 중첩을 피하기 위해 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후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에, 일반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

-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동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3-4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지원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청년 근로자 : 만 39세 이하 내국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출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종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접수 방식 도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용·사업성 평가 및 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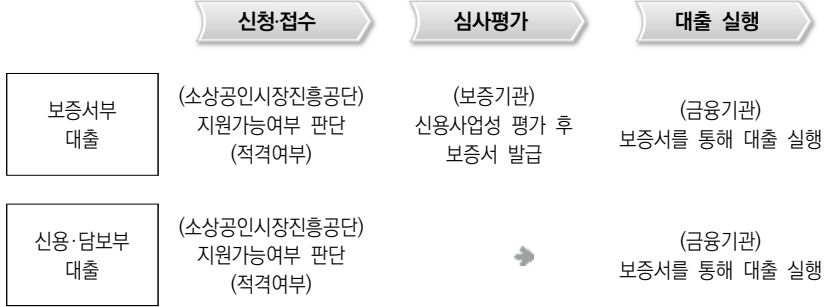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게시 공고에 첨부

처리절차



지원규모

● 5,500억원

* '20년 지원 규모 : 4,475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1357

Q. 재외국민, 재외국민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 재외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재외국민 및 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15.1.22부터 발급)

용어설명

중도상환 : 대출금을 만기 전에 미리 갚는 것을 의미, 전액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발급)가 없음

3-5

혁신형소상공인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혁신형 또는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혁신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방식 도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사전예약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h.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게시 공고에 첨부

처리절차

신청접수

심사평가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지원규모 1,500억원

* '20년 지원 규모 : 700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1357



Q.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 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회생·개인회생·청산절차 진행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용어설명

신용도 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대출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해당 정보의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이하 "연체정보 등" 이라 한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3-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기초·전문교육, 상품화 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점(471),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562)으로 창업하려는 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 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공고일 현재 및 공고일부터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업종불문)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자금(융자), 사업화 지원 (보조금) 등
 - 창업교육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 지원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상품화 지원 교육 프로그램 포함)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 ※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 창업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21.1월, 6월 예정(연 2기수 운영)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서면·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교육대상자 선발(15개 지역, 기수 당 250명 내외)
- * 아이디어의 참신성, 창업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전문성,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평가

사관학교	연락처	장소
서울	☎ 02-717-96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루브 7층
부산/울산/경남	☎ 051-463-0212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	☎ 053-353-7667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전남/전북	☎ 062-367-0135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경기/인천	☎ 031-204-3014	경기 수원 영통구 반달로 87, 4층
대전/충북	☎ 042-363-7494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 (창업자금)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심사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 교육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을 심사
- ※ 세부 심사기준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직접입력)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구비 후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 신용평가 확인서 등

제출서류

처리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기초교육	점포경영체험 (상품화 지원)	사업화 지원
	13기	'21.1월중 ~'21.2월중	'21.2월말	'21.3월초 ~4월초	'21.4월말 ~8월말	'21.9월초 ~12월말
	14기	'21.5월중 ~'21.6월말	'21.7월초	'21.7월중 ~8월말	'21.9월초 ~12월말	'22.1월초 ~'22.4월말

※ 세부 일정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교육생 선발 520명 내외(예산 189억원)

- 문의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http://newbiz.sbiz.or.kr>)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만 19세 이상으로서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 시 부담금이 있나요?

A. 네, 교육 수수료 후 사업화 지원을 받을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0%, 예정)

3-7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업종별 상권·입지·경쟁·수익정보 등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전국민(소상공인 창업에 관심 있거나, 현재 창업 중인 자)

지원내용 ● 상권분석 : 특정 지역·영역·업종의 업종, 매출, 인구, 지역정보의 상권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대분류 8종, 세세분류 771개

업종	선택상권·행정구역별 선택업종 업소 추이, 업종 생애주기, 업력현황 등
매출	선택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주중·요일별·시간대별·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율 등
인구	선택영역 성별·연령별 주거/직장인구,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월별 유동인구 추이,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별 분포 등
지역	성별·연령별·행정동별·금액구간별 소득/소비, 주요시설 추이·현황, 학교시설, 교통시설

- 경쟁분석 :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 입지분석 :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 제공
- 수익분석 :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제공

음식(21)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칼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곰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소매(12)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주얼스포츠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육실용품, 일반가구소매
서비스(12)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델여관여인숙,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음악미술체육), 학원(입시),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제공업종 동일

- 경영컨설팅 : 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

음식(5)	커피전문점/카페/다방, 한식/백반/한정식, 갈비/삼겹살, 후라이드/양념치킨, 라면/김밥/분식
-------	---

- 점포이력 : 특정 위치의 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 제공
- 업종추천 :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 고객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 제시
 - * 7개 광역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전
- 창업기상도 : 7개 광역시의 3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서비스 개선 내역>

- (분석 업종 확대) 경쟁분석서비스(45개 → 55개), 창업기상도 (3개→5개) 업종 확대
 - * 경쟁분석: 정육점, 독서실, 부대찌개/섞여찌개, 냉면집, 식료품점, 설렁탕집, 여성의류전문점, 남성미용실, 당구장, 학원-외국어/어학
 - ** 창업기상도: 편의점, 여성미용실
- (분석 서비스 강화) 입지 관련 데이터를 통해 출점지 추정 매출 및 소비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입지분석’ 서비스에 신규 분석항목 제공(5개 업종)
 - * 제공업종: 한식/백반/한정식, 커피전문점, 편의점, 후라이드/양념치킨, 여성미용실
- (편의성 강화) 폴스크린 방식 분석 디자인 설계, 인포그래픽 형태의 분석 보고서 개편, 비회원을 위한 간편 분석서비스 신설 및 서비스 통합

이용방법

- (포털) 검색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앱 설치 후 이용
-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ib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 1644-530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3, 44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빅데이터실) 042-363-7888, 7881

Q&A



Q. 상권정보시스템 업종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상권정보시스템은 소상공인이 주된 창업을 하는 8대 업종을 기준으로 세부 업종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체 분류체계를 이용하였으나, 유관기관과의 분류체계 간 연계를 위해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는 창업 지원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성실 실패 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 원 용자 지원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사업자 포함)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천만원 용자 지원

* 용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신청·접수

-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준비도, 창업자 역량, 사업성 등을 서면 및 대면 평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0명 내외(발굴 5.18억 원, 연계자금 200억 원)

* '20년 지원현황 : 1,000명(1인 최대 2천만원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0
-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363-7812,7844

Q&A



Q. 생활 혁신형 창업이란?

- A.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 '생활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생계형과 기술창업의 중간)를 말합니다.

용어설명

성공불 용자 : 해외자원개발 등 성공확률보다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3-9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면대면 교육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과 기술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

* '21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예정

신청·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접속 후 e-러닝 교육 신청

지원규모 ● 소상공인 전체
- '20년 지원현황 : 183,474명 수료

문의처 ● 교육신청_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 자금, 오프라인교육 문의(1357), e-러닝 교육 시스템 문의(1644-5302)

3-10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향상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교육 실시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및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종인자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15,000여명)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바우처 형식, 민간교육기관이 수행)
 - * 후속지원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2,700명)
 -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한 업종별 기술교육, 중장년층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현장교육 등 실습형 교육 지원(국비 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수행)
- 온라인 실시간·쌍방향 교육(누구나)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의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업종별·수준별·대상별 매주 정기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지원
- 전용교육장 교육(3,300명)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IT관련 스마트 교육 중점 지원(5개 전용교육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프로그램 신설

신청·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경영교육 →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교육신청' 클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신청·접수

교육수강

교육비 신청·지급

- (경영개선교육 및 전용교육장)

교육생 모집

신청·접수

교육수강

만족도 조사

지원규모

- 21,000명 내외(예산 108.6억원)

* '20년 지원현황 : 교육진행 중(예산 120.6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363-7821~22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50만원한도)를 지원해드립니다.

용어설명

민간교육기관 : 학원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원, 평생 교육시설 등

3-1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대상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 개선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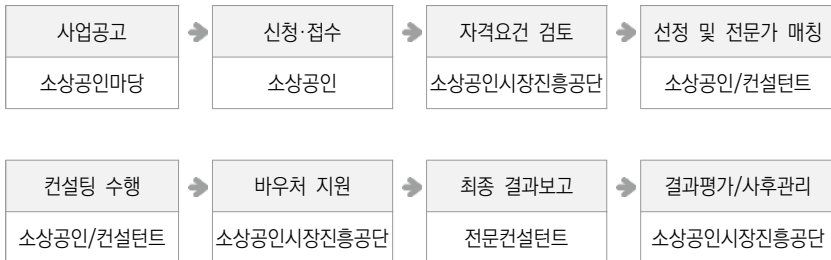
지원내용 ●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0개 업체 내외(예산 8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363-7833~4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1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법률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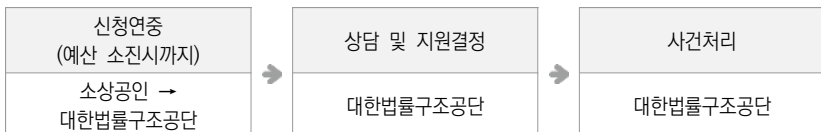
* 예시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개 업체 내외(예산 1억원)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 (예) 2인가구: 3,740,000원, 4인가구: 5,936,000원 <2020년 기준>

3-13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맞춤형 지원으로 소공인 역량강화

업종 별, 지역 별 집적지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경영 전반과 숙련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설치된 해당 집적지 및 인근지역의 소공인
*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시제품제작, 판로개척 등) 지원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교육	경영·기술 및 스마트 전문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컨설팅	경영애로 해소 및 판매촉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자율사업	공동전시회, 시제품개발 등 소공인의 매출·고용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자율사업

- 신청·접수** ● 연중 신청·접수
- 소공인특화지원센터별 지원내용 및 모집 시기 상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 소공인 확인서류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신청·접수
(소공인→센터)평가·선정
(센터 평가위원회)사업수행
(소공인)결과보고
(소공인→센터)

- 지원규모** ● 소공인 직접지원 시 업체당 5백만원 한도 내 지원(단, 센터 사업별 지원규모 상이)
* '20년 지원현황 : 전국 34개 센터 설치·운영으로 약 4,700명 소공인 지원(중복 포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문의처 (‘20. 12 기준)〉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독산의류봉제센터	070-4206-1773
2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서울문래기계금속센터	070-4464-9268
3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봉익주얼리센터	02-766-1599
4	서울	중구(을지로동)	인쇄	서울을지로인쇄센터	02-2277-2922
5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02-919-9623
6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02-741-5365
7	서울	광진구(종곡동)	의류봉제	서울광진의류제조센터	02-467-8251
8	경기	포천시(가산면)	가구제조	포천가구제조센터	031-539-5093
9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장항인쇄센터	031-913-9401
10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군포당정금속가공센터	031-454-4881
11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신흥전기장비센터	032-234-5910
12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	성남상대원식품제조센터	031-750-2870
13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 및 장비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070-4170-5973
14	경기	안양시(관양동)	전자부품	안양전자부품제조센터	031-8045-6711
15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영덕전자부품센터	031-8067-5041
16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 및 장비	화성함남기타기계장비센터	070-4919-0048
17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및 장비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	032-723-9983
18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충남금산인삼센터	041-750-1653
19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중앙인쇄센터	043-299-1082
20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형제조	대전상서금속가공센터	042-939-4827
21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및 장비	대전오정기타기계장비센터	042-629-7728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22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정동인쇄센터	042-226-5556
23	전남	무안군(청계면)	도자기 제조	전남무안도자제조센터	061-450-6357
24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전북순창장류제조센터	063-652-1034
25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팔복금속가공센터	063-219-0411
26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서남인쇄센터	062-236-5012
27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대구대봉의류봉제센터	053-783-3399
28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성내주얼리센터	053-219-4422
29	대구	서구(평리동)	의류제조	대구평리의류제조센터	053-721-7443
30	대구	북구(노원동)	안경제조	대구노원안경제조센터	053-350-7862
31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제조	부산범일의류제조센터	051-631-7220
32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 가방, 신발	부산범천가죽가방신발센터	051-890-2128
33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범천귀금속센터	051-636-7510
34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 제조	김해진례도자센터	070-4903-5545

Q&A



Q.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은 '소공인'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특화지원센터 소재 집적지 내 예비소공인 및 근로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특화지원센터 사업 별로 대상자는 상이합니다.

3-1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의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외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협동조합은 사업참여 가능)
-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내용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 브랜드·마케팅·장비·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
 -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 판로지원 : 소셜커머스, V-커머스, 판매전 등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신청·접수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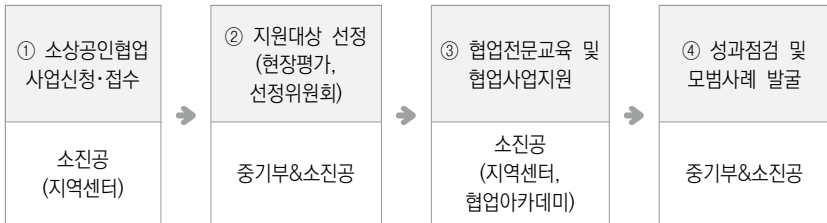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창출, 조합 규모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400개 조합(166억원)
 - * 공동사업(200개 내외), 판로사업(200개 내외)
 - * '20년 지원현황 : 공동사업(211개), 판로사업(183개)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4,7720~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공동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네.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중 최소 5인 이상,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비협동조합의 경우, 협업아카데미 참여를 통해 조합설립 및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인큐베이팅,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3-15 스마트슈퍼 육성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동네슈퍼가 비대면 소비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네슈퍼 스마트화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 점포면적 165㎡ 미만
 -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이용 가능한 POS 기기 보유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점포

지원내용

- 스마트슈퍼 기술·장비 도입
 - 출입인증장치, 셀프계산대, CCTV 등
- 점포경영 스마트화
 - 스마트슈퍼 운영기법 등 컨설팅·교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20년 시범사업 → '21년 신규사업

신청·접수

- 기초지자체 등 수행기관 모집공고(홈페이지 등)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위원회 → 협약체결
 - * 자격요건 구비여부, 점주의 참여의지 및 혁신역량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원규모 ● 전국 800개 내외 스마트슈퍼 구축

* '20년 지원현황 :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5개 구축

문의처

-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지원실 : (042) 363-7745~774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042) 481-3952, 4583



Q. 스마트슈퍼란 무엇인가요?

A. 주간은 유인,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형 점포로 출입인증 장치, 셀프계산대, CCTV등 도입으로 심야 무인판매가 가능한 점포입니다.

3-1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가맹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맹본부 지원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메뉴 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가맹점 교육 및 경영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업력 최소 1년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 등 유망소상공인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 (창업단계) 유망아이템 발굴, 체계구축 및 BM개발, 가맹본부·가맹점 표준 매뉴얼 개발, 브랜드디자인 등 지원
 - (성장단계) IT환경구축, 가맹점 교육 등 지원
 - (성숙단계) 가맹본부 역량에 따라 디자인, 마케팅, 신메뉴개발, 스마트화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

지원분야	항목	내 용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비즈니스 모델구축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성장전략 수립 지원
	가맹점 교육	법률, 세무, 노무, 금융 등 가맹점 운영관련 교육
브랜드 디자인	BI·CI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CI 개발
	포장,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 포장·용기, 가맹점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가맹본부 운영 시스템 구축	수발주, 가맹점 관리 등 가맹본부 운영 시스템의 구축, 기존 시스템 사용 지원
	그룹웨어 구축	전자결재 등 가맹본부 내부 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사용 지원
마케팅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방송홍보, 국내 박람회 참가 등 부진가맹점 진단지 제작, 프로모션 제품 제작 등
스마트화 DB구축	스마트화	스마트설비·기기 도입, 자문 등
	DB구축	가맹본부·가맹점 운영관련 데이터베이스화
신메뉴 개발		외부 전문기관 활용 신 메뉴/서비스 개발
인증	규격인증	ISO, FDA, 할랄 등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지원
수준평가	수준평가 비용	수준평가 신청비용

* 성장단계별 지원내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일원화된 지원이 아닌 가맹본부의 성장단계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biz.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상생협력 계획·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최근 3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처리절차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 12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20년 지원현황 : 21개 프랜차이즈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42, 774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1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량 평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으로 평가합니다.

지원대상 ● 업력 최소 1년 이상인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대기업, 휴·폐업, 세금체납,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 ▶ 정보공개서 미등록한 경우

지원내용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준평가

등급	지 원 내 용	비 고
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입성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
I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fc.sbiz.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평가비용 : 160만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가맹본부·계약·가맹점지원·관계·시스템성과 등 5개 영역을 평가하여 4등급 ((I~IV)으로 등급화

제출서류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등
 -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처리절차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사업공고

신청·접수

현장평가 및
가맹점 서베이

평가결과 확정

지원규모

- 신청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 '20년 지원현황 : (수준평가) 38개사, (연계지원) 12개 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42, 774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18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사업

소공인의 작업환경 개선

소공인 작업 환경에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제품 생산 능력 향상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정부사업에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 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4.2백만원 지원(국비 70%이내, 참여기업 부담 30% 이상)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보조 비율
에너지효율개선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70%
생산성향상지원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안 전 조 치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기 타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신청·접수 ● (방법)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간) 별도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

* 상세 기간은 신청 공고문 참고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공인 여부, 필수 서류 완비 여부 등 요건검토 후 접수 순으로 사전진단 진행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 소공인 확인서류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 추진절차

신청·접수
(소공인)

요건검토
(소진공)

사점진단·사업수행
(전문기관, 소공인)

정산·지급
(소진공)

지원규모 ● 1,600개사 내외

* '20년 지원현황 : 2,000개사 내외

문의처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경영성장-소공인작업환경개선」 참고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 사업 정부지원금 지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 사업 정부지원금 지급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금지급 및 사업수행 후, 잔금(지원금) 정산까지 최소 1달 이상 소요됨을 사전에 수행(공급)업체에 반드시 통보 및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실행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공급)업체로 직접 지급합니다.
 - 정부지원금 한도는 최대 4.2백만원(공급가액의 70%) 입니다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합니다.

3-19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공동 시설 및 장비 등 구축 지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 전시장, 공동 장비실, 공동 창고,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 내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내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내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 지원내용** ● 공동기반시설 구축비용 중 2/3범위 내 국비 지원(운영비 제외)
 - (구축비) 국비 2/3이내와 지방비 1/3 이상으로 구성
 - (운영비)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부대비용 등)는 지자체(또는 민간)가 부담

- 신청·접수** ●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간) 별도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
 * 상세 기간은 신청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 연차별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사전검토
(중기부, 소진공)현장실사
(현장실사단)종합평가
(평가위원회)집적지구 지정
(중기부)인프라 구축
(지자체)

- 지원규모** ● 공동기반시설 구축 7개 내외
 * '20년 지원 현황 : 전국 30개 집적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3-20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기획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지원내용

- 소공인 집적지에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의 50%이내 지원(25억 내외)

신청·접수

- 2021년 초,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사전검토
(중기부, 공단)현장실사
(현장실사단)종합평가
(평가위원회)센터 지정
(중기부)센터 구축
(지자체)

지원규모

- 복합지원센터 구축 1개 내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3-21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100년을 이어갈 우수소공인 발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능력 배양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업력 15년 이상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소공인
 - *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포함 시 신청 가능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 * 상속인의 업력이 최소 8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 인증현판 제공, 공단 융자금리 우대 및 공단 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 * 일부 지원에 대해 자부담 비용 발생, 자세한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홍보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홍보영상 제작·방영 등
작업환경개선	작업장 내 장비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등 작업환경개선비용 지원
자금지원	공단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지원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지원사업우대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등 백년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포상우대	매년 시행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 (방법)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기간) 연중 상시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해 기본요건 충족여부, 경영환경 및 숙련 기술 보유 정도, 성장가능성 등 소공인 역량 평가
- 관련 수상 실적, 국민추천제 추천자 등 우대사항에 대해 가점 부여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 신청기술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500여개 백년소공인 선정·지원
* '20년 지원현황 : '19~'20년 300여개 업체 백년소공인 선정·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경영성장-백년소공인」 참고
-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나요?

A. 아닙니다. 온라인과 더불어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방문 시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Q.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신청 시 업력확인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부터 신청일까지 15년 이상인지 확인 바랍니다.

* 재창업 및 가업승계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확인 후 인정, 업체의 소속직원으로서의 근무경력 불인정

3-22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소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소공인의 급변하는 제조·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자동화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화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정부사업에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중인 업체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 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지원(국비 70%이내, 참여기업 부담 30% 이상)
-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설비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정보화 등 스마트화 지원
- (기획·컨설팅)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개발목적, 문제진단, 개발방향 등 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기획 전문가 매칭 지원
- (개발비용) 신청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보조 비율
인건비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인력으로 제한	70%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구입불가), 시약·재료 구입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위탁개발비	과제개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기술서비스활용비	과제개발 관련 특허·출원 등록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접수

-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간) 별도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
* 상세 기간은 신청 공고문 참고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출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과제 추진체계 및 계획에 따른 제품생산 연계 가능성, 과제수행 후 사업화 가능성 등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 소공인 확인서류 등
 - * 상세 내용은 신청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 추진절차



지원규모

- 600개사 내외
 - * '20년 지원현황 : 82개사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우대사항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신청에 가점사항은 첫걸음소공인, 숙련기술인, 소공인특화자금 활용 소공인, 상권활성화구역 소공인으로 세부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23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활동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정부사업에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의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 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지원(국비 80%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보조 비율
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지원	80%
온·오프라인물 입점	국내외 온·오프라인 물(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백화점, 전문매장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SNS마케팅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비용 지원	
홍보영상·광고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디자인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신청·접수 ●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간) 별도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

* 상세 기간은 신청 공고문 참고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출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이해도, 목표달성 가능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 소공인 확인서류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공고문 참고

- 처리절차** ● 추진절차

신청·접수
(소진공)

선정평가
(소진공)

최종선정 협약
(소진공↔소공인)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소공인→소진공)

- 지원규모** ● 218개사

* '20년 지원현황 : 266개사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고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A. 최근 1년간 매출에서 “제조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제조업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혹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24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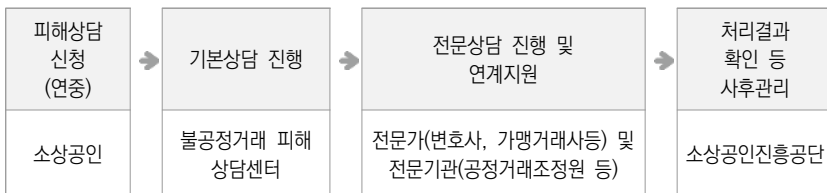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의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상담지원) 전국 66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 상담) 본부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 신청·접수**
- 전국 66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 홈페이지(<http://www.sbiz.or.kr/unfair/main.do>) 접수
 - 전화상담 접수 (1599-0209)

처리절차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법무지원팀 : 042-363-7615, 7616

Q&A

**Q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거래, 가맹사업거래, 수위탁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 약관 및 상가임대차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인가요?

A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가맹 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광고행위, 수위탁/하도급거래에서의 대금 미지급, 대규모유통업거래의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부당한 반품,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및 상가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25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판로채널 입점 지원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 채널별 입점 지원,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
- ▶ (휴·폐업 및 부도)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 (제외품목)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급격한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
- (온라인 역량강화)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 교육(1만명), 상품성 개선(1,500개), 전담셀러(10,000개) 지원
 -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온라인쇼핑몰 기회전(400회), V-커머스(750회), O2O플랫폼(16,000개), 해외온라인몰(300개), 홈쇼핑 입점(300개) 등 지원
 - (라이브커머스)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1인 크리에이터 교육(1,000명), 콘텐츠 제작(2,000개),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700여회) 등 신 유통 채널 지원
 - (온라인기반구축) 가치샵사 플랫폼 운영, 구독경제화, 플래그쉽 스토어 지원 등 온라인 기반 마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및 온라인 채널 지원 확대
- 온라인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 확대 운영
-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구독경제화, 스마트 플래그쉽 스토어, 온·오프라인 융합 판매전 등 신규 지원

신청접수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를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절차

- 신청접수 → 역량상품 진단 → 품평회 개최 → 선정·지원
- * 상세내용 및 절차는 홈페이지 확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상품정보,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처리절차

- 온라인역량강화, 온라인채널친출지원, 라이브커머스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 온라인기반마련 : 별도 사업 절차에 따름

지원규모

- 약 32,600개 소상공인, 약 1만여명 교육(예산 726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 042-481-6879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 유통채널 입점지원에 소상공인 비용부담이 있나요?

- A. 입점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판매분에 대한 일정 수수료는 유통채널에 지급해야합니다. 수수료는 채널별로 상이하며, 지원 사업임을 감안한 인하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Q. 가차샵시다플랫폼 입점,판매에 대한 소상공인 수수료가 있나요?

- A. 입점 수수료가 3%~5%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결제분에 대한 최소한의 결제 수수료 등의 최소한의 운영비 일뿐 추가적인 판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3-26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가맹 가능)

지원내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대 적용

연매출액	8억이하	8억~12억	12억 초과
수수료율	0%	0.3%	0.5%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 1.2%

- 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지원

구 분	내 용
인프라 구축	QR키트 보급, 기존 POS기기 업데이트 및 QR단말기 보급
홍보·마케팅	제로페이 사업 홍보 및 결제사업자 공동마케팅 등

● 소비자
- 30% 소득공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공공주차장, 공원, 체육 시설 등),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제공

신청·접수 ● 제로페이 홈페이지 (www.zeropay.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을 통해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오프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본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2-481-6828, 6831
-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스마트혁신실 : 042-363-7730, 7734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02-2095-5957, 5925, 5912, 042-345-5926
- 제로페이 고객센터 : 1670-0582
- 홈페이지 : www.zeropay.or.kr

Q&A



Q.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나요?

A. 제로페이는 오픈플랫폼으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앱(oo페이, 은행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소상공인만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일반가맹점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가맹점에는 0%대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일반가맹점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의 1.2%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3-27

백년가게 육성사업

100년을 이어갈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 및 성장지원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업 10억원 이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 (증빙제출 必)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지원내용

- (컨설팅) 점포 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 (금융) 보증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공고문 참조)
-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신청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시설·판로) 노후 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

* '21년도 우대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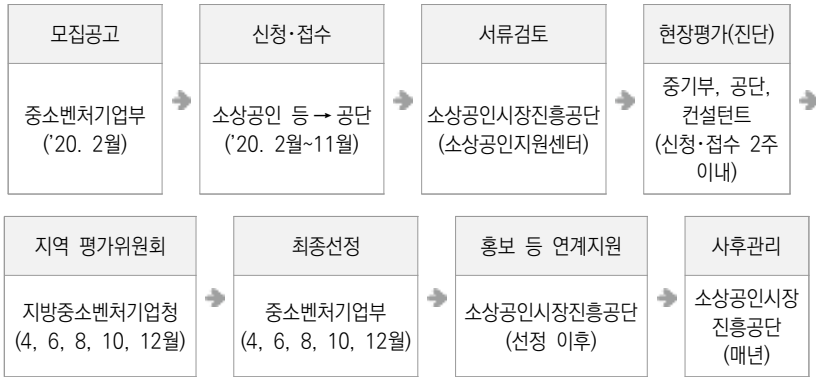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국민추천제도*활용 E-mail (100year@semas.or.kr) 접수 병행
 -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內 국민추천 페이지를 통해 타인이 추천 가능
- (신청기간) '21.1 ~ (연중 수시신청)
- (평가기준) 행정처분이력,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1부	양식제공(모집공고)
2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부	양식제공(모집공고)
3	증빙자료(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해당부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확인
4	사업자등록증	1부	업력, 업종 등 확인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800개 내외 업체(58.5억원)

문의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82/7985/7986),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2-481-3914/3916),
홈페이지(www.mss.go.kr)



Q.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3-28 이의공유형 사업화지원

맞춤형 보육을 통한 혁신성장지원

경영·서비스 혁신의지와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성공CEO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맞춤형 보육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교육, 성공CEO의 맞춤형보육, 사업화항목 지원 등
- (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성공CEO의 강의
 - (보육) 소상공인 애로사항에 대해 성공CEO 및 컨설턴트 등의 현장맞춤형 보육
 - (홍보) 사업전후를 비교한 영상 제작·송출, 사례집 제작 등
 - (사업화) 소상공인 애로사항에 대한 사업화항목 지원
 - * 브랜드 개발, 상품·시설개선, 마케팅지원 등
 - (이의공유) 성공CEO와 협력과제 달성 후 추가매출 발생 시 금전공유, 지분분배 등의 이의공유 실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소상공인 지원규모 : ('20)50곳→('21)70곳

- 신청·접수** ●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이메일(share@semas.or.kr) 제출
- (신청기간) '21년 3월(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표자의 경영환경, 애로사항, 대표자의 성장노력, 이의공유 의지, 사업이해도, 아이템의 혁신성 등
- 제로페이 가입, 자격증/특허증 보유, 입상경력 등(공고문 참조)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양식제공(모집공고)
2	신청 기술서	양식제공(모집공고)
3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4	매출 증빙자료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제공(모집공고)
6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 발급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70여개 소상공인 선정·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88, 7986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2-481-396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어떤 성공CEO를 매칭해주나요?

A. 소상공인의 업종 및 애로사항 조사자료를 기초로 동일업종 또는 유사 분야에 경험이 있는 CEO를 위주로 매칭하게 됩니다.

Q. 사업화항목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A. 성공CEO의 현장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항목을 지원하며, 공단에서 미리 선정한 수행업체에서 해당항목에 대하여 사업화를 수행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3-29

희망리턴패키지

안정적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취업·재창업 등 재기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기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채무관리, 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비지원
 - 점포 철거·원상복구비용(최대 200만원 지원)
- 취업교육
 - 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정보, 개인 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 완료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유권해석 등 서면·대면 자문실시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재창업교육
 - 유망·특화·융복합 업종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위한 자존감회복·경영·마케팅노하우·실습 등 전문교육 제공(60시간 이내, 5,000명 내외)

- 재창업멘토링
 - 재창업 마케팅·경영·세무관련 1:1 또는 소그룹 멘토링 지원(업체당 4회, 1,000건 내외)
- LH상가 임대 등 재창업 사업화 지원
 - LH상가 입점 및 상권분석 컨설팅, 재창업 사업화자금 및 직접대출 금리 우대, 공유주방 입점·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
 - * 별도 공고 및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자 선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재창업 사업화 지원 신설('21년~)

신청·접수

- 희망리턴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재창업패키지) 아이템의 시장성, 업종 적합성, 유망성, 소상공인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 종합평가

제출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절차

- 점포철거지원, 전직장려수당, 법률자문

사업공고

신청·접수

사업지원

- 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컨설턴트·교육기관
모집·선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사업지원

- 재창업패키지

재창업교육신청

멘토링 신청

사업화평가·
선정자 지원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 사업정리컨설팅(7,000건, 6,300백만원)
- 점포철거비지원(7,000건, 14,000백만원)
- 취업교육(13,000명, 16,900백만원)
- 전직장려수당(8,000건, 8,000백만원)
- 법률자문(4,000건, 2,400백만원)
- 재창업패키지(6,000건, 19,500백만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69, 7823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s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 재창업 교육을 이수해야 사업화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선 재창업교육(60시간 이내)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3-3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 활성화 및 폐업대비책 마련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미지원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신청·접수 ● 홈페이지(<https://www.sbiz.or.kr/eip/main/main.do>)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납부실적 확인

보험료 지원

지원규모

- 13,000개 업체(25.61억원)
- * '20년 지원현황 : 9,500개 업체(예산 22.06억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8, 7867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s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A. 네, 소상공인(사업주)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신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언제하고, 필요서류는 뭔가요?

A. 지원신청은 예산소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만 신청하시면 3년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어설명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소득대체지표)

3-3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 우대

- ▶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지원내용

- 공영 주차장 건립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시 국비 보조
 -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지하 주차장·주차빌딩·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 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전통시장 고객전용 공영주차장의 개량 및 보수시 국비 보조
 - * 주차장 노후시설 개보수, 차단기·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CCTV 등 설치 지원
-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 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 주차 쿠폰 발행비용, 주차장 임대계약, 주차요원 인건비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실집행률 50%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접수

- '21. 5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시·도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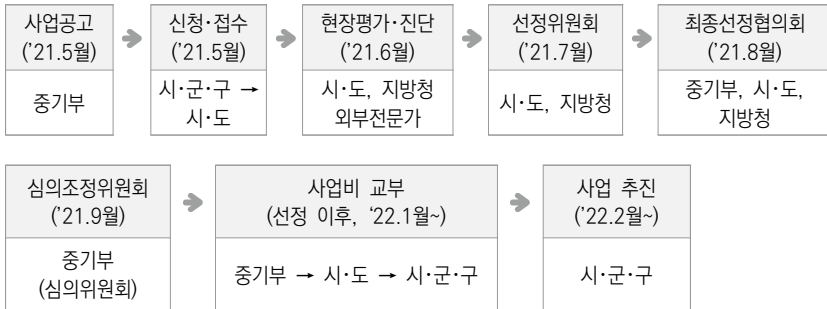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연도 심사계획서 (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지원규모 : 90곳 시장(752억원)
 - * '20년 지원현황(1,424백만원) : 88곳(주차장 건립지원), 20곳(주차장 개보수 지원), 27곳(공공·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2-481-4563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Q.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공영주차장) 공공 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 경영하는 주차장

3-3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기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지원 우대

- ▶ 화재위험이 높은시장(C등급 이하 우선지원)
- ▶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인 시장
- ▶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구간 노후전선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자체 부담가능)
- 개별점포 국비 기준 125만원 이내(시장규모 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신청접수

- '21. 5월 중
- 전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시·도)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통시장 70곳 내외(57억원)
- '20년 지원현황 : 65곳 시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2-481-4563, 3958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33

시장경영bauer지원

자율적 사업 설계를 통한 자생력 강화

bauer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우대사항

(공통 우대사항)

-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개별사업)

- ▶ '20년 시장경영bauer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6년~'20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 공동마케팅, 배송서비스, 상인교육, 시장활성화컨설팅, 시장매니저지원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21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지원 대상은 제외)
-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지원내용

- 주어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바우처 활용범위 :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업부문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구분	분야	바우처 활용 범위
사업지원 바우처	공동 마케팅	▶ 온라인 시장 진출 : 상권분석, 품목 개발,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 ▶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라마켓 등 ▶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신문, 잡지, SNS, 포털 등 ▶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상인 교육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 자문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지원 바우처	시장 매니저	▶ 상인회 일반행정사무 수행 ▶ 이벤트·축제·행사 지원, 정부지원사업 신청·관리·정산 등
	배송 서비스	▶ 근거리, 택배, 온라인 배송서비스 운영 및 관리 - 콜센터 직원, 배송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 바우처		▶ 상권·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 민간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플랫폼에 한함(자체 쇼핑몰·앱 구축 불가) - 도입, 구축, 운영, 프로모션(배송비 무료, 할인 쿠폰, 광고 등)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 플랫폼 바우처 신규 개설
 - 전통시장 오프라인 도·소매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권·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별도로 지원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선정등급별 상이('가'급 60백만원, '나'급 40백만원, '다'급 30백만원)
- 지원조건 : 사업부문별 상이

지원분야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온라인	마케팅, 교육, 경영자문, 온라인 플랫폼	▶ 국비 90%, 지방비·자부담 10%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 시장 규모에 따라 국비 70~30%, 지방비·자부담 30~7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소형</th> <th>중형</th> <th>대형</th> </tr> </thead> <tbody> <tr> <td>영업점포 수</td> <td>0 ~ 299</td> <td>300 ~ 799</td> <td>800 이상</td> </tr> <tr> <td>국비</td> <td>70%</td> <td>50%</td> <td>30%</td> </tr> <tr> <td>지방비·자부담</td> <td>30%</td> <td>50%</td> <td>70%</td> </tr> </tbody> </table>	구분	소형	중형	대형	영업점포 수	0 ~ 299	300 ~ 799	800 이상	국비	70%	50%	30%	지방비·자부담	30%	50%	70%
		구분	소형	중형	대형													
		영업점포 수	0 ~ 299	300 ~ 799	800 이상													
국비	70%	50%	30%															
지방비·자부담	30%	50%	70%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절차)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검토) → 시·도(추천) → 공단(접수) → 지방중기청(평가·선정) → 공단(선정결과 통보)
 -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첨부파일은 이메일 송부(신청·접수 목록 전자문서 기재 필수)
- 신청기간 : '20.7.1(수) ~ '20.7.24(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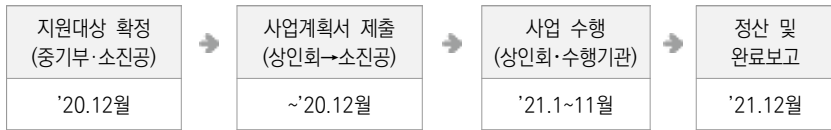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선진화, 상인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화등록증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절차



지원규모

- 350곳 내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21년 예산 141억원)
- * '20년 지원현황 : 350곳 내외 전통시장·상점가(상인연합회 16곳 포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17, 892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 042-363-7635, 763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바우처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바우처는 사업·인력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로 관리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된 바우처를 수행기관(교육기관, 이벤트 회사 등에 제시하고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으면 됩니다.(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기관에 지급)

3-34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1,5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시중의 16개 금융기관 및 BC카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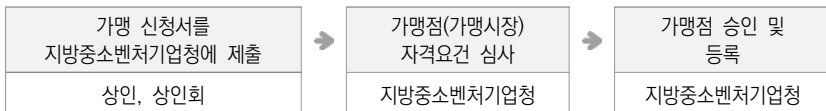
발행규모 ● '21년 3조원 규모 발행계획

상품권 구매처

- 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 우리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 모바일상품권 : 6개 금융기관 및 8개 간편결제사 앱(APP)
 - 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농협
 - 체크페이·비플·머니트리·페이코·티머니페이·핀크·핀트·슬배생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http://sijangtong.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0)에서 확인
 - *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전용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도 사용 가능, 사용 전 BC카드 홈페이지(<https://bccard.com>)에서 소득공제(기명등록), 인터넷/ISP등록 필요
- 가맹점 등록 신청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http://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1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지원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 상품권 판매, 회수, 카드수수료 국비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 상품권 환전대행시 수수료 지급

상품권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제로페이 콜센터(모바일상품권 관련 문의) : 1670-05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3, 7646, 7632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2-481-8930

3-3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지원 우대 사항

-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지원 제외 대상

- ▶ 접수 마감일('20.07.24)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20.07.24) 기준 최근 3개년('17.07.27~'20.07.24)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접수 마감일('20.07.46) 기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기존에 참여중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 * 임대차계약건수 기준
 - * 공설시장 내 영업점포의 경우에도 상생협약 체결 필수
 -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올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지원내용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지역선도형) :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
 - 한류 트렌드와 외국인 취향을 반영한 특화콘텐츠 개발
 - 사후면세점, 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
 - 작은 도서관, 공공어린이집, 도시락카페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공유경제 프로그램 추진
 - 다른 시장 또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형 수익모델 개발 추진 등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의 디자인 재생 (복합문화공간, 골목미술관, 아트거리 등)
 - 지역특산품과 지역 장인(丈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니어몰 조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 사업 일체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시장의 기초역량 강화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 결제편의, 고객센터, 위생청결(3대 고객센터 혁신)/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예방(2대 역량강화)
- * 첫걸음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

신청·접수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서류를 기초자재 제출
-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0년 7월 13일~ 7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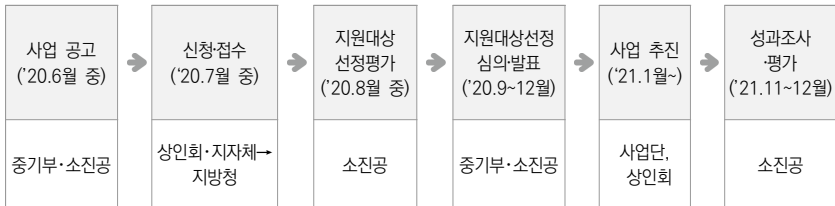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 3대 고객센터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
 - ②고객신뢰(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 ③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 2대 역량강화 과제
 - ①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 ②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예방훈련 등)

제출서류

-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후보시장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름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97곳 내외('21년도 예산 234억원)
 - * '21년 지원현황 : 신규 51곳 포함 97곳, 234억원 지원(국비 기준)
 - * '20년도 시장 : '19년 선정완료, '21년도 시장 : '20년 선정완료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지역선도형) : 2년간 시장 당 최대 20억원 이내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 지원)
 -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2-481-451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622, 762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광형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특성화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다음 단계의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 * 사업단계 : ① 첫걸음기반조성 → ②문화관광형 → ③지역선도형
- Q.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문화관광형, 지역선도형 사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기존 문화관광형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시장도 문화관광형 사업에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 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시장은 최상위 단계의 지원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36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mall)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조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희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 미등록 상점가의 경우 지자체가 청년몰 조성완료 후 상점가 등록을 확약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복합청년몰 조성 후 청년상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지원은 별도 추진
- (활성화 및 확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지원 우대 사항

- ▶ (공통 우대사항)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 (개별사업 우대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최우선 지원
 - 혁신형 청년몰 추진시장 우대

지원 제외 대상(청년물)

- ▶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 기준 시장 내에 청년물(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시장
-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년('17.07.25~'20.07.24)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물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청년상인)

- ① 미성년자
- ② 신청일 현재 청년물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③ '15~'19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물)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에 중도 포기한 자
- ④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을 희망하는 자
- ⑤ 대부, 유사금융 및 부동산 업종을 희망하는 자
- ⑥ 청년상인 육성사업 세칙에 따라 청년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

- ▶ (조성) 청년물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임차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 ①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니며 건물 안전검사 결과 청년물 설치에 이상이 없는 등급일 것
 - * 단, 음식업종을 포함할 경우 수도, 전기, 가스, 오수처리 등이 시설물 설치에 이상이 없을 것
 - ② 신축인 경우 민간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 ③ 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 (활성화 및 확장) 공고 마감일 기준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으로서
 - 공실률 30% 이내, 영업점포 중 청년상인 비율이 60% 이상인 곳(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내용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
 -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반조성
 -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레시피 개발, 경영기술 컨설팅 등
 -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

신청·접수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 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0년 7월 13일~ 7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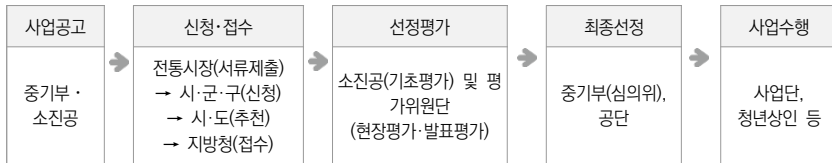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청년몰 조성) 상권활성화 수준, 성장가능성, 시장이 보유한 인프라 및 상인 역량, 지자체(상인회)의 지원계획 등
- (청년몰 활성화·확장)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 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제출서류

-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후보시장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름

처리절차



지원규모

- 복합청년몰 조성 5곳 내외(신규 2곳, 계속 3곳),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3곳 내외,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내외(20억원)
 - * '21년 지원현황 : (1차 모집) 조성2곳, 활성화·확장 3곳 (2차 모집) 조성1곳, 활성화1곳
 - * '20년도 시장 : '19년 선정완료, '21년도 시장 : '20년 선정완료
- 청년몰 조성: 2년간 몰 당 40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몰 활성화: 몰 당 5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몰 확장: 몰 당 10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 청년상인 도약지원: 1인당 최대 10백만원(국비 90%, 자부담 ~10%)
 -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 지원)
 -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781, 7785
- 청년상인육성재단 : 042-252-1414, 042-826-593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 참조

3-37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저렴한 비용의 공제료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사업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등록, 인정)
- 가입단위 :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 ② 재고자산
 -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 (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화재별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제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배상책임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원)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별금 특약		-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원)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급별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가입이 안되는 점포

-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2-481-395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3, 7976
- 콜센터 : 1599-5460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www.fma.semas.or.kr)

3-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안전점검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예방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물을 점검하여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자체 의견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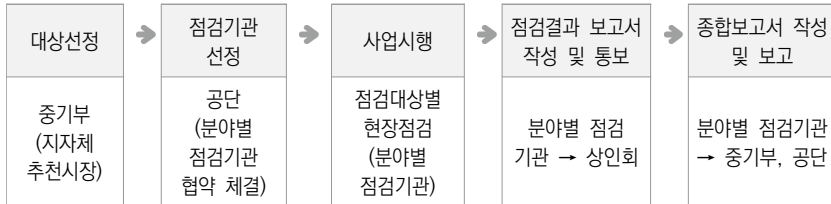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 안전 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 내용〉

구분	점검내용	비고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공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상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공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헛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공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추진절차



지원규모 ● 599곳 시장(상점가) 내외(예산 3,248백만원, 국비 100%)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2-481-395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826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Q. 화재안전점검은 법정의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 2019년 2월 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무료 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를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3-3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초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

-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지원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방법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 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추진절차



지원규모 ● 7,000점포(39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2-481-395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974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Q&A



Q. 공용공간 CCTV자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신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한 화재감시용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제4부 대한상공회의소

4-1 코참경영상담센터	442
4-2 계약서 검토 서비스	444
4-3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445
4-4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446

4-1 코참경영상담센터

경영 실무 애로 해소 지원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무역/관세, 창업/경영, 특허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전화상담(1600-1572)

-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

● 온라인 상담(www.korcham.net)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및 전문위원 답변 확인

● 방문상담

-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내 25개 구상공회에서 상담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상담

처리절차 ● 1단계 상담신청

- 전화(1600-1572), 온라인, 방문 상담신청

● 2단계 상담실행

-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 전문위원이 실시간 질의 확인 후 답변 등록

- 서울시내 본소/구상공회 상담센터에서 대면 상담

지원규모 ● 연간 약 14,000건 이상의 경영애로 상담 실시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Q.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A.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4-2 계약서 검토 서비스

계약서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예방해드리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회원

지원내용 ● 서비스 분야

분 야	주 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 검토위원
 -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

처리절차 ● 올댓비즈(allthatbiz.korcham.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이용횟수 ● 제한 없음 (내부 정책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 홈페이지 <http://allthatbiz.korcham.net>
 - 이메일 review@korcham.net

4-3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보험료 할인을 통한 기업 부담 경감

제품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제조업자가 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가입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등
- 가입 가능한 서비스 용역
 - 승강기,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전기유지 보수작업 등

가입지역

- 국내 및 전세계 (국가별 개별 가입 가능)

가입절차

- 올댓비즈(allthatbiz.korcham.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배상범위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합의금, 법정판결금
- 사고처리비용 : 긴급조치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방어(소송)비용 등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 02-6050-3875~8/Fax. 070-7614-3422)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4-4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양·여행·건강검진·자기계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가입시 제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 휴양소·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쇼핑몰 등 복지분야별 주요서비스를 시장최저가 수준으로 이용 가능

* 주요 서비스업체 : 아고다(휴양소), 그린카(카셰어링), 넥스트에너지 (레저티켓), 선헬스케어(건강검진), SK매직(렌탈), 시원스쿨(어학), 밀리 의서재(도서), SK베너피아(상품)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업소모품관('20.7월), 지역상품관('20.11월) 오픈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처리절차 ● 가입신청 후 24시간 이내 승인

문의처 ● 회원복지팀 : 02-6050-3454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 1588-6555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 : welfare.korcham.net

Q&A



Q. 복지플랫폼에 가입하면 복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복지플랫폼은 근로자 개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별도의 비용(예산)을 지원해 주진 않습니다.

Q. 근로자 개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가 대표로 가입하고 회원승인이 되며, 관리자페이지에 근로자들을 등록하고 아이디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5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450	5-27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495
5-2 이동 KOTRA	452	5-28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	496
5-3 해외시장조사	454	5-29 서비스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497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456	5-30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499
5-5 수출상담회	457	5-31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500
5-6 무역사절단	458	5-32 방산물자 교역지원	501
5-7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460	5-33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503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62	5-34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504
5-9 한국우수상품전	464	5-35 KOTRA 해외시장뉴스	505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466	5-3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506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467	5-37 경제외교 활용포털	507
5-12 수출바우처사업	468	5-38 FTA해외활용지원센터	508
5-1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470	5-39 해외비즈니스수출장지원	510
5-14 지사화사업	472	5-40 수출인큐베이터	512
5-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474	5-41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514
5-1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476	5-42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516
5-17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479	5-43 해외공동물류사업	517
5-18 클라우드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481	5-44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518
5-19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483	5-45 해외지식재산권 보호(IP-DESK)	519
5-20 KOTRA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485	5-46 국내복귀기업 지원	522
5-2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487	5-47 글로벌 M&A진출지원	524
5-22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489	5-48 KOTRA 글로벌 CSR 사업	526
5-23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491	5-49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528
5-24 해외IT지원센터	492	5-50 KOTRA 아카데미	529
5-25 GMV (Global Mobile Vision)	493	5-51 열린무역관	531
5-26 IT컨소시엄 수출지원	494	5-52 경제외교 활용 사업	532

5-1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인증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기업

이용료 ● 무료

상담내용

수출	투자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해외시장정보 ■ 관세, 통관절차 ■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


● 지역별 상담

지 역	연 락 처
미주 및 유럽	고객센터(1600-7119) - 2번(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중화권	
아세안 및 인도	
중동, 아프리카, CIS	
일본, 서남아, 대양주	
해외 인증상담	
기타 상담 (문의 지역 부재 시)	
	내선 1번
	내선 2번
	내선 3번
	내선 4번
	내선 5번
	내선 6번
	내선 7번

● 법률 상담

지 역	상담 내용	상담 수행기관	상담전화
중국	중국 법률 자문 (매주 목 13:00~17:00)	해외진출상담센터 중국 전문 변호사	02-3460-7218

이용방법

- 유선 상담 (음성 및 보이는 ARS 지원)
 -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선택 → '진출 희망지역' 혹은 '상담분야' 선택
- 온라인 상담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 상담 메뉴 중 '무역 투자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 카카오톡 채팅상담
 - QR코드 스캔  → '채팅하기'
 -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색 → '채팅하기'
-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무역투자상담센터) 방문 상담

문의처

- ☎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218

5-2 이동 KOTRA

중소기업의 수출애로해소

중소기업의 수출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무료로 방문 상담해드리는 찾아가는 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대상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용료 ● 무료

- 상담내용**
- KOTRA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 KOTRA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 코로나19 대응 바이어 방한 대행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코로나19 대응 해외 바이어를 대신하여 국내 공장 및 제품 실사 등 지원

진행절차

GCL TEST

사업 신청·접수

방문 컨설팅

마케팅 연계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무역투자 상담 → 현장상담 →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 맞춤형 컨설팅 지원

문의처

- 서울 : 02-3460-7547
- 경기북부 : 070-7931-0442
- 경기 : 031-273-6035
- 인천 : 032-822-9817
- 강원 : 033-261-5312
- 충북 : 070-4185-8448
- 대전충남 : 042-341-8319
- 광주전남 : 062-369-9054
- 전북 : 070-7931-0812
- 대구경북 : 053-659-2280
- 경남 : 055-290-0604
- 부산 : 051-740-4153
- 울산 : 052-289-4654

Q&A



Q. 담당 직원 변경으로 인한 신규 입사자에 대해 무역실무 교육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역계약에서 운송, 보험, 통관절차 및 무역서식 작성요령 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 방문하여 교육진행 가능합니다.

Q. 회사 소재지가 대구인데 서울 위원님께 컨설팅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기업 소재지 관할 지원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용어설명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이란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5-3 해외시장조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바이어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합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기준 ● 인터넷으로 신청 후 9일 이내 해외무역관에서 조사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개별 통보

지원내용
및 참가비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이용료(VAT 미포함)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만원(2~3개사 발굴 및 교신 지원) * 선입금 후 사전조사 착수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5만원/항목 (예: 수요동향+경쟁동향 =300,000원)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연간 6개사까지 무료 * 초과 신청 시, 건당 1만원의 별도 수수료 부과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원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개사)	30만원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 고객이 보유한 해외 바이어리스트에서 귀사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	바이어 1개사당 5만원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무역보험고사(KSURE) 전용 서비스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인력)을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조사 서비스	조사내용 및 조사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
(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바우처로 사용가능)

진행절차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 상단 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 '수요기반' 메뉴 아래 '해외시장조사' → 상단 항목 중 '신청하기' → 사전 유선상담(본사) → 해외무역관 조사 가능여부 검토(약 9일) → 조사 시작(3주) → 결과보고서 송부(본사) → 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 납부 시기 다름

안내
웹페이지

- www.kotra.or.kr/biz - 지원서비스 안내 - 중간 좌측 해외시장조사 클릭

문의처

- ☎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4/7337/7346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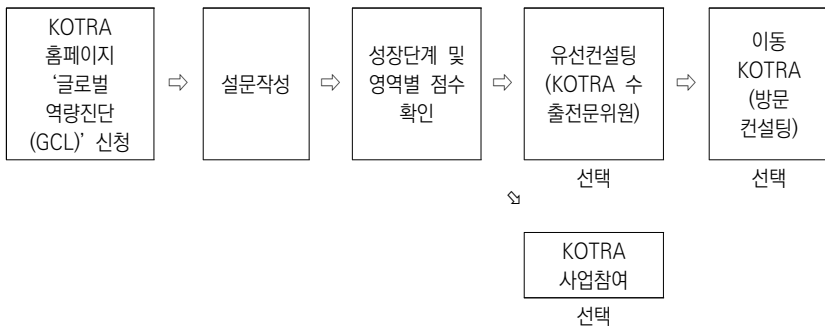
대상기업 ● KOTRA 기업회원

이용료 ● 무료

지원내용 ● 기업의 수출역량 성장단계 확인 및 세부역량별 강약점 분석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등 컨설팅 제공
 * 유선/ 이메일/ 내방/ 기업방문 등 (기업선택)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kotra.or.kr/biz) → 상단 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 로그인 후 설문진행
 ● 신청서류 : 별도 필요서류 없음

진행절차



● GCL결과에 대한 컨설팅 신청 시 1~2일 이내 담당 수출전문위원이 고객님의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문의처 ●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44

5-5

수출상담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와 취급 품목이 일치하고 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참가비

- 무료
- 사업비는 KOTRA 및 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지원

지원내용

-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 방한 바이어와 1:1 온라인/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 및 buyKOREA.org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KOTRA, 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당 품목 바이어의 방한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방한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 주선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상담 후속 지원
- 2021년도 수출상담회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객안내센터(1600-7119) - 1번(KOTRA 사업안내)

5-6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의 수출애로해소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지원내용

- 신청 품목에 대한 목표시장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목표시장 전문 바이어와 1:1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e-카탈로그 제작,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촉전 연계, 긴급지사화 등 사절단 파견 전·후 단계 지원 서비스 연계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e-카탈로그 제작, 현지 특성화 사업(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촉전 연계 등), 긴급지사화 등 사절단 파견 전·후 단계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에서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참가신청

처리절차 ●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선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시장성 조사

참가기업 확정

● (무역사절단 파견)

사절단 파견

상담 주선

바이어1:1상담

후속지원

지원규모 ● 무역사절단 180회 파견, 1,800개사 내외

* '20년 지원현황 : 125회 파견, 약 1,300개사

문의처 ● 수출기업화팀 / KOTRA 홈페이지

Q&A



Q. 코로나 19 상황으로 무역사절단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현지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무역사절단은 온라인 사업으로 변경 추진됩니다. 이 경우, 바이어와의 1:1 상담회는 화상상담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e-카탈로그 제작, 현지 특성화 사업(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촉전 연계 등) 및 긴급지사화 사업이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5-7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유망전시회 한국관 참가 지원

KOTRA와 유관단체가 연간 130여회에 걸쳐 국제 유명 전시회 및 신흥 유망 전시회에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참가비 : 직접경비(부스 임차료, 전시디자인설치비)의 70% 국고지원
- 온·오프라인 70% 국고지원 동일
- 운송비 : 1부스당 1CBM 한도 운송비 100% 지원(해상운송, 편도 기준)
- 행정서비스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선정, 전시회장 출입증, 주최측 디렉토리 신청 등
-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사후관리, 샘플 발송비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직접경비 국고지원을 상향(50%→70%)
- 해외바이어 화상상담 지원을 위한 샘플 발송비 지원 추가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기준 : 수출실적, 기업경쟁력, 일자리창출, 전시적합성, 정책우대 가점에 따라 본사, 무역관, 공동수행기관이 평가
- 정책 우대 가점 사항 : 신규수출기업화 또는 내수기업, 전문무역상사, 5개 소비재, 사회적 경제기업, 유턴기업, 뿌리전문기업 등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 공지사항에서 세부 사항 확인 가능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정책우대 가점 서류

처리절차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협의 → 사전 마케팅 지원(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 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지원규모

- 전시회별 상이
 - 전시회별 업체 모집규모는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해외전시팀 : 02-3460-7286, 3331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전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 시, KOTRA가 부스임차비, 장치비, 편도 전시물품 운송비,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2021년 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또는 해외주최사의 온라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기업
 - 민간 협단체를 통해 전시회 신청 및 참가 시, 필수 구비서류 제출의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선정 기업 당 연간 최대 1회, 5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사후정산)
 - 부스임차비, 장치/집기비, 편도 전시물품 운송비(1CBM / 9SQM, 수출통관 기준),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코로나19 대응) 지원항목 추가
 - 해외마케팅 디지털콘텐츠 제작비용, 해외 샘플발송 비용, 개최 취소/차년도 연기 해외전시회 매물비용, 입국불가 국가 해외전시회 부스 대리운영 MD 섭외비용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기준 : 수출실적, 진출지역 유망성, 기업경쟁력, 전시참가 기대성과, 수혜 실적, 정책 호응도, 정부정책 우대 기타 가산점 평가
- 신청 방법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의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 (2020.12.03. ~ 2020.12.24.)

제출서류

- 신청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통장 사본
- 정책우대 가점 서류

처리절차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의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 → 선정업체 발표 → 전시회 개별참가 → 지원금 신청 → 증빙서류 검토 → 지원금 교부

지원규모

- 총 1,700여개사

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 02-3460-7299, 7293, 7256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02-420-2042

5-9

한국우수상품전

신흥·전략시장 개최 전시회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전시회입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한류행사, 사회 공헌 활동(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 고용창출우수기업 여부

지원내용

-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화상상담회
- 기본부스 1부스
- 전시품 운송 (해상단체편도운송, 1CBM 한도)*
 - * 현지 통관법 의거 정식 통관 불가시 지원 불가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 (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및 현지 체류기간 동안 단체이동 차량 지원

참가비

- 1부스 당 110만원 내외 (잠정)

시기·지역

- (온라인) '21년 3분기 중, (오프라인) '22년 1월 중* / 중동지역
 - * 두바이 Expo와 연계하여 실시 예정

신청·접수

-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인터넷 신청시 입력), 참가각서(인터넷 신청시 동의)
- 전시품목 상세서 (제품 설명 인터넷 기재, 제품 브로슈어 파일 첨부)
- 사업자 등록증 (인터넷 신청시 파일로 첨부)

문의처

- 전략전시팀 / 02-3460-7295, 7272



Q. 한국우수상품전 개최지 및 개최시기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이니 확인 바랍니다.

Q. 한국우수상품전 바이어 상담주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 바이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개최일 전까지 2~3차에 걸쳐 참가기업에 바이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아시아 대표 식품분야 B2B 전시회

‘SEOUL FOOD’는 1983년 최초 개최 이래 39년간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 식품 산업 전시회이자 국내식품업계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KOTRA 대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품목군은 식품, 식품 관련 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식품관련기업(식품, 식품기기, 포장기기, 호텔레스토랑기기 전반)

시기/장소 ● 2021. 6. 1.(화)~4.(금) / KINTEX 1전시장(1~4홀)

지원내용 ● 참가비 할인
- 조기할인, 규모할인, 특별할인,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할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 후 참가비 납부
● 참가비

구분	참가비(Vat 포함)	제공내용
독립식 부스	2,750,000원	전시면적만 제공(부스자체시공)
조립식 부스	3,080,000원	면적+기본장치+상호간판+조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할인을 위한 필요 서류 등

처리절차 ● 전시회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완료 → 계약금 납부 → 부스배정 → 참가비 완납 → 전시회 참가

문의처 ● (식품분야) KOTRA 전략전시팀 : 02-3460-7267
(식품기기분야) KINTEX 마이스사업팀 031-995-8077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온라인 B2B 수출지원 플랫폼

buyKOREA는 전세계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상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B2B 수출지원 플랫폼으로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해외바이어 구매오퍼(Buying offer)가 제공됩니다. 또한 결제·물류 서비스를 할인된 요율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수출상품 해외홍보	상품정보 등록을 통해 해외홍보를 지원
바이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된 구매 오퍼 검색 가능
인콰이어리 수/발신	관심오퍼에 대한 인콰이어리 발송기능과 상품정보별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수신 기능
수출대금 결제	buyKOREA 상품정보에 대해 해외바이어들이 온라인 결제 가능 ▶ KOPS 카드결제(VISA, Mastercard, JCB, UnionPay, Alipay, WechatPay), 페이팔(IBK기업은행 페이고스 가입 필요)
수출상품 발송	EMS (할인율 7~17%), DHL (최대 60%까지) 할인혜택 이용 가능 (변동가능)
해외기업정보	www.buykorea.or.kr에서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연 200건 한도)
화상상담 지원	글로벌화상상담주간 등 해외 원격상담 지원
사이버 무역상담실 장소 제공	해외바이어와 무역거래, 파트너십, 상품개발을 위한 기술협의 등을 원격 화상으로 진행하실 경우 사전예약 시 상담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

신청·접수

- KOTRA 기업회원가입 후,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로그인

문의처

- KOTRA 디지털무역팀 : 02-3460-7431, 7433

5-12 수출바우처사업

원하는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로 구매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출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해서 이용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업을 선정, 온라인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 바우처 금액은 정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의 합계액으로 표시
 - 기업분담율은 30~70%로 사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
 - 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로 exportvoucher.com 메뉴판에 등록되어 있는 12개 분야, 5,000여개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서비스 분류	서비스 메뉴 (예시)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개발, 온/오프라인 제품 매뉴얼 제작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조사/일반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및 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통번역	계약/법률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번역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디자인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IP 전략 컨설팅
국제운송 ('21년 신설)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21년 1차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20.12.9.~12.30.)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내 공고내용 참조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 제출 서류 세부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공고내용 참조

처리절차

- 사업 추진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각 사업별 평가 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내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20.12.9 ~ '20.12.30	'21.1월말	'21.1월말 (선정 후)~	'21.1월말 (선정 후)~	'21.2.1 ~ '22.1.31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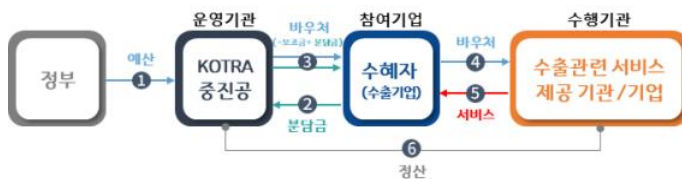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사업 ○○○개사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 중견 글로벌 지원,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 '20년 지원현황 : 약 1,100개사 지원

문의처

- KOTRA 수출바우처팀 : 02-3460-3425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Q. 수출바우처로 서비스를 구매한 후, 비용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수출바우처 발급과 정산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됩니다.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④⑤이용한 후 ⑥비용 정산

5-1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신규 수출기업 육성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PM)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수출 계약 이행까지 1:1로 밀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및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 실적 10만불 미만) 약 1,200개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buyKOREA 상품등록 미완료 기업, GCL Test 선정기준 40점 미만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비영리법인 ③외국 법인의 본·지점 ④국가, 지자체 등
- * 사업자번호 4,5번째가(80,82,83,84,85,91~99) 해당 기업 등

- 지원내용**
- 선정 직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수출기업화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무료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buyKOREA 상품등록 사전 등록 및 승인득 필수
- 참여기업 대상 해외무역관이 발굴한 바이어와의 '샘플 테스트 마케팅' 무료 지원

-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buyKOREA 상품등록 후 승인까지 완료된 기업
- 신청기업 중 글로벌역량진단(GCL) 테스트 40점 이상 기업으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후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 제조업 기업, 영문 홈페이지 보유, 수출 전담직원 보유, 해외 인증 보유, 수출중단기업 우선 선정
-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전년도에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에 내수기업으로 참여한 기업 우선선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종합컨설팅 제공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 02-3460-7543, 7541

Q&A



Q. buyKOREA 상품 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A. buyKOREA 상품 등록을 하셔야 해외무역관이 귀사의 제품에 바이어에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등록이 된 기업에 한해 관심 바이어와의 KOTRA 주선 화상상담이 가능합니다.

Q. 구체적인 이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A. Youtube 동영상 [코폴소] 수출초보, 이것만 알면 된다!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4 지사화사업

중소·중견기업의 현지지사 역할 대행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따라 OKTA 글로벌마케터(진입), KOTRA 지사화전담직원(발전),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확장) 중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지원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5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중진공 OKT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신청기간 : (KOTRA)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중진공 및 OKTA) 모집 시행 차수별 별로 신청기간 운영

제출서류

- 상품소개 자료(브로셔, 제품사진 등), 납세증명서, 인증서(보유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납부 및 협약서작성

서비스개시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9, 7441, 7445
- (중진공) 글로벌사업팀 : 055-751-9679, 9680, 9682
- (OKTA) 해외마케팅1팀 : 031-927-9218

Q. 회원가입시 필요한 기업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범용인증서(110,000원)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11,000원)가 필요하며 금융 결제원 간이 기업인증서나 은행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기업의 경우 아래 정부인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용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시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전자인증: 1655-0566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otra/index.html>
- 한국무역정보통신: 1566-2119 / www.tradesign.net/ra/kotra
- 한국정보인증: 1577-8787 / <https://exportvoucher.signra.com:4433/web-signra/main.sg>

Q.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참가비 납부 시 바우처 금액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5-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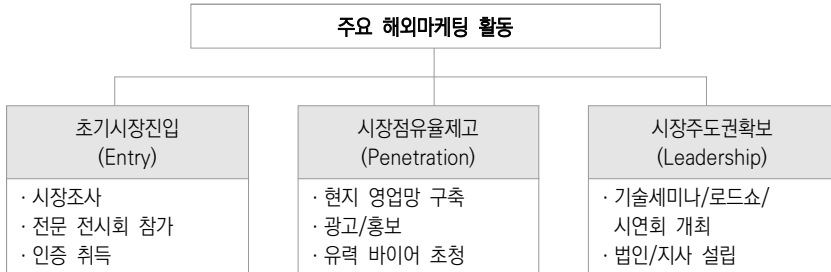
수출바우처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합니다.

지원대상 ●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내수)중견기업, 성장 잠재력 높은 중소·강소기업 및 중견글로벌 지원사업 졸업기업

지원내용 ● 참가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 후 진출전략, 액션플랜(로드맵) 수립 및 실행

*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단독 로드쇼/기술세미나 등 고객행사, 전문 전시회 참가, 홍보, 시장조사, 세일즈랩 운영, 법인설립 등 (수출바우처사업 內 메뉴판 선택을 통해 시행)



내수중견 대상 사업 신설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견/중소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선발

로드맵 수립

사업수행

정산

지원규모 ● 매년 〇〇〇개사

구분	내수중견	PRE	중견 글로벌	POST
지원대상	①중견기업 ②중견후보기업 ③예비중견기업	①중견후보기업 ②예비중견기업	①월드클래스 선정기업 ②중견기업 (중견유예포함)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최대 5년	최대 3년
매칭펀드 총액	최대 10,000만원		(중소) 최대 13,000만원 (중견) 최대 20,000만원	최대 20,000만원
국고지원 한도 (보조율)	국고보조 7,000만원 (70%)		(중소) 최대 9,100 만원 (중견) 최대 10,000만원	최대 6,000만원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51 / 7231

용어설명

내수 중견기업 : 수출 전무 또는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미만 기업

- 후보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업
- 유예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에 해당하는 기업
- 예비 중견기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수출증가율 높은 강소기업 우대)

5-1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발굴 및 육성

수출 상품 다양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시장점유율 5% 이상 및 5위 이내 상품과 생산기업(7년 이내 진입 가능 상품 및 생산기업 포함)을 선정하여, 세계일류상품 로고 사용과 해외마케팅 사업 등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및 기업

구분	선정기준
현재 세계 일류	상품 해당 상품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것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일 것 단, 서비스업 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 해당 상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할 수 있다.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할 수 있다.

지원내용 ● KOTRA, 간사기관 및 유관기관의 직·간접 지원 제공

구분	지원 내용
직접지원	세계일류상품 로고 사용 지원
	KOTRA가 지원하는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수출상담회(연 1회),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간접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우대 혜택
	(참여기관) 조달청,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세부내용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 참고(www.wcp.or.kr)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KOTRA 해외 마케팅 사업 연계 강화
-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브랜드 마케팅 추진

신청·접수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및 세계일류상품(www.wcp.or.kr) 홈페이지상 공고문 확인 후 해당 간사기관에 문의하여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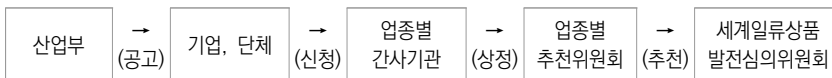
- 선정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매출액·수출액, 지적재산권, 인증 및 수상 등

제출서류

- 세계일류상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정보활용동의서, 근거자료 등

처리절차

- ‘현재’와 ‘차세대’로 구분하여 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지원규모

- 930개 상품 및 1,050개 기업(예산 7억원)
- * '20년 선정현황 : 874개 상품 및 983개 기업(예산 3억원)

문의처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044-203-4377)
- 운영기관 : KOTRA 강소중견기업팀(02-3460-7248)
- 온라인 문의 : wcp@kotra.or.kr
- *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 참고(www.wcp.or.kr)

Q&A



Q 세계일류상품 신규 선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개 5~6월경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업종별 간사기관의 추천위원회(8월경)를 거쳐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10월경)에서 최종 선정 되며, 이후 선정기업 대상 인증서 수여식(11월경)이 개최 됩니다.

Q 간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경우, wcp@kotra.or.kr로 신청하시면 KOTRA에서 진행되는 추천심의위원회로 배정이 됩니다.

용어설명

간사기관 : 신청기업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및 성장성 등을 1차적으로 평가하는 추천위원회를 주관하는 산업별/품목별 협회 및 조합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

5-17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글로벌 수요연계 해외진출 지원사업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기업의 개방형 혁신수요를 연결하여 업무협력을 통한 노하우, 네트워크, 레퍼런스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국내 스타트업

- 스타트업 : 해외 시장 진출을 상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 예비창업자, 혁신기술 및 혁신제품 미보유 기업 등

지원내용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코리아
 - 해외 글로벌 기업, 투자자(VC), 엑셀러레이터(AC) 등의 방한을 지원하여 국내 스타트업과 1:1 상담 주선, 피칭 기회 및 해외지역별 진출 설명회 제공
- 오픈 이노베이션 온라인 플랫폼(가제)
 -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개방형 혁신 수요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buyKOREA 사이트 내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오픈 이노베이션 정보 상시 제공

신청·접수

- www.kotra.or.kr 또는 www.buykorea.or.kr 에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의 혁신성, 해외 진출 준비 역량 등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출서류 ● 영문 피칭덱 및 참가 신청서(영문)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

프로그램 지원

지원규모 ● 미정

* '20년 지원현황 : 국내 스타트업 200개사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69)

용어설명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 개방형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함과 동시에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5-18

클라우드펀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스타트업의 입점 지원 사업

클라우드 펀딩 활용 방법 및 오픈마켓 입점 방법 교육을 통해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 수출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국내 스타트업
 - 스타트업 : 해외 시장 진출을 상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예) 혁신기술 및 혁신제품 미보유 기업 등

지원내용

- 클라우드 펀딩 입점 설명회 & 상담회
 - 해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입점 상담, 디지털 마케팅 교육, 레퍼런스 활용 현지 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등
- 아마존 로켓스타트
 - 아마존(US, JP) 입점 교육 및 물류 배송비 일부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아마존 입점 교육 방식을 보다 실습 내용을 강화하여 보완

신청·접수

-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입점 준비 정도(수출 경험, 온라인 판매 경험 등)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국문 또는 영문)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

프로그램 지원

지원규모

● 미정

* '20년 지원현황 : 국내 기업 600개사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68)



Q.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중이나 아직 아이디어 구상 단계입니다. 본 사업에 지원 가능할까요?

A. 아니요, 본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판매 가능한 혁신 소비자 보유 스타트업에 한합니다.

용어설명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펀딩을 받는 것

5-19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해외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지원

혁신 소비자, 혁신 서비스, 혁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VC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스타트업

- 스타트업 : 해외 시장 진출을 상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예) 예비창업자, 혁신기술 및 혁신제품 미보유 기업 등

지원내용

- 스타트업 글로벌 컨퍼런스, 전시회 참가 지원
 - 북미, 유럽, 동남아, 중국 등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중심지에서 개최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쇼케이스, 투자유치 IR, 1:1 비즈니스 상담회, 포럼 및 네트워킹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으로 전환된 컨퍼런스, 전시회의 경우 온라인 한국관 참가 지원

신청·접수

-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의 혁신성, 해외 진출 준비 역량 등

제출서류

- 영문 피치덱 및 참가 신청서(영문)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

프로그램 지원

지원규모

● 미정

* '20년 지원현황 : 국내 스타트업 100개사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77, 02-3460-7394)



Q. 해외 전시회 참가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전시회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전시회의 경우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20

KOTRA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기간제 사업

1년간 바이어, 투자자 등 해외파트너 발굴,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시장 조사, 전문위원 컨설팅, 컨퍼런스 참가 지원, 유력 AC 멘토링 등 개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해외진출 준비가 된 예비창업자 및 국내 스타트업
 - 스타트업 : 해외 시장 진출을 상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예) 혁신기술 및 혁신제품 미보유 기업, 해외 진출 준비가 부진한 기업 등

지원내용

- KOTRA 스타트업 글로벌 점프 300
 - 1년간 바이어, 투자자 등 해외파트너 발굴,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시장 조사, 전문위원 컨설팅, 컨퍼런스 참가 지원, 유력 AC 멘토링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20년 1기가 출범된 신규 사업

신청·접수

-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의 혁신성, 해외 진출 준비 역량 등

제출서류

- 영문 피치덱, 참가 신청서(영문), 피칭 영상(영문)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

프로그램 지원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지원규모 ● 미정

* '20년 지원현황 : 국내 스타트업 100개사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69)

Q&A



Q. 본 사업에서 무역관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KOTRA의 20개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 중 한 곳에 배정을 받은 뒤, 해당 무역관의 'KOTRA 스타트업 글로벌 점프 300' 담당 직원이 1년간 해외 진출 로드맵, 시장조사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5-2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전파, 발주처 네트워크 지원, 입찰참여 지원 등 단계별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관해 상담이 필요한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수주 지원이 목적이며 벤더 대상 일반 기자재 납품은 대상이 아니므로 후자는 수출 관련 다른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애로상담) 신청 시 국내 산업 코디네이터가 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 (프로젝트 정보) KOTRA 해외조직망을 통해 발굴된 국가별 유망 프로젝트 정보 온라인 조회
 - 접속 : <https://news.kotra.or.kr> → (우측 메뉴)해외투자 → (좌측 메뉴)유망프로젝트
 - 뉴스레터 발송 : 신규 등재 해외 프로젝트 정보 메일 알리기
- (해외 발주처 상담)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MDB 프로젝트 플라자 등 발주처 유치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21년 각 잠정 5월, 9월, 11월 개최 예정)

신청·접수

- (애로상담) consultants@kotra.or.kr 로 이메일 접수
- (해외 프로젝트 정보) 상기 홈페이지 통해 자체 조회
 - consultants@kotra.or.kr 로 뉴스레터 발송 신청 가능
- (해외 발주처 상담) 각 사업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사업공지 : <https://kotra.or.kr>
 - consultants@kotra.or.kr 로 뉴스레터 발송 신청 가능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출서류

- 애로상담, 프로젝트 정보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해외 발주처 상담 : 홈페이지 접속 시 기본정보입력

처리절차

- (애로상담) 이메일 접수 → 애로상담센터 검토 → 1차 상담(국내 산업 컨설턴트) → 필요시 : 2차 상담(해외무역관) → 지원 조치(조사·상담) → 피드백 및 완료
- (해외 프로젝트 정보) 별도 절차 없음
- (해외 발주처 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 및 기업 정보 등록 → 해외 발주처 및 프로젝트 정보 확인(온라인 사전 게재) → 상담주선기간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 상담회 기간 온라인 화상 상담 또는 오프라인 현장 상담 → 상담 결과 제출 → 사후 지원

지원규모

- 제한 없음

문의처

- 프로젝트 공공조달팀 : 02-3460-7486

5-22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ICT 기업 해외진출 상담·컨설팅

ICT 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센터로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진출국 현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및 ICT 융합 수출희망 기업
 - 하드웨어(컴퓨터, 통신기기), 기타 ICT 융합기기 등
 - 소프트웨어(솔루션, 패키지, 모바일앱 등)
 - IT서비스, 산업별(공공, 금융, 제조, 유통, 서비스 등) SI 프로젝트 및 인터넷 서비스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일반 소비자, 전자부품 및 소재, 자동차 등 기타 분야의 관련 기업

지원내용

- 해외 ICT 시장진출 애로해결 및 컨설팅
 - 해외진출 사전 준비
 - 국가정보 및 시장현황
 - 기업 및 제품 현지화
 - 현지 거점 설립
 -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 협상 및 계약
 - 기타 해외진출 관련 사항

신청·접수

-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전화/이메일 상담
 - 김명희 전문위원 (02-3460-7753 / mhkim@kotra.or.kr)
 - 공정훈 전문위원 (02-3460-7754 / danikong@kotra.or.kr)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접속

무역투자상담

상담방식

온라인상담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내방 상담
 - KOTRA 본사 5층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내 상담센터 방문

- 기업 출장상담
 - 제품 및 서비스 확인 등 기업 현장방문 필요 시, 출장상담 가능

제출서류

- 서류 불필요하나 원활한 상담을 위해 회사 및 제품 / 솔루션 소개자료 권장

처리절차

- 전화 / 이메일 / 내방 / 출장 상담

접수

상담일정지정

상담

사후지원

- 온라인 상담

상담접수

전문가 지정

문의사항 검토

답변 완료

지원규모

- 무료 상담

문의처

- KOTRA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 02-3460-7753~4

Q&A



Q. 해외 수출이나 진출 경험이 없는 초보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제품 및 솔루션의 현지화 준비, 타겟국가 선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부터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5-23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ICT 기업 전시상담, 네트워킹

'K-Globa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ICT 시장에 중소·벤처기업 해외수출을 확대하며 전시상담, 컨퍼런스, 기술교류, IR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ICT 분야 모든 기업
 - H/W, S/W, 모바일, 정보보호, 디바이스, IT 서비스 등

지원내용

- ICT 분야 융복합사업 지원
 - 무역(전시상담회), 정보(컨퍼런스), 투자(스타트업IR), 네트워킹 등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 참가비 무료 (항공료, 체재비 등 개인경비는 참가기업 자체 부담)

신청·접수

- 매 개최 시기 약 3~4개월 이전 KOTRA 홈페이지에 사업 신청공고문 게재
 - 세부일정 문의 요망
- KOTRA 홈페이지 신청 방법 (www.kotra.or.kr/biz)

사업영역 소개

산업별특화지원

ICT

K-Global@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기업/제품 소개 카탈로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선정절차

- 접수 후 선정 절차 흐름도

공고 및 접수

현지 전문가 심사

결과발표

사업참가

지원규모

- 국내기업 30 ~ 40개사

문의처

- KOTRA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 02-3460-7472

5-24 해외IT지원센터

ICT 기업 입주사무실·현지화 지원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등 주요 ICT 거점 지역에 우리기업이 입주하여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지역 ●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지원대상 ● 수출역량을 보유하고 현지 법인 설립 등 본격적인 해외진출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 ICT 기업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공정위 상호출자 제한 기업군

지원내용 ● 현지 사무공간(입주사무실)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현지 바이어 발굴, 소개 및 상담 기회 제공
● 국내·외 투자가 및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ICT정보 제공 등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상시모집 (www.kotra.or.kr/biz)

맞춤형 서비스

해외 인프라공유

'해외IT지원센터'

센터별 입주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업소개서,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선정절차 ● 접수 후 선정 절차 흐름도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현지 전문가 심사

선정 및 입주

지원규모 ● 실리콘밸리 55개실, 베이징 16개실, 도쿄 16개실

문의처 ● KOTRA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 02-3460-7472, 7470

5-25

GMV (Global Mobile Vision)

ICT 해외바이어 초청 B2B 상담회

GMV는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ICT 분야 B2B 전시상담회입니다. 국내 유망 ICT 기업과 해외바이어간 직접 상담을 통해 신규 거래선 발굴, 계약추진, 사업제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유·무선통신, AI, IoT, AR/VR, 로봇, 정보보안 등
-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전자정부, 핀테크, 디지털콘텐츠·서비스 등 다양한 ICT 융복합 솔루션 분야 기업

지원내용

- 전시상담 : 해외바이어·투자사·발주처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 해외바이어 투자사 200개사, 국내 기업 200개사 규모
- 컨퍼런스 : 글로벌 시장 트렌드 공유 및 미래전략 제시
- 스타트업 : 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대상 피칭 IR 진행

신청·접수

- 2021년 10월 / 서울·경기
 - 시기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GMV 홈페이지(www.gmv.or.kr) 및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온라인 신청
- 참가비 안내

부스안내	기본 부스	고급 부스	스타트업 부스	독립 부스
참가비용	275만원	350만원	80만원	150만원
제공내역	해외 바이어/투자사와의 1:1 비즈니스 상담 - 상담주선시스템 활용 상담신청 및 상담스케줄 제공			
	▶ 3m×3m 조립부스	▶ 3m×1.5m	▶ 3m×3m (면적만)	

문의처

- KOTRA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 02-3460-7468

5-26 IT컨소시엄 수출지원

해외 IT프로젝트 수주 지원

IT컨소시엄 수출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국내 IT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IT프로젝트 공동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깃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현지 전문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ICT 분야 (ITS, 통합관제, 전자정부 등) 중소·중견기업
 -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조사한 유망프로젝트와 신기기업의 수요 반영
 - 매년 10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 기업 자체 발굴 프로젝트 및 지역 추진 가능

지원내용

- (1:1 전담지원) 프로젝트별 무역관 및 현지 전담직원 배정
- (맞춤형 정보제공) 개도국 시장 및 기술력 분석 등 상시적인 시장분석 보고
- (바이어 발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바이어 및 협력 채널 발굴
- (마케팅 지원) 제품/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신청·접수

- 12월 경, KOTRA 홈페이지 통한 사업신청 (www.kotra.or.kr/biz)

사업영역 소개

산업별특화지원

ICT

IT컨소시엄 수출지원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참여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선정절차

- 접수 후 선정 절차 흐름도

〈12월〉
컨소시엄 모집

〈1월초〉
평가, 무역관 매칭

〈1월말〉
대면평가

〈2월〉
사업착수

지원규모

- 매년 10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문의처

- KOTRA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 02-3460-7470

5-27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시티 ICT 솔루션 해외마케팅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국내 유망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조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주 지원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용되는 ICT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주요품목 : 방법/방재, 의료/보건, 교통, 에너지, 물관리, 쓰레기 처리, 전자정부, 시민참여/커뮤니티 등

지원내용

-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 현지 수주정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국별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등
 - * 협력센터 운영 무역관 : 방콕, 이스탄불, 자카르타, 하노이(4곳)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 지역별 발굴된 목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국내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 스마트시티 발주처 및 바이어와 국내기업간 네트워킹 지원(1:1 화상상담 등)
 - 지역별 로드쇼 및 발주처 대상 기술·솔루션 IR 참여 지원
 - 현지 진출 및 수주활동 정보 제공(웹이나 자료 발간 등)

신청·접수

- 연간 상시 운영 (KOTRA 사업안내 홈페이지 참조)
 - 세부 사업별 행사 개최시기는 KOTRA 사업안내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해 안내 예정

제출서류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문의처

- KOTRA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 02-3460-7466

5-28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팜 ICT 솔루션 해외마케팅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시장조사,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상담회, 해외 수출사절단 파견, 데모온실 구축 등 해외 스마트팜 수요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업
 - 스마트온실, 노지재배, 축산, 양식, 가공, 물류·유통, 판매 등 농림축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ICT 기술 및 솔루션 보유 기업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및 투자사 대상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운영
- (해외전시회) 국내외 농업, 축산업, 스마트팜 국제전시회 한국관 운영
- (수출사절단) 목표시장별 전문분야별 핀포인트 수출사절단 파견
- (디렉토리) 국내 스마트팜 기업 및 제품정보 소개자료 제작 및 배포

신청·접수

- 연간 상시 운영 (KOTRA 사업안내 홈페이지 참조)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biz) 사업검색에서 ‘스마트팜’ 검색하여 사업공고문 확인 및 신청

제출서류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선정절차

- 접수 후 선정 절차 흐름도

공고 및 접수

현지 전문가 심사

결과발표

사업참가

문의처

- KOTRA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 02-3460-7468

5-29

서비스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국내 서비스기업의 진출 유망 지역을 서비스거점으로 지정, 서비스거점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관심 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조사, 법인설립지원, 비즈니스 미팅 등을 1년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분야
 - 디지털콘텐츠(AR·VR,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전자출판, 캐릭터 등)
 - 에듀테크(이러닝, 학원, 교재)
 - 프랜차이즈(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테마파크)
 - 기타서비스(AI, 데이터기반, 핀테크, 생활편의, 산업자동화 등)

지원개요

- 사업기간(잠정) : 2021년 3월 ~ 2022년 2월 (1년)
- 지원내용 : 서비스거점 무역관에 배치된 전담직원을 통한 관심바이어 발굴, 온라인 비대면 상담지원, 시장조사, 기타 기업 맞춤형 지원 등
- 서비스거점 : LA, 뉴욕, 도쿄, 오사카, 하노이, 호치민, 쿠알라룸푸르, 방콕, 자카르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 참가비 : 서비스거점당 250만원
 - * 수출바우처로 이용 가능

신청·접수

- 사업 공고(2021년 2월중) →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영문 소개자료 등

지원규모

- 서비스기업 150개사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Q. 전담직원 1명이 몇 개사의 서비스기업을 담당하나요?

A. 기업수요에 따라 최대 10개사까지 담당합니다.

Q. 서비스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역관수의 제한이 있나요?.

A. 1개사당 최대 3개 무역관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부가세 포함하여 무역관당 250만원입니다.

5-30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대표 사업 : 한류박람회

글로벌 한류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유망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과 연계, 한류박람회 등 한류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브랜드 제고를 선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한류 기반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수행시기

- 연중

지원내용

-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KBEE)’ 개최를 통한 경제 한류의 글로벌 진출 지원 (2020년 개최지 : 온라인(2회), 2019년 개최지 : 방콕, 두바이)
- 한류스타 IP 활용을 통한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
- 한류 콘텐츠 연계 소주기 지원사업(한류 방송콘텐츠 매칭페어 등)

문의처

- 소비재산업팀 : 02-3460-7745
- 지식서비스팀 : 02-3460-3318

5-31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 VR·AR 등 우수 콘텐츠 제작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기업과의 수출상담 지원

지원대상

- 콘텐츠 분야 국내 기업
 - 국내 우수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 VR·AR 등 콘텐츠 분야 제작사 및 개발사

지원내용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제작투자 해외 파트너 발굴 및 지역별 온라인 사절단
- 해외 시장 현지 정보 제공 세미나 참여 기회 등 제공
 - * 시기별 상황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여부는 사업별 공고 확인 필요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 내 사업안내 참고

5-32

방산물자 교역지원

방산·치안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KOTRA가 국내 방위·치안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관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방산·보안물자의 수출을 지원

지원대상

- 방위·치안산업 제품, 부품, 솔루션 등을 생산 제공하는 국내 기업
 - * 방위산업 : 총, 포, 탄약, 함정, 항공기, 미사일 등 무기장비의 생산 및 개발 등
 - * 치안산업 : 대테러, 범죄예측, 사이버수사 등 치안 관련된 재화·서비스 생산 개발 등

※ 참고사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소개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KOTRA, 한국 무역보험공사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 조직으로, 방산물자 교역지원 업무 등을 수행

지원내용

- 정부간(GtoG)계약
 - 구매국 정부의 GtoG 계약의사 확인부터, GtoG 계약 체결이행 모니터링 수행
 - 계약체결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마련 협조
 - * 관련법 : 대외무역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등
- 방산 해외마케팅 지원
 - 방산수출 유망국 군인사 및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
 - * KODAS가 대표적 행사로, DX코리아, ADEX 등 국내유명 방산전시회와 연계하여 개최
 - 해외 방산 GtoG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지원을 위한 방산사절단
 - KOTRA무역관이 발굴한 해외방산 소식 및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 * KODITS홈페이지 (kodits.kotr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방산수출 인프라 운영
 - 주한해외무관·방산기업 초청 합동워크숍 (연 1회)
 - * 한국으로 파견된 해외무관에게 한국방산기업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목적
 - 美방산시장 진출 선도기업 육성 (기간제)
 - * 선정된 국내 방산기업에게 현지 방산분야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마케팅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 KODITS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업 참가신청 안내문 확인 후 신청

제출서류

- KODITS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사업 참가신청 안내문에 따름

처리절차

- (GtoG 정부간 계약)
구매국 G2G 계약의사 확인 → 국내업체 수출이행능력 평가 및 선정 → G2G계약 협상 → G2G 계약특별위 심의 → KOTRA - 국내기업 간 이행약정 체결 → G2G계약 체결(KOTRA - 구매국정부) → 계약 이행(국내업체) 및 이행 모니터링(KOTRA)
-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바이어/에이전트 모집 → 국내기업-해외바이어간 상담주선 → 최종 상담스케줄 안내 → 사후관리 및 지원
-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바이어 유치 및 상담주선 →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 사후 관리 및 지원

문의처

- 기획총괄실 : 02-3460-7813, 정부간거래관리실 : 02-3460-7809
- KODITS 홈페이지 : <https://kodits.kotra.or.kr>



Q. 'GtoG계약'은 무엇인가요?

A. 외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인 KOTRA가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정부에 물자 및 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외국정부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자국에 맞는 맞춤형 조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최근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거래방식입니다.

5-33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해외 공공조달 진출 지원사업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조달 전문기업 1000개사 육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제기구와 해외 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수출기업 1,000개사 (KOTRA 500개사, 조달청 500개사 선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기 1000개사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사전에 심사를 거쳐 별도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선정 기준(해외마케팅 역량 70% + 재무건전성 30%)
- ※ 상세 내용은 이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 지원내용** ●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이 벤더등록 지원, 해외조달 시장정보, 입찰보증 한도 확대/금리 우대/자금지원 우대 등 금융지원 제공

- 처리절차** ● 참가기업 모집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참가기업의 요청에 따른 사안별 지원 → 점검 및 평가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문의처** ● 프로젝트 공공조달팀 : 02-3460-7492

5-34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국내기업의 글로벌밸류체인 진입지원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소재부품 분야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GVC)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하여 벤더로 납품하고자 하는 국내 소재 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의 수요품목 및 협력 희망 분야에 적합한 국내 기업
- 참가비 : 무료

지원내용

- 산업 Mapping 자료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내외 권역별 수요발굴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 : GP EUROPE, GP USA, GP JAPAN, GP CHINA 등
 - 국내 : GP KOREA 등
- 글로벌 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 : 공장방문, 심층상담 등(연중수시)

신청·접수

-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사업 공고 → 국내 기업 신청 → 바이어 시장성 평가 → 상담회 실시 → 제휴 및 매칭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
 - * 국내기업의 참가 신청 후 글로벌 기업의 시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참가기업 선정

제출서류

- 사업별 상이하며 사업 추진시 공고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바이어 검토 → 상담매칭

문의처

- 소재부품팀 : 02-3460-3257

5-35

KOTRA 해외시장뉴스

해외무역관 수집 정보 제공

‘KOTRA 해외시장뉴스’는 84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전 세계 산업·상품정보, 국가정보, 통상·경제 동향 등의 수출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취업·창업 등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방법

- KOTRA 해외시장뉴스 접속
 - 홈페이지 주소 : <https://news.kotra.or.kr>
- 매주 화·목요일 해외시장뉴스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 뉴스레터 신청방법 : KOTRA 회원가입>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열린마당> 뉴스레터> 신청하기 클릭

이용료

- 무료

제공정보

유형	내용
뉴스	경제·무역, 통상·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 기고, 일자리 동향
상품·산업	트렌드, 상품DB, 국별 주요산업
국가·지역정보	세계 93개국 국가·지역정보, 북한정보, 진출전략, 출장자료
비즈니스	무역사기사례, 기업성공사례, 무역관 현장DB, 해외인증정보, 기업검색사이트, 전문조사기관, 국제무역통계(ITC)
보고서	심층보고서, 수출동향 보고서
해외투자	해외투자 안내, 직접투자 절차, 국별 참고자료, 유망프로젝트, 진출기업정보
생생현장	포토뉴스, 카드뉴스, 웹툰, 생생 글로벌 비즈트렌드, 설명회 영상·자료, 90초 해외시장뉴스
무역자료실	무역자료실 안내, 자료검색, 무역자료실 서비스, 리포지터리, 간행물 판매

문의처

- KOTRA 시장정보팀 : 02-3460-7414, 7419

5-3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해외지역본부별 진출전략 설명회

KOTRA는 매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제안합니다.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우리기업, 유관기관(사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국내 전문가와 KOTRA 10개 해외지역본부장이 함께 주요 세계경제 이슈 및 권역별 시장을 조망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제시
● 설명회 참가고객을 대상으로 '권역별 진출전략 자료' 제공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 (* 행사 개최 시 별도 안내)

문의처 ● KOTRA 무역분석팀 (02-3460-7595)

Q&A



Q. 지난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설명회 녹화영상은 유튜브 'KOTRA TV'와 'KOTRA 비즈니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권역별 시장진출전략 자료집은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내 '보고서-심층'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37

경제외교 활용포털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대통령 해외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경제행사(예:비즈니스 파트너십)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용방법

- 경제외교 활용포털 사이트(<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접속 후 무료이용

* 모바일 앱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제외교 활용포털" 검색 후 다운로드

이용료

- 무료

제공정보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외교 성과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산업 성과를 DB로 구축
경제외교 종합정보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전시회정보, 진출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대통령 및 총리 순방 계기로 추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행사 모집공고·선정 및 사후관리의 전 과정 지원
경제외교 활용사례	해외 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기업사례 소개 및 공유
후속조치 사업	정상회담 공동성명·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후속조치 및 정상 순방 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관심기업도 활용 가능한 참가 사업 및 결과 안내

문의처

-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6

5-38 FTA해외활용지원센터

FTA 정보제공, FTA 상담,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8개국 15개 도시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을 실시하며 각종 애로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FTA 활용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수출기업

지원내용 ● FTA 홍보활동 및 정보제공

- FTA 활용 설명회(웨비나) 및 현지 유명 전시회 공동 홍보부스 운영
- FTA 실무활용가이드북, FTA 활용 Tips 책자 제공

● FTA 상담서비스

- (상시상담) 관세율, 원산지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진행
- (이동상담) 현지기업, 진출기업 밀집 지역 방문 상담
- (헬프데스크) 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활용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등



운영지역

- 8개국 15개 센터 운영('20.12월 기준)
 - 중국 6개소, 베트남 2개소, 인도 2개소,
 -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중남미, 영국 각 1개소

센터	전화	웹사이트
베이징	(86-10) 6410-6162	www.kotra.or.kr/KBC/beijing
상하이	(86-21) 5108-8771	www.kotra.or.kr/KBC/shanghai
칭다오	(86-532) 8388-7931	www.kotra.or.kr/KBC/qingdao
광저우	(86-20) 2208-1939	www.kotra.or.kr/KBC/guangzhou
다롄	(86-411) 8253-0051	www.kotra.or.kr/KBC/dalian
톈진	(86-22) 2329-6631	www.kotra.or.kr/KBC/tianjin
하노이	(84-24) 3946-0511	www.kotra.or.kr/KBC/hanoi
호치민	(84-28) 3822-3944	www.kotra.or.kr/KBC/hochiminh
뉴델리	(91-11) 4230-6300	www.kotra.or.kr/KBC/newdelhi
첸나이	(91-44) 2499-7283	www.kotra.or.kr/KBC/chennai
자카르타	(62-21) 574-1522	www.kotra.or.kr/KBC/jakarta
방콕	(66-2) 035-1555	www.kotra.or.kr/KBC/bangkok
마닐라	(63-2) 8894-4084	www.kotra.or.kr/KBC/manila
중남미	(52-55) 5514-3173	www.kotra.or.kr/KBC/mexicocity
런던	(44-20) 7520-5305	www.kotra.or.kr/KBC/london

문의처

- KOTRA 통상지원팀, 02-3460-7504

5-39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등 출장업무를 지원합니다. 프리미엄지원의 경우, KOTRA에서 주선한 상담에 한하여 KOTRA직원이 동행하여 통역 및 차량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일내)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기준 ● KOTRA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수수료 ● 일반서비스 : 50만원~70만원 (VAT별도)

● 프리미엄서비스 : 100만원~140만원 (VAT별도)

* 지역별, 바이어수 별 참가비 상이(상세 내역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 기업의 경우, 수수료 2배 적용

*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바우처로 사용 가능)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	<p>[일반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역 : 상담주선(3~4개사) + 교신지원(2개월)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수수료 : 50~70 만원 (3~4 개사)(VAT별도) 대상기업 : 통역, 차량지원 불요 기업, 독자적으로 상담 가능 기업 	<p>[프리미엄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역 : 상담주선(3~4개사) + 상담지원 (통역 및 차량 지원) + 교신지원(2개월) 상담방법 : 2일간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 통역 :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 '현지어-불어' 지원) * 차량 : 관할도시에서 편도 120km 이상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기업 부담) 수수료 : 100~140 만원(3~4 개사)(VAT별도) 대상기업 : 통역, 차량지원 필요 기업, 지사화 사업 관심 기업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조사	<p>[일반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역 : 기업 요청별 상담주선 (2개사내외) + 교신지원(2개월) 상담방법 : 무역관이 제공한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수수료 : 50~70만원(VAT별도) 대상기업 : 통역, 차량 필요 기업, 지사화 사업 가입 관심 기업, 투자진출 관심 기업 	<p>[프리미엄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역 : 기업 요청별 상담주선(2개사 내외) + 상담지원 (통역 및 차량 지원) + 교신지원(2개월) 상담방법 : 무역관 직원이 상담지원 * 통역 :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 등 지원) * 차량 : 관할도시에서 편도 120km 이상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기업 부담) 수수료 : 100~140 만원(VAT별도) 대상기업 : 통역, 차량 필요기업, 지사화 사업 가입 관심 기업, 투자진출 관심 기업

* 일반/프리미엄 서비스 : 호텔예약, 공항출영송 등 기타 사항은 기업이 진행

진행절차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 상단 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 '수요기반' 메뉴 아래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사업 신청하기' → 로그인 후 신청(출장 1.5달 전) → 해외무역관이 지원가능여부 검토(2주 소요) → 지원 가능 시 대고객 견적서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 준비(약 2주 소요) → 출장일 5일전 스케줄 송부 → 출장시행

참고사항

- 출장지원서비스 신청 대상 지역 : 83개국, 123개 무역관
* 출장지원 제외지역(여행금지국) : 이라크(바그다드), 리비아(트리폴리) 무역관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4

5-40 수출인큐베이터

해외 주요 거점도시 사무공간 제공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 지원 서비스와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수출유망품목
 - 중소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17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22	인도	뉴델리	14
	광저우	14	미국	뉴욕	19
	시안	7		LA	22
	충칭	8		워싱턴	10
베트남	호치민	15		시카고	18
	하노이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5	러시아	모스크바	8
싱가포르	싱가포르	8	UAE	두바이	11
칠레	산티아고	9	카자흐스탄	알마티	7
태국	방콕	10	미얀마	양곤	10

- 수수료**
- 입주보증금 : 500만원
 - 월 임차료(사용면적에 따라 부과, 지역별 상이 1차년도 10~40만원)
 - * 임차료 1차년도 20%, 2차년도 50%, 3~4차년도 100% 부담
 -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업체 실비 부담

- 입주기한**
- 최장 4년

- 지원사항**
- 사무공간(3~4평)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등 행정지원
 - 생활정착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KOTRA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지원

진행절차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참가 신청 (연중 수시)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KOTRA·중진공) → 업체 선정통보 (약 1~1.5개월 소요) → 입주협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준비 및 인큐베이터 입주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0
 - (중진공) 글로벌사업팀 : 055-751-9685, 9673
- * 입주신청과 접수 문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

5-41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해외에 공동 사무공간 및 마케팅 지원

'해외 GP센터 (Korea GP Center)'는 해외 지역별 공동 사무공간을 운영하여 현지 전담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운영센터(10개)
 - 나고야, 디트로이트, 멕시코시티, 뮌헨(신규), 상하이, 실리콘밸리(신규), 아테네, 오사카(신규), 쿠알라룸푸르, 프랑크푸르트
 - 대상기업/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즉각적 현지 대응 및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요구받은 기업
 - 해당시장 집중 마케팅을 위해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치를 고려중인 기업
 - 현지법인/지사 설립은 되어 있으나 성과 제고를 위해 KOTRA와의 협업이 필요한 기업
- * 단,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사무공간 제공 : 독립공간(사무실) 및 공동 사용공간(회의실)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등
 - * 전담직원을 통해 지사화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 초기 셋업 : 입주업체 신규 법인/지사 설립/비자발급 등 지원
 - 세일즈렙 활용 : 입주업체 세일즈렙 활용 희망시 업체선정 등 지원
 - 물류서비스 지원 : 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서비스
 - 현지 전시회, 세미나 등 참가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뮌헨, 실리콘밸리, 오사카 센터 신규 개소

신청·접수 ● 접수방법 : KOTRA홈페이지 > 맞춤형서비스 > 해외GP센터 > 신청가능사업
보기 > 신청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jsh777@kotra.or.kr)

처리절차 ● 참가신청서 검토(약 2주) 후 승인여부 통보

지원규모 ● 지역별 상이
* 디트로이트, 나고야, 프랑크푸르트,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멕시코, 아테네, 뮌헨, 실리콘밸리, 오사카 10개소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팀 : 02-3460-7664

5-42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해외마케팅 자금 지원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해외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의 제조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이미 동일 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중복하여 받는 경우
- ▶ 동일 사업 2회 기 참가 기업

지원내용

- 참가기업 수요 및 전략에 따른 맞춤형 목표시장 선정 지원
- 수출바우처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13개 분야 6,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 산업별 로드맵 작성 지원 및 로드맵 기반 컨설팅 제공

신청·접수

- 사업공고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 확인

* www.exportvoucher.com

제출서류

- 세부 제출 서류는 공고문 확인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바우처발급

지원규모

- 약 300개사

문의처

- (진입) 수출바우처팀 02-3460-3427
- (확대) 소자부품팀 02-3460-7646
- (디지털특화) 빅데이터팀 02-3460-7449

5-43 해외공동물류사업

해외물류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해외공동물류사업은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확보 및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KOTRA 해외무역관이 선정한 현지 협력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며,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신청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원부자재 소싱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지원내용

- 모집기간 : 연중 수시모집(선착순 모집, 마감시 자부담서비스로 자동 전환)
-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 ~ 동일년도 11월 30일까지
-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 물류창고 내 보관 필수(통관, 수입대행, 운·배송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이용)
- 1개 사당 최대 5개 지역까지 신청 가능

참가비

- 매칭 펀드로 지원(기업분담 비중 30% : 국고부담 비중 70%, VAT 포함)

참가비(A)	국고지원금(B)	한도총액(A+B)
최소 30만원 ~ 최대 600만원	최소 70만원 ~ 최대 1400만원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biz)에서 맞춤형 서비스(해외물류네트워크) 해외공동물류센터 선택 및 사업신청
- 무역관 소재 전지역 신청가능

처리절차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납부 및 협약서작성

서비스개시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25, 7428

5-44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지원

해외진출이 활발한 지역 16개국에 27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해외투자 희망기업 및 기진출 우리기업(규모 무관)

지원내용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지원
- 현지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정보 전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뉴스레터)
- 해외진출기업 대상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지원

● 14개국 21개소에서 2개국 6개소 추가
(다낭, 첸나이, 부다페스트, 뉴욕, 디트로이트, LA)

* 2020년 개소 완료: 다낭, 첸나이, 부다페스트

* 2020년 개소 예정 : 뉴욕, 디트로이트, LA 3개소 추가

운영조직 ● 16개국 27개소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태국
하노이	호치민	다낭	자카르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다롄	양곤	방콕

미국			캄보디아	인도		폴란드	몽골
뉴욕	디트로이트	LA	프놈펜	뉴델리	첸나이	바르샤바	울란바토르

필리핀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독일	러시아	
마닐라	상파울루	부다페스트	멕시코시티	프랑크푸르트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문의처 ● 투자M&A팀 : 02-3460-7359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투자'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5-45

해외지식재산권 보호(IP-DESK)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해외진출(예정)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상담, 확보,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

운영조직

- (IP-DESK 소재 국가) 11개국 17개소

국 가 (11개국)	IP-DESK (17개소)
중국(홍콩)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미국	LA,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
인도	뉴델리
러시아	모스크바(*21년 상반기 개소 예정)
멕시코	멕시코시티(*21년 상반기 개소 예정)

- (IP-DESK 미소재 국가) 22개국 22개소

권역	지원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
유럽 및 중동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북미 및 중남미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콜롬비아는 '21년 상반기 중 지원 예정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 IP-DESK 소재 국가 지원 사업
 - 지식재산권 상담 지원
 -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구 분	지 원 비 용											
상표· 디자인 출원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지원 (1社당 8건) (단위 : US\$)											
	한도 (건)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 시아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상표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미정	미정
	디자인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미정	미정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 최대 70% 지원, 중복 지원시 20%씩 지원비용 하락 (1社당 3건) * 최대 \$10,000(피침해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사업
 - 법률자문 지원(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구 분	세부 지원 사업	비용	지원건수
법률자문	출원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행정단속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침해조사 연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1년 IP-DESK 추가 개소 예정 : 러시아, 멕시코
- '21년 IP-DESK 미소재국 지원 확대 예정 : 뉴질랜드,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콜롬비아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국내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국제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처리절차

- (IP-DESK 소재 국가)

지원신청

법률사무소 계약

과업수행

비용지원

-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신청

법률사무소 계약

과업수행

비용납부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02-3460-3357), ip-desk@kotra.or.kr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맞춤형서비스 - 해외지식재산권보호

Q&A



Q. 기업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아닙니다. 필수 서류만 제출하시면 지원해드립니다.

Q. 사업수행대리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해외지식재산권보호 사이트 내 '사업관련연락처'에서 수행대리인 리스트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5-46 국내복귀기업 지원

유턴기업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이용 시, 최대 USD 20,000 지급합니다.
- ☑ 사용하던 중고 자본재, 사용할 신규 자본재 수입 관세 50~100% 감면합니다.
- ☑ 이전 운송비, 수수료 등 21~44%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장
투자

- ☑ 전국 산업단지 및 지자체 연계를 통한 입주를 지원하고, 토지매입비용, 건설투자비용, 기계구입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 K-제조업 및 장기적인 경쟁력 배양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Lv.2, 로봇제조 활용혁신 등 스마트 공장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 인력 총원 시 고용보조금(중소기업 월60만/1인)과 해외 인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사업장
운영

- ☑ 법인세 최장 7년, 50~100% 감면과 시설·운영자금 용자, 보증 보험 우대 등, 금융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R&D를 지원하고, IP(지적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시적으로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내복귀기업의 성장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형	복귀 지역	보조금			조세		인력			구조 조정 컨설팅	스마트 공장	입지 지원	금융 지원	지적 재산권	보증· 보험 우대	R&D
		투자 입지	이전 설비	법인 소득세	관세	고용 창출	외국인 고용	외국인 고용								
									비수도권							
중소 중견 기업	비수도권	○	○	○	○							○				모두 지원
	수도권 (과밀이외)	X			○			○	○		X	○	○			
	수도권 (과밀이내)				X							X				
대 기업	비수도권	X	○	○	○							○				모두 지원
	수도권 (과밀이외)	X			○	X	X	X	X	X	X	X	X			
	수도권 (과밀이내)				X							X				

문의처

● 유턴지원팀 : 02-3460-7361~5

5-47 글로벌 M&A진출지원

우리기업의 글로벌 M&A 진출지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M&A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산업군(품목군)
 - 산업 및 품목 무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M&A 인수대상 매물이 국내 기업인 경우 지원 불가
- * Cross-Border M&A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그 중에서도 국내기업이 해외매물을 인수하는 Outbound M&A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M&A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지원방식·범위 설계
 - (전략수립) 팀 내 M&A 전문가와 면담으로 M&A 전략 논의
 - M&A 목적과 Target(지역, 품목 등) 구체화
 - M&A 추천 방법 수립
 - (정보조사) M&A 관련 규제 및 제도 관련 조사, Target회사에 대한 상세조사 등
 - (매물 발굴) 현지 M&A 자문사 등과 연계하여 M&A 매물 발굴 인수 후보군 탐색 및 인수 가능성(매각의향) 타진
 - (딜 실행)
 - 딜 프로세스 진행(매각 측과의 커뮤니케이션, 매수의향서 전달 등)
 - 매물기업 Pre-Valuation지원, 실사지원 (현지 실사기관 추천 및 실사단 구성 자문, 타겟기업 실사 동행, 실사 결과 검토 지원 등)
 - 인수협상, 투자 구조 수립, 계약서 검토 지원 등
 - (사후지원)
 - 해외 투자 프로세스 자문

-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KOTRA 기존 사업과 연계)
- PMI 전문기관 추천
- 국내신청기업 대상 내부 규정에 따른 심사 후, 전 단계에 걸쳐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양식 송부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심사·평가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평가 없음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비밀유지약정서

사업절차

M&A 프로세스별 서비스 개요



지원규모

- 글로벌 M&A관련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1:1지원
- 연간 50여개사의 신청기업을 지원

문의처

- 투자M&A팀
- 대표전화 : 02-3497-1110
- 홈페이지 : 코트라 사업신청 공식홈페이지 > 사업영역 소개> 해외투자> 글로벌 M&A지원

5-48 KOTRA 글로벌 CSR 사업

글로벌 CSR

우리기업의 해외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지 정부 및 바이어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사업 구분	사업유형	내용
동반 성장형 CSR (Grow Together)	A형: 자사제품·서비스 체험형 CSR	우리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고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소비자 대상 인지도 제고 가능
	B형: 해외 기술·경영학교 운영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하여 현지 기술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발주처등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시장 개척에 기여
	C형: 상생 가치 창출형 CSV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사회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사업
	D형: 유희장비 신흥국 이전	유희·저활용 불용장비를 수리해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표준 및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사업. 신흥국의 산업 발전, 공공 서비스 개선,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하며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기회 확대 가능
상생지원 CSR (Korea Care)	보건 방역 사업	각국의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구호물품 및 의료용품을 지정 국가에 기부 및 구호활동지원, 의료기술전수, 의료장비 이전 등
	환경 보호 사업	각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보호활동 및 캠페인 등

지원내용

- 기부제품 운반보관비, 외부 강사 항공임 및 체재비, 교재 제작비 등의 비용 지원 및 제품 기부 현지 행사개최 지원 등
(지원 조건 및 상세 지원사항은 KOTRA 웹사이트 사업 공모 참조)

미지원 내역

- 사업 참가기업 직원의 출장 경비

신청·접수

- KOTRA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https://www.kotra.or.kr/biz/overseas/kotraCsr/csrBoard.do?menuCode=D04>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현지 사회공헌 정도, 사업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선 정

사업 추진

* 신청 사업의 수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문의처

- 개발협력실: 02-3460+-7532, 7524, csr@kotra.or.kr

5-49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Contact Korea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해외 마케팅, R&D인력 등 해외 전문인력 발굴부터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비자추천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내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해외 전문인력 채용 수요 기업 및 기관
 - 중소·중견기업 : 무료
 -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 110만원 (적격인력 발굴 기준)
- 유치대상**
- 출입국관리법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및 D-8(기업투자) 비자직종에 해당하면서,
 - 4년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경력 1년 이상
 - 석·박사
 - 경력 5년 이상인 자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contactkorea.kotra.or.kr) 신청
- 처리절차**
- 글로벌인재 발굴서비스
 - Contact KOREA 홈페이지 발굴신청 → 해외인재 발굴 → 인재정보 기업송부 → 채용인터뷰 진행 → 이력확인 → 고용계약 체결 → 비자추천
 - 고용추천서 발급서비스
 - Contact KOREA 홈페이지 고용추천서 신청 → 서류검토 → 이력확인 → 외부평가위원 심사 → 고용추천서 발급 → 법무부 제출
- 지원규모**
- 해외 전문인력 수요기업 224개사 316명
 - * '20년 지원현황 : 152개사, 188명('20.10.31기준)
- 문의처**
- 해외취업팀(02-3460-7387~8)
 - 홈페이지(www.contactkorea.kotra.or.kr)

5-50

KOTRA 아카데미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강화 지원

KOTRA아카데미는 국가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역량별 해외 마케팅 실무과정 등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기업 관계자

교육과정

-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 과정
 - * 중국, 러시아·CIS, 인도, 베트남, 미얀마, 중남미, 신남방 지역 등
-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 특정 국가 내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과정
 - * 화장품, 자동차 부품, 식품, 의료기기, 유통 등
- 산업별 해외시장개척 심화연수 과정
 - 해외시장개척 관련 교육 및 무역실무 통합형 해외연수 과정
 - * 글로벌 기업 본관 주재 특강, 개별상담, 해외무역관 서비스 등 제공
-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 수출 초보·유망·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과정
 - * 수출 첫걸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등
-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실무역량 강화 과정
 - * 해외전시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 영업 역량 강화과정 등
- 온라인 수출 마케팅 과정
 - 글로벌 온라인 마켓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과정
 - * 주요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쇼피 등), 검색엔진 최적화(SEO),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교육 등
-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과정(GBC)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컨설턴트 양성 과정
 - * 컨설팅, 마케팅(온라인 플랫폼 포함), 해외시장 진출방안, 협상 및 계약관리 등

- KOTRA 글로벌 CEO 아카데미
 - 중소·중견기업 CEO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과정
- 외국인 투자유치 교육
 -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담당자의 투자유치 실무 역량 강화 과정

신청접수

- KOTRA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kotra.or.kr) 교육공고 참고
 - 교육공고 카테고리에서 과정별 신청 방법 확인

참가비

- 과정별 상이
 - KOTRA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kotra.or.kr) 교육공고 참고

문의처

- KOTRA아카데미 : 02-3497-1196
- KOTRA아카데미 대전분원 : 042-338-1702

5-51

열린무역관

KOTRA 해외무역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근무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진 KOTRA 회원(기업/개인회원)
* KOTRA 업무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지원무역관

- 81개국 123개 무역관
* 여행금지국, 신설 무역관 등 4개 무역관 제외

지원내용

-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무역관별 분기 당 1회만 가능)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
* 바이어 상담추진,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는 미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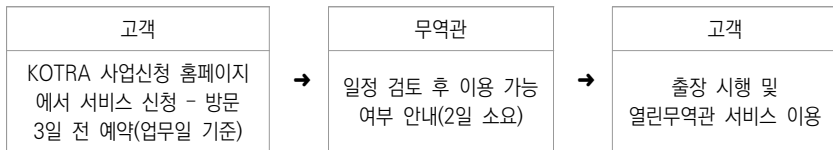
구분	세부 지원내역	비용
사무공간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복사기, 회의실 등	무료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기초상담	상담 신청고객 대상으로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 바이어 상담추진 등 유료 서비스 항목은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사업으로 별도 신청 필요

선정기준

- 별도 기준은 없으며, 신청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

이용(신청) 방법



안내 웹페이지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접속 → 상단 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 '해외 인프라 공유' 메뉴 아래 '열린 무역관' → '사업 신청하기'

문의처

-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4/7221
각 무역관(대표 e-mail / KOTRA 홈페이지 참고)

5-52 경제외교 활용 사업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신남방, 신북방 및 기타 전략시장에 대한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및 해외정상 방한 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며, 경제외교 후속사업을 수행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모든 국내 기업

- 지원내용**
- 해외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제공,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정상 방한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외국 경제사절단 방한 시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무역·투자 교류의 기회 제공
 - 경제외교 후속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비즈니스 파트너십(1:1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기업의 무역/투자/프로젝트 유망상담 건 상시 지원
 - 후속사절단 파견, 후속상담회 개최 등 추진

- 문의처**
-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6
 - 신남방 중동팀 : 02-3460-7666
 - 신북방 동북아팀 : 02-3460-7662



제6부 한국무역협회

6-1 포춘 500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534	6-1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547
6-2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535	6-13 TradeSOS 분야별 전문가 자문	549
6-3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536	6-14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550
6-4 tradeKorea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537	6-15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552
6-5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538	6-1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556
6-6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540	6-17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558
6-7 수출현장 자문서비스	541	6-18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559
6-8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542	6-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공	560
6-9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544	6-20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562
6-10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 상담회	545	6-21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564
6-11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546	6-22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566

6-1 포춘 500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팀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확보, 후속 투자 유치 등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다국적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일부 대기업 대상) 스타트업-대기업 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 실증 Pre-PoC 프로세스 도입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솔루션의 시장성 및 스케일업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시장 내 실제 접목 사례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영문 IR 및 협력 제안서)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기업 및업

지원규모

- 약 200개사

* '20년 지원현황 : 글로벌 대기업 46개사 초청, 창업기업 374개사 참여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 lovebright@kita.net / 02-6000-5592

용어설명

※오픈 이노베이션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6-2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스타트업 기술의 현장검증 및 비즈니스 레퍼런스 축적 지원을 위해 해외 대기업/복합 시설 등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제품/솔루션 실증을 위한 PoC(Proof-of-Concept) 프로세스를 지원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내용

- 해외 대기업/복합시설의 밸류 체인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술 실증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판로 확대 지원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솔루션의 시장성 및 스케일업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시장 내 실제 접촉 사례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영문 IR 및 협력 제안서)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선정기업 미팅

신기술 테스트/시연

실제 구매 계약 등

지원규모

- 약 20개사
* '20년 지원현황 : 해외 대기업 13개사 협력, 창업기업 31개사 선정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 lovebright@kita.net / 02-6000-5592

용어설명

※PoC(Proof-of-Concept), 개념 증명 :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해보는 것

6-3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및업을 집대성한 플랫폼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내 다양한 관계자 간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

지원대상

-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및업을 집대성한 플랫폼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내 다양한 관계자 간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 연결 지원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솔루션의 시장성 및 스케일업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시장 내 실제 접목 사례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영문 IR 및 협력 제안서)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오프라인 및업/
온라인 매칭

지원규모

- 약 2,000개사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 junggom@kita.net / 02-6000-5302

6-4

tradeKorea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B2B e-Marketplace 온라인마케팅 지원 플랫폼

B2B e-Marketplace 기반 바이어/셀러 매칭 및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플랫폼. 거래제이서 작성/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바이어와의 매칭을 지원하는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등 온라인마케팅부터 계약성사까지 지원

지원대상

- tradeKorea.com에 가입한 국내 기업회원
 - * 일부 서비스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만 제공

지원내용

- 무역협회 바이어DB 활용 타겟 마케팅
 - 국내 기업이 직접 무역협회 바이어DB에서 바이어 검색
 - 관심바이어 대상 C/L(거래제이서) 작성 및 발송
-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 무역협회 해외지부 관할 지역 대상
 - 해외지부에서 직접 마케팅 통해 관심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 1회 신청 시 최소 1개 ~ 최대 3개 지역 서비스 원칙 (연 3회 최대)
 - * 이 서비스의 경우, 협회 회원사만 지원 가능
- 빅바이어 상시거래 알선
 - 글로벌 빅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국내기업과 상시 알선 지원
-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 tradeKorea 내 기업/제품홍보 페이지 무료 제작지원
 - 홈페이지처럼 이용 가능한 도메인 및 웹사이트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 바이어로부터 공개가 허가된 인콰이어리에 한해, 구매오퍼 공개제재
 - 바이어가 지정한 기간동안 노출이 되며,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음

신청·접수

- tradeKorea 국문 페이지(kr.tradekorea.com)에서 신청

문의처

- 온라인마케팅실 : 02-6000-5417

6-5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FTA 활용 지원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지원내용

-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해외인증, 지재권 등)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필수) FTA 활용(원산지관리) 컨설팅

- * 관세법인 소속 전문 컨설턴트(관세사)가 컨설팅 수혜기업을 방문하여 FTA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아래 4가지 컨설팅 유형 중 택1)

-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

- * FTA체결국 수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또는 지재권 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인증 또는 지재권/계약 중 선택)

[필수] FTA 활용(원산지관리) 컨설팅(택1)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

신청

(종합) Package 컨설팅 : 8~10MD
 (개선) Upgrade 컨설팅 : 5MD
 (비대면유형) Untact 유형 컨설팅 : 5MD
 (예비) Starter 컨설팅 : 3MD

+ (필요시)

해외인증
컨설팅지재권
/계약
컨설팅

* 상기 컨설팅(필수 + 선택)은 최대 10일(MD)까지 지원 가능

신청·접수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분	내용
신청 자격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단, Upgrade 컨설팅의 경우, 협정/품목 등 컨설팅 내용이 상이한 경우허용)
업체 부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분담 : ① 20억원 이하 : 무료 ② 20억원~50억원 이하 : 10% ③ 50억원~100억원 이하 : 20% ④ 100억원~500억원 이하 : 30% ⑤ 500억원~1,000억원 이하 : 40% ⑥ 1,000억원 이상 : 50%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처리절차

- 지원기업 선정 :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으로 선정



지원규모

- 약 500 ~ 600개사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02-6000-7583~4(또는 1380)

6-6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무역정책 애로 해결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이메일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무역애로건의 DB를 통해 기존 접수된 애로사항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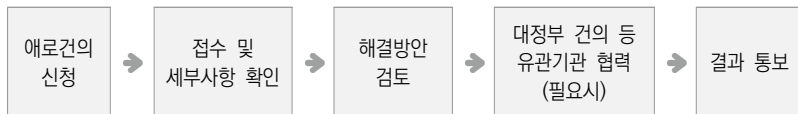
지원내용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처리
 - 신청, 접수, 검토, 완료 등 업무처리 과정을 무역업계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애로건의 처리 단계별로 업체 측에 이메일, 문자 등 통보
- 무역애로 DB 검색시스템 구축
 - 무역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 검색을 통해 업무에 활용 가능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회원/업무지원 - 무역애로건의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7 수출현장 자문서비스

업체 방문을 통한 맞춤형 현장컨설팅

종합상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출신의 무역분야 평균 30년 이상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제한 없음 업체

지원내용

-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관련 단계별 종합 컨설팅
-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 거래 단계별 맞춤형 무역실무 및 경영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회원/업무지원 - 무역현장자문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한국무역협회(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8 KITA무역진흥자금 용자

수출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신규 용자신청업체
- 신청일 현재 무역진흥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단, 기 용자업체는 더 많은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심사평가시 감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

지원내용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용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추천업체 선정

유의사항

-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업체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용자조건

- 금리 : 연 2.75%(고정)
- 기간 : 3년(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1, 4, 7, 10월의 25일)
- 용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한도 차등)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신청·접수

-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월~11월, 월초(1일~10일)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무역진흥자금 용자추천 신청서(온라인 양식)
 -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 선택서류
 - 용자신청서 상의 가점 항목(특허·인증 및 수상이력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서 상 내용 작성 또는 파일 첨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

6-9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코로나 극복 비대면 마케팅 지원

코로나 19로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하여 1:1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개최하는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국내외에서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기업과 상담 주선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화상 상담 인프라 (상담장, 솔루션 등) 및 무료 통역 지원
- 수출상담회 연계 마케팅 지원 (무료 샘플 배송, 사후 마케팅 등)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상담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절차



지원규모

- 상반기: 격주 / 하반기: 코로나 상황에 따른 탄력 운영
* 상담회 횟수 및 지원 업체 수는 변동 가능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6-10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 상담회

중소·중견기업 간접 수출 지원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의 1:1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알선하여 수출 전문기업으로 하여금 노후가 부족한 우수 제조기업의 수출대행을 지원하게 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업

지원내용

-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 무역상사-제조기업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국내 유망 제조기업과 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매칭 상담 알선 등 수출 마케팅 지원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및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stc.kita.net)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제출서류

- 상담회별 모집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 오프라인 상담회

상담회 공고
(kita.net)



일시, 장소, 신청대상
등 정보 확인



상담회 참가 신청서 등 제출
서류 송부

- 온라인 매칭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접속(stc.kita.net)



로그인
(kita.net 회원가입 필요)

「전문무역상사 소개」메뉴
“전문무역상사 기업 검색”



수출 희망 품목 및 국가 등의 키워드로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 검색



상담 희망 전문무역상사에게
메시지 발송

지원규모

-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상담회 10회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 stc.kita.net

6-11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산업별 전문 국제전시회 개최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를 통해 해당 업계의 국내외 마케팅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이와 연계한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거래선 확보를 지원해 주는 마케팅 사업

지원대상

- 해당 산업 분야 관심기업

지원내용

- 국내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와 연계한 업종별 빅바이어 초청 대면·비대면 상담회 및 기타 마케팅 행사 동시 개최
- 권역별, 품목별 글로벌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세미나 병행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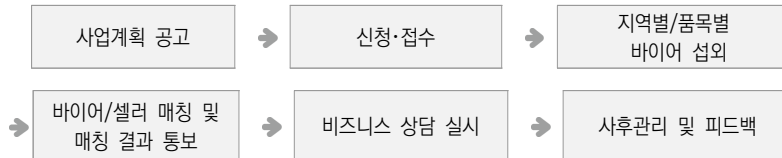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전시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절차



지원규모

- 3개 전시회, 해외바이어 70개사 초청
* 추진 과정에서 지원 방식·규모는 변동 가능

	전시·상담회명	시기	장소
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2.18 ~ 21	코엑스
2	월드IT쇼 (World IT Show)	4.21 ~ 23	코엑스
3	Marine Week	6. 9 ~ 12	백스코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6-1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망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국내 유망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기존 바이어 관리, 제품 홍보, 현지 시장 트렌드 파악, 국내외 동종산업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 마케팅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최대 50%) 및 장치비(최대 50%) 지원
- 장치·운송·상담·현지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 * 전시회별 지원율 상이, 지원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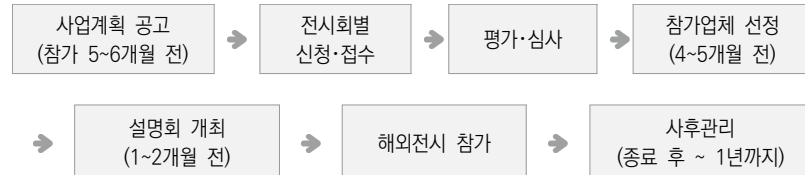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www.kita.net)
 - 중소기업중앙회 (www.sme-expo.go.kr)
 - KOTRA (www.gep.or.kr)

제출서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 제출
 - 필수서류
 - *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정산용 통장(회사명의)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선택서류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증명서, 각종 규격인증/우수디자인/ 산업재산권 인증서, 정부/지자체 표창 사본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4개 해외전시회, 약 40개사 한국관 참가 지원

구분	전시회명	시기	모집업체	공동수행기관
1	독일 쾰른 FIBO	4.8~11	10개사	중소기업중앙회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PLMA 프라이빗 라벨 전시회	5.18~19	10개사	코트라
3	미국 LA 무선통신 전시회	10.26~28	10개사	코트라
4	미국 시카고 PLMA 프라이빗 라벨 전시회	11.14~16	10개사	코트라

* 지원 전시회, 시기, 모집업체 숫자는 변동 가능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6-13 TradeSOS 분야별 전문가 자문

전문분야별 무역상담 온/오프라인 지원

무역업체의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절차, 해외인증, 국제계약, 세무 및 회계, 전자상거래 등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전문 상담을 실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지원내용

- 무역실무, 통관절차/HS품목분류, 국제계약/클레임, 해외인증, 세무/회계, 환율/외환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무료)

분 야	상담요일	컨설턴트
수출입실무/신용장/대금결제	월~금	전문상담역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 전문가
통관/관세/HS분류/FTA원산지		관세사
무역실무 분쟁대응	월	전문변호사
국제계약서/클레임	화~목	국제변호사
세무/회계	수	공인회계사
환율/외환	목	외환전문가
전자상거래	목	글로벌마켓 파워셀러
인사/노무	온라인 전용	공인노무사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실무상담
- 전화상담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6-14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중소기업 해외지사 설치 지원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추천기준
 - 해외지점 설치인증 추천
 -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 * 상기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 해외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지원내용

-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해외지사 설치 인증추천 - 추천서 다운로드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실

제출서류

-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또는 신용장 사본),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해외지사설치 인증추천란에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해외사업부문

-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 사업배경(수출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3개년), 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 * 현지판매 및 영업 전략(마케팅 전략 포함)



한국무역협회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15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신속한 출입국 수속

APEC 회원국간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멀티 VISA로써 역내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60~180)일간 체류 보장하고, 공항내 전용 수속레인을 통한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천대상

- 법무부 훈령 제1192호 제3조에 의거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추천 제외 대상

- ▶ 상기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최근 2년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없는 개인
 - *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2019년 APEC 회원국 상용목적 2회 이상 방문한 자'으로 한시적 개인 자격 요건 완화. 21년 이후 신청자의 경우, '19년 1월 ~ 신청일까지의 APEC 회원국 상용목적 2회 이상 방문한 자' 적용 예정(* 법무부 확정사항은 아님)

추천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출입국 수속 가능
- ABTC 21개 가입국
 - VISA 면제(19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업체 공통서류(각 1부)
 - 추천의뢰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소지자 명단(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격 확인용 실적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최근 한 달전, 기업 인감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
-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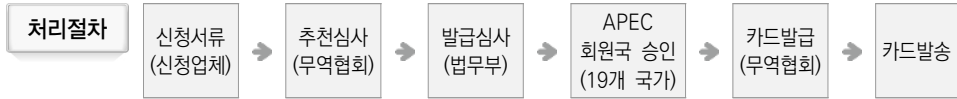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수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KTNET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송금전문사본 - 해당 거래 은행 명판 및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경제부에서 발행)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후 원본 제출	
APEC중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 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 규정양식에 빈칸없이 작성
 -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서명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 * 흰색배경/가로 3.5cm x 세로 4.5cm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 (여권서명 포함)
 - * 주민등록 후단번호 와 하단의 숫자정보 가린 후 복사한 여권사본 제출
- 정보이용동의서(규정양식)
 -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 반드시 작성
 - * 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
- 서약서(규정양식)
 - * 작성일자, 신청인명, 대표자명 반드시 작성
 - * 자필서명 및 기업인감 날인
- 범죄·수사경력희보서(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온라인 발급,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 * 온라인발급(공동인증서) 발급시스템 주소 : <http://crims.police.go.kr>
 - * 발급용도 :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실효된 형 미포함)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국문, 영문회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업체명/신청자명' 표기
- *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 '실효된 형'은 형집행 종료 후 다음기간을 경과한 형을 말함
-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10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 5년, 벌금형 : 2년(벌금 납부한 날로부터)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Q.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인가요?

A.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개월 소요 예정입니다(코로나19 등 특수한 업무장애요소 발생 시 발급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tc.kita.net)

용어설명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보장하는 VISA 면제 출입국카드

6-1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외국인력 고용 촉진 지원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무역업체에 사증(VISA) 발급을 추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 추천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 해당업체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을 통한 일체 접수·발급 불가)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 발급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신청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
 - 회사소개서 1부(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해외영업 등 서술)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이력서 1부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무역인력 사증발급 추천 서약서 1부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6-17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서비스 무역 활성화 지원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지원내용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만화, 동영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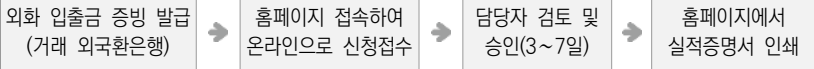
신청·접수

- 용역/무체물 실적증명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제출서류

- 용역/무체물 실적증명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해당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참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Q.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A.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6-18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대중소기업 연계 개방형 혁신성장촉진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에 혁신역량을 수혈하고 대·중견기업은 스타트업에 인프라 및 사업화 기회를 지원하는 상생혁신을 추구합니다.

지원대상

-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지원내용

- 대·중견기업 니즈 맞춤형 스타트업 선발
 - 1만여개 스타트업 DB를 활용한 대·중견기업 희망 매칭 분야별 스타트업 추천
 - 사전 협의를 통한 협회-참여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공동 선발
-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협업/투자 가능성 기회 제공
 - 스타트업과 협력하고자하는 대·중견기업과 연결 및 협업 모델 공동 구축 검토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공지사항 - “오픈이노베이션” 검색
- 이노브랜치 홈페이지 : <https://innobranch.com/>
- 이메일 신청 : 한국무역협회 혁신생태계실 tradehelp@kita.net

제출서류

- 대기업 혁신 니즈 분야 자료 / 스타트업 IR 자료 등

처리절차

대중견기업
수요 확인매칭 분야 설정 및
스타트업 모집맞춤형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

행사 개최

Q&A



Q. 대·중견기업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에 관심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참여할 수 있나요?

A. 무역협회 스타트업브랜치 사무국 tradehelp@kita.net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사업 제안서를 비롯하여 오픈이노베이션 전체 코디네이팅을 도와드립니다.

용어설명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며 개방형 혁신이라고도 함

6-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공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스타트업에게 해외진출 바우처*를 교부합니다.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지원내용

- 참여 기업 당 최대 4,200만원 규모의 바우처 지급
 - 기업 자부담금 최대 1,260만원 부담 시 국고보조금 최대 2,940만원 지원 (국고보조금:자부담금=70:30)
 - 기업별로 연간 사용 바우처 금액 설정 가능(3,000만원 ~ 4,200만원)
- 스타트업 맞춤형 메뉴판 구성 및 서비스 제공
 - 홍보동영상/해외규격인증/전시회/해외영업지원/법무·세무·회계 컨설팅/역량강화 교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해외공유오피스 및 해외테스트베드 사업 사후정산 메뉴 확대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록 여부, 해외 콘테스트 참여 경험 여부, AC/VC 투자 유치 이력 보유 등을 종합 평가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처리절차

- 바우처 참여기업 선정 후 바우처 사용

모집 공고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최종 선정

문의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09~18시 실시간 응대): http://pf.kakao.com/_tzfxhK
- 전화: 02-6000-5857



Q. 바우처가 무엇인가요?

A. 바우처는 일종의 상품권과 유사한 제도로 참여기업은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사용하고, 바우처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6-20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민간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확충

스타트업 브랜치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서울 코엑스 2층, 뉴욕, 두바이에 조성된 스타트업 브랜치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스타트업, 투자자(AC/VC), 스타트업지원기관, 창업희망자 등

지원내용

-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스타트업 브랜치는 150인까지 수용 가능한 행사장(피칭센터), 4개의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라운지)로 구성
 -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의 니즈에 따라 공간 대여
- 스타트업 브랜치 뉴욕, 두바이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협회 뉴욕지부를 통한 미국 진출 핵심 스타트업에 대한 공유 오피스 및 투자자와의 미팅을 위한 회의공간 제공
 - 협회 UAE지부-두바이 미래재단(DFF) 협업을 통한 중동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 발굴 및 현지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회원/업무지원 - 스타트업 브랜치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사업 내용 등 필수 기재)

처리절차

- 한국무역협회 회원 가입 후 스타트업 브랜치 예약

한국무역협회 멤버십
신청 및 승인

이벤트 개최신청

이벤트 개최
승인브랜치 사용 및
정리

Q&A



Q.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가요?

A. 코엑스 동문(영동대로변)으로 입장하신 후 인포메이션데스크를 지나 좌측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우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Q. 스타트업 브랜치 장소 및 회원 가입 설명 자료가 있을까요?

A. 스타트업브랜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타트업 브랜치 공간 및 사용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bit.ly/33YsdPs>

6-21 |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사업명을 풀어서 부연설명 또는 핵심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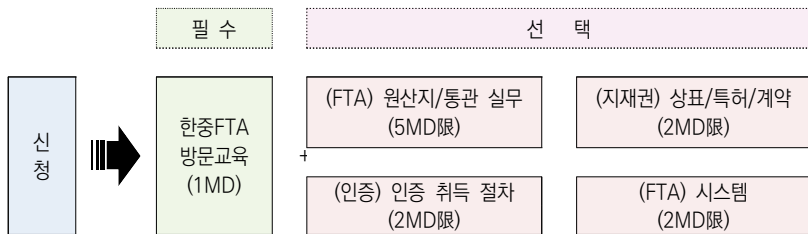
체계적인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FTA 활용 실무, 중국인증, 지식재산권, FTA 시스템 분야의 전문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對中 무역 관련)

지원내용

-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
 - FTA 활용 교육 1MD를 필수로 선택 후, 나머지 9MD에 대해서는 총 4개 분야를 수요자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맞춤형 컨설팅(MD=Man Day)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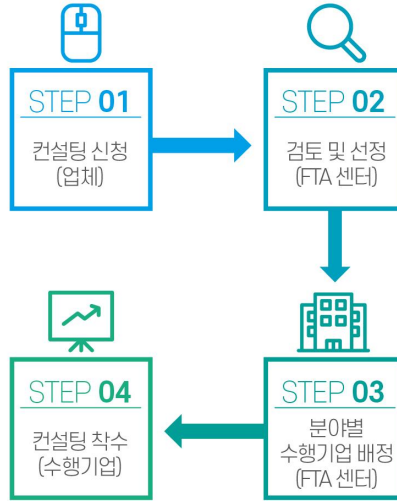
- 신청방법 :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메뉴 선택
- 신청기간 : ~2021. 11. 30(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업체 부담금 발생

매출액	부담금
20억원 이하	무료
20억 ~ 50억원 미만	10%
50억원 ~ 100억원 미만	20%
100억원 ~ 500억원 미만	30%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40%
1,000억원 이상	50%

제출서류

- 2021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진행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직전년도 매출 실적 증빙서류,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 BOM(있을 경우)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사업비 2억원)
* '19년 99개사, '20년 43개사 지원(코로나 19로 인한 대면컨설팅 제한으로 지원업체 수 감소)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80
 - 이메일 : chinadesk@kita.net
 - 홈페이지 : <http://okfta.kita.net>

6-22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전략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

지원대상

- 대상국가 진출 관심기업

지원내용

- 공통경비 전액 지원
 - 각종 부대행사 개최비 - 비즈니스 포럼, 세미나, 공식 오찬 등
 - 파견국 내 단체차량 임차비, 행사장 임차 및 조성비, 통역비 등
- 현지 산업시찰 및 주요기업/기관 방문 지원
 - 개별기업 항공임 및 체제비(숙박비 등) 제외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 행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절차



지원규모

- 사절단 파견 일정 및 규모 변동 가능

	사 절 단 명	시 기	규 모	지 역
1	대미 경제통상협력 사절단	6월	30개사	미국
2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9월	50개사	러시아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제7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1 거래공정화	568
7-2 성과공유제 확산	573
7-3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576
7-4 상생결제제도	578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580
7-6 기술보호 상담·자문	582
7-7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584
7-8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586
7-9 기술보호지원반	587
7-10 기술보호 역량강화	589
7-11 기술자료 임치제도	592

7-1 거래공정화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기업 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납품대금조정협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를 필요한 수탁기업
- (공정거래교육)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내용

- (분쟁조정)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법률상담·자문)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및 하도급법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 * 재단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지원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가능
-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 지원사항 : 온·오프라인 교육(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지원사항 변동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불공정행위 현장 신고접점 확대 및 피해기업 법률지원 등을 위해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확대('13년 14개소 → '20년 70개소)
 - 총 70개소 : 기존 29개소(중기부, 지방청, 협력재단, 사업자단체 15개소) → '19년 40개소 추가('19.6) → '20년 1개소 추가('20.3)
- 수탁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협상권 강화('21.4월 시행)
 - 납품대금 협상주체 : (현행) 수탁기업,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개선) 현행+중소기업중앙회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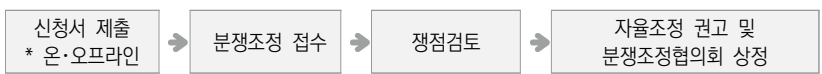
- (법률상담) 상담전용 번호(1357+내선9)
- (분쟁조정) 온라인, 유선,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 (공정거래교육)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11)
 - 이메일 : pey@win-win.or.kr / 팩스 : 02-368-8463
 - 우 편 : (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9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제출서류

- (분쟁조정, 법률자문) 법률자문 신청서 또는 수·위탁 사전 분쟁조정 신청서·사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 (공정거래교육) 교육 신청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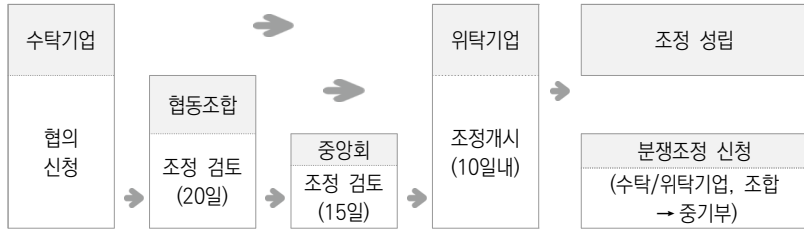
처리절차

- (법률상담) 상담전용 번호(1357+내선9)를 통해 법률상담
- (분쟁조정)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공정거래교육) 재단과 일정, 내용협의 후 교육(선착순 지원)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 공정거래 교육, 납품대금조정협의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8958, 161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일자리지원부 : 02-368-8463 (pey@win-win.or.kr)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8958 F)042-481-8960	중소기업중앙회(KBIZ)	02-2124-3131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02-368-8463 F)02-368-8940	벤처기업협회	02-6331-7004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F)02-2110-0665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INNOBIZ)	031-628-9633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29 F)031-201-6959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32-680-3922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1 F)032-818-020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3 F)051-335-4335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3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9 F)052-283-0354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3 F)055-262-5560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F)053-626-2602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6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8 F)062-366-9613	한국의류산업협회	02-528-0111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83 F)063-210-6460	대한건설기계협회	02-2055-3606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1 F)042-865-6159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F)043-235-249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6381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F)033-260-1629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3 F)041-415-2858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783-6952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한국철근기공업협동조합	02-813-1735	(사)한국포장기계협회	02-6123-3051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02-3481-9906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금속열처리공업 협동조합	02-712-107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골판지포장산업 협동조합	02-3474-712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12
한국보일리공업협동조합	02-3432-5301	대한영상콘텐츠제작 협동조합	02-556-030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070-5029-3714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02-454-5114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4	(사)서울의류협회(의류제조 소 상공인특화지원센터)	02-865-9213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다이캐스트공업 협동조합	02-716-1611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02-786-7628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1 02-6240-1152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70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소프트웨어개발 협동조합	053-756-6681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사)IT여성기업인협회	02-6956-9952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00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 사업자협동조합	010-5318-3066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주)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010-5303-3366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33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02-2038-2558
한국전등기구엘이디 산업협동조합	032-675-9742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 하나요?

A. 수·위탁 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2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사업대상

-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대기업·공기관·1차(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사업내용

- 기업 간 자율적인 성과공유 과제 발굴 및 이행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확인
 -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 대표모델

① 신제품·신기술 개발	② 해외동반 진출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③ 기술이전	④ 공정개선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고 품질, 비용 및 납기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
⑤ 성능개선	⑥ 원가절감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	위탁기업의 제조원가, 외주비, 물류비 등의 절감을 협력사가 제시하거나 위탁기업이 과제를 공모하여 해당 원가절감을 도모
⑦ 관리시스템 개선	⑧ 서비스 영역개선
위탁기업이 협력사의 개선을 목표로 협력사 개선 목표 달성 시 비용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를 공유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시설, 설비를 유지보수하거나 영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개선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

신청·접수

성과공유제 핵심요건

- 협력활동 목표 합의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 사전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 과제의 목표, 2) 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 성과공유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성과공유 방식) 현금보상, 물량확대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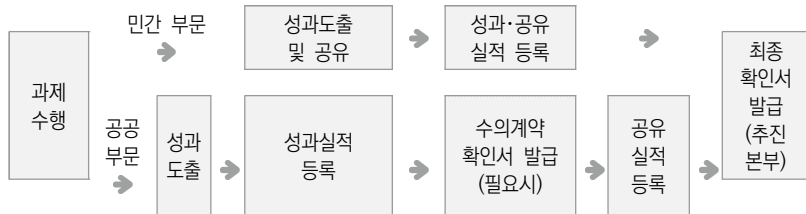
- 과제등록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과제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등

처리절차

-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과제 확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59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942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Q&A



Q. 기업 간의 성과만 공유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기업문화를 위해 우수기업을 지원, 발굴하는 제도로 미래성과공유제가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대표자와 근로자 간의 성과를 공유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7-3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상생협력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상생누리

대기업·공공기관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에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누리(winwinnuri.or.k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지원대상

- 국내 모든 중소기업 대상
 - 단, 프로그램 운영 대기업·공공기관 정책에 따라 지원 가능범위 상이

프로그램별 지원범위

- ▶ 협력사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이 시스템 상 협력사로 승인한 기업만 해당 프로그램 조화·참여 가능
- ▶ 전체 오픈 :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조화·참여 가능
 - * 단, 지원 대상 세부 선정 기준은 대기업·공공기관 운영 정책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 대기업·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시스템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이용절차

- 상생누리(winwinnuri.or.kr)를 통해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단계별 세부사항

- ▶ 회원가입
 - * 사용자별 아이디·비밀번호 부여, 소속 기업정보 등록 후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등록 및 승인 필요
- ▶ 프로그램 검색 및 신청
 - *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 ▶ 선정결과 확인
 - * 대기업·공공기관이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후 시스템에 결과 업데이트
- ▶ 프로그램 참여
 - * 대기업·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지원규모

- 한 해 2,000개 이상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 * '20년 지원현황 : 177개 대기업·공공기관 2,148개 프로그램 등록운영(11월 말 기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2-481-397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 02-368-8441, 8487
- 홈페이지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Q. 개인도 가입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도 상생누리에 가입하여 예비창업자 및 취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한 기업 당 한 사람만 가입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상생누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한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성의 모든 제도, 정책, 사업, 행사 등을 총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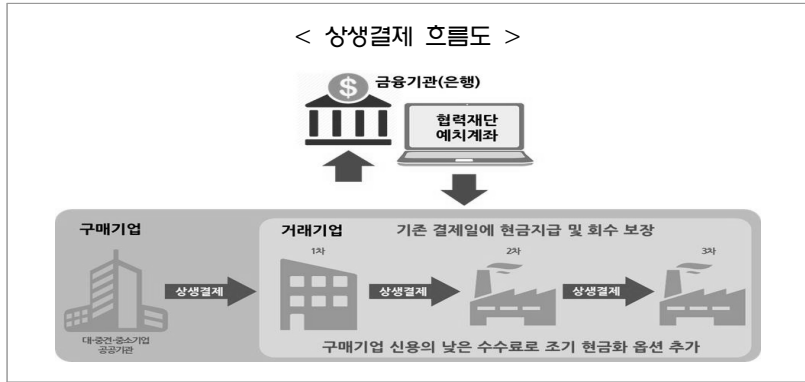
7-4 상생결제제도

중소기업에게 안전한 대금지급 보장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한 결제제도입니다.

사업개념

-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이하 거래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
* 상환청구권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혜택



대금회수 안정성

예치계좌를 통한 납품대금 직접 지급으로 대금회수 안정성 보장



금융비용 절감

만기일 전 대기업·공공기관 신용도로 저금리 할인 가능



환출이자·장려금 수익

상생결제 도입에 따른 상위 거래기업의 추가 수익



세액 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0.2%~0.1%)

이용절차

1. 상위기업(구매기업)의 약정여부, 약정 은행 확인(미도입 시 도입요청)
2. 상생결제 약정 체결(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3. 은행별 상생결제 사이트(www.winwinpay.or.kr내 은행별 현황 참고) 회원가입

4. 상생결제 사이트를 통해 상생결제제도 이용



도입금융기관

- 총 11개 금융기관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제일, 하나, 경남, 대구, 전북은행, 현대캐피탈)

문의처

- 상담번호 : 1670-0833(약정/시스템이용), 0834(제도 운영)
- 상생결제 홈페이지: <http://www.winwinpay.or.kr>



Q. 상생결제를 사용하면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가요?

A. 상생결제 지급일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대출금리는 구매기업(대기업)의 저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Q.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기업도 상생결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기존 현금지급일을 만기일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면 결제주기를 지키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이란?

상위 거래기업이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하위 거래기업 할인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거래기업들의 안전한 대금 회수를 보장합니다.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활용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유통망 입점, 전시회(Booth in Booth) 참가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참여 중소기업이 5개사 미만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컨소시엄의 경우

지원내용

- 해외거점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업종·진출지역별 특성을 살린 제품 현지화 및 안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동반진출 모델 발굴
- 해외홍쇼핑 : 해외홍쇼핑 방송지원, 현지화조사단/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지원
- 한류연계 : 글로벌 한류행사 및 콘텐츠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 판촉 및 수출상담 등 한류활용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사업유형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항목
해외거점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유형·단계별 중·장기 판로개척 활동 60% 이내 지원 (최대 3년 장기과제 지원 가능, 단 2·3차년도 정부보조율 50% 이내, 연도별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판단) ■ 대·중소기업 1:1 매칭 가능 (공동수주, 시범사업 등) ■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2천만원 한도 (공동수주 또는 시범사업의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5억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비, 교육/컨설팅비, 브랜드/인증비, 현지화 개발비,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비목별 50~100%까지 지원
해외홍쇼핑 방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홍쇼핑 방송 및 소요비용 70% 이내 지원 ■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2회 지원 ■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등

한류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콘텐츠 연계 해외 프로모션 등 60% 이내 지원 ▪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2천만원 한도 * 스타마케팅은 중소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비, 판촉비, 교육비, 부대행사비(이벤트), 간담회비, 운영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주선용역비, 홍보비 등 * 비목별 50~100%까지 지원 가능
---------	--	--

신청·접수

- '21.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오프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지원규모

- 1,320개사 내외 (190.29억원)
- * '20년 지원현황 : 1,160개사, 기업당 평균 약 1천만원 지원(※'20년 사업 진행 중)

문의처

- 중소기업본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2-481-448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52~55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 대기업은 동반성장 지수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참여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되고 포상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홍보되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6 기술보호 상담·자문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보안, 법률 분야 200여명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2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 * 매출액 등 평균 3,000억 미만, 중소기업 종료 기간 3년 이내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 유희·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사전진단)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자문(전액 무료, 최대 3일)
 - 보안전략 : 보안규정 수립, 영업비밀관리, 임직원 보안교육 등
 - 보안시스템 : PC서버, 네트워크 보안, 클린데스크 지원 등
 - 스마트공장 : 수준별 보안진단, 보안시스템 도입 자문 등
 - 법률자문 : 기술거래, IP, 영업비밀 관련 자문 등
 - 해외진출기술보호 : 해외 기술거래 계약, 해외 IP 대응 자문 등
-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안분야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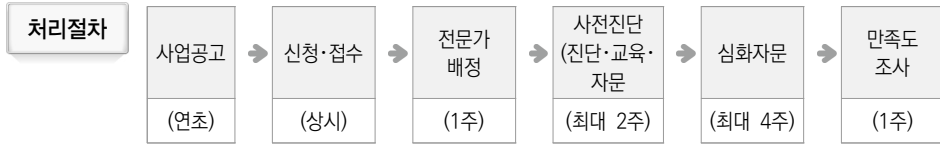
스마트공장, 해외진출 기술보호 분야 확대

신청·접수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접수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음
 - *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확인서 요청할 수 있음



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
 * '20년 지원현황 : 887건 지원('20.11월 기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 분야로, 법률과 해외 진출 기술보호는 같은 법률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7-7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 유희·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소송비용 지원 : 기존(최대 1,000만원) → 변경(최대 2,000만원)

신청·접수

-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상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소송비용 지원여부 심사) 신청서 접수 → 지원심의회 개최 → 지원여부 결정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처리절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지원규모

● 중소기업 25개사 내외

* '20년 지원현황 : 29개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3954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02-368-8768, 8706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올타리 : www.ultari.go.kr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용어설명

조정: 조정부 도움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

중재: 당사자간 중재 합의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 판정으로 해결

7-8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법적대응능력 제고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관련 분쟁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심층자문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술유출·분쟁 등 기술침해 관련 법적대응, 지적권 분야 및 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준비서류

- 수입보험청약서, 당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신청서류

처리절차



지원사례

- 기술보호관련 각종 계약서 및 약정서 양식(수출계약서, 국내 기술공급 지원 계약서, 해외 기술이전 계약서, 해외 JV 계약서, 사내 임직원 비밀보호 약정서 등)검토 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사전예방 방법 자문
-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률자문과 보유 특허 관련 내용 및 유사 제품과의 동일성 검토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대응 논리 개발

지원규모

- 변호사·변리사 자문 최대 30시간, 무료(예산 소진 시 까지)
* '20년 지원현황 : 152개 중소기업 법무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43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7-9 기술보호지원반

지역별 민관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및 조속한 사건 해결 유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중요성 함양 등 사전예방 실시
-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및 조속한 사건 해결 유도
 - * 기술침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사건 파악, 법적 요건 검토 등 법률자문 지원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범위 확대(사전예방 분야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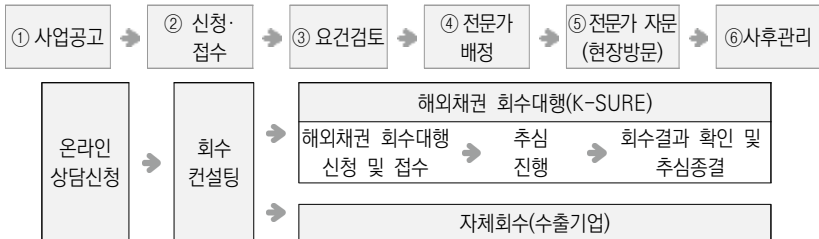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중소기업 120개사 내외(예산 144백만원)
* '20년 지원현황 : 140건('20.11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7-10 기술보호 역량강화

기술보호 기반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보안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신청·접수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도입기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 기술보호 실적 및 노력, 구축 기대효과
- (공급기업) 지원역량, 지원전략, 사업관리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부), 가격제안서(1부)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 '20년 지원현황 : 56개사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460, 447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중재지원팀 : 02-368-8737
- 기술보호 올타리 : www.ultari.go.kr

2. 기술지킴서비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진단 및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통합보안장비 미 보유 시 임대료(월9~13만원)는 기업부담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이동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악성코드 · 랜섬웨어 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기술 유출 예방 및 암호화 방지를 지원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 전송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 검토 및 지원제외 기업 여부 확인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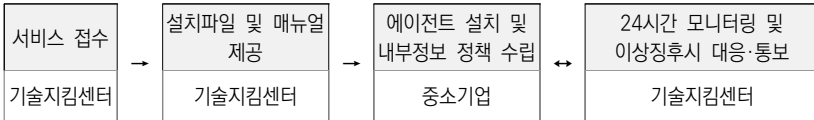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처리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지원규모

- 무료(최대 5년간 지원)
 - * '20년 지원현황 : 21,470건(10월말 기준)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 monitor@kaits-info.or.kr
- 기술보호 울타리 : www.ultari.go.kr

7-11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관

지원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내용

-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수수료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 기업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를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치수수료를 1/2 감면
 -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온라인 신청 500MB 이내 임치가능 / '21.10.29일까지 시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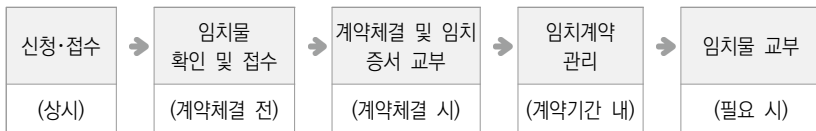
신청·접수

- 온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기술보증기금(대전)으로 직접 방문(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제출서류

- 임치신청서,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481-4549
-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 테크셰이프 : 1544-1120, ts.kibo.or.kr

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 A.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제도는 말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말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 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8부 창업진흥원

8-1 예비창업패키지	596	8-14 메이커 스페이스	621
8-2 초기창업패키지	598	8-15 창조경제혁신센터	623
8-3 창업도약패키지	600	8-16 스타트업 파크	625
8-4 재도전성공패키지	602	8-1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626
8-5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605	8-18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628
8-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608	8-19 창업존 운영	629
8-7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610	8-2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632
8-8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612	8-2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634
8-9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614	8-2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636
8-1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616	8-23 창업지원포털(K-Startup)	638
8-11 청소년 비즈쿨	618	8-24 창업기업 확인	639
8-12 실전창업교육	619	8-25 도전! K-스타트업	641
8-13 창업에듀	620		

8-1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도전 지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

지원대상

-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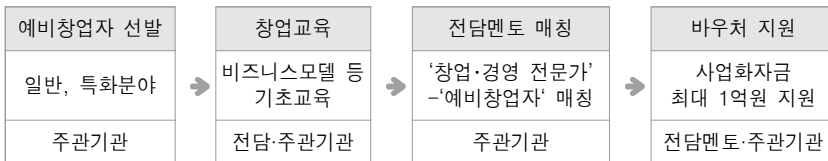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 이용자에게 금액 한도를 정하여 사업화 자금 지급 ⇒ 이용자가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주요 사업절차 >



- 지원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발굴과 지속적 성장 위해 창업지원 사업간 연계 추진(실전창업교육, 초기창업패키지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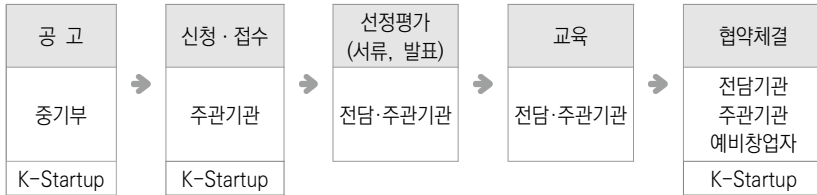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처리절차



지원규모

- 1,530개 창업팀 선정(1,002억원)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전문기관) : 044-410-1808, 180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Q&A



Q. 주관기관 선택 시 지역제한이 있나요?

A.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Q.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A.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에 신청 가능합니다.

8-2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사업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일반유형주점업, 무도유형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1억원)
- 일반기술과 실험실험특화로 트랙을 구분하고 지원 한도와 규모를 차등하여 지원
- (특화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를 고려하여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간별 상이)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서류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증빙자료(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960개사 내외(1,002.6억원)
* '20년 지원현황 : 1,021개사, 최대 1억원 지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초기창업부) : 044-410-1831~1841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또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Q&A



Q. 사업신청 시 나이나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나이,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선정 이후 사업화 자금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업화 자금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비 구입비, 인건비, 무형자산 취득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등 정해진 사업비목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8-3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고도화, 분야별 특화프로그램 등 사업화 지원 및 성장축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고도화, 분야별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최대 3억원)
- 성장지원 서비스 : 창업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수출, 유통, 상장 등 성장서비스 지원(최대 1억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2~3월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80개사(성장촉진 프로그램 포함) 내외(예산 1,02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6,719개사(중복지원가능), 선정지원기업 1,276개사, 평균지원금액 사업화 1.2억원, 성장촉진 10백만원

문의처

-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 044-410-1860, 1861
- 사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97, 4386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1~3년) 지원사업을 기 수혜 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사업 지원사업 기 수혜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 가능 합니다.

Q.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중복으로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8-4 재도전성공패키지

우수한 (예비)재창업자 발굴·육성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지원대상

- 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사업 공고일 기준)
 - IP전략형 트랙의 경우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까지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최종 선정 공지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체납처분유에 승인 통지서 제출하거나 선정전까지 완납한 기업은 예외)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3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 또는 기업
- ▶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일반형, 채무조정형, IP전략형(40~60백만원 이내)
-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별도 평가 예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신규 유형 신설(IP전략형)
 - IP전략형(사업화자금+특허컨설팅)
- 특화프로그램 및 재창업교육 고도화(별도 안내예정)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1.1월중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성실경영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문제인식(폐업 원인 분석 등), 실현가능성(제품,서비스 개발 방안 등), 성장전력(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팀 구성(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

* 세부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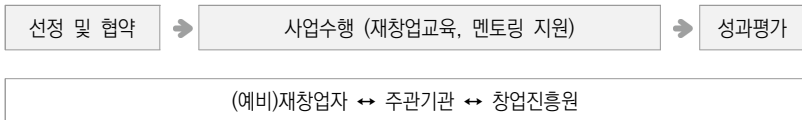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폐업증명서 등

처리절차

- 선정평가



- 사업화지원



지원규모

- 총 200개사 내외(예산 14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총 493개사(추경 포함)

문의처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제도전부 재도전창업팀 : 044-410-1815,1816,181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지원조건에 나이, 지역, 폐업한 일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가요?

A. 나이, 지역에 대한 제한조건은 없으나, 폐업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이력(폐업사실증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Q. 재창업 전 폐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요?

A. 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이력(폐업사실증명)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8-5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틱스 운영사가(창업기획자 등)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엄선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프리 틱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틱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 창업지원사업 계획공고 기준, '사업화'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틱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팀*)
 -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운영사 추천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포스트팁스)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후속 민간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 아래 6개 기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성공'판정

- ①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사업화에 따른 연간 수출액 50만달러 이상, ③상시근로자 20인 이상, ④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 이상), ⑤M&A(10억 이상), ⑥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프리팁스)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 지원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팁스)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포스트팁스)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신청·접수

- (팁스) 상시 접수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

*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팁스 운영사별 자체 평가(투자심사) 후 정부 최종 선정평가 (정부 최종 선정평가 주요내용)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등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프리팁스)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포스트팁스) 성공가능성, 후속성장계획(글로벌 진출 필수), 고용창출 효과 등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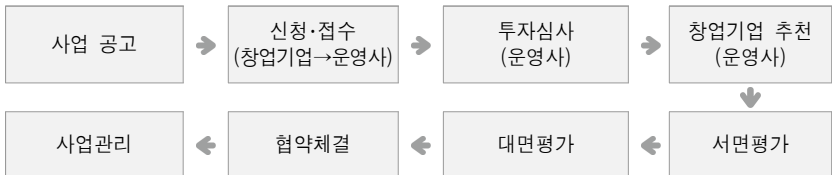
- (팁스) 사업계획서 등(각 팁스 운영사별 별도 양식)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사본 등

처리절차

- (프리팁스 선정절차)



- (팁스 선정절차)



- (포스트팁스 선정절차)



지원규모

- (프리팁스, Pre-TIPS) 총 예산 30억원, 30개팀 내외
- (팁스, TIPS) 총 예산 1,896억원, 400개팀 내외
 - * (R&D) 1,468억, (연계사업) 428억(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포스트팁스, Post-TIPS) 총 예산 144억원, 40개팀 내외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 투자협력부 : 02-3440-7305
-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 02-3440-7421
- K-Startup (www.k-startup.go.kr),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8-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오픈이노베이션 창업 생태계 조성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팁스 운영사)가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엄선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

지원대상

● 사내벤처팀* 및 창업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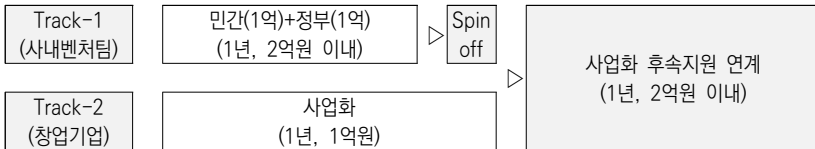
* 운영기업이 보육 중인 사내벤처팀(예비창업자)으로, 운영기업은 기업의 혁신 역량 등을 통해 사내벤처팀을 육성하는 대·중견·중소·공기업(공고를 통해 선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및 일부 지원사업 기 수혜자(모집공고 참조)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및 후속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해 사업성공률 제고



〈세부 지원 내용표〉

구분	세부 지원 내용	비고
사업화 자금	· 창업아이템(BM)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최대 1억원(평균 85백만원) 지원	-
실증 자금	· 시험·인증, 소비자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2억원(평균 89백만원) 지원	후속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액셀러레이터 매칭을 통해 사내벤처팀의 성공사업화 및 초기 분사창업 초과정 지원	후속지원
교육 및 문화 확산	· 사내벤처 분위기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사내벤처팀 및 창업기업 대상 교육 운영	-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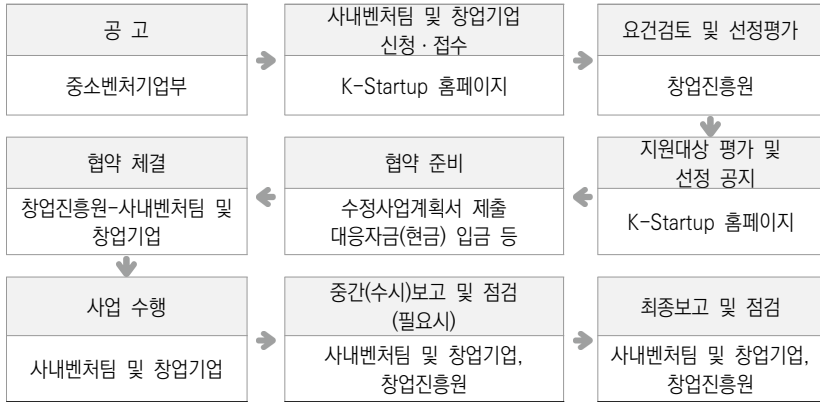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2~3월 공고 예정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후속연계 지원 포함, 예산 200억원)
 - * '20년 지원현황 : 선정 지원기업 200개사, 평균 지원금액 사업화 8,500만원, 실증 8,900만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창업협력전략실 044-410-169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 참조

Q&A



Q. 사내벤처팀(예비창업팀)은 언제 분사해야 하나요?

A. 협약 기간(10개월 내외) 종료 전에 분사하여야 합니다. 협약기간 내 미분사 시 지원조건을 상실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후속지원(실증 자금 등)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중 '성공' 판정받은 후 부터 지원 가능합니다(별도 공고 안내).

8-7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대기업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 대표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후보기업(6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성장전략수립 :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BM고도화 등 맞춤형 교육·멘토링·자금 등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20개사)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사업화 정도를 진단하여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교육·멘토링 등 : 창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 연계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가점 5점 부여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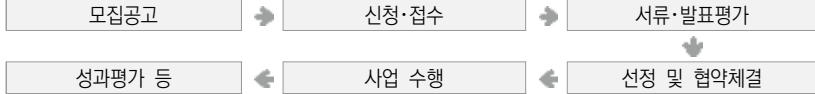
-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 '후보기업 60개사 내외를 선발하고, 추후 후보기업 최종평가를 통해 20개사 선발'

문의처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4-410-1882, 1889, 1890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 타 창업지원사업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타 창업지원사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타 창업지원사업에서 중복신청 및 지원을 금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8-8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로컬크리에이터*
 -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단계에 맞게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맞춤형으로 지원(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브랜딩,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 일반형 : 초기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단계에 따라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맞춤형으로 지원(최대 3천만원)
- 민간투자연계형 : 민간 투자자가 先투자한 성장단계의 유망 로컬크리에이터를 선발하여 자금지원(최대 5천만원)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한 공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행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규모

- 280명(88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4-410-1891, 1885, 1883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사업화 -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 로컬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요?

A. 지역특성(문화, 관광 등) 및 자원(공간, 생산품 등)을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으로 분류

- * ①지역가치 ②로컬푸드 ③지역기반제조 ④지역특화관광
⑤거점브랜드 ⑥디지털문화체험 ⑦자연친화활동

8-9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정부와 글로벌기업이 손잡고 글로벌 진출 지원

정부는 사업화·기술개발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은 기술코칭, 유통·판로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통해 해외진출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정부) 신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기능 개선, 직원 고용, 특히 출원 등 창업기업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글로벌기업) 교육·세미나, 전문기술 코칭, 판로·유통망 연계,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기회 등 특화 서비스 지원

협업 기업

- 구글플레이, 다쏘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엔비디아
 - * 협업기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3~4월
-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 신청·접수(4주 내외)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8주 내외)
 -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 기간 및 세부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역량, 독창성, 기술의 완성도, 국내외 목표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정부와 글로벌기업이 공동으로 평가하여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서비스 지원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예산 300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협력전략실 : 044-410-1685~7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상담하기
-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 국번없이 1357

Q&A



Q. '21년 초기창업패키지 또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과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의 협약기간이 중첩되어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체결 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8-1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K-유니콘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투자유치 실적(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지원 Post-TIPS(포스트팁스) 선정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 지원
 - 국내외 신시장 분석, 사업모델 최적화, 시장개척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 지원
- 후속지원 및 타 기관 사업연계 등 지원
 - 연중 창업기업 국내외 홍보,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 등 후속지원
 - 특별보증, 정책자금, R&D 등 타 기관 사업 연계지원

신청·접수

- k-unicorn 홈페이지(www.k-unicorn.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요건검토 → (1차) 기술·사업성 평가 → (2차) 심층·토론식 평가 → (3차) 발표평가
 - * 사업모델의 혁신성, 성장성, 시장확장성,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등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시장개척자금지원

지원규모

- 총 60개사 지원(예산 180억원)
* '20년 지원현황 : 40개사 지원(예산 120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투자협력부 : 02-3440-7314
- K-유니콘 홈페이지(www.k-unicorn.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Q. 투자계약서 외에 투자의향서, 주금입금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으로도 투자실적 증빙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투자내역 확인이 가능한 투자계약서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8-1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해 꿈까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합니다.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원내용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 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개최, 담당교사 직무연수
- 교재·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운영 등

신청·접수

- '21년 2월 접수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발방식 : 신청서 접수 → 서면 및 발표평가* → 최종선정
- * 발표평가의 경우, 거점학교에만 해당
- 평가사항 :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및 지원 요건 등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사업 수행

지원규모

- '21년 예산 : 61.8억원, 전국 약 423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예정
- * '20년 지원현황 : 487개 학교(초등 139개, 중등 88개, 고등 221개, 특수· 27개, 대안 4개, 센터 8개)

문의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4-410-1951, 1952, 1953, 1954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8-12 실전창업교육

준비된 창업자 양성

유망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습교육과 최소요건 제품제작, 비즈니스모델 검증 등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온라인 교육 : 창업 관련 기초 역량 함양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모델 수립 지원
 - 오프라인 교육 :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 및 시장검증,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
 - * 온라인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최소요건제품 제작 및 시장검증비 최대 5백만원 지원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온·오프라인 교육

최종보고 등

지원규모

- 교육생 2,100명 내외, 시장검증 200명 내외(30억원)
 - * '20년 지원현황 : 3,267명(팀) 교육, 307명(팀) 시장검증 지원(48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4-410-1958, 1959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8-13 창업에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 포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관련 역량강화 교육, 기관 패키지 과정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 창업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지원내용

-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창업초기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강의 주제 300여개 제공
-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신청·접수

- 창업에듀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신청 가능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4-410-1958, 1959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8-14 메이커 스페이스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조성

*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민간·공공 기관 및 단체

지원내용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랩, 전문랩으로 구분하여 시설 구축, 장비 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 소요비용 지원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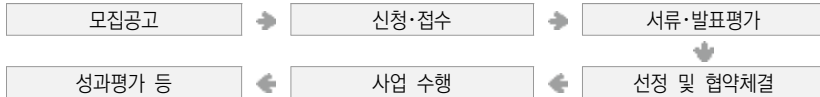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 적절성, 입지/인프라 우수성, 사업추진 역량/전문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메이커 스페이스 전국 누적 254여개(345억원)
- 연도별 지원현황 : ('18년) 63개소, 235억원 → ('19년) 63개소(누적 126개소), 285억원 → ('20년) 63개소(누적 192개소), 332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4-410-1884, 1886, 1892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시설공간-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형은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은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용어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예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8-15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창업의 허브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 '21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50, 1693, 3964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4-410-1881, 1887, 1888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시설공간-창조경제혁신센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120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00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974-9361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6380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세종	ccei.creativekor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경북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8-16 스타트업 파크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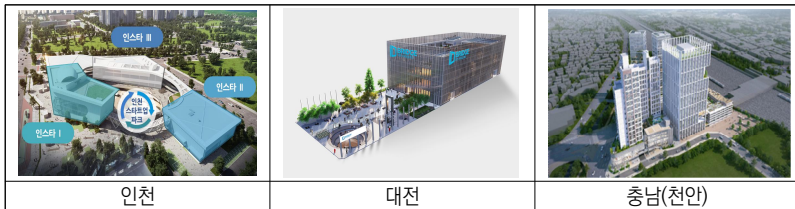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

지원내용

- 스타트업 파크 조성 및 운영
 -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조성비 등을 지원
 -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조성이 완료('20년 12월) 입주, 인프라, 프로그램 지원 등 추진

〈 스타트업 파크 〉



신청·접수

- e-나라 도움을 통한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 현장, 발표 평가

선정·조성

지원규모

- 242억원(스타트업 파크 조성)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지원부 : 044-410-4485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8-1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의 사무공간 및 사업화 지원

사무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예비)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 * 1인 창조기업 중 예비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지원내용

● 사무공간 및 다양한 창업성장 프로그램 지원

지원구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예비)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등 지원(전국 50개 센터 보유)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창업 등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지원
교육·멘토링	• 경영, 투자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 지원
사업화	• 마케팅(광고, 홍보, 디자인 개선 등) 및 판로개척 지원
네트워킹	• 동·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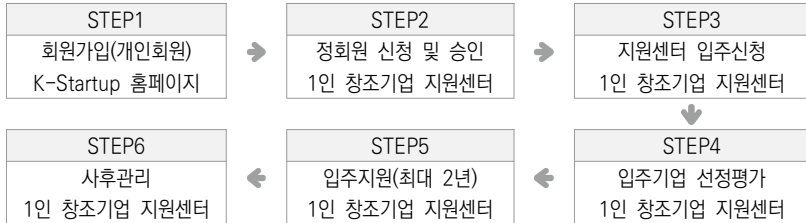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 오프라인 신청·접수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사업자 명의의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50개 센터 운영(49억원)
 - * '20년 지원현황 : 전국 50개 센터 운영(53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044-410-1927, 1926, 1922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 1인 창조기업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1인 창조기업 해당이 되나요?

- A.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3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8-18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거점 조성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혁신기업 육성 인프라와 친환경 정주여건(교통·주거·문화)이 결합된 스타트업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

지원내용

- 설계 및 조성비 지원
 -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조성비 등을 지원
 - * '21년 1곳 선정 예정(설계비 5억원 지원), '20년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선정

신청·접수

- e-나라 도움을 통한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처리절차

- 지자체 대상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 현장, 발표 평가

선정·조성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대학별 공고

신청·접수

선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규모

- 1개 지자체 선정 예정(설계비 5억원 지원)
- '20년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선정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044-410-4485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8-19

창업존 운영

유망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선정 후 입주전 채무변제완료 증빙시 예외)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기 입주 이력 또는 입주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보육공간 제공 : 창업기업 입주사무실 및 규모별 회의실, 행사 공간 등
- 보육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구 분	주요내용
교육	·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연계) 네트워킹 등
마케팅	·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글로벌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멘토링	· 소그룹 기술·비즈니스 멘토링, 1:1멘토링 등

- 인프라지원 : 통·번역, 3D 제작보육실 및 글로벌 테스트 베드

구 분	주요내용
통·번역센터	· 美, 中, 日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3D 제작보육실	·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 테스트베드	·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2G-4G)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보육프로그램 운영
 -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 아이디어를 보유한 입주기업과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과의 협력 지원을 통한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

- 입주 투자사연계 : 입주한 투자사와 협력하여 맞춤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자 유치 진행
- 인프라지원 시설 추가
 - 비대면 회의실 : 창업기업의 언택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비대면 회의실 구축
 - 클라우드 오픈랩 : 창업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오픈랩 구축
 - 글로벌 테스트베드 5G망 : 입주기업 추가 지원을 위한 5G망 테스트베드 추가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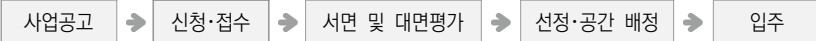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 사업 내·외부 환경 이해도, 창업자 및 직원 역량 보유, 사업 아이템 기술성, 비즈니스 모델 분석, 시장성 등
- (발표평가) 창업자 역량 및 의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입주기업 모집



지원규모

- 창업기업 약 100개 내외(예산 61.64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저번부 : 044-410-4485, 4386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http://www.pangyozone.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창업존 입주기간과 임대·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기간은 2+1년으로, 기본 입주 2년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 연장여부(1년)를 결정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관리비는 창업기업 업력 및 공간유형에 따라 차등 부 되며, 전용면적 3.3㎡당 평균 50,000원 정도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Q. 창업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A. 창업존 입주기업은 개별 사무공간 이외에도 미팅룸, 수면실, 샤워실 및 공용OA사용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세미나, 대내외 네트워킹, 외국어 통번역 지원, 시제품 제작 및 해외 통신망 테스트 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합니다.

8-2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One-stop 서비스 : 발굴-창업교육-공간지원-보육지원

분 야	내 용
발 굴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찾아가는 창업교육 및 설명회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 교육	● 중장년 창업역량 도약을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신청·접수

- '21년 연중수시'
 -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 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유망성, 기술성, 시장성 등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입주신청서, 활동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자유양식) 등 각 1부
- (창업자)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자유양식) 등 각 1부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STEP1 회원가입(개인회원) K-Startup 홈페이지	STEP2 정회원 신청 및 승인 창업기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STEP3 지원센터 입주신청 창업기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STEP6 사후관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STEP5 입주지원(최대 2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STEP4 입주기업 선정평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규모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7개소 내외('21년 42.24억원)
- * '20년 지원현황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7개소 운영(44.6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저번부 : 042-480-4335, 042-480-4412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4101	울산	동구	052-209-1510
	성북구	02-941-7257		울주군	052-277-1997
부산	부산시	051-581-4050	인천	인천시	032-726-3883
대구 경북	계명문화	053-589-7558	경기	성남시	031-707-5961~2
	달서구	053-643-7994~5		의정부시	031-850-5815~7
	수성구	053-784-8261		고양시	031-936-7485
	칠곡군	054-973-9604~9605			
광주 전남	광주시	062-236-3262	경남	경남	055-751-3610
	전남	061-280-7499, 7494		영산대	055-380-9573
충북	청주시	043-254-8666	전북	김해시	055-346-8440
	충북	043-217-1311~2		익산시	063-841-7480
충남	당진시	041-354-8558	전북	전북	063-717-1321
대전	대전	042-939-4740			
제주	서귀포	064-732-0039			

8-2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 원격근무 확산

지원대상

- 중소기업 6만개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주된 업종이 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인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에서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서비스 및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 * 클라우드 등 ICT 기반의 온라인 업무추진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 등
 - ** 원격근무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인사노무·보안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 1개사 당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한도
 - * 지원하는 서비스 분야 및 자부담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신청자 순으로 요건검토를 거쳐 선정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

비대면 바우처 발급

비대면 서비스 구매

비대면 서비스 이용

지원규모

- 중소기업 6만개사 내외(예산 2,16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중소기업 8만개사 내외(예산 2,880억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비대면지원부 : 044-410-1984~91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Q.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선정이 되면 바우처 플랫폼에 접속하여 신청당시 선택한 결제수단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결제수단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공급기업에 거래상담을 요청합니다. 공급기업에서 거래를 수락하고 수요기업에 결제를 요청하면 수요기업은 결제후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인데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공급하는 서비스 분야 이외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8-2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법인설립!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지원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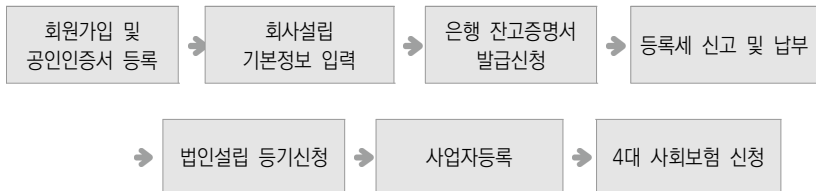
지원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 (4대보험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기업지원플러스(<http://g4b.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해 사용 가능

처리절차 서류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		
등록세납부	지자체(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		
사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행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 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 총회기간단축동의서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 정보화지원실 : 044-410-1652~57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09



Q.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약 2만원)

8-23

창업지원포털(K-Startup)

단계별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지원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 ① 창업준비(전시·행사, 경진대회, 창업교육, 멘토링·경영지원) ② 창업실행(사업화, 판로·마케팅, 글로벌·수출, 재도전) ③ 창업성장(R&D) ④ 창업인프라(창작공간, 입주공간, 지원센터)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 스톱 서비스 제공
-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 (예비)창업자 창업역량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제공 : 전국 12,000여개의 창업공간 정보 제공

문의처

- 창업지원 통합 콜센터 : 1357
- 창업진흥원 정보화지원실 : 044-410-1652~57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09

8-24 창업기업 확인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확대를 지원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에 속한 자

지원내용

-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도입(의무구매비율 8%)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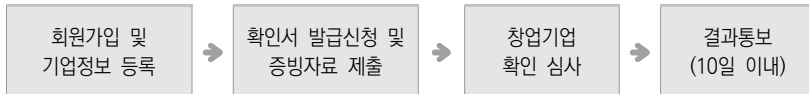
신청·접수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cert.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 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서류

- 창업기업 해당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총사업자내역, 중소기업확인서
 - (조건별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 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파산면책선고문, 주주등 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관,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 1811-3773
- 창업진흥원 판로지원실 : 044-410-1772~81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042-481-3937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cert.k-startup.go.kr>

Q&A



Q. 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확인기관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발생 시 확인기관은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Q. 오프라인으로 신청은 어려운가요?

A.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가진단이 무엇인가요?

A. 창업기업 확인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8-25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 후속지원

지원대상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창업자(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창업 아이템에 상관없이 팀원 전원을 합산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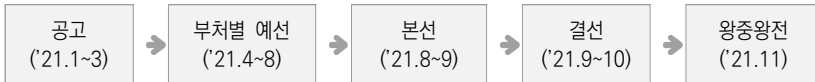
지원내용

- 왕중왕전에 진출한 20개팀 전체에 대통령상 등 상장과 총 15.8억원(최고 3억원)의 상금 지급
- 본선 진출팀 중 우수팀에 창업 사업화,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 우대

신청·접수

- 부처별 예선* → 본선 → 결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 중기부(혁신창업리그), 과기부-교육부(학생리그), 국방부(국방리그), 문체부(관광리그), 여가부(여성리그), 특허청(지식재산리그) 등



문의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 044-410-1955, 1956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535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9부 창업진흥원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644	9-28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696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646	9-29 관광기업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697
9-3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648	9-3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699
9-4 고용창출장려금(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650	9-31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701
9-5 산재예방요율제	652	9-32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702
9-6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654	9-33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705
9-7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656	9-34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	706
9-8 근로복지기금지원	658	9-35 문화산업완성보증	708
9-9 근로복지기금지원	660	9-36 스포츠 창업 지원	711
9-1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662	9-37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지원	712
9-1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664	9-38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지원	714
9-1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666	9-39 IP제품혁신 지원(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716
9-13 기업복지 상담	668	9-40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719
9-1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669	9-4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721
9-1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672	9-42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724
9-16 청년내일채움공제	674	9-43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726
9-1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76	9-44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729
9-18 청년 디지털 일자리	678	9-45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731
9-1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680	9-46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733
9-20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684	9-47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	735
9-21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	686	9-48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737
9-2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688	9-49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	739
9-23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690	9-50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741
9-24 관광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692	9-51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743
9-25 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693	9-52 ICT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 및	
9-26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694	보안솔루션 도입지원	745
9-27 관광플러스 팁스	695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희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희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캐블링 및 베틱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외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주,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내용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 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일자리 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단축한 달의 직전 3개월보다 증가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2년)
-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2년)
-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①고용센터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층)」, ②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③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재도약 프로그램」, ④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준비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⑤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⑥여성가족부 운영 「학교박청소년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 학교」, ⑦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⑧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취업워크숍」, 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특화훈련」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사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로 예외 규정
- ▶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1년간 지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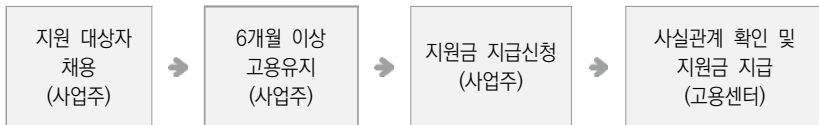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9-3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액·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희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희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캐블링 및 베틱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5인 미만 기업

지원내용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포함),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1항 및 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예산 153억원
- (지원 수준)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 한도.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
-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한도 없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향」 참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9-4

고용창출장려금(신증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증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증년의 경력 및 특성을 감안했을 때 신증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등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증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신증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희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희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gambling 및 베팅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외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 비상근 축탁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사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다만,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960만원(대규모기업 480만원) 1년간 지원(3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문의처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9-5 산재예방요율제

제조업 5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활동 인정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산재보험 가입업종이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아닌 경우
- ▶ 제조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받거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조기단축하면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청구
- 인정 유효기간 및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 3년, 20%
 - 사업주교육 인정 : 1년, 10%
 - 근로시간 단축: 2021년 6월 30일까지, 10%
 -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할계산)
 - * 사업주가 2개 재해예방활동 분야(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를 모두 인정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인하율은 다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에 합산하여 인하율 적용

신청·접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www.kr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인정심사 후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인정

- (사업주교육) 사업주교육 이수 및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제출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제출

제출서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및 상시근로자 증명 자료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9-6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클린사업장 인정)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부·공단·민간대행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원 사업장,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망사고 등 급박한 유해·위험요인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추락방지 안전시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원도급업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산재보험가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전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0명인 사업장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클린사업장 인정
 - 투자건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70% 또는 정액 지원
 - 지원품목: 위험기계 방호장치, 작업공정개선설비, 환기설비, 직업병 예방설비 등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화재·폭발, 폭염,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현장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65% 또는 정액 지원
 - 지원품목: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지원품목: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 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설치비용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우편 및 직접방문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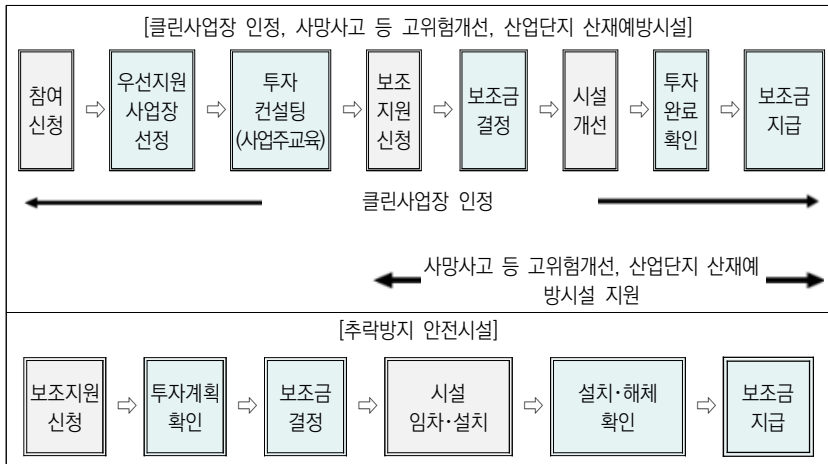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클린사업장 인정)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지원

제출서류

- 참여(자금)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예산: 943억원 내외
 - * '20년 지원현황 : 1,683억원(추경예산 포함)

문의처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 대표번호(1588-3088)

9-7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보건관리가 취약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사업장
- ▶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

지원내용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신규사업장 100%(100만원 한도), 기존사업장 70%(40만원 한도)
 - * 신규사업장이란 과거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2차 검진비용 전액

신청·접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한 연중 수시접수
 -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제출서류

- 사업장 근로자수 확인 증명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제출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지원규모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50,000개소(예산 179억원)
 - * '20년 지원현황 : 47,808개소(179억원)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 350,000명(예산 198억원)
 - * '20년 지원현황 : 287,495명(198억원)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실(Tel : 052-703-0784)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Q. 비용지원 사업 시행 전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사업 시행 전, 당해연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여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현장 내 유해인자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제도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 (처리절차)

방문/신청

접수 및 기초
자료 작성

건강상담* 또는
전문교육

사후관리
(지속)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요관찰자, 유소견자) 사후관리,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건강상담,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문의처

● 50인 미만 사업장 및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예산 173억)

Q&A



Q.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이용은 전액 무료인가요?

A. 네. 전액 무료입니다.

Q. 외국인 노동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네. 노동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근로자건강센터란?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임

9-9 근로복지기금지원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지원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지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지원(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20억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지원(매년 1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지원(3년간 매년 6억원 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청-하청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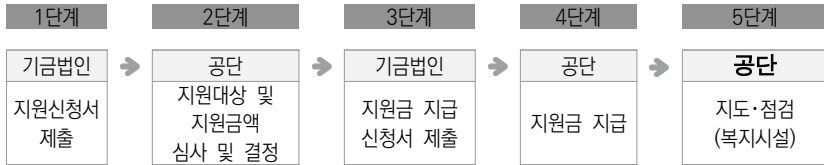
- 근로복지공단 우편
 - * (주소)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4층 복지계획부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출서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시에만 해당)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시에만 해당)
 - 서약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 근로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신청 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 (신청서식)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우측의 바로가기: 서식자료 마당

처리절차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규모

- '21년 예산: 172억원
- * 지원현황('20. 11월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5개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62개소 지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Q.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 A. 기금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하며, 기금법인 설립 이후의 근로복지기금 지원업무는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9-1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부동산업, 일반유통·무도유통·기타주점업, 캠블링 및 배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월 최대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월 최대 24만원(단, 임신근로자의 경우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원)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임金的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신청·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전·후)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00명 (예산 182억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9-1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도 확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제 지원 유형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부동산업,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인원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신청·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10,935명 (예산 236억원)
* 2020년 지원현황 : 4,411개 기업, 372억원 지원('20.11월말 기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9-1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사업에 참여하여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소기업의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부동산업, 일반유통·무도유통·기타주점업, 캠블링 및 배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종 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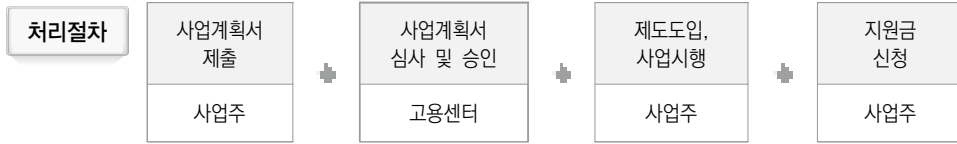
신청·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인프라구축 견적서 등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지원규모

-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 35개소 (예산 7억원)
* 2020년 지원현황 : 62개 기업, 7억원 지원('20.11월말 기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9-13 기업복지 상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상담 지원

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널리 알리고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통한 현장상담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원·하청)간 복지격차 완화 및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기업회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존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료 상담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희망 사업장에 전문 상담사가 현장상담 실시
 - * 상담 횟수: 기본상담 1회, 심화상담 1회, (도입희망시) 도입상담

신청·접수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온라인 신청
 - * 기업회원 가입 → 기업복지 상담 → 기본상담 / 심화상담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21년 예산: 265백만원
 - * 지원현황('20. 11월말 기준): 컨설팅 지원건수 448건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052-704-7356)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9-1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등 규모 관계없이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훈련개시일로부터 비용지원완료 기간 중 폐업한 법인 사업장이 실시한 훈련비용 지원 불가
- ▶ 훈련수료일 이전 폐업한 개인 사업장이 실시한 훈련비용 지원 불가

* 단, 폐업신고 일자 당일에 HRD-Net 및 고용보험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

지원내용

-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소요 비용 지원

- 【집체, 현장훈련】: 표준훈련비(직종별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지원비율
< 기업 규모별 지원 비율 >

기업구분	훈련구분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향상, 양성훈련 등	자체훈련	100%
		위탁훈련	90%
대규모기업	향상, 양성훈련		60%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70%
상시근로자	향상, 양성훈련		50%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비정규직대상훈련/전직훈련		70%

- 【원격훈련지원금】: 등급별 지원금액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기업 규모별 지원율 × 조정계수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 편
		교수설계유형	기술기반유형	
A	5,600	11,000	16,500	3,600
B	3,800	7,400	11,100	2,800
C	2,700	5,400	8,100	1,980

* 위 금액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위탁은 90%), 대규모기업은 60%, 1,000인 이상 기업은 40%의 비율로 지원(외국어과정 및 직무법정훈련은 규모별로 50%/30%/20% 지원)

- 위의 훈련비 이외에 훈련수당, 숙식비, 임금의 일부가 요건에 충족될 경우 지원
 -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
 - 〈임금의 일부〉 유급휴가훈련으로 과정을 인정받은 경우, 훈련생에게 지원된 임금을 한도로 『시간급최저임금×훈련시간×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지원
 - 비정규직 대상으로 근무시간이내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생에게 지원된 임금을 한도로 『시간급최저임금×훈련시간×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지원
 -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식비나 숙식비를 지원한 경우,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1개월 330,000원 한도)

신청·접수

- 훈련기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HRD-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훈련과정인정신청: 훈련개시 7일 전까지(자체훈련은 5일 전까지, 채용예정자 과정 및 NCS적용과정은 훈련개시 2주 전까지)
 - 실시신고 및 확정자 신고: 실시신고는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확정자신고는 훈련기간이 2일 이하는 개시 전까지, 3일 이상 10일 미만은 훈련 개시일 까지, 10일 이상 30일 미만은 훈련 개시 2일 이내, 30일 이상 180일 이하는 훈련개시 7일 이내, 180일 초과는 개시 후 14일 이내
 - 수료자보고 및 확정: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원격훈련은 30일 이내)
 - 훈련비용 신청: 훈련 종료 후

제출서류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신청서, 훈련비 지원신청서 등
 - 1) 사업장에서 위탁훈련비용 신청 시
 - 훈련과정인정신청: ①시간표, ②훈련강사 자격증빙 서류, ③훈련시설 증빙서류, ④위탁훈련의 경우 개설요청확인서 제출, ⑤협력관계 증명서류 (기업맞춤형훈련에서 1:多 훈련 시), ⑥훈련교재 등
 - 실시신고 및 확정자 신고: ①채용약정서(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②교대 근무조 확인서류, ③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참여 등), ④유급휴가 명령서(유급휴가훈련 실시) 등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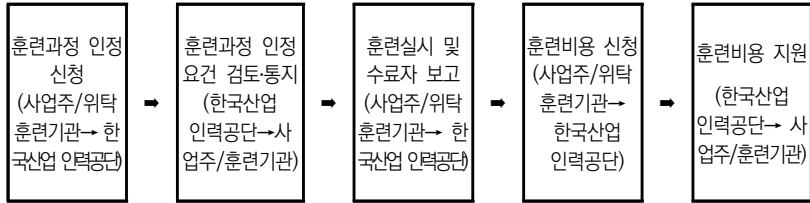
- 수료자보고 및 확정: 전산에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입력 요망
- 훈련비용 신청: 1) 사업장에서 위탁훈련비용 신청 시

①훈련비용지원신청서(HRD-Net으로 신청 시 전산으로 같음), ②훈련비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기관계좌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등, ③훈련수당 지원대장(또는계좌이체내역), ④숙식비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⑤임금대장(비정규직 대상 훈련 또는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 2)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 시

①훈련비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현금영수증, 수납확인서 등, ② 숙식비 증빙서류- 숙식비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처리절차



지원규모

- ('20.10월말 기준) 10만5천여개 사업장에 1,775억원 지원(약 187만명 지원)
* '21년 예산현황: 274,965백만원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지부·지사(대표 전화 1644-8100),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Q. 지원금은 훈련만 하면 제한없이 계속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 위의 금액이 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용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 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9-1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 국가 및 공공기관
-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

지원내용

- (지원요건)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등
- (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5만원
 - * 단시간 노동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 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 월 평균보수 기준(215만원 → 219만원 이하) 및 지원금액(11/9만원 → 7/5만원) 조정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서면 등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신청·접수



요건 심사
(근로복지공단)



지급 결정 통보



지급
(노동자 고용유지 시 월별
자동 지급)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지원 요건, 신청 절차·서식 등 세부정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참고

9-16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채용 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 단,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문화컨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1인 이상
 - * 매출액 3년평균 3천억 초과 중견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①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②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발행, 2018) 참조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통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시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희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2년 근속 시,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1,600만원 목돈 마련
 -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매월 12.5만원)
 - ② (기업→청년)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 2년 4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2년간 5회 분할적립)

③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2년간 5회 분할적립)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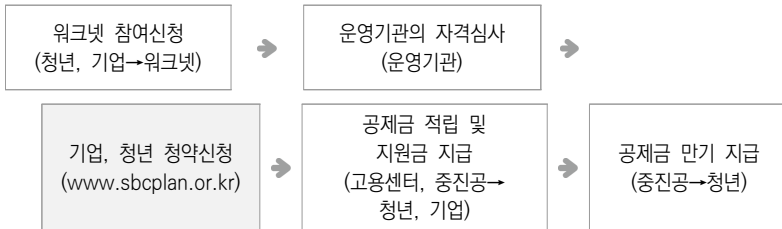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접수

선발 심사 주요내용

-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해당 여부, 정규직 여부 등
- 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로자 수 확인 등

처리절차

- 반드시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규모

- '20년 지원인원 14만명
- * '19년 : 청년 10만명 신규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2-5)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9-1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업주
 - * 단, 사행·유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이 제외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업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등
-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 노동관계법 상습위반 기업(사업주)
- ▶ 국가 및 공공기관
-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사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요건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직전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제출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참조

9-18 청년 디지털 일자리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IT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업종,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서 확인된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각급 학교 등
-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희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희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갭블링 및 베딩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 ▶ 5인 미만 기업

지원이 안되는 청년

- ▶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
- ▶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대학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는 가능)
-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지원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 등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IT직무* 등에 만15세~34세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상세한 직무 유형 등은 별도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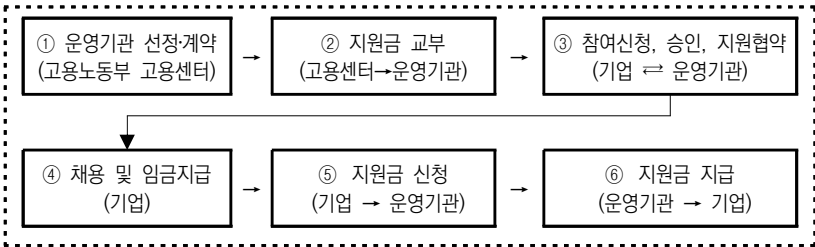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지급 임금의 90%(월 최대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인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 한도(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지원한도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최대 2배(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추진절차

-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1. 1월 초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thjob)

지원규모

- '21년 5만명('21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워크넷(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 참조

9-1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정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래(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업주
 -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고용유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중에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금의 나머지 100분의 50을 지급
 - 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 (고용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금의 나머지 100분의 50을 지급
 -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3. 시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 지급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 * 해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인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육아휴직 부여 시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의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국가, 지자체로 봄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총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 지원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부여한 사업주부터 세 번째로 부여한 사업주까지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가산)
 -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처음 부여한 사업주부터 세 번째로 부여한 사업주까지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의 임금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주기)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월 60만원→월 80만원)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의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 후 지급(*20.3.31.부터)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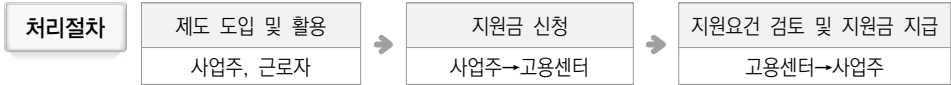
- 오프라인 신청: 제출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Q.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A.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20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장에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처분을 받은 지 3년 이내 사업장은 지원 제한

지원내용

-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무료 제공
 - 사업장 당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 영역까지 컨설팅 지원(10주~21주)
 - * (컨설팅 분야) ①노사파트너십 구축, ②작업조직·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개선, ⑤평가체계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장년고용안정지원, ⑨비정규직구조개선
- 일터혁신 교육, 중소기업 CEO 혁신코칭
 - 인사노무담당자 및 일반 근로자 대상으로 일터혁신 교육 무료 실시
 - 중소기업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무료 코칭 지원

신청·접수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상시 접수

제출서류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처리절차

- (일터혁신 컨설팅)

신청·접수

심사·선정

컨설팅 진행

사후관리

지원규모

- '21년 컨설팅 목표 2,480건
 - * '20년 지원현황 : 981개소 2,112건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 02-6021-1000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Q&A



Q. 한 사업장에 동일한 영역으로 연속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연속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장 선정 심사 시 컨설팅 필요성, 전년도 컨설팅 수행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및 연계성, 사업장 참여 및 협조 등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컨설팅 완료 후 제도 도입이 어려운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컨설팅 완료 후 3개월 간 이행관리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컨설팅 결과 설계된 내용이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부지원사업과 연계도 도와드립니다.

용어설명

일터혁신이란

-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는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

9-21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

중소기업 웹보안 수준 강화

ICT 중소기업, 침해사고 발생 중소기업, 기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웹취약점 점검, 웹셀 탐지도구, 웹방화벽, 디도스 사이버대피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보안수준 강화 지원

지원대상

- ICT 중소기업, 침해사고 발생 또는 서비스 이용 희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유의사항〉

- 서비스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서류 제출이 미비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웹취약점 점검
 - 해킹 사고에 많이 악용되는 홈페이지 취약점(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 제공
- 웹셀 탐지도구(취슬)
 - 공격자가 원격에서 웹서버에 악의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파일인 웹셀 및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등을 검출하는 소프트웨어
- 웹방화벽(캐슬)
 - 홈페이지 대상 해킹공격 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 홈페이지로 향하는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차단하여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신청·접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www.boho.or.kr 접속 → 보안서비스 메뉴 →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 강화 클릭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온라인 양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처리절차

- 웹취약점 점검

온라인 신청

적격심사

점검 수행

점검 보고서 제공

- 웹셀탐지도구(취슬), 웹방화벽(캐슬)

온라인 신청

적격심사

이용방법 안내

서비스 이용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온라인 신청

적격심사

서비스 안내 및 입주 진행

실시간 방어

지원규모

- 국내 중소기업 대상 무료 웹보안 강화 서비스 보급·지원 (예산 2.8억원)

* '20년 지원현황 : 웹취약점 점검-웹셀 탐지도구-웹방화벽(약 17,500여건),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약 5,000여건)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대응단 : 02-405-5254, 5584
- 자세한 사항은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참고

Q&A



Q. 중소기업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닌 개인사용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취슬은 정보보호 전문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용이나 연구용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Q. 웹셀 탐지도구(취슬)과 웹방화벽(캐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취슬은 공격자가 웹서버에 설치한 웹셀 등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이며, 웹방화벽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웹셀 : 공격자가 원격에서 웹서버에 악의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해킹 도구
디도스 : 공격자가 대상 웹 서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흘려보내 웹 서버에 과부하를 유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

9-2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기업 혁신 지원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고,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제품개발, 환경개선, 조직문화개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인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업
- 예술인과의 협업활동 및 지원(공간-재료비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워크숍, 모니터링, 행사 등 참여 가능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 등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
-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예술관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섭외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 * (예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운영할 예술인을 섭외 할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 ▶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 또는 단순 업무의 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이 제출한 과업 해결을 위해 예술인 4~5명을 6개월간 파견(예술인 1인당 6개월 간 120~130만원 활동비 지원)
- 과업 해결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컨설팅, 모니터링 제공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1년 1월 중 공고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http://goartist.kawfartist.kr>)에서 접수
- 심사방법 : 2차로 심사진행(서류심사 및 비대면 심의(전화면접))

심사·평가 주요내용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작성의 성실성	10점	▶ 지원신청서 각 항목별 제시된 내용분량을 성실히 작성하였는가?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사업의 이해	30점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예술협업 역량	20점	▶ 파견지원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예술인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가?
협업주체의 적절성	20점	▶ 지원신청 내용이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절한가? ▶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가능성이 있는가?
예술협업 지속가능성	20점	▶ 신청 기업·기관의 내·외부 환경 및 협업주체가 지속적인 예술 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합계	100점	

제출서류

- (필수) 사업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해야 사업에 참여 가능
- (선택) 기업 소개 자료 1부.
 - * 기업 소개 자료는 예술인 매칭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처리절차

사업신청	심사	예술인 매칭	과업수행
2021년 2월 중	2021년 3월 중	2021년 4월 중	2021년 5~10월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지원 사이트 (goartist.kawfartist.kr)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 검토	과업을 함께 해결할 예술인(4~5명) 매칭	매칭된 예술인과 과업 수행(6개월)

지원규모

-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과업 해결을 원하는 200여개 기업 (예산 81억원)
 - * '18년 지원현황 : 232개 기업·기관 지원(예산 81억원)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0)

9-23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관광분야 혁신적 사업소재의 발굴 및 창업·사업화 지원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 형 벤처기업 발굴하여 육성·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관광사업 창업 및 사업 고도화 지원 필요 기업
 - 예비관광벤처사업 :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 초기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 미만(공고일 기준)
 - 성장관광벤처사업 : 창업 7년 미만(공고일 기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재(기업) (일부제한)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 당해년도 공모전에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응모자 이름을 바꾸어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유의사항>

-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 불가

지원내용

- 창업초기기업과 관광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육성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단계별 약 3~9천만원 내외(자부담 매칭/확정금액은 공고안 확인)
 - * 아이템개발비, 인프라지원비, 홍보 및 마케팅비, 아이템 고도화비 등으로 활용 가능(세부내용은 공고안 참조)
 - 사업 전반 지원 사항
 - * 관광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광벤처 아카데미 운영
 - * 세무·회계·법률 관련 전문컨설팅 및 담임 컨설팅 지원
 -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온라인 광고, 여행상품 기획전, 관광벤처 설명회 등 홍보·마케팅 지원
 - *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회 제공 및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마련

신청·접수

-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안 확인)

처리절차

- 공모전 공고 및 사업설명회(2~3월) → 단계별 선정심사(서류·현장평가 등 /3~4월) → 지원내용 협약체결(4~5월) → 기업별 사업화 및 맞춤형 지원(5월~) → 최종 성과평가(11~12월)

지원규모

- '21년 예산 9,714백만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팀(02-729-9455)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4

관광 중소기업 클라우드 펀딩 지원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펀딩 지원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관광 기업이 인터넷 등의 온라인 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클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지원대상

-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여행업, 여객운송업(관광교통), 문화예술공연업, OTA 기반 관광기업, ICT 결합 관광사업 등 국내 여행 산업 진흥과 관련된 모든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제외 업종
 -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포함),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배팅업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지원내용

- 관광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 클라우드펀딩 등록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 * 기업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기본 점검, 펀딩 전략 및 IR 자료 작성 자문 등
 - 펀딩 중개 수수료 및 클라우드펀딩용 IR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 지원
 - 참여 기업 발굴 및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 지원
 - 연간 펀딩 실적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한 우수기업 시상 및 시상금 수여
 - 펀딩 성공 기업 대상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투자자문위 IR 등) 추진 등

지원규모

- '21년 예산 900백만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4)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5

엑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엑셀러레이터 연계 육성 및 투자 지원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은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관광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민간 투자유치 등을 통해 관광기업의 단기간 고속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세부기준은 엑셀러레이터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엑셀러레이터 주도의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 기업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및 교육
- 우수기업 대상 후속 투자 지원
- 평가를 통한 기업별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시장검증, 홍보마케팅 지원
- 관광기업 입주 및 협업 공간 지원
- * 세부내용은 엑셀러레이터별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 '21년 예산 3,000백만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2)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6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관광기업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공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전환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혁신 바우처 제공을 통해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관광 분야 중소기업 및 융·복합 관광기업
 - 세부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관광 혁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형, 중형, 소형 등 규모별 바우처 제공

프로그램	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
관광 혁신 서비스 개발	관광 부문 상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Design Thinking Bootcamp 등), 기존 비즈니스 모델 진단 등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관점에서의 관광산업 동향 및 트렌드, 규제·문화·서비스 동향 조사 등
관광 혁신 서비스 구현	실감형 콘텐츠 제작, AICBM 기술 구현 등
	모바일/O2O 플랫폼 구축, 신규 기능 추가 및 고도화 등
비즈니스 컨설팅	인사조직, 경영체계, 구조개선 등의 운영 개선 자문 등
	세무, 재무, 노무, 법률 관련 전문 자문 서비스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기업 디지털 역량 및 정보기술환경 분석과 진단, 개선 등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PaaS, IaaS) 구축 등
	ERP/CRM/Analytics 등 SaaS-based ICT 솔루션 도입 등
홍보/마케팅 /광고	마케팅 콘텐츠 전략, 채널 믹스 전략, SEO마케팅 전략 디지털/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광고 콘텐츠제작, 국내외 마케팅/홍보/광고 집행 등
디자인 개발	브랜딩, 네이밍, 브랜드 콘셉트 수립 및 BI/CI 개발 등
	상품디자인, 오프라인 홍보물, 모션그래픽 영상, App/Web UI 등

지원규모

- '21년 예산 5,940백만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4)
- 관광 혁신바우처지원 홈페이지(www.tourvoucher.or.kr)

9-27 관광플러스 팁스

관광분야 기술융합 지원

중기부 TIP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망한 관광기업의 기술융합 및 비관광 기술 기업의 관광분야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공통요건)중기부 TIPS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기업 및 졸업 기업 중 성공판정 기업
 - (관광부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근거한 관광 사업 및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등 한국관광공사 기업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 (비관광부문) 보유한 기술을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기술 개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화 지원
 - 관광분야 기업당 최대 4억 및 비관광분야 기업당 최대 4.5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2개년)
 -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홍보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기타 지원

지원규모

- '21년 예산 1,650백만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3)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8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관광기업 해외 진출 지원

혁신 성장이 가능한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멘토링, 판로개척,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연간 매출액 규모 5억원 이상, 연간 수출액 50만달러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후속투자유치 10억원 이상, M&A 10억 이상 등 조건 중 1개 이상 달성한 관광분야 중소기업
 - 세부기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3개년 중기지원
 - (1년차) 멘토링 및 교육 등 해외 진출 전략 수립
 - (2년차)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판로개척 등
 - (3년차) 성과평가를 통한 맞춤형 후속지원(홍보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규모

- '21년 예산 5,100백만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3)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9-29 관광기업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창업·경영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지원

관광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창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온라인·전화 상담, 내방 상담, 현장 상담 등 원스톱 해결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예시) 전통적 관광기업(관광진흥법 상 7대 업종) + 융복합 관광기업(ICT 결합 관광플랫폼 기업, 창의적 관광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본 상담 진행 시,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별도 없음
- * 심화 또는 현장 상담의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분석 후 기업별 진행 예정

지원내용

- 상시·지속적인 관광분야 특화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 채널(관광기업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창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중소기업의 경영상 각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구분	일반상담	심화상담	융복합 협력 자문단
상담 분야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창업분야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제도 및 운영방안 ·일반 관광 분야 관광법규(숙박업, 음식점, 여행업 등) ·정부 지원사업 분야 ·기타 간단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특허 ·인사/노무 ·재무/회계 ·판로/마케팅 ·해외진출 ·관광벤처 ·문화/콘텐츠 ·신규 아이디어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제도 개선 제안 ·국내외 마케팅 ·투자/펀드 ·디지털 기술 ·플랫폼 개발 ·지역특화산업

처리절차

단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구분	온라인·유선 상담	내방상담	전문가 심화상담	현장방문상담
내용	애로사항 접수 및 상시상담 (간단 애로사항 해결, 내방상담 예약,	컨설턴트 상담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 컨설팅, 사안에 따라 전문자문단 배정)	전문자문단 심화컨설팅 (주요 사안에 전문자문단의 심화 컨설팅 제공)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기업 분석 및 대면 컨설팅)

	컨설턴트 배정 등 추가 단계 진행)			
운영(안)	상시 컨설팅 (월~금) 09:00~18:00	사전 예약제 (월~금) 09:00~17:00	사안에 따른 관련 전문자문단 배정	·기업 현장 출동 (사전 예약) ·지역 관광센터 연계

지원규모

- '21년 예산 600백만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02-729-9489)
-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

9-3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관광여가 사회 실현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 국내여행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 근로자 참여조건(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없음(단, 기업 대표자는 제외)

지원내용

- 소속 기업, 근로자가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 (여행적립금) 근로자 20만원, 기업 5만원, 정부 10만원 / 총 35만원
 - (적립금사용)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 국내여행상품 패키지, 숙박, 교통, 관광체험시설 입장권 등
- 대상별 혜택
 - 참여기업
 - (공통사항)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및 여가친화기업 인증(문화체육관광부)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성과공유기업(중소벤처기업부)** 확인서 신청 가능, 참여증서 발급 및 참여기업 홍보 등
 - * 가족친화인증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187개) 우대
 -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 (우수기업) 정부포상, 언론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등
 - 참여근로자 : 국내 여행경비 정부 지원(1인당 10만원), 전용 온라인몰 상품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수시 제공, 전용 휴양소 운영 등

신청·접수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온라인)
 -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 기업/담당자 정보, 참여인원(명단 및 재직증빙은 대상 선정 후 제출) 등 작성



지원규모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 근로자 10만명(예산 100억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4)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자주하는 질문

9-31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 활성화 및 분쟁예방 활동 강화

해외 진출(예정) 중소 콘텐츠 기업 대상 한국콘텐츠의 합법이용 및 분쟁예방 등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진출한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내용

- 저작권 상담, 컨설팅, 현지 업체와 계약 체결시 계약서 검토(상시)
- 해외 유통 플랫폼 대상 합법유통계약 권유서 발송
- 해외 저작권 등록(중국, 태국), 저작권 인증(중국) 지원(상시)
- 국내 중소 우수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류회 개최
- 해외 분쟁 예방 및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설명회 개최

신청·접수

- 저작권 상담·컨설팅, 계약서 검토, 저작권 등록 및 인증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중국·동남아 합법이용 교류회 사전 참가 신청 후 이용 가능(유선 문의)

제출서류

- 자사 소개서 및 관련 서류 등(유선문의)

처리절차

- 저작권 상담, 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합법유통계약 권유서 발송

신청문의



신청·접수



상담 및 검토

- 해외 저작권 등록(중국, 태국)

신청문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등록비 납부



등록증 수령

- 교류회 및 설명회

사업공고



신청·접수



교류회 및 설명회 참석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055-792-0093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s://www.copyright.or.kr>)

9-32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지역 중소기업 밀착형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주요 권역별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관을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로 선정, 저작권에 취약한 1인·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작권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역 중소 및 1인기업, 예비창업자(시니어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지원내용

- 상시지원: 저작권 교육, 저작권 상담, 저작권 육성지원
 - (맞춤형교육) 분야/장르별 저작권 교육 운영 [무료서비스]
 - * 정례적 집체교육, 지역 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산업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작권상담) 저작권 일반 및 등록 등 저작권 관련 제도 안내 [무료서비스]
 - 저작권 일반상식 상담 및 저작권 지원 사업 소개,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 소개 등
 - (저작물활용) 저작권 육성지원 [지원금 지급]
 - 지역특화 창작물(저작물) 보유 기업 대상 투자자 연계(전시회참여지원, 저작권 설명회), 시제품 제작, 저작권 진단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선정 기업 당 500만원 지원(각 센터별 2~6개사 선정)
 - (SW공정이용) SW관리체계컨설팅 [무료서비스]
 - SW자산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SW라이선스 오남용으로 인한 분쟁 예방

신청·접수

- 위원회 누리집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https://copyright.or.kr/kcc/scps/main.do>)를 통한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 *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선택 신청

저작권 육성지원 모집공고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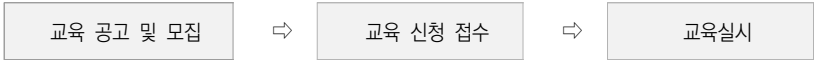
- 매년 4월 ~ 7월 모집공고 실시(각 지역별 모집공고 일정 상이)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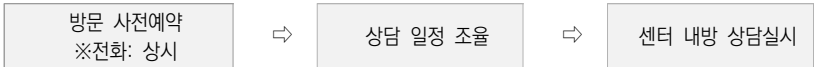
- (상시지원저작권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신청서
- (저작권 육성지원)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저작물 사업화계획서, 실적 증빙자료 등

처리절차

● 저작권교육



● 저작권 상담



● 저작권 육성지원



지원규모

● 전국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20억원, 센터별 1억5천만원)

* '20년 지역센터현황: 강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기(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북(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대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남(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북(충북지식산업진흥원), 광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울산(울산경제진흥원), 경남(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천(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본부) : 055) 792-0222~0224
-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누리집(www.copyright.or.kr/kcc/scps/main.do)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연락처
 -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강릉과학산업진흥원) : 033) 650-3388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안양창조산업진흥원) : 031) 8045-6657, 6758
 - 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경남문화예술진흥원) : 055) 230-8867
 -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경북콘텐츠진흥원) : 054) 840-7063, 7064
 -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2) 610-2432
 -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053) 422-9083
 - 대전저작권서비스센터(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42) 864-5055, 5056
 -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 : 051) 749-9395, 9396
 - 울산저작권서비스센터(울산경제진흥원) : 052) 283-7164
 -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032) 458-5033, 5034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1) 339-6994
-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3) 281-4166, 4168
-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충청과학기술혁신원) : 043) 210-0837

● 센터 위치 소개



9-33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자문 및 교육 지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실무자문, 교육 등 1인·중소기업 현장에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예비창업자, 1인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 법률자문, 실무멘토링, 해외진출자문, 현장교육
 - * 무료서비스 (단, 1개기업당 연 5회 제한)
 - 저작권 분쟁관련 무료 법률자문, 계약서검토
 -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저작권 실무상담(저작권 등록, 관리 등)
 - 해외진출을 위한 저작권 활용방안 자문
 - 기업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신청·접수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중소기업서비스 포털 (www.copyright.or.kr/kcc/scps/intro/center/spot/intro.do)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온라인 서비스 신청서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전문가
섭외

방문서비스 실시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 진행

지원규모

- 전국 1인·중소기업 당 연 5회 이내(예산 2억3천만원)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 055-792-0223, biz@copyright.or.kr

9-34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기간 1년,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75% 이내(최대 2~3억원)

신청·접수

- 온라인(<http://ctrd.kocca.kr>)을 통한 제안서 접수

제출서류

- 연구제안서(본문 3p 내외) 접수 후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세부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 받아서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처리절차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지원규모

- 총 64.4억원, 20개 과제, 과제당 평균 3.2억원
* '20년 지원현황 : 과제수 23개, 지원금 65.9억원, 과제당 평균 2.9억원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개발팀 : 061-900-6531, 6533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 상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세부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35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신청요건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가능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신용보증기금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총제작비 자금조달 확정 요건	• 총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50%, 기타 30% 등
순제작비 자금조달 확정 요건	• 순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60%, 기타 40% 등
예외사항	• 이번 보증신청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문화콘텐츠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경우 자금조달 확정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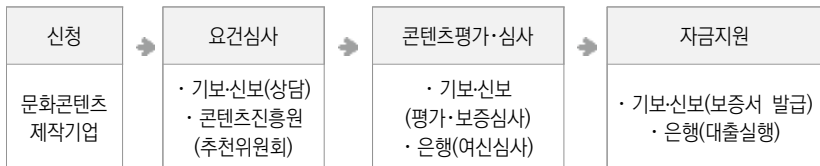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서류

- 완성보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평가대상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등
- 선판매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처리절차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 및 신보에 직접 신청 가능

지원규모

- 1,800억원 내외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3)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2)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00)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02-2014-0281)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061-900-6265)

9-36 스포츠 창업 지원

창업지원/도약센터 운영, 액셀러레이터 연계

예비창업부터 창업 7년 미만 기업지원 대상 창업지원/도약센터 및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육 및 사업화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 (창업지원센터)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도약센터) 스포츠산업 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정부 지원 받은 이력 있는 기업(예비 창업자 제외)
- (창업지원센터(사회적기업전담))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 및 3년 미만 사회적기업
- (액셀러레이터)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예비 창업자제외)

지원내용

- (창업지원/도약센터) 센터별 보육기업 선발 통해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세미나 등 수준별 맞춤 창업보육(8개월), 사업화자금(30백만원 내외) 지원
-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별 보육기업 선발 통해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세미나 등 수준별 맞춤 보육(6개월), 사업화자금(45백만원 내외) 지원
- 액셀러레이터별 국고보조금의 20% 이상, 2개 이상 기업에 투자 의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창업 보육지원 기업 수 확대(109 → 150개), 액셀러레이터 1개소 추가 선정 예정

신청·접수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 1~2월 예정

지원규모

- 스포츠 예비 창업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150개사
* '21년 예산 7,400백만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본부 산업지원팀(02-410-1565)

9-37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지원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마케팅, 자금조달, 해외전시 참가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3년 이상 영위하고, 매출액 아래 해당 중소기업
 -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30억 이하

제외대상

- ▶ 부채비율 500%이상인 기업/전액자본잠식/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 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분야 기준, 3개 과제 이내 자율선택,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지원분야	세부 프로그램	최대지원금	최저지원금
경영지원	제품개발	50백만원	최대 지원금의 80%
	경영전략	40백만원	
	해외진출	40백만원	
	스마트서비스	20백만원	
마케팅지원	국내외 마케팅	40백만원	
	온라인 판로개척	30백만원	
자금조달지원	IPO지원	50백만원	
	클라우드펀딩지원	10백만원	
	기업평가지원	20백만원	
해외전시참가	온·오프라인 전시회	30백만원	
	오프라인전시회	30백만원	

● 지원 내용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지원분야	세부 프로그램	주요 내용
경영지원	제품개발	제품기획, 제품개발, 디자인, 원가절감, 품질관리, 시작금형, 지식재산권 취득, 시험 및 테스트비용 등
	경영전략	인사, 노무, 법률, CS 등
	해외진출	해외시장 진출전략, 해외 타깃시장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연결, 해외지사화 등
	스마트서비스	비대면 영업환경, 재택근무, 클라우드 업무환경,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도입 인프라 및 컨설팅 지원
마케팅지원	국내외 마케팅	마케팅 전략수립, 온오프라인 광고전략, SNS 광고전략, 브랜드개발(BI, CI 포함), 영업마케팅 등 기업 및 제품 홍보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 기업 및 제품 홍보 카달로그 제작 광고물(온라인, 인쇄, 영상매체)제작
	온라인 판로개척	국내·해외(아마존, 알리바바 등) 온라인 스토어, TV 홈쇼핑 입점 지원
자금조달지원	IPO지원	코넥스 상장지원(당해년도 상장에 한함)
	크라우드펀딩지원	펀딩 추진전략, 펀딩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기업평가지원	기업평가, 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 지원
해외전시참가	온·오프라인 전시회	기업체 참가희망 온·오프라인 전시회 선택하여 참가 *오프라인 전시회는 소급적용 가능(21년 1월~)

지원규모

- 스포츠중소기업 26개사 내외('21년 예산 2,600백만원)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본부 시장개척팀(02-410-1545)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9-38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국내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해외진출 및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내 스포츠 용품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3년 평균 아래 매출액을 달성한 중소 스포츠기업
 - (용품제조업)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달성
 - (서비스업, 시설업)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달성

제외대상

- ▶ 국내 지사나 현지법인 등의 형태로 영업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거나 경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사업분야	지원내용
사업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진단 및 역량 강화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 지식재산권(IP) 취득 및 관리, 영업마케팅 전략 및 실행, 원가생산성 및 품질 향상, 신규사업 개발 전략,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경영지원 등 국내외 컨설팅 지원
해외판로 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신시장 경영전략 등 해외시장 진출 전략 지원 - 바이어 발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브랜드 성장 - 해외 홍보광고 영상 제작, 해외 매체 홍보활동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등

● 연차별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년 지원)

구분	지원사업	지원비율	비고
1차년도 (역량 강화)	사업고도화 지원(필수)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총 사업비의 80%	- 지원기업은 연도별 필수 사업 포함 2개 사업분야 이상, 최소 2.5억원 이상 지원 신청해야 함 - 기업당 지원액은 연간 최대 2.8억원 * 한 사업 분야에 최대 2억원 까지 가능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사업고도화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필수) 해외마케팅 지원		
3차년도 (글로벌 성장)	사업고도화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 스포츠 중소기업 30개사 ('21년 예산 8,900백만원)
- 지원기간 3년으로 10개사 선정 예정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본부 시장개척팀(02-410-1544)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9-39

IP제품혁신 지원(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제품 현안해결을 통한 특허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기술적 난제(제품개선, 신제품 기획, 장치/공정개선, 기능성/디자인 개선 등)를 지식재산(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해결해 해결은 컨설팅 및 검증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중소기업
 - 협업과제는 창업 또는 재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구분	지원규모 (최대 비용/기간)	지원내용
협업과제	신제품기획	11천만원 / 7개월	고객지향적 특허제품기획 컨설팅 + 협업 후속지원(시제품제작, 출원)
	문제해결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컨설팅 + 협업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발형)	8천만원 / 5개월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상) + 협업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선형)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하) + 협업 후속지원
단독과제	신제품기획	7천만원 / 7개월	고객지향적 특허제품기획 컨설팅 + 후속지원(목적제작)
	문제해결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컨설팅 +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발형)	3천만원 / 3개월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상) +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개선형)		기능지향적 특허제품 고도화 컨설팅 (난이도 하) + 후속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타부처, 지자체 등 외부협업을 통해 후속지원 강화
- 공모기간 중 해당 사업신청관리시스템으로 신청(1~2月)
 - (협업과제) 협업기관의 사업신청관리시스템 접수
 - *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대전시(PIMS), 성남시(SNIP)
 - (단독과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접수(www.kipa.org)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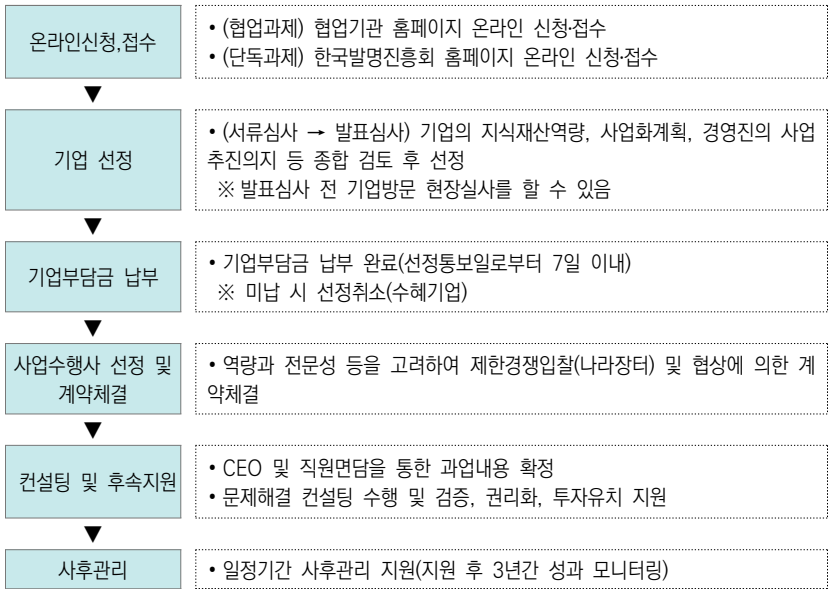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식재산 활용현황, 제품 경쟁력, 기업 경쟁력, 사업 경쟁력 등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IP활용계획서,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등

지원절차



지원규모

- 연간 82개 기업 내외(예산 41.3억원)
 - (협업과제) 최대 11천만원(기업부담금 10~40%) 이내에서 지원
 - (단독과제) 최대 7천만원(기업부담금 10~40%) 이내에서 지원

* '20년 지원현황 : 51개 기업 지원(예산 38.8억원)

** 기업부담금 기준

기업 매출액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기업 부담률	총 10%	총 15%	총 30%	총 40%
	현금 5% 이상 현물 5% 이하	10% 이상 5% 이하	20% 이상 10% 이하	25% 이상 15% 이하

문의처

-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 : 042-481-5867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 02-3459-2937
- 홈페이지 : www.kipa.org



Q.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보유한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제품화를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협업과제와 단독과제에 중복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협업과제 지원 탈락기업이 단독과제에 재신청 가능합니다.(협업과제, 단독과제 순차공고) 단, 중복지원을 위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용어설명

(IP활용계획서) 특허적용제품 정보, 핵심 니즈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서류로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기술, 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9-40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수출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쟁 상황별 맞춤형 IP 보호 전략 제공

지원대상

- 외국기업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 제공

컨설팅 유형	지 원 내 용
특허 실용신안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 분석 및 종합적 사전대응전략 제공 (해외 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상표 디자인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권리통합	특허·상표·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지재권 보호 전략 마련

* 기업 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 차등 지원(중소 70%, 중견 50%)

신청·접수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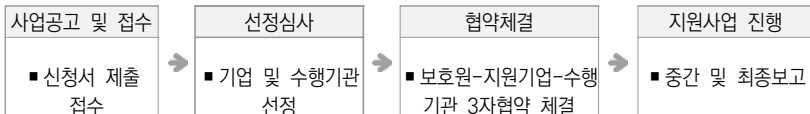
- (기업 선정) 서면 및 발표 평가

* 기업 역량(규모, 지식재산 보유 수)과 컨설팅 활용계획(제품관련 기술의 독창성, 지원 필요성, 활용 계획의 구체성, 수출전략의 적극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컨설팅 활용 계획서,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중소·중견 기업 350~400개사(99.7억원)
* '20년 지원현황 : 총 359개사 지원(예산 90.4억원)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 02-2183-5873~9 또는 ipkoipa@koipa.re.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 www.ip-navi.or.kr

Q&A



Q. 현재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출을 위해 해외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에서 수출예정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Q.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나고야 의정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 지식재산권 관련 해외 기업과의 분쟁이 지원대상입니다.

9-4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종합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출(예정) 중소기업
- 수출기업 : 직전 3년간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년 수출 예정** 기업
 - * (수출기업) 관세청, 무역협회,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류
 - * (수출예정기업) 별도의 "수출 예정 계획서" 작성·제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 해외수출을 하고 있지 않고, 2021년 수출예정이 없는 기업
- ▶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기업 중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디자인 개발 전략 수립,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상표/디자인 개발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IP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기업의 니즈(Needs)에 따라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해외출원 심사대응(OA) 및 등록지원을 특허 이외 상표, 디자인까지 확대 지원
- 브랜드K 기업, 해외진출복귀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 선발

신청·접수

- 매년 1~2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 (www.ripic.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량평가(IP스펙트럼) 40점 + 정성평가 60점
 - * 정량평가(IP스펙트럼): 연구역량, 지재권역량, 기업역량, 글로벌 역량에 대한 정량 평가
 - * 정성평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역량 및 파급효과, 경영자의 의지 및 사업비전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등

처리절차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업 및 세부사업선정

컨설팅 수행

지원규모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820개사(예산 137.8억원)

* '20년 지원현황 : 총 820개사 지원(예산 137.8억원)

문의처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지역	연락처	주 소
서울	02-2222-3860	서울특별시 마포구월드컵북로400 서울산업진흥원 13층
경기	031-500-304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1층
인천	032-810-28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6층
강원	033-749-332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5층
충남	041-559-574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소 2층
대전	044-998-1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402호
세종	042-251-2890	대전 중구 중앙로 119 (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 D∞-Station 15층
충북	043-229-273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 1층
부산	051-645-9683	부산 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257 보생빌딩 3층
울산	052-228-3087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2층
대구	053-242-8079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5층
경북	054-274-55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33 포항상공회의소 2층
경남	055-210-308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1층
전남	061-242-858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4층
광주	062-954-384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7층 (월출동 987)
전북	063-252-9301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TP벤처지원동 105호
제주	064-755-25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6층

Q.본사와 연구소 소재지가 다른데요 .

어느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지원을 해야하나요 ?

A. 글로벌 IP스타기업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본사 소재지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Q.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만 선정되나요 ?

A. 아니요, 수출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진출 예정기업의 경우, 수출예정계획서와 함께 계약서,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인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후 2년 이상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구 분		지 원 내 용
해외 권리와 비용지원		해외 출원·심사·등록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맞춤형 IP맵	특허	특허/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디자인 활용 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자인	
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화상 디자인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브랜드 개발		기업브랜드(CI), 제품브랜드(BI) 및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브랜드 신규 개발 및 리뉴얼
특허&디자인융합 개발		제품, 포장디자인 또는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디자인융합 개발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기업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를 융합 개발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 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

* 지원 내용은 '20년 신규로 추가/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는 기업의 자부담 30%(현물 10% + 현금 20%)를 우선 적용(해외 권리와 제외)하며,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는 총 7,000만원/년(최대 3년간 지원)

9-42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

한국창업보육협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산업 흐름을 이끌어 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예비창업자(대학생 포함), 거점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 * 기업 보육을 담당하는 창업보육매니저 등 교육 대상자 포함 운영

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운영
 - 중기부·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을 통해 전국 창업보육센터 대상의 사전 지식재산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거점 교육센터 선정,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발굴
 - 선정된 거점 교육센터 교육 수요 기반으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강사 풀(pool) 구성, 센터별 현장 교육 운영
 - 센터별 3회차 내외 기술분야별 맞춤형 교육 기획 및 운영(회차당 3시간 내외)
 - *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수준,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IP 개요교육부터 분쟁대응, IP금융, 특허정보 활용실무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교육 거점 센터 수 확대 운영 예정('20년 8개 → '21년 10개)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 및 신청안내 예정(수시)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공지 양식 제출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처리절차	(1-2월)	(3-4월)	(5-1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사업계획수립 및 기관 협력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수요 발굴 및 수요기반 교육기획, 강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교육 운영 및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 발굴 및 공유, 개선사항 도출 등

지원규모

- 10개 창업보육센터(예산436억원)
- * '20년 지원현황 : 8개 창업보육센터(예산 436억원)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 02-3459-2835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Q.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지정 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만 참여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관계자 등 지식재산 역량 제고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9-43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상표를 모니터링하여 우리기업에 제공 및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URL) 삭제 지원

지원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당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 출원중이거나(출원신청서, 출원확인서 미인정)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 유효기간이 경과한 권리 등

지원내용

- (상표브로커 대응)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통보, 피해기업 설명회,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연계 등
- (온라인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리신고를 통한 게시물 삭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교육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상표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 확대 : 중국·베트남·태국에서 인니까지 확대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대상 국가 확대 : 중국에서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으로 확대
- * 아세안 6개국 : 싱가포르, 인니,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신청·접수

- (신청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사업공고 확인 및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2월 / 5월 / 8월 ※ 신청기간 변동가능
- (처리기간) 3개월
- * 신청·평가 대상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유통대응에 한함(해외 상표 무단선점은 보호원에서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통보하므로, 신청·평가 절차 無)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규모, 위조상품 유통규모, 지재권 보유현황 등을 기반으로 종합평가(서면) 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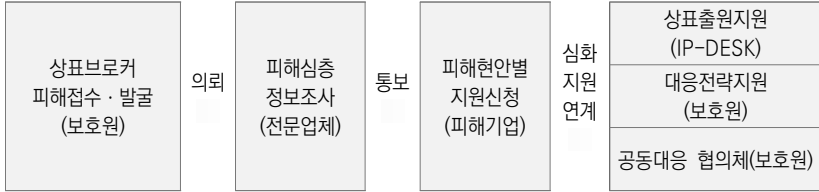
제2편 유관기관(비금융기관)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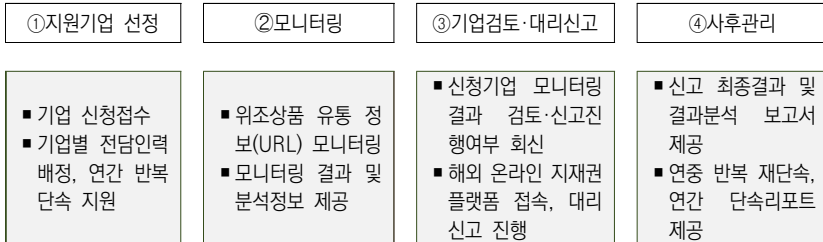
- (상표브로커 대응) 해당 없음
-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칼라)등

처리절차

- 해외 상표선점 모니터링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규모

- (중국) 40개사 (아세안 및 대만) 50개사
* 지원규모 변동 가능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 02-2183-5885(중국), 5894(아세안)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Q&A



Q. 중국 및 아세안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이 삭제가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위조상품 유통대응 파트너십을 체결한 쇼핑몰에서만 게시물 삭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쇼핑몰은 중국 알리바바(타오바오, 티몰, 티몰국제, 1688, 알리바바닷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세안 라자마 및 쇼피입니다.

9-44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촉진 도모를 위해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 해외진출 등 창업기업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기업)
 -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 연월일 기준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외)
- ▶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내용

-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 해외진출 등 창업기업이 필요한 항목의 자금 지원(기업당 30백만원)
 -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위탁 제작,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상품화 지원) 인증, 홈페이지 구축,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포장지 제작 등 지원
 - (홍보 지원) 제품 카달로그 제작, 사진 촬영,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지원
 - (해외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투자박람회 참가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업별 지원예산 증액(2020년 25백만원 → 2021년 30백만원)

신청·접수

- 해양수산 창업투자 정보시스템 (www.kimst.re.kr/startup)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기업역량 및 추진의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시장성·사업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온라인 접수, 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순으로 진행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최종평가

지원규모

-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40개사 내외(예산 12억원)
* '20년 지원현황 : 해양수산 창업기업 18개사(예산 4.5억원)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02-3460-4033
-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imst.re.kr/startup)

Q&A



Q. 사업신청 시 해양수산 기업만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사업화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사업 아이템이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사업비 정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 정산이 실시됩니다. 정산 결과 집행 잔액 또는 부적정 집행 건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9-45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창업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해양수산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지원대상

-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기업)
 -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 연월일 기준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초기자금, 기술자문, 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시설 등 지원
 - 시제품 제작 등 초기 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평가를 통한 차등 지급 예정)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예비창업자 선발 의무비율 확대(2020년 4팀→ 2021년 8팀)

신청·접수

- 해양수산 창업투자 정보시스템 (www.kimst.re.kr/startup)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역량 및 추진의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으로 구성되며 공고 시 평가 기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온라인 접수, 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순으로 진행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액셀러레이터

성과보고회
개최

지원규모

-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24개사 이상(예산 10억원)
* '20년 지원현황 :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27개사(예산 9억원)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02-3460-4022
-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imst.re.kr/startup)



Q. 사업신청 시 해양수산 기업만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사업화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사업 아이템이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셀러레이터 매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4개사)의 보육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희망기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9-46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우수 환경기술의 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 지원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 (사업화) 신청과제 관련 기술 보유(자체개발 또는 비영리기관 유상이전), 시제품 제작·개선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발생이 가능한 경우
 - (환경설비 상용화)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 보유, 협약기간 내 수요기관에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가동하여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간)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기술개발 완료 후 초기 사업화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자금, 맞춤형 컨설팅, 투자유치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최대 3억 원 이내)
 - * 지원율 : 국비 70%, 민간 30%
- 중소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 수요처 요구 현장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규모 환경설비 제작·설치,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상용화 소요자금 지원 (최대 6억 원 이내)
 - * 지원율 : 국비 60%, 민간 4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 분야 확대 및 관리기관 변경

- 중소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를 미세먼지, 자원 순환에서 환경 전분야로 확대 및 사업 관리기관 변경(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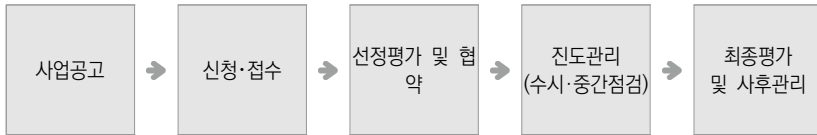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문기관조정 → 최종선정평가

* (사업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 (상용화) 설비 설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수요기관의 적정성, 사업성 및 수행역량, 기술혁신성,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화계획서, 자격기준 및 가점 증빙서류

처리절차



지원규모

- 140개 과제 내외(예산 382억 원 내외)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02-2284-1743~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
- 중소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Q&A



Q. 사업화 지원사업 및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 제작·개선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은 완제품·설비의 수요기관 현장 설치를 통해 실증데이터 확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9-47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를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기간 유효한 것에 한함
 - 고용우수인증(지자체, 고용노동부 발급)에 가점 5점 부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년도 본 사업을 통해 광고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
 - * 단, 라디오 제작비 지원 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신청 가능
-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
- ▶ 직전 2개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수행 중도 포기한 기업

지원내용

- TV :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 지원금액 최대한도 4,500만원
- 라디오 :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70%, 지원금액 최대한도 300만원
 - 지원금액은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검증절차 완료 후 최종 조정된 방송광고물제작비 지급(부가세 제외)
 - 본 사업은 지원대상 선정 기업의 신규 제작 방송광고물만 대상으로 인정함(신규 제작 방송광고물의 최초 심의 신청일은 협약체결일 이후여야 함)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및 접수

- 1월말 ~ 2월초 공모 개시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계량) 성장성(매출증가), 안정성(순이익), 방송광고 집행예정 규모
- (비계량) 상품경쟁력, 독창성(시장 개척 및 선도의 수준)
 -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를 구성,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

제출서류

- 신청서, 방송광고집행계획서, 기업인증,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가점 증빙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수행

지원금 신청

검증

지원금 지급

지원규모

- 혁신형중소기업 4~50업체, 13.5억원 지원
 - * '20년 지원현황 : 69사 대상 약 16억원 지원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 : 02-731-7319~7322
- 사업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Q&A



Q. 2019년 이전 지원받은 기업은 2021년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시에 과거 지원이력 있는 기업은 최대 선발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송출비 할인)사업과 이 사업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TV와 라디오 광고제작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9-48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송출비를 지원

비용 부담이 높은 방송광고 송출비의 할인, 보너스 광고 제공 등 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녹색인증중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 전문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 연구소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창업진흥원지원기업, KOBACO 방송광고지원 기금사업수행기업, 스마트공장인증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기간 유효한 것에 한함
 - 우대사항 : 신기술개발/정부선정 등의 해외수출기업, 혁신성장동력분야 제품 생산기업, NEP/NET 등 신기술/아이디어제품 공인 생산업체, 국제전시회/신기술발명전시회 수상 경력, KOBACO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 활성화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지상파(전국) 광고를 집행한 기업
- ▶ 본 사업을 통해 광고 송출비를 지원받은 기업
- ▶ 방송광고와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내용

- 방송광고 송출비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제공 (계약일로부터 3년간)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를 통해 매일 20일까지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혁신노력, 성장성 및 파급효과, 광고계획 등
-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를 구성,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

제출서류

- 신청서, 제품소개서, 광고계획서, 기업인증,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우대 증빙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

결과발표 및
광고청약 지원

지원규모

- 혁신형중소기업 2~300업체
- * 20년 지원현황 : 280여사 대상 약 300억원 지원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 : 02-731-7317~7322
- 사업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Q&A



Q.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도 이 사업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지원대상이 되면 TV와 라디오 광고비 중 하나만 지원받나요?

A. 아니요, 지원기업이 KOBACO를 통해 광고청약하는 모든 매체에 대해 지원혜택을 드립니다.

9-49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소상공인 지역방송 광고제작·송출비 지원

자금 및 정보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지역밀착형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방송광고 시장과 소상공인이 상호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가점사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고시’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 선발된 소상공인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있는 기업
- ▶ 방송광고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등)
-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업종(유흥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및 프랜차이즈 업종
- ▶ 정부지자체 유사사업에서 동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기업

지원내용

- 전체 제작비와 송출비(부가세 제외)의 90% 지원(최대한도 900만원)
 - 제작비는 선정 이후 신규로 제작한 방송광고물에 대해서만 지급
 - 송출비는 지역밀착형 매체(로컬 매체) 광고시에만 지원
 -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검증 절차를 완료한 후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및 접수
 - 1월말 ~ 2월초 공모 개시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계량) 사업계획상 지원 필요도

- (비계량) 경쟁력, 창의성, 광고계획, 기대효과 등
- * 비수도권 지역별 최소 쿼터 정해 선발 예정

제출서류

- 신청서, 광고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가점 증빙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소상공인 약 130업체, 약 16억원 지원
- * '20년 지원현황 : 134사 대상 16.4억원 지원

문의처

- 사업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 지역별 상담센터
 - 수도권/강원/제주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02-731-7317~22)
 - 부산/경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051-751-0400)
 - 대구/경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053-767-9900)
 - 광주/전라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062-652-3600)
 - 대전/충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042-533-3821)



Q. 2020년 지원받은 기업은 2021년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본 사업은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Q.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본 사업 진행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연내 사업 완료 후에는 별도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광고제작이나 송출사업 중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A. 아니오, 제작, 송출 모두 지원해드립니다. 최대 지원한도내에서 사용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9-50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AI 특화 창업지원

AI 기술 특성과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AI 특화 창업 지원 사업으로, 수요·투자 연계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AI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인공지능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 등으로부터 보조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 또는 대표자 및 참여인력이 포함된 경우
- ▶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 현재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지급(이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기업 또는 대표자
- ▶ 정부 관련 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성공환원금(기술료) 미납 기업 또는 예비창업팀 대표자
-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 그 외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AI 시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신규 제작 및 사업화를 위한 AI(시)제품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연차별 금액 변동 있음, 지원규모 추후 확정)
 - * 20년 67개사, 평균 7,500만원 수준(평가 점수 별 차등 지원)
- AI 입주공간 지원
 - 창업 등에 필요한 물리적 입주공간 지원(입주공간 광주광역시 內 위치)
 - * 입주공간 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 본사 이전, 지사 설립 등 필수
- AI 규제 컨설팅 지원
 - 창업 및 제품 출시 과정에서 규제 등 법적 이슈 사전 파악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 컨설팅 지원
- AI 품질 컨설팅 지원
 - AI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테스트 및 컨설팅을 지원

신청·접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AI 시제품 제작지원) 과제 의 적절성, 수행능력, 사업화 가능성 및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AI 입주공간 지원) 사업성, 창업의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AI 시제품·서비스 개발지원 / AI 입주공간 지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협약 및 지원

- AI 규제 컨설팅 / 품질 컨설팅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

컨설팅

* 사업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전국 인공지능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기업 총 98개사 내외
* '20년 지원현황 : 시제품제작지원 67개사, 입주지원 35개사, 규제컨설팅 100건, 시제품컨설팅 80건 등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AI단지육성팀 : 043-931-5937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 : 062-610-3951~3



Q.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사업은 광주광역시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으로 한정되나요?

A. 아닙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의 인공지능분야 예비창업팀 또는 7년 미만의 창업기업입니다. 다만, 일부 지원 내용에서 추가 요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별 공고문 내 세부 조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9-51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중소기업 대상 업종, 규모별 등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이용료를 지원(80%)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지원내용

-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지원
 - 수요기업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제조, 의료, 기업공통), 용도(회계, 마케팅, 자원관리), 규모별 활용 정보 제공
 - * 수요기업의 활용목적(비대면 업무환경 전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컨설팅 제공
- 전환 및 이용료지원
 - 수요기업 대상 업종별 패키지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이관, 이용자 교육 등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용료 지원(업체당 최대 18백만원, 자부담금 20%)
 - * 기업경영(회계, ERP), 고객관리(CRM, 영업), 비대면(영상회의, 재택근무) 서비스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기업수 확대((목표) '20 : 400개 → '21년 : 500개)

신청·접수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홈페이지 미개설)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지원의 적절성, 디지털 전환 가능성, 기대효과)을 통한 종합적 평가
 - * (지원의 적절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기업의 도입 의지 등, (디지털전환 가능성) 중장기적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능성, (기대효과) 도입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 효율성 향상 등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처리절차

- (수요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지원

지원규모

- 92.5억원, 500개사 이상
* '20년 지원현황 : 수요기업 646개사 지원(80억원)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 : 043-931-5779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Q. 클라우드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은데, 이용 서비스, 도입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클라우드 도입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컨설팅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 되시면 먼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이드 받으신 후 바우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Q. '20년도에 지원받았던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지원 여부는 별도 평가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9-52

ICT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국내 ICT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하며, 컨설팅 결과에 도출된 주요 취약점 조치를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 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 ICT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
 - 우선지원 기업 : 해킹피해를 경험한 기업, 금융 및 정보통신업 등 보안 중요도가 높은 기업, 정보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한 스타트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불가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은 지원불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 신청기업의 ICT 인프라 규모, 업종, 정보보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별 최적의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 정보보호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기업당 최대 800만원)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조치가 시급한 보안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조치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을 매칭형태로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작년 대비 양적·질적 지원규모 대폭 확대
 - 지원대상 수를 '20년 500개社에서 '21년 1270개社로 154% 확대하였고,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금액을 기업당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확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ISA 홈페이지(www.kisa.or.kr) 內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탭에서 세부적인 신청·접수 방법 확인
- 신청기간 : 매년 5월 중순 ~ 10월 말

심사·평가 주요내용

- 중소기업 여부, ICT인프라 규모, IT인력 보유현황, 정보보호 추진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

* 신청기업 중 해킹피해 경험보유 기업 및 정보통신업 등 보안 중요도가 높은 기업은 우선적 지원

제출서류

-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 세부 진행절차는 담당 컨설턴트가 직접 유선으로 안내

신청서 접수

선정·일정안내

컨설팅 수행

솔루션 도입

지원규모

- 전국 중소기업 대상 1,270개社 대상(108.5억원)

* '20년 지원현황 : 전국 500개 중소기업(75억원)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 : 02-405-6696
- KISA 홈페이지(www.kisa.or.kr)

Q&A



Q.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은 전부 무료 인가요?

A. 정보보호 컨설팅은 전액 무료이며, 보안솔루션은 기업의 일부 매칭비용이 부담됩니다.

Q. 솔루션 구입 없이 컨설팅 컨설팅만 또는 컨설팅 없이 솔루션 구입만 진행이 될까요?

A.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컨설팅 및 솔루션 도입을 모두 진행해주셔야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일 : 2021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8913

팩스 : (042)481-6860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